제6대 전반기

# 의정백서

*2010. 7. 1 ~ 2012. 6. 30*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發 / 刊 / 辭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6대 고흥군의회 전반기 2년간의 의회활동을 마감하고 그간의 의정활동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록한 議政白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회가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이와 함께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민생현장에서 때로는 의정단상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결집과 고통분담을 군민들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불합리한 제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행착오를 거듭해 오면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민의의 전당으로 정착하기 까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군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당선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제6대 의회 전반기 의정백서는 12명 의원들의 2년간 의정활동 발자취를 분야별로 더듬어 볼 수 있도록 사실대로 정리 수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사 연구의 사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고흥군의회의장 **박 금 래**

# 고흥의회기



# 고흥군의회의원윤리강령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민복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도야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여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 도모, 지위남용, 타인을 위한 부당알선 등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 군민헌장

우리는 팔영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군민임을 자랑으로 삼는다.

기름진 땅과 넓은 개펄은 우리들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산과 황금의 바다는 고흥인의 요람이다.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일념은 발포에 서린 충무공의 넋을 받음이요,

내일을 향한 드높은 이상은 봉황의 자태를 닮음이다.

우리는 고흥군민의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슴속에 지니고

힘차게 오늘을 살고 있다.

번영을 향해 치닫는 굳센 의지는 후손에 길이 남을

귀감으로서 영원한 횃불이 되어 불타오르리라.



# 고흥의 상징물

## 군 기

고흥군의 심볼은 3면이 바다인 고흥군의 지리적인 특성과 역사, 경제, 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고흥군의 이미지와 우주센터를 모티브로 형상화 함.



## 군 목 유자나무

– 운향과에 속하는 과수로서 소득 장려 수종

특징 : 발육성이 좋고 병충해 피해가 적어 재배관리가 용이한 과수로써 대중 수요가 많으며,

열매 : 조선조시대 진상품으로써 오늘날 유자차로 널리 애용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피부미용 재료로 쓰이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색상 : 노란 열매는 희망 · 향상 · 발전을 뜻하고 있어 복지 군정의 미래를 상징.



## 군 화 동백꽃

– 군 전역에 분포되어 군생하고 있는 상록수

꽃 : 홍색, 자색 또는 백색의 오관화가 가지 끝에 정생하며 화밀이 많아 각종 새들이 날아들어 조밀화의 극치.

색상 : 용기 · 승리 · 정열을 뜻하고 있어 번영을 향해 치닫는 군민의 기상과 영합.



## 군 조 비둘기

– 군민으로부터 애호를 받고 있는 조류로서 전역에 서식

특징 : 희망 · 평화 · 번영을 상징하는 조류로써 예부터 길조로 불리어 왔을 뿐만 아니라 기호성이 강하여 무고흥이면 무호남으로 대변되는 군민의 자긍심과 영합



## 캐릭터 Character

「외로와 나로」

고흥군 캐릭터는 "외로와 나로"로서 외나로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건립될 우주센터의 우주선을 모티브로 실제의 우주선을 의인화하여 단순하게 디자인 하였다. 외로와 나로는 우주센터의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안내하는 도우미로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다정다감한 미소와 따스함을 지니고 있다.

## 마스코트 Mascot

「별이와 솔이」

고흥군 마스코트인 "별이와 솔이"는 요정 로브와 함께 지구와 우주를 다니며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메신저로서 오랜 친구처럼 포근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다가올 우주시대의 주인공으로 청정해역과 우주센터 그리고 풍요롭고 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일등 고흥건설에 앞장서는 고흥군민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 군민의 노래

목 일 신 /작사
김 재 민 /작곡



# 議 政 目 標

–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

## 의정운영방침

- 확고한 자치기반 구축
-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 민의수렴을 통한 열린 의정 실현
- 견제와 균형의 내실 의정 구현



# 제6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 (2010. 7. 1 ~ 2012. 6. 30)

### *의장단*



의장
신 태 균(고흥나)



부의장
박 금 래(고흥다)

### *상임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 주 식(고흥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송 경 양(고흥라)



산업 · 건설위원회위원장
김 의 규(고흥라)

### *상임위원회구성*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 주 식 | 송 우 섭 |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
| 총무위원회 | 송 경 양 | 장 세 선 | 배기홍, 박금래, 김주식, 최설희 |
| 산업건설위원회 | 김 의 규 | 송 우 섭 | 김옥래, 송경석, 송인숙 |

#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프로필



| | |
|---|---|
| 성 명 | 배 기 홍(裵基洪) |
| 선 거 구 | 고흥가 |
| 선 수 | 3선 |
| 생년월일 | 1952. 2. 4 |
| 주 소 | 고흥읍 흥양길 23-17 |
| 주요경력 | • 고흥군체육회상임부회장<br>•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br>• 제4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br>• 제5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 | |
|---|---|
| 성 명 | 김 옥 래(金玉來) |
| 선 거 구 | 고흥가 |
| 선 수 | 3선 |
| 생년월일 | 1948. 9. 27 |
| 주 소 | 영남면 사도중앙길 9-2 |
| 주요경력 | • 협동영어법인대표<br>•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사<br>•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br>•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 | |
|---|---|
| 성 명 | 송 경 석(宋庚錫) |
| 선 거 구 | 고흥가 |
| 선 수 | 3선 |
| 생년월일 | 1954. 1. 24 |
| 주 소 | 점암면 여도진로 209 |
| 주요경력 | •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전라남도축구협회부회장<br>•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br>• 제5대 전반기 의장 |



| | |
|---|---|
| 성 명 | 송 우 섭(宋禹燮) |
| 선 거 구 | 고흥나 |
| 선 수 | 초선 |
| 생년월일 | 1960. 7. 7 |
| 주 소 | 동강면 쌍암길 49 |
| 주요경력 | • 동강면새마을청소년회장<br>• 농림수산식품산업비전5000추진협의회부위원장<br>• 민주통합당고흥보성지역위원회사무국장<br>• 제6대전반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 | |
|---|---|
| 성 명 | 신 태 균(申泰均) |
| 선 거 구 | 고흥나 |
| 선 수 | 3선 |
| 생년월일 | 1954. 2. 8 |
| 주 소 | 과역면 과역로 843 |
| 주요경력 | •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고흥군배구협회장<br>• 제5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br>• 제6대 전반기 의장 |



| | |
|---|---|
| 성 명 | 박 금 래(朴今來) |
| 선 거 구 | 고흥다 |
| 선 수 | 3선 |
| 생년월일 | 1949. 9. 26 |
| 주 소 | 도덕면 학동1길 28 우성빌라 302호 |
| 주요경력 | • 도양읍번영회부회장<br>• 제4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br>• 제5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br>•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 | |
|---|---|
| 성 명 | 김 주 식(金鉒植) |
| 선 거 구 | 고흥다 |
| 선 수 | 2선 |
| 생년월일 | 1954. 10. 9 |
| 주 소 | 도양읍 북문길 5-1 |
| 주요경력 | •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br>•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br>• 제5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br>•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 | |
|---|---|
| 성 명 | 장 세 선(張世善) |
| 선 거 구 | 고흥다 |
| 선 수 | 초선 |
| 생년월일 | 1953. 12. 1 |
| 주 소 | 금산면 상하촌길 14-1 |
| 주요경력 | • 거금도농협조합장(3선)<br>• 농협중앙회경제사업발전위원<br>•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br>• 고흥군2011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 |



| | |
|---|---|
| 성 명 | 김 의 규(金義珪) |
| 선 거 구 | 고흥라 |
| 선 수 | 2선 |
| 생년월일 | 1959. 7. 17 |
| 주 소 | 도화면 황촌길 20-5 |
| 주요경력 | •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br>•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br>•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 | |
|---|---|
| 성 명 | 송 경 양(宋景良) |
| 선 거 구 | 고흥라 |
| 선 수 | 2선 |
| 생년월일 | 1953. 7. 3 |
| 주 소 | 포두면 봉덕길 68 |
| 주요경력 | • 포두면농업경영인회장<br>• 제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br>• 제4대 후반기 의장<br>• 제6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



| | |
|---|---|
| 성 명 | 송 인 숙(宋仁淑) |
| 선 거 구 | 비례대표 |
| 선 수 | 초선 |
| 생년월일 | 1949. 5. 2 |
| 주 소 | 대서면 개명안길 16 |
| 주요경력 |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br>•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br>• 전남여성신지식인회장<br>• 학교법인아주학원이사 |



| | |
|---|---|
| 성 명 | 최 설 희(崔雪姬) |
| 선 거 구 | 비례대표 |
| 선 수 | 초선 |
| 생년월일 | 1954. 11. 21 |
| 주 소 | 고흥읍 고흥로 1766-1 |
| 주요경력 | • 고흥군학교어머니연합회장<br>•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br>• 한국걸스카웃고흥지회장<br>• 고흥군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본회의 활동 *




【 제6대 의회 개원식 】



【 정 례 회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본회의 활동 *



【 임 시 회 】



【 군정질문 및 답변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본회의 활동 *




【 군정주요업무보고 】



【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상임위 활동 *



【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



【 총무위원회 의안심사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상임위 활동 *



【 산업 · 건설위원회 의안심사 】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활동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특별위원회 활동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안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행정사무감사 *



【 총 무 위 원 회 】



【 산업 · 건설위원회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행정사무조사 *



【 군 발주 사업장 현지확인(1반) 】



【 군 발주 사업장 현지확인(2반)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행정사무조사 *



【 읍면 발주 사업장 현지확인(1반) 】



【 읍면 발주 사업장 현지확인(2반)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 원 연 수 *



【 공무국외연수-북유럽 】




【 의정연찬회 -제주도】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 원 연 수 *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견학(총무위원회) 】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견학(산업건설위원회)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회활동 *




【 제155차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 】




【 고흥군의회개원20주년기념식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회활동 *



【 의원협의회 】



【 농촌 일손돕기 지원(풍양면)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회활동 *



【 고흥광장조성사업 현장 시찰 】




【 초등학생 의회 본회의장 견학 】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 의회활동 *




【 서울시장 낙지폄훼파문 규탄대회 참석 】

# Contents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발간사(의장)
- 군흥군의회 旗
- 고흥군의회의원 윤리강령
- 군민헌장
- 고흥의 상징물
- 군민의 노래
- 제6대 전반기 원구성 현황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議·政·白·書




## 제1장 일반현황

### 제1절 기본현황

1. 연 혁 ····· 35
2. 지역특성 ····· 37
3. 일반행정 ····· 39

###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1. 연 혁 ····· 47
2. 의회구성 현황 ····· 51

## 제2장 회의운영

### 제1절 기본현황

1. 회기운영 현황 ····· 57
2. 의안처리 현황 ····· 58

### 제2절 제6대 전반기 본회의 운영

1. 제185회 임시회 ····· 61
2. 제186회 임시회 ····· 72
3. 제187회 제1차 정례회 ····· 90

4. 제188회 임시회 ····· 102
5. 제189회 제2차 정례회 ····· 105
6. 제190회 임시회 ····· 128
7. 제191회 임시회 ····· 140
8. 제192회 임시회 ····· 147
9. 제193회 임시회 ····· 150
10. 제194회 임시회 ····· 155
11. 제195회 임시회 ····· 158
1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 164
13. 제197회 임시회 ····· 175
14. 제198회 임시회 ····· 178
15. 제199회 제2차 정례회 ····· 182
16. 제200회 임시회 ····· 205
17. 제201회 임시회 ····· 216
18. 제202회 임시회 ····· 224
19. 제203회 임시회 ····· 228
20. 제204회 임시회 ····· 231
21. 제205회 임시회 ····· 239

# 제3장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1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49
2.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53
3.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62
4.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73
5.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77
6.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81
7.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90
8.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01

# Contents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議·政·白·書


## 제2절 행정사무감사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306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324

## 제3절 행정사무조사

1. 제187회 제1차 정례회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45
2. 제192회 임시회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54
3. 제198회 임시회 2010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63
4. 제202회 임시회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375

# 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385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452

# 제5장 부 록

## 제1절 의회에서 하는 일 ····· 537

##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1. 의장단 ····· 545
2. 위원회 ····· 546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 548

## 제3절 회의규칙 ····· 567

## 제4절 의회용어 ····· 591

# 제1장 일반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제1절 기본현황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 http://www.igoheung.com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제1장

## 제1절 기본현황

1. 연혁
2. 지역특성
3. 일반행정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1절 기본현황

## 1. 연혁

### 가. 선주민의 정착

삼면이 바다인 고흥반도 안에 원주민 인종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동진해 들어온 족속에게 정복당하여 융화되었거나 다른 지방으로 유산되어 더러는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로 간 족속도 있었으리라 본다. 우리고장 고흥에 입주한 선주민은 원시인들이 동쪽으로 생활 조건이 적의한 곳을 찾아 정착하였으리라는 점에서 볼 때 서해안을 거쳐 남하하였거나 산동반도에서 진입한 족속임은 의심할 바 없다.

### 나. 석기시대와 고흥

본군 각처에 산재한 지석묘는 그 수가 5백여 개에 준하고 계문토기시대에 정착하여 살던 패총이 해안선주에서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각처에서 발굴된 석부 석도 석창 석기등과 철기시대의 유물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고장 선주민들은 신석기시대부터 비로써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고 그와 같은 유물 등을 용구로서 수렵을 하여 정원 정농과 어로로 생활한 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

### 다. 삼국시대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의 영토였다가 근초고왕(近肖古王)때 백제의 땅이 되었으며, 백제가 사비로 도읍지를 옮긴 후에는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속하였다. 의자왕 20년(660) 5월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망하고 그 옛 땅에 5개도독부를 두었다. 그 후 전라남도에는 사양(沙洋), 대방(帶方), 분차(分嵯)의 3주가 배치되었고, 고흥군은 분차군에 소속되었다. 분차군(낙안군)은 4개의 현을 거느렸는데 고흥군 지역에는 조조례현(助助禮縣, 남양면), 두힐현(豆힐縣, 두원면), 비사현(比史縣, 동강면)의 3개현을 두었다.

## 라.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에 따라 고흥군 지역도 신라의 영토가 되었으며,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종래의 복잡한 군현지명을 순 한자화하여 분차군을 분령군(分嶺郡)으로 조조례현을 충렬현(忠烈縣)으로 두힐현을 강원현(薑原縣)으로 비사현을 백주현(栢舟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으며 진성여왕 때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광주)에 근거를 두고 부근일대를 정복하여 후백제를 세움에 따라 이 지역은 후백제의 땅이 되었다.

## 마. 고려시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제6대 성종(成宗) 14년(995) 9월, 전국을 10도로 나누고 전남지방을 해양도(海洋島)라 하였으며, 고흥군은 해양도 14주 62현 중의 3현이 되었다. 제8대 현종(顯宗) 9년(1018)에는 해양도와 강남도(江南道, 전북)를 합하여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이름을 따서 전라도(全羅道)로 개칭하고 그 치소(治所)를 전주에 두었다.

이보다 앞선 태조 23년(940)에는 충렬현을 남양현(南陽縣)으로, 강원현을 두원현(荳原縣)으로, 백주현을 태강현(泰江縣)으로 고쳐 나주목(羅州牧)에 딸린 보성군에 두었다. 고흥현(高興縣)은 본래 장흥부(長興府)에 딸린 고이부곡(高伊部曲)이었는데 고이(高伊)는 고양이의 속어(俗語)라고 하며 충렬왕(忠烈王) 11년(1285)에 이고을 사람인 유청신(柳淸臣), 처음이름은 庇(인명해설 참조)인데 원나라의 사신으로 여러번 큰 공을 세웠으므로 고흥현으로 승격시키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고흥(高興)이라는데 지명은 고이(高伊)와 장흥(長興)의 합명(合名)으로서 조선조에 등장한 흥양(興陽)보다도 더 오래된 지명이다. 풍안현(豊安縣)은 보성군에 딸린 식촌부곡(食村部曲)이었는데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가서 공을 세운 이대순(李大順)의 청에 의하여 풍안현으로 승격되었으며, 도양현(道陽縣)은 본래 장흥부 도량도부곡(道良道部曲)이었는데 고려에 와서 도양현으로 승격되었고, 도화현(道化縣)은 보성군의 타주부곡(他州部曲)이었는데 명종(明宗) 27년(1197)에 도화현으로 승격되어 고흥지방에는 모두 7개의 현이 있었다.

## 바. 조선이후

태조(太祖) 4년(1395)에 왜란으로 인하여 보성군 조양현(兆陽縣)땅에 치소를 임시로 옮기고 같은 6년(1397)에 진(鎭)을 두어 병마사(兵馬使)가 현감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태종(太宗) 16년(1416) 전국을 8도로 할 때에 전라도의 좌도(左道)에 소속되었으며, 세종(世宗) 5년(1423)에는 이곳에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었다가 같은 23년(1441)에는 보성군에 딸린 남양현, 두원현, 등 7개의 현을 합하여 고흥과 남양, 도양의 뒷글자를 따라 흥양현(興陽縣)으로 개칭하

였다. 이곳은 또한 조선시대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에 속한 5관 5포(五官五浦)가운데 사도첨절제사(蛇渡僉節制使, 종3품, 점암면 금사리)를 비롯하여 발포(鉢浦, 도화면 내발리), 녹도(鹿島, 도양읍 녹동), 여도(呂島, 점암면 여호리)에 수군 만호의 주력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이 지방의 여러 장수가 국난극복에 모두 참여하여 많은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었다. 영조(英祖) 때의 기록에 "고흥은 예부터 영주(瀛州山, 한라산)와 같은 이름으로 산과 바다가 맑고 아름다우며 기승(奇勝)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예부터 등과자(登科者 : 과거에 급제한 사람)가 많을 뿐 아니라 용력(勇力)이 뛰어난 역사(力士)가 많으며 지금도 정계(政界), 학계(學界), 관계(官界), 체육계(體育界)등 각 분야에 진출한 고흥출신의 인물이 많다. 당시의 흥양현은 호수(戶數)가 9,977호로서 인구 41,996인이며, 남자가 18,559인, 여자가 23,437인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000여명이나 더 많았다. 고종(高宗) 26년(1895) 지방제도 개혁에 의하여 흥양현을 흥양군으로 바꾸고 13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 4. 1 군면 폐합에 따라 돌산군(突山郡)의 득량도 등을 합하여 고흥군으로 개칭하고 13개면을 관할하였으며, 1973. 7. 1 도양면이 도양읍으로, 1979. 5. 1 고흥면이 고흥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2읍 14면 2출장소 515개의 자연마을을 관할한다.

# 2. 지역특성

## 가. 위 치

고흥은 전남의 남해안 동남단데 돌출한 고흥반도와 169개의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 보성군과 경계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남해에 개방되어 있어서 주민의 생활이나 교통면에 있어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고흥군은 2개읍, 14개면, 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포두면의 면적이 가장 넓다.

군의 4극단은 127° 05' ~ 127° 40' E와 34° 18' ~ 34° 46' N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서간 35', 남북간 28'의 범위에 걸쳐있다. 그러나 해양상의 극점이 아닌 육지나 도서상의 4극점을 보면, 극동은 봉래면 하반리 대항도 동단에 해당하고 극서는 금산면 연홍리 연홍도 서단에 해당하며 극남은 도양읍 시산리 무학도 남단에 해당하고 극북은 동강면 한천리 북단에 해당한다.

지협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북부를 제외한 군 전체가 남해에 둘러싸여 있는 고흥군은 동쪽에서 순천만과 여자만을 사이에 두고 여수시와 접해 있으며, 서부에서는 장흥군 관산읍 및 완도군과 접해 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여천군 삼산면 손죽열도와 접해 있으며 북부와 북서부는 득량만을 사이에 두고 보성군과 접경하고 있다. 고흥군을 한반도와 연결하고 있는 군계의 길이는 겨우 20km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구역상으로도 고흥군 대서면과 동강면이 보성군 벌교읍 및 조성면과 각각 접경하고 있다. 그리고 고흥반도를 육지와 연결시키는 지협에는 남양면이 위치하며 육상교통에 있어서 일종의 관문적 역할을 한다.

## 나. 지형지세

고흥군의 지형지세는 해발 600m정도인 팔영산, 마복산, 적대봉, 천등산 등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표고 0~50m미만이 전체 고흥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100m가 25%정도 차지하고 있다.

경사도를 살펴보면 0~5%미만이 전체면적의 3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5~30%미만이 27%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경사 15%이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고흥군의 하천은 총연장 106.12km로서 유연면적은 272.70㎢이며, 대부분의 하천은 빈약하며 단조롭고, 고흥천 · 녹동천 등 25개의 준용하천과 207개에 달하는 소하천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들은 득량도와 포두면의 간척지를 통하여 남해로 유입되고 있다.

## 다. 기 후

고흥군의 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습, 겨울에 온난건조의 특성을 보인다. 고흥지방은 타지역에 비해 대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반면 연중 난류가 흐르는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의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며 눈보다 비가 많이 내리며, 여름철에는 습한기류의 지형적 수렴으로 비가 많은 기후를 이룬다. 따라서 비교적 연교차가 적고 온화하면서 강수량이 많은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산간부, 평야부, 연안부에 따라서 기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온화한 기후권에 들어 있어, 1월의 평균기온이 1.0℃ 이며 연평균 기온이 13.5℃ 로서 난대성 식물인 비자나무와 동백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 라. 기상개황

제공 : 여수기상대

| 구분 / 월별 | 기온(℃) | | | 강수량 (mm) | 상대습도(%) | |
|---|---|---|---|---|---|---|
| | 평균기온 | 최고기온 | 최저기온 | 강수량평균 | 평균습도 | 최소습도 |
| 1월 | 1.4 | 7.4 | -4.0 | 7.5 | 64.2 | 40.0 |
| 2월 | 6.0 | 12.2 | 0.1 | 65.6 | 62.8 | 36.0 |
| 3월 | 8.1 | 14.2 | 2.1 | 74.5 | 59.9 | 32.0 |
| 4월 | 13.2 | 20.0 | 6.6 | 123.0 | 69.2 | 43.0 |
| 5월 | 18.2 | 25.1 | 11.6 | 171.2 | 75.7 | 51.0 |
| 6월 | 21.4 | 26.3 | 17.1 | 124.0 | 79.9 | 56.0 |
| 7월 | 24.0 | 27.7 | 21.0 | 491.2 | 87.2 | 74.0 |
| 8월 | 24.8 | 29.1 | 21.0 | 62.5 | 79.2 | 57.0 |
| 9월 | 21.9 | 27.6 | 17.5 | 49.1 | 74.8 | 49.0 |
| 10월 | 16.3 | 23.4 | 10.2 | 59.1 | 76.3 | 39.0 |
| 11월 | 9.3 | 15.3 | 4.3 | 50.0 | 67.7 | 41.0 |
| 12월 | 3.3 | 8.8 | -1.6 | 16.2 | 70.0 | 43.0 |

# 3. 일반행정

## 가. 행정구역

고흥군의 총면적은 776.30㎢(전80.7㎢, 답143.2㎢, 임야 458.3㎢, 기타 94.1㎢)로서 전라남도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2읍 14면 2출장소이며, 하부조직으로 131법정리 1,392반이 있고 515개 행정리로 구성.

## 나. 기구 및 공무원 현황

### 1). 기구 및 공무원

#### 가) 기구

2012년 6월말 현재 행정기구는 본청의 1실(기획실), 12과(주민복지과 · 행정과 · 재무과 ·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농업축산과 ·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방재과 · 종합민원실), 2개 직속기관(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별도 의회사무과가 있으며, 16개 읍면으로 구성.

#### 나) 공무원

공무원의 정원은 755명으로 인구 72,008명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1인당 군민수는 95.4명임. 기관별로 본청이 258명, 직속기관이 141명, 사업소 54명, 읍면 288명, 의회사무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종별로 분류하면 정무직 1명, 일반직 624명, 기능직 94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2명, 별정직 1명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82.6%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 정원 현황 】 (2012. 6. 30 현재, 단위 : 명)

| 구 분 | 계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정무직 | 기능직 | 연구직 | 지도직 | 별정직 |
|---|---|---|---|---|---|---|---|---|---|---|---|---|---|
| **계** | 755 | 1 | 3 | 35 | 178 | 188 | 147 | 72 | 1 | 94 | 3 | 32 | 1 |
| **본 청** | 258 | 1 | 2 | 11 | 65 | 85 | 39 | 15 | 1 | 38 | 1 | | - |
| 직속기관 | 141 | | 1 | 1 | 27 | 13 | 37 | 19 | | 8 | 2 | 32 | 1 |
| 사 업 소 | 54 | | | 4 | 14 | 16 | 8 | 1 | | 11 | | | |
| 읍 면 | 14 | | | 3 | 3 | 2 | 2 | | | 4 | | | |
| **의회사무과** | 288 | | | 16 | 69 | 72 | 61 | 37 | | 33 | | | |

# 고흥군 기구표(2012.6. 30 현재)



# 다. 인구 및 세대

2012. 6. 30 현재

| 구분 | 면적 | 세대수 | 인 구(명) | | | 세대당 | 행정구역 | | |
|---|---|---|---|---|---|---|---|---|---|
| | | | 계 | 남 | 여 | | 법정리 | 행정리 | 반 |
| 계 | 776.35 | 34,826 | 72,008 | 34,658 | 37,350 | 2.07 | 131 | 515 | 1,392 |
| 고흥 | 35.02 | 5,222 | 12,682 | 6,169 | 6,513 | 2.43 | 9 | 35 | 85 |
| 도양 | 33.50 | 5,487 | 11,744 | 5,766 | 5,978 | 2.14 | 7 | 38 | 147 |
| 풍양 | 48.04 | 1,923 | 3,748 | 1,810 | 1,938 | 1.95 | 12 | 42 | 100 |
| 도덕 | 37.77 | 1,712 | 3,366 | 1,577 | 1,789 | 1.97 | 6 | 31 | 71 |
| 금산 | 65.68 | 2,460 | 4,917 | 2,428 | 2,489 | 2.00 | 7 | 35 | 135 |
| 도화 | 66.16 | 2,330 | 4,626 | 2,203 | 2,423 | 1.99 | 10 | 37 | 116 |
| 포두 | 129.29 | 2,916 | 5,838 | 2,770 | 3,068 | 2.00 | 12 | 46 | 128 |
| 봉래 | 28.39 | 1,170 | 2,260 | 1,103 | 1,157 | 1.93 | 4 | 20 | 67 |
| 동일 | 21.13 | 829 | 1,672 | 829 | 843 | 2.02 | 3 | 11 | 39 |
| 점암 | 69.09 | 1,673 | 3,128 | 1,462 | 1,666 | 1.87 | 11 | 39 | 79 |
| 영남 | 43.62 | 815 | 1,549 | 733 | 816 | 1.90 | 4 | 11 | 39 |
| 과역 | 42.27 | 1,975 | 3,887 | 1,818 | 2,069 | 1.97 | 8 | 32 | 78 |
| 남양 | 39.53 | 1,335 | 2,695 | 1,280 | 1,415 | 2.02 | 8 | 34 | 83 |
| 동강 | 41.43 | 1,728 | 3,656 | 1,766 | 1,890 | 2.12 | 10 | 33 | 81 |
| 대서 | 34.38 | 1,408 | 2,669 | 1,295 | 1,374 | 1.90 | 7 | 29 | 55 |
| 두원 | 57.99 | 1,843 | 3,571 | 1,649 | 1,922 | 1.94 | 13 | 42 | 89 |

## 라. 재정현황 (2010~2012)

### [2010년도 재정규모]

**총 415,056백만원**

○ 일반회계 ····· 393,763백만원
○ 특별회계 ····· 21,293백만원
※ 재정자립도 8.6%

### □ 일반회계 : 393,763백만원

| 세 입 | | 세 출 |
|---|---|---|
| 총 393,763백만원 | | 총 393,763백만원 |
| 지 방 세 | 17,720 | 39,458(10.0%) |
| 세 외 수 입 | 31,757 | 108,929(27.6%) |
| 지방교부세 | 181,469 | 181,072(50.0%) |
| 보 조 금 | 159,189 | 10,446(2.7%) |
| 재정보전금 | 3,628 | 53,858(13.7%) |

### □ 특별회계 : 21,293백만원

| 사업구분 | 예산액 | 비 율(%) | 비 고 |
|---|---|---|---|
| 계 | 21,293 | 100 | |
| 상 수 도 사 업 | 4,818 | 22.6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 700 | 3.3 | |
| 기반시설부담금 | 49 | 0.23 | |
| 주 택 사 업 | 157 | 0.7 | |
| 의 료 보 호 기 금 | 1,644 | 7.7 | |
| 농어민소득지원기금 | 393 | 1.8 | |
| 기초생활보장기금 | 497 | 2.3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4 | 0.09 | |
| 농 공 단 지 조 성 | 3,799 | 17.8 | |
| 해창오마간척사업 | 8,555 | 40.2 | |
| 고흥지구간척사업 | 677 | 3.8 | |

## [2011년도 재정규모]

**총 423,154백만원**

○ 일반회계 ····· 403,905백만원
○ 특별회계 ····· 19,249백만원
※ 재정자립도 8.8%

### □ 일반회계 : 403,905백만원

| 세 입 | | 세 출 |
|---|---|---|
| 총 403,905백만원 | | 총 403,905백만원 |
| 지 방 세 | 15,060 | 44,306(11.0%) |
| 세 외 수 입 | 27,760 | 99,885(24.7%) |
| 지방교부세 | 201,847 | 184,406(45.7%) |
| 재정보전금 | 3,065 | 16,539(4.1%) |
| 보 조 금 | 156,173 | 58,769(14.5%) |

### □ 특별회계 : 19,249백만원

| 사업구분 | 예산액 | 비 율(%) | 비 고 |
|---|---|---|---|
| 계 | 19,249 | | |
| 상 수 도 사 업 | 4,008 | 20.8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 1,000 | 5.2 | |
| 기반시설부담금 | 86 | 0.4 | |
| 주 택 사 업 | 191 | 1.0 | |
| 의 료 보 호 기 금 | 2,458 | 12.8 | |
| 농어민소득지원기금 | 439 | 2.3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4 | 0.02 | |
| 농 공 단 지 조 성 | 1,587 | 8.2 | |
| 해창오마간척사업 | 8,898 | 46.2 | |
| 고흥지구간척사업 | 578 | 3.0 | |

## [2012년도 재정규모]

**총 396,627백만원**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
○ 특별회계 ····· 19,936백만원
※ 재정자립도 8.1%

###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

| 세 입 | | 세 출 |
|---|---|---|
| 총 376,691백만원 | | 총 376,691백만원 |
| 지 방 세 | 15,100 | 43,516(11.6%) |
| 세 외 수 입 | 15,258 | 103,593(27.5%) |
| 지방교부세 | 193,566 | 164,504(43.6%) |
| 재정보전금 | 3,000 | 2,986(0.8%) |
| 보 조 금 | 149,767 | 62,092(16.5%) |

### □ 특별회계 : 19,936백만원

| 사업구분 | 예산액 | 비 율(%) | 비 고 |
|---|---|---|---|
| 계 | 19,936 | | |
| 상 수 도 사 업 | 4,342 | 21.8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 1,000 | 5.0 | |
| 기반시설부담금 | 35 | 0.2 | |
| 주 택 사 업 | 27 | 0.1 | |
| 의 료 보 호 기 금 | 1,924 | 9.6 | |
| 농어민소득지원기금 | 411 | 2.1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4 | 0.02 | |
| 농 공 단 지 조 성 | 565 | 2.8 | |
| 해창오마간척사업 | 11,155 | 56.0 | |
| 고흥지구간척사업 | 473 | 2.4 | |




# 제1장

##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1. 연혁
2. 의회구성 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2절 고흥군의회 현황

## 1. 연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8년 7월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도입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 후 1952년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면의원 선거 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실시가 미루어져오다가 1990년 12월 15일 동법의 제8차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실시가 결정되어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 16명 의원이 당선되어, 동년 4월 15일 역사적인 초대 고흥군의회를 개원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전국 4대 지방선거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제2대 군의회를 개원하였으며,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실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7월 10일 제3대 군의회를 개원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시 16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동년 7월 10일 제4대 의회를 개원하였으나, 봉래, 동강면 지역구 의원 사퇴로 2003년 10월 30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6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으며, 종전의 읍면단위 선거구가 가선거구(고흥, 점암, 영남, 두원), 나선거구(과역, 남양, 동강, 대서), 다선거구(도양, 풍양, 도덕, 금산), 라선거구(도화, 포두, 봉래, 동일)로 통합되었고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 12명의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제1대

| | |
|---|---|
| 1991. 3. 26. | 초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br>초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6명<br>- 임 기 : '91. 4. 15 ~'95. 6. 30(4년 2개월) |
| 1991. 4. 15. | 초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br>- 의 장 : 박채주(점암면)<br>- 부 의 장 : 유택근(도양읍) |
| 1992. 4. 27.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거<br>- 의회운영위원장 : 김동인(도화면)<br>- 총 무 위 원 장 : 송기복(동강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김남규(금산면) |
| 1993. 4. 7. | 초대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br>- 의 장 : 박동래(풍양면)<br>- 부 의 장 : 김동인(도화면)<br>- 의회운영위원장 : 송기복(동강면)<br>- 총 무 위 원 장 : 고임준(봉래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신윤식(도덕면) |

## 제2대

| | |
|---|---|
| 1995. 6. 27 |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
| 1995. 7. 10. | 제2대 상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br>- 의 장 : 송복조(과역면)<br>- 부의장 : 김동인(도화면)<br>- 의회운영위원장 : 박채주(점암면)<br>- 총 무 위 원 장 : 류준상(포두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장귀석(영남면) |
| 1995. 7. 11. | 제2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6명<br>- 임 기 : '95. 7. 1 ~ '98. 6. 30(3년) |
| 1997. 1. 7. | 제2대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br>- 의 장 : 김동인(도화면)<br>- 부 의 장 : 고임준(봉래면)<br>- 의회운영위원장 : 신광주(금산면)<br>- 총 무 위 원 장 : 박창규(두원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김성철(도양읍) |

## 제3대

| | |
|---|---|
| 1998. 6. 4. | 제3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
| 1998. 7. 10. | 제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br>– 의 장 : 김동인(도화면)<br>– 부의장 : 류준상(포두면) |
| 1998. 7. 10 | 제3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6명<br>– 임 기 : '98. 7. 1 ~ 2002. 6. 30(4년) |
| 1998. 7. 11. | 제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br>– 의회운영위원장 : 장귀석(영남면)<br>– 총 무 위 원 장 : 박동래(대서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박채주(점암면) |
| 2000. 6. 27. | 제3대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거<br>– 의 장 : 장귀석(영남면)<br>– 부의장 : 송대석(대서면)<br>– 의회운영위원장 : 윤경식(봉래면)<br>– 총 무 위 원 장 : 박채주(점암면)<br>– 산업 · 건설위원장 : 박동래(풍양면) |
| 2000. 12. 11. | 제3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br>– 의 장 : 류준상(포두면) |

## 제4대

| | |
|---|---|
| 2002. 6. 13. | 제4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
| 2002. 7. 10. | 제4대 전반기 의장단 ·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장 선거<br>– 의 장 : 김성철(도양읍)<br>– 부의장 : 신광주(금산면)<br>– 총 무 위 원 장 : 배기홍(고흥읍)<br>– 산업 · 건설위원장 : 송경량(포두면) |
| 2002. 7. 11.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br>– 위원장 : 신태균(과역면) |
| 2002. 7. 11. | 제4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6명<br>– 임 기 : 2002. 7. 1 ~ 2006. 6. 30(4년) |
| 2003. 10. 30. | 보궐선거(봉래면, 동강면) |
| 2004. 7. 19. | 제4대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선거<br>– 의 장 : 신광주(금산면)<br>– 부의장 : 곽상률(동일면)<br>– 의회운영위원장 : 김옥래(영남면)<br>– 총무위원회위원장 : 박금래(도덕면)<br>– 산업 · 건설위원회위원장 :송경석(점암면) |
| 2006. 1. 19. | 제4대 후반기 의장단 보궐선거<br>– 의 장 : 송경량(포두면)<br>– 부의장 : 송재효(동강면) |

## 제5대

| | |
|---|---|
| 2006. 5. 31. | 제5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
| 2006. 7. 5. | 제5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br>– 의 장 : 송경석(고흥가)<br>– 부의장 : 이재후(고흥나) |
| 2006. 7. 6. | 제5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br>– 총무위원회위원장 : 신태균(고흥나)<br>–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주식(고흥다)<br>–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영길(고흥다) |
| 2006. 7. 12. | 제5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2명<br>– 임 기 : 2006. 7. 1 ~ 2010. 6. 30(4년) |
| 2008. 6. 24. |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br>– 의 장 : 함채규(고흥라)<br>– 부의장 : 김옥래(고흥가) |
| 2008. 6. 25. |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br>– 총무위원회위원장 : 김주식(고흥다)<br>–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의규(고흥라)<br>–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영길(고흥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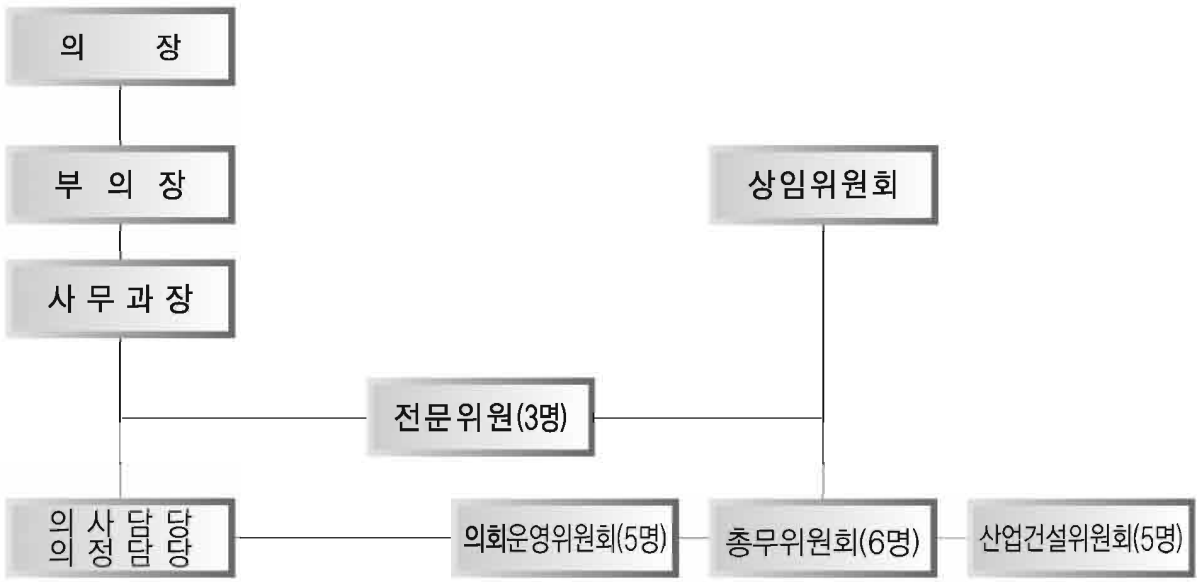
## 제6대

| | |
|---|---|
| 2010. 6. 2. |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 |
| 2010. 7. 7. | 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br>– 의 장 : 신태균(고흥나)<br>– 부의장 : 박금래(고흥다) |
| 2010. 7. 7. |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br>– 총무위원회위원장 : 송경양(고흥라)<br>–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의규(고흥라)<br>–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김주식(고흥다) |
| 2010. 7. 7. | 제6대 고흥군의회 개원<br>– 의원정수 : 12명<br>– 임 기 : 2010. 7. 1 ~ 2014. 6. 30(4년) |



# 2. 의회 구성 현황

## □ 의회기구표




## □ 의회사무과 정·현원 현황

| 구분 | 계 | 일반직 | | | | | | | | | | | | | 기능직 | | | | |
|---|---|---|---|---|---|---|---|---|---|---|---|---|---|---|---|---|---|---|---|
| | | 5급 | | | 6급 | | | | 7급 | | | 8급 | | | 소계 | 7급 | 8급 | 9급 | |
| | | 소계 | 행정농업시설 | 행정별정 | 소계 | 행정 | 행정시설 | 행정농업시설 | 소계 | 행정 | 행정농업 | 소계 | 행정 | 행정농업 | | 통신 | 운전 | 필기 | 운전 |
| 정원 | 14 | 3 | 1 | 2 | 3 | 1 | 1 | 1 | 2 | 1 | 1 | 1 | 1 | 1 | 4 | 1 | 1 | 1 | 1 |
| 현원 | 14 | 3 | 1 | 2 | 3 | 1 | 1 | 1 | 3 | 2 | 1 | - | - | - | 5 | 1 | 1 | 2 | 1 |

## □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 위원회 | 정 수 | 소 관 실 과 소 |
|---|---|---|
| 의회운영 위 원 회 | 5명 | 1과<br>• 의회사무과(의사, 의정) |
| 총무 위원회 | 6명 | 10 실과소<br>• 기획실(기획, 예산, 감사, 홍보, 법무통계)<br>• 주민복지과(주민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노인복지, 여성아동)<br>• 행정과(행정, 서무, 정책개발, 공무원단체, 정보관리)<br>• 재무과(세정, 경리, 세입관리, 재산운영, 계약심사)<br>• 투자정책과(투자유치, 기업육성, 조선산업지원)<br>• 문화관광과(문화예술, 관광기획, 관광시설, 디자인개발, 천문과학관운영)<br>• 종합민원실(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건축, 위생)<br>• 보건소(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 방문보건서비스)<br>• 평생학습사업소(평생학습, 도서관운영, 드림스타트)<br>•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리, 시설, 체육) |
| 산업건설 위원회 | 5명 | 9 실과소<br>• 경제유통과(지역경제, 유통시설, 판촉지원, 일자리창출)<br>• 환경산림과(환경정책, 환경미화, 산림경영, 산림보호)<br>• 농업축산과(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br>• 해양수산과(수산진흥, 어업생산, 수산지도, 연안관리)<br>• 건설과(건설행정, 도시계획, 도로관리, 지역개발, 교통운수)<br>• 방재과(재난관리, 복지지원, 민방위, 농업기반, 농촌개발)<br>• 농업기술센터(연구기획, 작목연구, 기술개발, 작물환경, 인력교육, 생활지원)<br>• 상하수도사업소(수질관리, 상수도, 하수도)<br>• 우주항공사업소(우주항공, 우주과학, 전략산업, 간척지관리, 간척지시설) |

# 제2장 회의운영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제1절 기본현황
제2절 제6대 전반기 본회의 운영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제2장

## 제1절 기본현황

1. 회기운영 현황
2. 의안처리 현황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1절 기본현황

## 1. 회기운영 현황

| 구 분 | 회 기 | 일수 | 본회의 차수 |
|---|---|---|---|
| 계 | | 170 | 57 |
| 제185회 임시회 | 2010. 7. 7. | 1 | 1 |
| 제186회 임시회 | 2010. 8. 16. ~ 8. 24. | 9 | 2 |
| 제187회 제1차 정례회 | 2010. 9. 6. ~ 9. 17. | 12 | 2 |
| 제188회 임시회 | 2010. 10. 6. ~ 10. 7. | 2 | 2 |
| 제189회 제2차 정례회 | 2010. 11. 10. ~ 12. 17. | 38 | 9 |
| 제190회 임시회 | 2010. 12. 20. ~ 12. 22. | 3 | 2 |
| 제191회 임시회 | 2011. 2. 15. ~ 2. 16. | 2 | 2 |
| 제192회 임시회 | 2011. 3. 15. ~ 3. 24. | 10 | 2 |
| 제193회 임시회 | 2011. 4. 25. ~ 4. 26. | 2 | 2 |
| 제194회 임시회 | 2011. 5. 17. ~ 5. 18. | 2 | 2 |
| 제195회 임시회 | 2011. 6. 14. ~ 6. 17. | 4 | 2 |
| 제196회 제1차 정례회 | 2011. 7. 1. ~ 7. 13. | 13 | 5 |
| 제197회 임시회 | 2011. 9. 6. ~ 9. 7. | 2 | 2 |
| 제198회 임시회 | 2011. 10. 11. ~ 10. 20. | 10 | 2 |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 2011. 11. 10. ~ 12. 16. | 37 | 9 |
| 제200회 임시회 | 2011. 12. 20. ~ 12. 23. | 4 | 2 |
| 제201회 임시회 | 2012. 2. 14. ~ 2. 15. | 2 | 2 |
| 제202회 임시회 | 2012. 3. 12. ~ 3. 23. | 12 | 2 |
| 제203회 임시회 | 2012. 4. 24. ~ 4. 25. | 2 | 2 |
| 제204회 임시회 | 2012. 5. 24. ~ 5. 25. | 2 | 2 |
| 제205회 임시회 | 2012. 6. 21. | 1 | 1 |

## 2. 의안처리 현황

| 구 분 | 계 | 조례안 | 예산·결산안 | 계획안 | 승인안 | 건 의<br>결의안 | 기 타 |
|---|---|---|---|---|---|---|---|
| 계 | 134 | 84 | 9 | 10 | 7 | 1 | 27 |
| 제185회 임시회 | 2 | | | | | | 2 |
| 제186회 임시회 | 20 | 15 | 1 | 1 | 1 | 1 | 1 |
| 제187회 제1차 정례회 | 2 | | 1 | | | | 1 |
| 제188회 임시회 | 3 | 1 | | 1 | 1 | | |
| 제189회 제2차 정례회 | 16 | 8 | 1 | 3 | 1 | | 3 |
| 제190회 임시회 | 16 | 15 | 1 | | | | |
| 제191회 임시회 | 5 | 2 | | | 1 | | 2 |
| 제192회 임시회 | 3 | 2 | | | | | 1 |
| 제193회 임시회 | 5 | 3 | | 1 | | | 1 |
| 제194회 임시회 | 2 | 2 | | | | | |
| 제195회 임시회 | 6 | 5 | 1 | | | | |
| 제196회 제1차 정례회 | 3 | | 1 | 1 | | | 1 |
| 제197회 임시회 | 4 | 3 | | | 1 | | |
| 제198회 임시회 | 4 | 1 | | 1 | 1 | | 1 |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 10 | 4 | 1 | 2 | | | 3 |
| 제200회 임시회 | 8 | 4 | 1 | | | | 3 |
| 제201회 임시회 | 7 | 6 | | | 1 | | |
| 제202회 임시회 | 4 | 3 | | | | | 1 |
| 제203회 임시회 | 4 | 3 | 1 | | | | |
| 제204회 임시회 | 8 | 7 | | | | | 1 |
| 제205회 임시회 | 2 | | | | | | 2 |




# 議政白書



## 제2장

## 제2절 제6대 전반기 본회의 운영

1. 제185회 임시회
2. 제186회 임시회
3. 제187회 제1차 정례회
4. 제188회 임시회
5. 제189회 제2차 정례회
6. 제190회 임시회
7. 제191회 임시회
8. 제192회 임시회
9. 제193회 임시회
10. 제194회 임시회
11. 제195회 임시회
1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13. 제197회 임시회
14. 제198회 임시회
15. 제199회 제2차 정례회
16. 제200회 임시회
17. 제201회 임시회
18. 제202회 임시회
19. 제203회 임시회
20. 제204회 임시회
21. 제205회 임시회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2절 제6대 전반기 본회의 운영

## 1. 제185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소집요구로 2010년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7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0년 7월 7일(수)〈1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7. 7(수)<br>09:30 | 제1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제6대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br>2. 제6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br>3. 제18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5.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6.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br>7.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8.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 14:00 | | ■ 제6대 고흥군의회 개원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의원선서<br>• 의원 윤리강령 낭독<br>• 개원사<br>• 축 사<br>• 폐 식 |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7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8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1시 13분에 산회함.

### 1) 제6대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직무대행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의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신태균 의원 당선

### 2) 제6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박금래 의원 당선

### 3) 제1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5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0. 7. 7(수)〈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배기홍의원, 김옥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 : 6명(배기홍,박금래,김주식,장세선,송경양,최설희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5명(김옥래,송경석,송우섭,김의규,송인숙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총무위원회위원장 : 송경양 의원 당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김의규 의원 당선

### 7)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5명(송우섭,김주식,장세선,김의규,송경양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김주식 의원 당선

## 다. 제6대 의회 개원식

2010년 7월 7일 오후 2시에 개식하여 국민의례, 의원선서, 의원윤리강령낭독, 개원사, 축사 등을 하고 2시 26분에 폐식함.

■ 일　시 : 2010. 7. 7.(수) 14:00
■ 장　소 : 본회의장
■ 참　석 : 42명(의회 20명, 집행부 16명, 기관단체 6명)

## 개 회 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군민들의 성원과 선택으로 제6대 고흥군의회의 역사적인 새 지평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개원식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분수령에서 역사적인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기쁨과 영광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지대한 사랑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고흥 의정사의 위대한 금자탑을 세워 주신 역대 선배 군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도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동료 의원들은 군민 여러분의 냉엄한 평가와 엄중한 선택으로 이 곳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내 주신 지지와 애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충심을 다해 보답하겠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출범하는 제6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한차원 높

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무엇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려왔고 오늘 이 자리가 고흥 의정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장차 고흥 미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숙연한 마음으로 되새겨 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오늘 제6대 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의장이라고 하는 과분한 직책을 맡아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걸맞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어 군민들과 함께 질곡의 세월을 헤쳐 나온지도 올해로써 스무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질적인 성장이야 말로 민의를 활짝 꽃피웠으며,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켜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스무해 동안 걸어 오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한분 한분의 군민을 위한 열정어린 의정활동은 선진 지방의회로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들이 부르는 곳엔 논밭두렁이건 건설현장이건 군민들과 함께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직접 군민의 애끓는 목소리를 들었고 불편과 고통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대한 소망과 열정도 진솔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동안 지녔던 정치의 이념과 토대, 그리고 비록 선거구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부터는 군 의회의 일원으로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군민을 위하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데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적인 고통과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의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우리들은 보다 슬기로운 지혜와 역량을 바탕으로 재원의 한계와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어 능률과 실질이 담보되는 효율성 높은 의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본질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흥군의 의정과 군정의 근본 목표는 모두 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군의회와 집행기관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보완적인 모습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집행기관에 군림하는 의회가 아니라 함께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무한책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고장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현안과 문제들은 모두 의회에서 논의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기술과 지식정보의 물결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 구석구석 파고드는 가운데 모든 나라와 자치단체는 저마다 그 위상을 드높이고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혈안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피를 말리는 생존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고흥에서도 우리 군만의 특성과 여건을 더욱 강도 높게 차별화하고 전략화하여 고흥군정이 추구하는'하이고흥, 해피고흥'건설을 앞당겨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진정한 화합과 협력 그리고 이해와 참여가 없이는 우리 지방자치는 한 발자욱도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 군의원들의 몫일 것입니다.

또한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참다운 의정풍토를 조성하고 흔쾌히 동참하는 일은 군민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앞으로 우리 고흥의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전개될 우주항공 중심도시연관 산업 유치 등은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고흥의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선봉에서 우리 군의회가 그 선도적 역할과 소임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 제5기 고흥군수로 취임하신 박병종 군수의 취임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역동의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군민이 행복해 하는 고흥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현명한 선택과 부름을 받아 오늘 첫출발을 하게 된 제6대 고흥군 의회는 오직 군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의원상,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개원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군수)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매우 즐거운 날입니다. 저 또한 기분 좋은 만남을 갖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신태균 의장님과 박금래 부의장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고흥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제6대 고흥군의회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민선 5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6대 고흥군의회 개원식을 통해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말할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존중과 상생의 길을 열어 가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방자치의 실천이며, 건전한 자치제도를 정착시키는 행동양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민선 4기 동안 고흥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도전을 하면서 많은 난관들을 헤치며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민선 4기 동안 준비하고, 기반을 다져 온 여러 사업들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민선 5기 출범의 의미이자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취임사를 통해서 민선 5기 군정방향에 대해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도시, 건강휴양 도시, 우주항공 도시, 인구 10만의 자족경제 도시라는 고흥발전 4대전략을 큰 줄기에 두고, 민선 5기 핵심 7대 공약을 실천하여 고흥의 이름처럼 '높게 흥하는 고흥'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눈으로 보여 주는 경제 살리기를 하겠습니다. 도양조선단지 등 추진 중인 산업

단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에 기업을 입주시키겠습니다.

힘차게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수축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고흥 농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등 가공 유통 개선과 판로개척을 통해 생산자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과 여성 등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어 고흥관광의 중흥을 일으키겠습니다. 남열과 신세계, 씨월드 리조트 등 최고급 휴양단지 조성이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4기에 중점 추진했던 교육환경 개선 시책도 한 단계 끌어 올려 인재 고흥이란 명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은 미래 성장 동력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 올 4년은 고흥 발전사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흥이 잘 살고, 군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결코 군수 혼자만의 일일 수는 없습니다.

저의 믿음과 희망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가 보태진다면 그 힘은 더욱 강해 질 것이고, 희망의 크기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고, 결과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 의원님들의 준비와 행동이 곧 고흥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고흥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흥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선인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창조의 세계로 웅비하는 고흥의 위상과 함께 제6대 고흥군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6대 고흥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6대 고흥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군민의 애정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이 우리 고흥군의회에 거는 모두의 기대와 관심으로 표명된 결과라고 생각하기에, 군민의 권익보호와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의회 역할은 군민과 함께하는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의정에 반영하여, 군민 복지향상은 물론 고흥발전에 큰 틀을 잡아 고흥번영의 기회와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혜와 의지를 모아 군민이 행복한 고장 속에 고흥군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4대와 5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의 의정 경험을 살려 내실 있는 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들의 참여가 곧 제6대 고흥군의회가 변화와 창조를 선도해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소신으로 직무를 다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당선인사(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먼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제6대 고흥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시켜주신 데에 대해 감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의정과 군정이 균형과 견제, 그리고 상생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제6대 고흥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신뢰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선인사(총무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의회가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저의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당선인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겠으며, 의장단을 성실히 보좌하고 활기찬 위원회 운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새롭게 쓰이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 당선인사(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의정, 그리고 바른 군정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사랑을 모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4. 제186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 의원 등 5인의 소집요구로 2010년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8월 16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0년 8월 16일(월)~8월 24일(화)〈9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08.16(월)<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br>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br>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5.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br>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4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17</td><td></td></tr><tr><td>총무위</td><td>14</td><td>주민복지1, 행정지원6, 재무1, 투자정책1, 사회3, 문화체육2</td></tr><tr><td>산건위</td><td>3</td><td>건설2, 재난관리1</td></tr></table></td></tr>
<tr><td>13.30</td><td>제1차<br>본회의<br>속 개</td><td>■ 의 사 일 정<br>1. 2010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br>• 기획예산실 • 주민복지과 • 행정지원과<br>• 재 무 과 • 투자정책과</td></tr>
<tr><td>08.17(화)<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 사 일 정<br>1. 2010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br>• 우주항공사업소 • 재난관리과 • 문화관광과<br>• 사회과 • 환경산림과 • 농업축산과 • 수산과<br>• 건설과</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08.18(수)<br>10:00 | 제3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0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br>• 열린민원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br>• 상하수도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br>• 문화체육시설사업소<br>2. 휴회의 건 |
| 08.19(목)<br>~<br>08.20(금) | 휴회 | ■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08.21(토)<br>~<br>08.22(일) | 휴회 | ■ 공휴일 |
| 08.23(월) | 휴회 | ■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08.24(화)<br>14:00 | 제4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br>3. 고흥군 이장정수 및 마을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5.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6.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7.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8.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9.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8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 4시 49분에 산회함.

### 1) 제1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0. 8. 16(월)~8. 24(화)〈9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예산실장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28,938백만원(기정예산 385,866 → 414,804)
• 일반회계 : 29,678백만원(기정예산 362,811 → 392,489)
• 특별회계 : △740백만원(기정예산 23,055 → 22,315)
○ 일반회계 추가세입 : 29,678백만원
• 자체수입 : 16,567백만원(지방세 60, 세외수입 16,507)
• 의존수입 : 13,111백만원(지방교부세 9,330, 재정보전금 1,960, 보조금 1,821)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관한 책임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 출석요구기간 : 3일간(2010. 8. 16.~8. 18.)
○ 출석범위 : 군수,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　원 : 6명(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 위원장 : 김옥래의원, 간사 :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 2009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사항에 대하여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0. 09. 13.(월) ~ 09. 16.(목)【4일간】
○ 조사대상 : 2009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조사인원 :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석의원, 송우섭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기획예산실장,주민복지과장,행정지원과장,재무과장,투자정책과장,)
■ 질 의 자 : 9명(장세선,송경양,김옥래,송경석,최설희,송우섭의원,김의규,김주식,
신태균의원,)
■ 질의건수 : 29건

## 다. 제2차 본회의

2010년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4시 22분에 산회함.

### 1)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7명(우주항공사업소장,재난관리과장,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사회과장, 환경산림과장,농업축산과장,수산과장,)
- 질 의 자 : 11명(김의규,최설희,장세선,송경석,김주식,송인숙,김옥래,송우섭, 배기홍,신태균,송경양의원)
- 질의건수 : 41건

## 라. 제3차 본회의

2010년 8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50분에 산회함.

### 1) 201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7명(건설과장,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직무대리,상하수도사업소장,평생학습사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 질 의 자 : 10명(김주식,최설희,장세선,송우섭,김의규,송경석,송경양,송인숙, 신태균,배기홍의원)
- 질의건수 : 37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0. 8. 19. ~ 8. 23까지 5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마. 제4차 본회의

2010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8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31분에 산회함.

###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0년 제1회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필수적인 법정·의무적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의 해결 등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8,938백만원(기정예산 385,866 → 414,804)

○일반회계 : 29,678백만원(기정예산 362,811 → 392,489)

○특별회계 : △ 740백만원(기정예산 23,055 → 22,315)

○일반회계 추가세입 : 29,678백만원

○자체수입 : 16,567백만원(지방세 60, 세외수입 16,507)

○의존수입 : 13,111백만원(지방교부세 9,330, 재정보전금 1,960, 보조금 1,82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 제공과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업

- 장애인의 재활상담을 통한 신체 기능회복 등 의료재활사업추진
-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운영
- 장애인의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책과 관련 연구 및 조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절차 및 임무에 관한사항

-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음

•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하게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방법 및 지도감도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군수는 복지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등 기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이정정수 및 마을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아 역사적 정통성 회복과 마을지명에 따른 오해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마을명칭을 변경하여줄 것을 당해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읍면 | 리 | 현행 마을명 | 변경 마을명 | 비고 |
|---|---|---|---|---|
| 풍양면 | 한동리 | 한동(寒東) | 양리(陽里) | |
| 봉래면 | 사양리 | 봉호(蓬湖) | 애도(艾島) | |
| 점암면 | 모룡리 | 상촌(上村) | 회룡(回龍) | |
| 점암면 | 대룡리 | 오리(梧里) | 오동(梧桐)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이장의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행정의 지원으로 이장 사기진작 양양과 군정발전을 위함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장의 임기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 질병 및 사고에 대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 가입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주요산업현장 시찰, 체육대회 등 실시 및 개최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고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규정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민선5기 일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 활력 있는 군정운영 기반 조성

○투자유치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신장을 위한 기구신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연구기능으로 전환

○유사·중복기능(업무) 통·폐합과 「담당」·「과」 명칭변경으로 업무추진 일원화

■ 주요내용

○조직개편(안)

**총 괄**

| | |
|---|---|
| 현행 | ○ 1실 12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4담당<br>○ 16읍면 69담당 |
| 개편 | ○ 2실 11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6담당(2담당 증)<br>○ 16읍면 69담당 |

※군청담당 폐지 2(서비스연계, 도서관시설),
신설 4(판촉지원, 일자리창출, 관광시설, 천문과학관운영)

○『과』신설 · 폐지 · 명칭변경

• 『경제유통과』신설

– 농수축산물 유통 · 판촉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경제, 유통시설, 판촉지원, 일자리창출 추진

• 『사회과』폐지

– 유사기구 및 중복기능 통 · 폐합 추진으로 폐지

– [주민복지과], [종합민원실], [평생학습사업소]로 업무이관

• 『과』명칭변경

– 『기획예산실』 ⇨ 『기 획 실』(함축되고 부르기 쉬움)

– 『행정지원과』 ⇨ 『행 정 과』(함축되고 부르기 쉬움)

– 『수 산 과』 ⇨ 『해양수산과』(전남도, 시군명칭 통일)

– 『재난관리과』 ⇨ 『방 재 과』(상시활용 용어로 부르기 쉬움)

– 『열린민원과』 ⇨ 『종합민원실』(복합민원 기능강화)

– 농업기술센터『자원개발과』 ⇨ 『연구개발과』(연구기능 확대)

○『담당』신설 · 이관 · 명칭변경

• 『기획예산실』

– [정책개발] ⇨ 행정지원과로 이관(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속대처 등)

– [홍 보] ⇨ 문화관광과에서 인수(군정전반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 『주민복지과』

– [주민지원] + [서비스연계] [주민지원]으로 통합(서비스연계 폐지)

– [노인복지] ⇨ 사회과에서 [장수복지]인수, 명칭변경

– [여성아동] ⇨ 사회과에서 [여성청소년]인수, 명칭변경

• 『행정지원과』

– [정책개발] ⇨ 기획예산실에서 인수

– [정보통신] ⇨ [정보관리] 명칭변경(전산, 통신, 방송분야 통합의미)

• 『재 무 과』

– [징수] ⇨ [세입관리] 명칭변경(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의 포괄적 의미)

• 『투자정책과』

– [지역경제] ⇨ 경제유통과로 이관

• 『경제유통과』 – 신설

– [판촉지원], [일자리창출] 신설(농수축산물 유통판촉 종합기획과 고용정책 추진)

– [지역경제], [유통시설] ⇨ 경제유통 · 농업축산과에서 인수, 명칭변경

• 『문화관광과』

– [관광시설], [천문과학관운영] 신설(관광지시설 추진 및 천문과학관 운영 전담)

– [관　　광] ⇨ [관광기획] 명칭변경

– [홍　　보], [체육지원] ⇨ 기획예산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

• 『사 회 과』– 폐지

– [장수복지], [여성청소년] ⇨ 주민복지과로 이관(청소년업무는 평생학습사업 소로 업무이관)

– [위　　생], [드림스타트] ⇨ 종합민원실, 평생학습사업소로 이관

• 『농업축산과』

– [유　　통] ⇨ 경제유통과로 이관

• 『열린민원과』

– [위　　생] ⇨ 사회과에서 인수(one-stop 민원처리 기능강화)

– [민원서비스] ⇨ [복합민원] 명칭변경(일반 복합민원 통합추진)

• 『농업기술센터』

– [기술지원] ⇨ [연구기획] 명칭변경(연구지원, 센터 서무업무 추진)

– [인력육성] ⇨ [인력교육] 명칭변경(농축산인 전문교육 및 육성 등)

– [작물연구] ⇨ [작물환경] 명칭변경(고품질쌀 기술지도, 쌀품질 분석 등)

– [원예기술] ⇨ [기술개발] 명칭변경(야생화 및 난지조경수 개발 등)

– [과수축산] ⇨ [작목연구] 명칭변경(채소 및 특화작물연구 등)

※ 상담요원 근무위치 읍면상담소에서 읍면사무소내 변경

• 『평생학습사업소』

– [도서관운영] + [도서관시설] ⇨ [도서관운영]으로 통합(도서관시설 폐지)

– [드림스타트] ⇨ 사회과에서 인수(군립중앙도서관내 위치 업무추진 용이)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지원] ⇨ 문화관광과에서 인수(업무 일원화), 명칭변경

– [시설관리], [시설운영] ⇨ [관리], [시설] 명칭변경(명칭 함축)

○[읍], [면] 직제

• 『읍』 ⇨ 현행 6담당 체제 유지

• 『면』 ⇨ 현행 4담당 체제 유지

– [생활행정] ⇨ 신설(생활현장 민원처리 전담)

– [주민지원] + [민원] ⇨ [민원복지] 통합(일반민원과 복지민원 통합추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민선5기 일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 활력 있는 군정운영 기반 조성

○투자유치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농수산물 유통 · 수출 신장을 위한 기구신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연구기능으로 전환

○유사 · 중복기능(업무) 통 · 폐합과 「담당」 · 「과」명칭변경으로 업무추진 일원화

■ 주요내용

○조직개편(안)

**총 괄**

| | |
|---|---|
| 현행 | ○ 1실 12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4담당<br>○ 16읍면 69담당 |
| 개편 | ○ 2실 11과 2직속 4사업소 1의회 86담당(2담당 증)<br>○ 16읍면 69담당 |

※군청담당 폐지 2(서비스연계, 도서관시설),
신설 4(판촉지원, 일자리창출, 관광시설, 천문과학관운영)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별표 3]

| 구 분 | 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조정 전 | 748 | 255 | 14 | 141 | 50 | 288 |
| 조정 후 | 748 | 251 | 14 | 141 | 54 | 288 |
| 증감 | - | 4 | - | - | 4 |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2010.7.15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하위제도인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공무원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경력(민간경력인정) 규정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마련

○연가일수 공제 사유 추가

○기타 미비사항 정비(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 구 분 | 건수 | 면 적 | 추정가액 | 비 고 |
|---|---|---|---|---|
| 취득 | 4 | 토지 21,520<br>건물 2,006 | 921 | • 군립중앙도서관 부지 추가확보(평생학습사업소)<br>• 구 도양중학교 폐교 매입(우주항공사업소)<br>• 대서신기마을기반조성 사업(열린민원과) |
| 처분 | 1 | 토지 611<br>건물 180 | 42 | • 용도폐지 미활용 건물 매각 처분(재무과) |
| 교환 | 3 | | | •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br>(건설과, 문화관광과)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0) 고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사실조사 의뢰(제4조)

-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필요한 경우
-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약체결 등(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1) 고흥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법률 제4328호, 1991. 1. 14)에 따라 우리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영유아 권익보장

-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

○보육정책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
  - 보육정도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 심의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셋째아 보육료 지원

- 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잇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2) 고흥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청소년들에게 취미활동과 각종 정보제공 등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장소제공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어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 방안과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설의 사용 (안 제4조)

•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전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의 종류 (안 제5조)

•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문화 · 예술분야 및 창작 · 취미활동 공간 제공

• 청소년의 고충 상담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등

○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6조)

• 시설을 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안 제10조)

• 연중 개방하되, 명절 연휴와 매주 월요일은 휴무

• 이용시간 평일은 10:00~21:00, 토 · 일요일, 공휴일은 10:00~19:00로 함

○시설의 사용제한 (안 제11조)

• 천재지변, 시설의 개 · 보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사용료 (안 제13조)

• 청소년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특정시설의 이용료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별표

○사용료의 면제 (안 제14조)

•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 청소년, 모 · 부자 가정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자녀, 5 · 18 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3)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 임무 등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으로 기능이 유사하므로「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으로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제정

○통합제정 : 고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폐지 : 고흥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 고흥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4)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의 위탁운영 및 사용료 반환에 대한 개정 권고가 있어 동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 반환 및 범위 구체화

• 5일전 80%, 3일전 70%, 1일전 50%, 당일 40% 반환

○천재지변, 시설관리자 귀책사유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 취소 시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 방법 등 비영리법인,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관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5) 고흥군 군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시설의 위탁운영 및 사용료 반환

에 대한 개정 권고가 있어 동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중단 내지 철회 시 반환 및 범위 구체화

• 5일전 80%, 3일전 70%, 1일전 50%, 당일 40% 반환

○천재지변, 시설관리자 귀책사유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 **취소시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6)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경쟁제한규제로 개선을 권고한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신설(안 제2조의2)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관리수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개선(안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통보(2009.6.1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7)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경쟁제한규제로 개선을 권고한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행법인 자격요건 중 주소지가 "고흥군"으로 제한된 항목삭제(안 제5조제3항)

○견인대행법인 등의 사무소 지역제한 기준을 "고흥군"에서 "전라남도내"로 지역 제한 기준 개선(안 제8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8)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순천화상경마장 살치사업은 2006년11월에 이미 우리 군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의회, 해당순천시의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약함.

○그러나, 최근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가 재 승인되어, 해당 시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우리군 의회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결정 철회 및 한국마사회의 완전한 사업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승인한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사업 백지화 강력 **촉구**

○사행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의 사회적 도박중독 유병율이 매우 높으나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마사회의 처사에 대하여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고흥군의회 의원 전원의 분명한 반대 의견을 **천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문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일동은 고흥군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한국마사회가 설치하고자하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순천화상경마장 살치사업은 2006년 11월에 이미 우리군 의회를 비롯한 동부권 시군의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 신뢰원칙을 무시하고 재개장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기관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기만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국가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화상경마장설치로 한탕주의 만연과 지역경제에도 악 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경마장사업이 지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흥군 의회에서는 사회적 도박중독 유병율이 72.9%나 되는 사행사업인 화상경마장이 우리 군과 가장 가까운 인근 순천시에 건립되는 것은 우리군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천명하는 바이며, 순천시 화상경마장 사업을 강력반대하며 우리군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선량한 지역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할 것이 뻔한 순천시 화상경마장 사업 재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지역민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즉시 백지화하라!

하나. 지금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주·항공 도시건설과 남해안 전체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순천, 여수, 광양시 등 지역민의 성원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므로 지역민의 결속을 해치게 될 화상경마장사업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 고흥군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찰 될 때까지 순천시민과 인근전남 동부권 주민 모두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 8. .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 3. 제187회 제1차 정례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8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0년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0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0. 9. 6(월)~9. 17.(금)〈12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 7(목)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br>■ 의사일정<br>1. 제187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br>2.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br>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5. 휴회의 건 |
| 11:00 | | ■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09.07(화) | 휴회 | ■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09.08(수) ~ 09.09(목) | | ■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결위원회 종합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09.10(금) | 휴회 | ■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br>• 1반 : 대서면, 동강면 • 2반 : 봉래면, 동일면 |
| 09.11(토)<br>~<br>09.12(일) | 휴회 | ■ 공휴일 |
| 09.13(월) | 휴회 | ■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br>• 1반 : 남양면, 과역면 • 2반 : 도화면, 포두면 |
| 09.14(화) | 휴회 | ■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br>• 1반 : 점암면, 영남면 • 2반 : 풍양면, 도덕면 |
| 09.15(수) | 휴회 | ■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br>• 1반 : 고흥읍, 두원면 • 2반 : 금산면, 도양읍 |
| 09.16(목) | 휴회 | ■ 2009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br>•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09.17(금)<br>10:00 | 제2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br>2. 2009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 하고 오전 10시 30분에 산회함.

### 1)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0. 9. 6.(월)~9. 17.(금)〈1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예산실장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50,344백만원
- 세출결산액 457,501백만원
- 세계잉여금 92,843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9,57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4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24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274백만원
- 세출결산액 20,900백만원
- 세계잉여금 6,374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62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2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7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등 6종 기금의 2009년말 현재총액은 4,825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꿈나무장학기금 924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1,037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424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3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59백만원
- 재난재해기금 1,328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6,87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242백만원

– 특별회계 3,630백만원

- 채 무

– 2009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5,56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2,861백만원
- 특별회계 2,699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498,6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392,813백만원
- 일반재산 105,815백만원

마) 물품결산

2009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65개이며 4,5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 전년도말 현재액 | 449개 | 4,155백만원 |
| • 신규취득 | 51개 | 629백만원 |
| • 매각폐기 | 35개 | 256백만원 |

바) 예 비 비

2009년 예비비 지출액은 7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양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공사 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564백만원
- 인공위성 나로호발사 행사비용 30백만원
- 수산피해 사유시설물 선지급금 23백만원
- 신종플루 치료약품 예방물품 및 예방 백신 비용 96백만원
- 신종플루 다중집합소 손소독기 구입 비용 48백만원

사) 2009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09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693,577백만원
- 총 부 채 34,180백만원
- 순 자 산 1,659,397백만원

(2) 2009년말 총자산은 1,693,5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09,803백만원(6.48%)
- 투 자 자 산 7,881백만원(0.47%)
- 일반유형자산 108,098백만원(6.38%)
- 주민편의시설자산 121,215백만원(7.16%)

• 사회기반시설자산 1,344,468백만원(79.39%)
• 기타비유동자산 2,112백만원(0.12%)

(3) 2009년말 총부채는 34,18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6,208백만원(18.16%)
• 장기차입부채 23,499백만원(68.75%)
• 기타비유동부채 4,473백만원(13.09%)

아) 2009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09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77,806백만원
• 총 비 용 292,096백만원
• 운영차액 85,710백만원

(2) 2009년말 총 수익은 377,80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003백만원(8.47%)
• 정부간이전수익 343,656백만원(90.96%)
• 기 타 수 익 2,147백만원(0.57%)

(3) 2009년말 총 비용은 292,09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5,840백만원(5.42%)
• 공공질서및안전 1,551백만원(0.53%)
• 교 육 5,193백만원(1.78%)
• 문화및관광 8,406백만원(2.88%)
• 환경보호 14,510백만원(4.97%)
• 사회복지 61,547백만원(21.07%)
• 보 건 5,159백만원(1.77%)
• 농림해양수산 79,791백만원(27.32%)
• 산업 · 중소기업 5,717백만원(1.96%)
• 수송및교통 10,124백만원(3.47%)
• 국토및지역개발 14,239백만원(4.87%)
• 과학기술 305백만원(0.10%)
• 기 타 69,714백만원(23.86%)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제의
- 제안이유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 주요내용
  - ○위　원 : 6명(김옥래,송경석,김주식,장세선,송경양,송인숙의원)
  - ○위원장 : 김옥래의원, 간사 :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박금래의원, 김주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 주요내용 : 2010. 9. 7.~9. 16(10일간)까지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개 회 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 모두가 무더위에 땀흘린 소중한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 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의정과 군정을 차질없이 이끌어 오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6대 의회와 민선 5기의 출범으로 행복 고흥호가 희망의 돛을 올리고 미래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첫 해입니다.

이전의 의정과 군정의 성과를 거울삼아
행복 고흥호가 순풍의 돛을 달고 군민의 염원을 향해 한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8만여 군민의 역량을 동력삼아 거친 파도와 모진 비바람을 기꺼이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만이 순탄한 항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앞에 놓인 현실을 직시할 때 재정은 열악하고 외부와의 접근성도 아직은
떨어지며 경제적 기반이나 자원도 빈약한 실정임을 우리는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간다는 일념으로 우주항공이라는 컨셉 아래 투자유치 등에 의정과 군정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의 결실로 곳곳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며,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해도 군민과 의정과 군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행복고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표현하는 지방자치가 이땅에 본격적으로 뿌리 내린지도 20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성장했다고 말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현실을 정치적 무관심 탓으로만 여기고 그냥 덮어둘 수 만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당장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방의원은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의 감시자,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규범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공직자들께서도 부지런히 탁상을 박차고 나가 주민들의 실생활과 부대끼면서 친절과 창의적인 사고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행정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의정과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므로써 지방의회와 공직자의 역할과 존재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정과 군정이 추구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올바른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역량을 동력삼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의정과 군정의 목표는 고흥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운 원리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역할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금년에도 추석명절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뒤돌아 보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훈훈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 제2차 본회의

2010년 9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9시 48분에 산회함.

###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결산 검사위원의검사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50,344백만원
- 세출결산액 457,501백만원
- 세계잉여금 92,843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9,57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4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24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274백만원
- 세출결산액 20,900백만원
- 세계잉여금 6,374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62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2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7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등 6종 기금의 2009년말 현재총액은 4,825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꿈나무장학기금 924백만원
- 노인복지기금 1,037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424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3백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59백만원
재난재해기금 1,328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 권

-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6,87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242백만원
- 특별회계 3,630백만원

• 채 무

- 2009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5,56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2,861백만원
- 특별회계 2,699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498,6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392,813백만원
• 일반재산 105,815백만원

마) 물품결산

2009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65개이며 4,5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49개 4,155백만원
• 신규취득 51개 629백만원
• 매각 · 폐기 35개 256백만원

바) 예 비 비

2009년 예비비 지출액은 7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양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공사 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564백만원
• 인공위성 나로호발사 행사비용 30백만원
• 수산피해 사유시설물 선지급금 23백만원
• 신종플루 다중집합소 손소독기 구입 비용 48백만원

사) 2009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1) 2009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693,577백만원
- 총 부 채 34,180백만원
- 순 자 산 1,659,397백만원

(2) 2009년말 총자산은 1,693,5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09,803백만원(6.48%)
- 투 자 자 산 7,881백만원(0.47%)
- 일반유형자산 108,098백만원(6.38%)
- 주민편의시설자산 121,215백만원(7.16%)
- 사회기반시설자산 1,344,468백만원(79.39%)
- 기타비유동자산 2,112백만원(0.12%)

(3) 2009년말 총부채는 34,18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6,208백만원(18.16%)
- 장기차입부채 23,499백만원(68.75%)
- 기타비유동부채 4,473백만원(13.09%)

아) 2009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1) 2009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77,806백만원
- 총 비 용 292,096백만원
- 운영차액 85,710백만원

(2) 2009년말 총 수익은 377,80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003백만원(8.47%)
- 정부간이전수익 343,656백만원(90.96%)
- 기 타 수 익 2,147백만원(0.57%)

(3) 2009년말 총 비용은 292,09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5,840백만원(5.42%)
- 공공질서및안전 1,551백만원(0.53%)
- 교 육 5,193백만원(1.78%)
- 문화및관광 8,406백만원(2.88%)
- 환경보호 14,510백만원(4.97%)
- 사회복지 61,547백만원(21.07%)

- 보　건　5,159백만원(1.77%)
- 농림해양수산　79,791백만원(27.32%)
- 산업.중소기업　5,717백만원(1.96%)
- 수송및교통　10,124백만원(3.47%)
- 국토및지역개발　14,239백만원(4.87%)
- 과학기술　305백만원(0.10%)
- 기　타　69,714백만원(23.8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박금래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2009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견실시공 여부 등문제점을 도출,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사기간 : 2010. 09. 13.(월) ~ 09. 16.(목)【4일간】

○조사대상 : 2009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조사인원 :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지적사항 : 17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제188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0년 10월 6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2010년 10월 6일(수) ~ 10월 7일(목)〈2일간〉

<table>
<tr><td>10.06(수)<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8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2</td><td></td></tr><tr><td>운영위</td><td>1</td><td>의원발의</td></tr><tr><td>총무위</td><td>1</td><td>보건소</td></tr></table></td></tr>
<tr><td>10.07(목)<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 사 일 정<br>1.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8분에 산회함.

###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0년 10월 6일(수) ~ 10월 7일(목)〈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행정의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10. 11. 18. ~ 11. 24.【7일간】

○감사범위 : 군정업무 전반

• 감사대상기간 : 2009. 11. 01. ~ 2010. 10. 31.

○감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0년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8분에 산회함.

### 1)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2010. 9. 13.)됨에 따라 고흥군

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 중 소관 부서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고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소관사항 개정

• 총무위원회(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부서삽입 : 평생학습사업소

– 부서삭제 : 사회과

– 부서변경 : 기획예산실 ⇒ 기획실, 행정지원과 ⇒ 행정과, 열린민원과 ⇒ 종합민원실

○산업건설위원회(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부서삽입 : 경제유통과

– 부서변경 : 수산과 ⇒ 해양수산과, 재난관리과 ⇒ 방재과, 간척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제5기(2010 ~ 2014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 의견을 거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건강 현황 분석 : 인구, 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지역사회 현황 요약 등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방안 : 노인건강관리사업, 우선순위 및 목표, 추진전략 등 건강증진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개별 사업계획 :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제189회 제2차 정례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8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0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0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2010년 11월 10일(수) ~ 12월 17일(금)〈38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11.10(수)<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개 회 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 의사일정<br>1. 제18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br>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br>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5. 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9</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5</td><td>기획1, 주민복지1, 행정1, 재무1, 문화관광1</td></tr><tr><td>산건위원회</td><td>4</td><td>환경산림1, 농업축산2, 우주항공1</td></tr></table></td></tr>
<tr><td>11.11(목)</td><td>휴회</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td></tr>
<tr><td>11.12(금)<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기획실 • 주민복지과 • 행정과 • 재무과<br>• 투자정책과</td></tr>
<tr><td>11.13(토)<br>~<br>11.14(일)</td><td>휴회</td><td>■ 공휴일</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1.15(월)<br>10:00 | 제3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경제유통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br>• 농업축산과 • 해양수산과 |
| 11.16(화)<br>10:00 | 제4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건설과 • 방재과 • 종합민원실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 11.17(수)<br>10:00 | 제5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br>•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11.18(목)<br>10:00 | 휴 회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br>• 기획실 • 주민복지과 • 행정과 • 재무과 |
| 11.19(금) | 〃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br>•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 11.20(토)<br>~<br>11.21(일) | 〃 | ■ 공휴일 |
| 11.22(월)<br>10:00 | 〃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br>•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방재과 |
| 11.23(화)<br>10:00 | 〃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br>• 종합민원실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 11.24(수)<br>10:00 | 제6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br>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3. 휴회의 건 |
| 10:30 | |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br>• 우주항공사업소 •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11.25(목)<br>~<br>11.26(금) | 휴 회 | ■ 군정질문 · 답변 자료준비 |
| 11.27(토)<br>~<br>11.28(일) | 〃 | ■ 공휴일 |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1.29(월)<br>10:00 | 제7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군정질문 · 답변의 건 |
| 11.30(화)<br>10:00 | 제8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군정질문 · 답변의 건<br>2. 휴회의 건 |
| 12.01(수)<br>~<br>12.08(수) | 휴 회 | ■ 2011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12. 09(목)<br>~<br>12. 16(목) | 〃 | ■ 2011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br>• 실과소 심사 및 계수조정 |
| 12.17(금)<br>10:00 | 제9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br>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br>3.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br>4.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5. 고흥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6.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7. 고흥군 공공디자인 조례안<br>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br>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안<br>10. 고흥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11. 고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br>12.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br>13.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br>1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가졌으며,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8분에 산회함.

###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0년 11월 10일(수) ~ 12월 17일(금)〈38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189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 질문 · 답변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관한 책임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출석요구기간 : 11일간
• 2010. 11. 12. ~ 11. 24.(9**일간**)
• 2010. 11. 29. ~ 11. 30.(2**일간**)
○출 석 범 위
• 군수
•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2010. 10. 6.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감사방법 등에 있어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감사실시 주체를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로 변경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10. 11. 18. ~ 11. 24.【7일간】⇒ 변경없음
○감사방법(감사실시 주체)

• 당초 :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시
• 변경 : 본회의 실시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변경없음

○감사장소
• 당초 : 각 상임위원회실 및 사업장 현지
• 변경 : 소회실 및 사업장 현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양의원, 최설희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의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 주요내용 : 2010. 11. 11(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0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21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기획실장,행정과장,투자정책과장,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주민복지과장)
■ 질 의 자 : 10명(김옥래,송경양,김주식,장세선,김의규,송우섭,송인숙,최설희송경석, 신태균의원)
■ 질의건수 : 30건

## 라. 제3차 본회의

2010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34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6명(재무과장, 경제유통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직무대리)
- 질 의 자 : 10명(송경석, 배기홍, 김주식, 장세선, 송우섭, 김옥래, 송경양, 송인숙, 최설희, 김의규의원)
- 질의건수 : 38건

## 마. 제4차 본회의

2010년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1시 53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민원실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 질 의 자 : 7명(김옥래, 김주식, 송경석, 송인숙, 김의규, 송우섭, 송경양의원)
- 질의건수 : 22건

## 바. 제5차 본회의

2010년 11월 17일 오전 10시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1시 11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3명(우주항공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질 의 자 : 5명(김옥래, 장세선, 김주식, 송우섭, 최설희의원)
- 질의건수 : 8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주요내용 : 2010. 11. 18 ~ 11. 23(6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사. 제6차 본회의

2010년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9시 54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보 고 자 : 군수
- 주요내용 : 별지참조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　원 : 6명(김옥래, 송경석, 김주식,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의원)
  - ○위원장 : 김옥래의원, 간사 :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군정질문 자료준비에 따른 의정활동
- 주요내용 : 2010. 11. 25 ~ 11. 28(4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시정연설(군수)

시정연설에 앞서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총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비상사태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8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과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6대 고흥군의회가 개원된 후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6개월가량이 지난 지금도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군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따라「민선 5기 고흥군정」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민선 4기」동안 투자유치를 비롯해 산업단지와 리조트 조성, 군민복지 향상 등 고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가꿔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소중하고도 알찬 성과들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의 불모지'로만 생각했던 고흥이 '투자적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가공·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SOC 사업과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각종 종합개발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지역 인재들의 학력 수준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 흐름들은 큰 꿈을 꾸고 힘차게 출발한 '고흥 발전'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는 「민선 4기」와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룬 값진 성과들을 볼 때,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들을 애태우게 했고,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던 「고흥조선타운」조성이 시행사의 전액 부담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마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분자 융복합 소재 사업화 지원단 구축과 연계하여 2개 업체가 본격 가동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그 인근에는 「고흥 미래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가공·유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동강농공단지」도 기반공사 마무리와 함께 공장용지가 분양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리조트 조성도 조그만 진전들이 나타나면서 「신세계 리조트」와 「고흥 씨월드 리조트」는 각각 실시계획 착수와 외국인 국내 투자법인 설립 등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소년 임해수련원」도 300억 원 규모로 우리 군 투자를 확정지었고, 녹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13개월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값진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는 역사적인 개관과 함께 연말까지 1만여 명이 넘게 예약이 폭주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첫 단추가 될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고흥나로우주공원 등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파들로 인해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의 우리 군 유치에도 파란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도시' 전략의 한 축이 될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도 연구소 개소와 파일럿 플랜트 구축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 농수산 분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 확보에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 공모사업이야 말로 재정여건을 개선할 유일한 길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고흥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국토해양부의 「해안마을 경관형성 시범사업」이 선정, 각각 100억 원과 3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수덕 우수저류시설 추진,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 생태 복원 및 재해예방 사업비로 460억 원이란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2011 유자식품산업 중앙공모사업」에도 선정,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염원이었던 「고흥나들목」이 23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록도에 대한 100년 만에 수돗물 개통, 보건기관 이전 신축, 고흥군 장애인 복지관 개관, 교육발전기금 69억 원 조성과 대학교 진학률 상승 등 군민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결과들은 군민들의 협조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위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의 '꿈'이자 '바람'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제가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과 함께 각종 투자유치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민선 5기」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길을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이젠 이 길을 향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민선 5기」의 지상 과제는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을 그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실과소장들로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청취하신 바 있기에 저는 큰 틀에서 내년도 군정 운용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와 리조트 조성 등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여건 성숙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변함없이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동강농공단지」는 내년 상반기 완공과 도시에 친환경 제조기업들이 조속히 가동되도록 하고 기업들을 100% 입주시키기 위한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시금 활기를 찾은 「고흥조성타운」은 실시계획 승인 완료와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추진 중인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와 「고흥 미래일반산업단지」는 각각 공장 준공과 부지조성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주해양리조트」도 토지매수에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한편, 전통시장에 대한 신명하는 주말장터 운영,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둘째,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는 국가계획 및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기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헬기사업 시험·평가설비 준공과 항공센터 2단계 사업 확장 추진등의 여세를 몰아 「고흥 로켓개발센터」 건립과 「고흥 우주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사를 마친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은 내년 1월에 정식 개관토록 하고 기반공사 중인 「발사전망대」설치도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돌입하겠습니다.

MOU 체결 이후 타당성 검토 등 구상과 사전 준비단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도 좀더 구체화된 실행단계에 접어들도록 한국남부발전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에 있어서도 관내 해조류 시험 양식장 조성 등 범위를 확장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경항공기 에어택시 운행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셋째, 농수축산업은 가공·유통 분야에 중점을 둬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 창출을 이끌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유치에 따라 고흥과 완도·진도 등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유자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 유통체계 및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유통 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체로의 변신과 연 매출액 향상 등 변화를 꾀하는 한편, 고흥한우 경영체 설립을 위한 추진단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이자 장·단기계획으로 추진할 「고흥 농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는 목표 관리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구체화 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

농수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확대 추진하면서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상향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등 농수축산업 기반 강화에도 변함없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흥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진지도、우도、시호도에 대한 「테마의 섬」개발과 해창만 공원화 사업, 천등산 철쭉생태원 조성 등은 계획대로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우주항공 연관시설이 조성된 만큼 개최방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최고의 테마형 축제로 키워, 전국 최우수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본격 추진을 통한 녹동항 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해양 레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거북선형 관광 유람선 건조와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 고흥 9미 10경 관광지 조성 등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겠습니다.

특히, 갯벌을 테마로 한 「선정 국제 머드림픽」을 민간주도로 개최하여 신선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SOC 확충과 정주여건 등 지역 인프라는 계속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고흥~여수간 연륙화와 내년 완공 예정인 거금도 연륙화, 녹동신항 건설, 녹동항 정비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관내를 연결하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투자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신도심 조성을 위한 「남계지구 택지개발」도 내년에는 기반공사가 착공되도록 대한주택토지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공모로 유치한 「과역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은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본격 추진토록 하고 고흥읍 공영 주차타워와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도 차질없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군민복지와 교육은 관심을 더욱 갖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확대,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등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로식당 예산 확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 등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다문화가정 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 등 보건、의료 서비스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인재육성에 있어서도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 초、중、고 영어경시대회 개최,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시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신축 공사를 모두 마친 「고흥 중앙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와 미래의 꿈을 키워 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군민들께서 저와 여러 의원님들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위축된 고흥경제를 살리고 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가운데 뒤쳐지는 군민이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 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생각과 더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렴하신 정책 대안은 소홀함이 없이 검토하여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의회를 '고흥발전'을 견인하는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대립과 갈등 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지방재정의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 감소와 4대강 사업비 집중 등으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재정수요를 뒷받침 할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유치나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재정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재정투자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꼼꼼히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원만한 심의가 이뤄지길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0.2% 증가한 38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56억 원으로 1.3%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94억 원으로 15.7%가 줄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유치와 문화 · 관광 등에 196억 원, 지역인프라 확충 등에 455억 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987억 원, 사회복지 향상 및 교육 등에 701억 원, 환경개선 및 보건증진 등에 256억 원 등입니다.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1년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군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는 지난 4년간 튼튼하게 다져 놓은 성장의 기반 위에서 투자유치를 필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복지, 교육, 정주여건 등 사람 중심의 '삶의 질' 향상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흥은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과 마주잡은 손, 군민들에게서 전해오는 눈빛을 보면서 가슴으로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군민들의 소망을 담아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와 닿는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꿈만 꾸지만 깨어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잠 자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 있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8만 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아. 제7차 본회의

2010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3시 32분에 산회함.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질 문 자 : 4명(박금래, 송우섭, 김옥래, 송인숙의원)
- 답 변 자 : 7명(환경산림과장, 우주항공사업소장, 경제유통과장, 투자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과장)
- 질문건수 : 22건

## 자. 제8차 본회의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3시 9분에 산회함.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질 문 자 : 4명(송경양, 김주식, 장세선, 최설희의원)
- 답 변 자 : 7명(부군수, 우주항공사업소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투자정책과장, 방재과장, 주민복지과장)
- 질문건수 : 17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상임위 활동
- 주요내용 : 2019. 12. 1 ~ 12. 16(16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차. 제9차 본회의

2010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31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총 규 모 : 385,060백만원('10당초예산 384,119백만원의 0.2% 증)

○일반회계 : 365,646백만원('10당초예산 361,099백만원의 1.3% 증)

(단위 : 천원)

| 세 입(재정자립도 : 8.8%) | 세 출(성질별) |
|---|---|
| • 자체수입 : 32,283백만원(8.8%)<br>– 지 방 세 : 16,980백만원(4.6%)<br>– 세외수입 : 15,303백만원(4.2%)<br><br>• 의존수입 : 333,363백만원(91.2%)<br>– 지방교부세 : 174,028백만원(47.6%)<br>– 보 조 금 : 156,335백만원(42.8%)<br>–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 0.8%) | • 일반공공행정 : 23,040백만원( 6.3%)<br>• 공공질서 및안전 : 7,844백만원( 2.2%)<br>• 교 육 : 3,783백만원( 1.0%)<br>• 문화 및 관광 : 18,015백만원( 4.9%)<br>• 환 경 보 호 : 18,559백만원( 5.1%)<br>• 사 회 복 지 : 65,961백만원(18.0%)<br>• 보 건 : 7,469백만원( 2.0%)<br>• 농림해양수산 : 98,915백만원(27.1%)<br>• 산업·중소기업 : 1,915백만원( 0.5%)<br>• 수 송 및 교 통 : 12,801백만원( 3.5%)<br>• 국토및지역개발 : 45,162백만원(12.4%)<br>• 과 학 기 술 : 4,227백만원( 1.2%)<br>• 예 비 비 : 3,690백만원( 1.0%)<br>• 기 타 : 54,265백만원(14.8%) |

○특별회계(10개) : 19,414백만원('10당초예산 23,020백만원의 △15.7%)

○기 금(6개) : 7,767백만원('10 당초예산 5,684만원의 36.6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10년도말 현재액ⓐ | '11년도 기금운용계획 | | '11년도 말 현 재 액 ⓓ = ⓐ + ⓑ − ⓒ | 증△ 감 ⓓ − ⓐ |
|---|---|---|---|---|---|
| | | 수입ⓑ | 지출 ⓒ | | |
| 6건 | 5,986,843 | 1,780,508 | 323,000 | 7,444,351 | 1,457,508 |
| 사회복지기금 | 2,871,491 | 271,367 | 40,000 | 3,102,858 | 231,367 |
| 신청사건립기금 | - | 1,029,000 | - | 1,029,000 | 1,029,000 |
|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 81,994 | 130,500 | 123,000 | 89,494 | 7,500 |
| 재난관리기금 | 1,465,483 | 188,060 | 100,000 | 1,553,543 | 88,060 |
| 식품진흥기금 | 56,647 | 4,500 | - | 61,147 | 4,500 |
| 체육진흥기금 | 1,511,228 | 157,081 | 60,000 | 1,608,309 | 97,081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금 명 | '09년도말 현 재 액 | '10년도 기금운용 | | | | '10년도말 현 재 액 |
|---|---|---|---|---|---|---|---|
| | | | 수 입 | | 지 출 | | |
| | | | 당 초 | 변 경 | 당 초 | 변 경 | |
| **통합** | 사회복지 기금 | 1,951,168 | 455,865 | 952,993 | 31,600 | 38,000 | 2,866,161 |
| **폐지** | 꿈나무장학 기금 | 918,452 | 229,000 | 229,000 | 7,600 | 14,000 | 1,133,452 |
| | 노인복지 기금 | 1,032,716 | 226,865 | 226,865 | 24,000 | 24,000 | 1,235,581 |
| | 기초생활 보장기금 | - | - | 497,128 | - | - | 497,128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고흥군의 시각적 이미지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한 고흥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고흥군 상징물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제3조)

• "상징물"이란 고흥군 이미지(image)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심벌마크(symbol mark), 캐릭터(character), 마스코트(Mascot)를 말하며,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음

○상징물 관리위원회 (안 제6조)

•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징물 사용승인 (안 제8조)

•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용료 (안 제11조)

•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사용료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과제인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관련

■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 당 초 : 고흥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변 경 : 고흥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08. 5월부터 사용 중인 "외국인주민" 용어를 조례에 반영
거주외국인('06) ⇒ 외국인주민('07) ⇒ 이주민('08) ⇒ 외국인주민('08.5~)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와 제5조(지원대상)의 불일치 조정

○5. 21로 규정된 세계인의 날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5. 20과 일치
○외국인 · 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참여 확대 등 기능 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출신지역 불문 수상대상자 범위 확대 필요
○군민의 상 추천, 접수시 공적이 사실인지 사전 조사과정 필요
○군민의 상 대상자 결정을 위한 의결 횟수 1회로 축소
○수상자가 물의를 일으켰거나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군민의 상 수상 취소 조항 신설 필요
■ 주요내용
○수상자격 확대(안 제3조) : 고흥군민(향우 포함) 내국인, 외국인
○추천서 접수시 예비검증 절차 신설(안 제4조)
○수상 된 자의 수상 취소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7) 고흥군 공공 디자인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군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환경이나, 공공분야에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디자인에 비해 낙후된 공적 영역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녹색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 제6조)

-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마련 요청, 예산 및 행정적 지원
-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교육 홍보 지원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 (안 제7조)

-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둘 수 있다.

○디자인업무 지원 (안 제8조)

-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지원 요구 시 디자인 심사 자문 지원 및 기타 디자인 업무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안 제9조)

- 기본계획의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

○디자인업무의 협의 (안 제9~11조)

-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 처리시 문화관광과의 협의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안 제14~20조)

- 위원장(부군수) 포함 14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 군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임기(2년), 회의(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 기 능
  -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단위 : ㎡, 백만원)**

| 구분 | 건수 | 면 적 | 추정가액 | 비 고 |
|---|---|---|---|---|
| **취득** | 토지 4<br>건물 2<br>입목 1 | 254,137 | 1,710 | • 개발예정부지 사전매입(재무과)<br>• 팔영산 편백 건강체험단지 조성 (환경산림과) |
| **처분** | 토지 4<br>건물 4 | 2,026 | | • 용도폐지 미활용 건물 매각 처분 (재무과) |

■ 주요내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2010. 5. 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존의 광양만 ·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협의회 명칭 변경

- 광양만 ·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특별회원 위촉

-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남중권역의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음.

○협의사항

- 2개 시 · 군 이상 연계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 ·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 경비 지출 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보고

○사무인수인계

-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 · 인수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0) 고흥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개정 및 용어를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적용 대상 구체화

•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1) 고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9721호 2009.5.27 시행 20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고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부 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2)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9721호 2009.5.27 시행 2009.11.28)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고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매년 10억원 군의 재원을 출연 50억원 기금 조성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 · 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비 등 으로 기금 사용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는 「고흥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을 군의회 보고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3)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 관리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주신비의 천체과학 탐구를 통한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과학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우주항공 관련 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 다양한 테마형 과학관광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천문과학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 (안 제5조, 제6조)

○천문과학관 이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천문과학관 운영을 위한 판매시설의 설치 규정 (안 제9조)

○관람객 이용금지 및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과학관 시설물 훼손시 변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2010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10. 11. 18. ~ 11. 24.【7일간】

○감사범위 : 군정업무 전반(감사대상기간 : 2009. 11. 01. ~ 2010. 10. 30.)

○감사방법 : 본회의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주요 지적사항 : 14건(경로당 난방비 지원철저 등)

- 지적사항 내역 : 별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제190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0년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소집함.

### 2) 의사일정 : 2010년 12월 20일(월) ~ 12월 22일(수)〈3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12.20(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br>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5. 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15</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11</td><td>기획2, 주민복지1, 재무5, 종합민원2, 보건소1</td></tr><tr><td>산건위원회</td><td>4</td><td>경제유통2, 농업기술센터1, 상하수도사업1</td></tr></table></td></tr>
<tr><td>13:30</td><td></td><td>■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r>
<tr><td>12.21(화)</td><td>휴 회</td><td>■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r>
<tr><td>12.22(수)<br>11: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br>2.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br>3.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br>5. 고흥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6.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안<br>7.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8.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br>9. 고흥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10.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11.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2.22(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2.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br>13.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14. 고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15.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br>16. 고흥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나. 제1차 본회의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후 10시 9분에 산회함.

### 1)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0. 12. 20(월) ~ 12. 12(수)〈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실장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52백만원(기정예산 414,804 → 415,056)

- 일반회계 : 1,274백만원(기정예산 392,489 → 393,763)
- 특별회계 : △1,022백만원(기정예산 22,315 → 21,293)

○일반회계 추가세입 : 1,274백만원

- 자체수입 : 1,803백만원(지방세 2,070, 세외수입△267)
- 의존수입 : △529백만원(지방교부세 378 , 재정보전금△332, 보조금△575 )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위　원 : 6명(김옥래, 송경석, 김주식,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의원)
○위원장 : 김옥래의원, 간사 :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제의
■ 제안이유 :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인숙의원, 배기홍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축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0. 12. 21(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0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6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1시 23분에 산회함.

### 1)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도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52백만원(기정예산 414,804 → 415,056)
• 일반회계 : 1,274백만원(기정예산 392,489 →393,763)
• 특별회계 : △1,022백만원(기정예산 22,315 →21,293)
○일반회계 추가세입 : 1,274백만원
• 자체수입 : 1,803백만원(지방세 2,070, 세외수입 △267)
• 의존수입 : △529백만원(지방교부세 378 , 재정보전금△332, 보조금 △575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시행('10.4.14)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군의 책무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시행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각종 소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소송의 승소율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확보 및 고문변호사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고 임기를 조정코자 **함.**

■ 주요내용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 ⇒ "2년" 연장

○자문의뢰시 사전협의 및 자문결과 통보 등 자문절차 규정 신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50,000원" ⇒ "200,000원" 인상

- 변호사 자문수당이 1989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도내 시군 사례 등을 고려하여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전남도 및 14개 시군 월 20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아동복지시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 적인 아동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아동정책위원회의 구성(제4조)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감독, 평가하기 위함.

-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함.
-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아동복지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 아동복지지설의 국비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평가
-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결정
- 아동복지사업의 행 ·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9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함.**

○시설의 이용대상 (제10조)

-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 지역내 빈곤,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사업(제12조)

- 아동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 → 11개)에 따라 군세 조례 중 개별 세목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로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안 제1조~제3조)

○제2장 담배소비세 :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 신고 등(안 제4조~제5조)

○제3장 주민세 : 세율, 신고의무(안 제6조 ~ 제8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세율, 신고의무(안 제9조 ~ 제11조)
○제5장 재산세 : 세율, 신고의무 등(안 제12조 ~ 제23조)
○제6장 자동차세 :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납부확인(안 제24조 ~ 제2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군세 기본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 11개)에 따라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세목 등(안 제1조 ~ 제9조)
○제2장 부과 · 징수 : 납세고지서 송달 등(안 제10조 ~ 제25조)
○제3장 체납처분 : 재산의 압류, 처분 등(안 제26조 ~ 제46조)
○제4장 보칙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안 제47조 ~ 제51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7)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삭제하고,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되는 감면사항은 군세감면 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목적 :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발전 (안 제1조)
○존치(안 제2조~제16조) : 지역경제와 연계성,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된 것

- 장애인(4급)소유자동차, 한센정착농원지원, 종교단체 의료업, 지방의료원, 문화재, 미분양 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관(지방세특례제한법, 15개 조문) : 국가 정책적 목적 및 전국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장애인(1급~3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흥군 신청사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기금의 조성 재원(안 제3조)

- 일반회계의 전출금 (매년 10억원 이상)
-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과 대부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신청사 건축비, 감리비, 부지매입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기금의 관리 · 운영 (안 제5조)

- 기금계좌 별도 설치 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개별 분류할 수 있는 제증명 명칭이 포괄적으로 명명되었거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등을정비하기위해관련조례를개정코자함.

■ 주요내용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일부개정

신 설 1종 (포괄적인 명칭을 개별 제증명으로 분류)

- 어선원부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신청 800원(어선법)

※ 지금까지는 "기타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7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전국적 통일 수수료 기준(대통령 령)에 부합하게 개별 분류함

변 경 전국적 통일 수수료 개정 8종 (요율인하 4종, 명칭변경 4종)

- 요율인하 : 4종
  - 관리선 지정 승인신청 2,000원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신청 1,000원
  -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 어업권원부 등본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 교부신청 : 1,000원 ⇒ 800원
- 명칭변경 : 4종
  - 공장등록 증명 "1통" ⇒ "1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의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 "칼라발급의 경우"
  - 공유재산 대부신청 "계속" ⇒ "갱신 또는 기한연장"
  - "어업허가증 재교부" ⇒ "어업허가증(어업신고 증명서) 재교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0)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군수 등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1) 고흥군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 조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제명 변경 : "고흥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

○법 명칭 변경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지적법"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측량법"을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용어 변경 :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2) 고흥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운동 동참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참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안 제4조)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3)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명칭 개정사항 반영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 상인들의 사용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명칭 개정사항 반영

○[별표1] "고흥군 시장 명칭 위치 분류표" 수정 ("매달" "매월")

○고흥군 시장사용 요금표 일부 개정

- 부과기준 : "3.3㎡ 기준, 일액" "㎡ 당 월액"
- 상설시장 60%, 정기시장은 40% 사용료 인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4) 고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명칭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코자 함

■ 주요내용

○「고흥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명칭을「고흥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

○조례 내용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5)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이 등에 기여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안 제6조)

○임대사업 임대기준 및 임대료 (안 제9조,10조)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 반환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항 (안 제19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16) 고흥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오수·분뇨법』을『하수도법』으로 흡수 통합하여 2006. 9. 27 개정 공포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삭제』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제도개선 등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 주요내용

○하수처리구역 지정(안 제2조) : 당초 50m 이내 조정 300m 이내

○공공하수도의 사용 및 배수설비 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 2)

• 배수설비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안 제15조의 2)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의 2)

○고흥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별표 5)

• 고흥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779,090원/㎥

• 「전라남도 평균 단위단가 금액 : 1,719,510원/㎥」 / '10.10. 현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분뇨수집·운반·처리,원인자부담금 감면(안 제23조)

• 감면 대상에 한부모·조손가정 포함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7. 제191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2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2. 15(화) ~ 2. 16(수) 〈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2. 15(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개 회 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 의사일정<br>1. 제1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br>3.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4</td><td></td></tr><tr><td>운영위원회</td><td>3</td><td>의원발의 3</td></tr><tr><td>총무위원회</td><td>1</td><td>평생학습사업소</td></tr></table></td></tr>
<tr><td>2. 16(수)<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br>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3.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br>4. 고흥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6분에 산회함.

### 1)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1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1. 2. 15(화) ~ 2. 16(수)〈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위촉기간이 2011.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촉대상자 : 송동석 변호사
  - ○위촉기간 : 2011. 3. 1. ~ 2012. 2. 29.(1년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2010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1. 03. 17.(목) ~ 03. 23.(수)【7일간】
  - ○조사대상 : 2010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조 사 반 : 2개반으로 편성운영(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개 회 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매서운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한 가운데 벌써 입춘이 지나고 2월의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해엔 토끼의 지혜와 희생을 마음에 담고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고흥발전의 도약을 향해 큰 발을 내딛는 뜻있는 한 해가 되기를 군민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새해 벽두부터 의정과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상기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구제역 창궐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럴수록 희망을 일구는 자세가 절실함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설상가상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32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되고 정부 당국의 한심한 대응으로 인하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추위를 무릅쓰고 공무원들과 축산농가들이 방역작업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은 구제역을 이겨내고 청정지역으로 남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구제역 퇴치는 축산농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군민이 합심하여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적 한마음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꼭 극복해 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원전문제로 군민간 갈등을 겪었습니다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찬성측이나 반대측이나 모두가 다 고흥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여기고 이제는 더 나은 고흥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의원 모두는 금년 한 해도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고흥발전의 밀알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정과 군정의 수혜자는 군민임을 잊지 마시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10시 14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우리지역 교육기관에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소외 없는 학교급식 실현과 성장기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관내 농어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지원대상 : 고흥군 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지원
- 지원기준, 관리체계 등 세부사항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해당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당연직위원 :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흥교육지원청교육과장
- 위촉직위원 : 군의회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어업인단체대표,교원단체 대표, 영양사단체 대표 등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고문변호사의 직무활동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고문사항 이행을 보다 강제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성실한 자문역할에 힘쓰도록 하며, 고흥군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써 위촉 변호사로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3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함.

○제3조 제2항 신설 :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고흥군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수차의 개정을 한 결과 가지번호의 조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기관 규칙 등의 제 · 개정 또는 폐지사항을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 답변과 군정질문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므로써 회의 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 신설(제10조 관련)

○제10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로 가지번호 정리

○집행기관의 규칙,규정 등의 제 ·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제34조 관련)

○제28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제35조부터 제75조까지로 가지번호 정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 규정 신설(제77조 관련), 군수의 본회의 초청 연설 규정 신설(제80조 관련)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를 제81조부터 제98조까지로 가지번호 정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조문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법규 체제를 갖추고자 동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구 수정 : 본회 ⇒ 본회의(제2조제1항 6호, 7호 관련)

○전문위원별 직급 수정(별표1 관련)

-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총무위원회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제192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3. 15(화) ~ 3. 24(목)〈10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3. 15(화)<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제1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3.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2</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1</td><td>문화체육시설사업소</td></tr><tr><td>산건위원회</td><td>1</td><td>경제유통과</td></tr></table></td></tr>
<tr><td>3. 16(수)</td><td>휴 회</td><td>■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검토</td></tr>
<tr><td>3. 17(목)<br>~<br>3. 23(수)</td><td></td><td>■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 조사<br>• 조사일정에 따라 반별로 실시</td></tr>
<tr><td>3. 24(목)<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br>3.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4분에 산회함.

### 1) 제1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2회 임시회 회기 결정
- 주요내용 : 2011. 3. 15(화) ~ 3. 24(목)〈10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우섭의원, 박금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2011. 3. 16. ~ 3. 23.(8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7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설운동장은「고흥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우리군을 빛낸 체육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명스포츠 스타를 통한 지역홍보 마케팅 전략일환.
  - ○공설운동장 · 도양축구장의 명칭을 고흥군을 빛낸 체육인의 이름으로 공모를 통하여 명칭 변경됨.

■ 주요내용

○고흥공설운동장 · 도양축구장 명칭공모를 통한 명칭 변경으로 고흥공설운동장은 박지성 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고, 도양축구장은 김태영 축구장으로 명칭 삽입

○김태영 축구장 사용료 부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제6조)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는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흥군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9조)

-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제12조)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제한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장세선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 등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의 알 권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사기간 : 2011. 03. 16. ~ 03. 23.【8일간】
○조사대상 : 2010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확 인 반 : 2개반 16명
○지적사항 : 13개 사업장 13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제193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4월25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4. 25(월) ~ 4. 26(화) 〈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4. 25(월)<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3. 군정현안 업무보고(질의)의 건</td></tr>
<tr><td>11:0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table>
<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
<tr><td>계</td><td>5</td><td></td></tr>
<tr><td>총무위원회</td><td>4</td><td>기획1, 주민복지1, 재무1, 투자정책1</td></tr>
<tr><td>산건위원회</td><td>1</td><td>방재과</td></tr>
</table></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4. 26(화) | 제2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br>2.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br>3.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고흥 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br>5. 고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4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31분에 산회함.

### 1) 제19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4. 25(월) ~ 4. 26(화) 〈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제의
- 제안이유 :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군정현안 업무보고의 건

- 보 고 자 : 농업축산과장
- 질의의원 : 4명(송우섭, 최설희, 박금래, 김의규의원)
- 질의건수 : **5건**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8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기능(안 제3조) :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 사항을 심의

○심의대상(안 제4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법령에 의한 의무시행 용역,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 · 도비 보조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구성 (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6명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과 각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효행 확산을 위해 우리군내에 3세대(世代)이상이 함께 동거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코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효행장려금 · 3세대이상가정 · 실부양자의 정의

- 3세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있는 3세대이상의 가정
- 3세대이상 가정에서 가족의 부양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3대 이상 가정으로 동일 주택에서 함께 동거하는 가정

○지원내용

- 매분기 1회 효행장려금 50,000원 지급

○지원절차

- 장려금 지원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읍면은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신청인에게 장려금 지급결정통보 및 장려금 지급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 정비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 제1항 중 "지역경제담당"을 "투자유치담당"으로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 119 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축 동의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현 과역119지역대 건물 노후(1993년 준공) 및 협소로(98.4㎡) 중형펌프차 배치곤란(현재 소형펌프차 배치됨)하고 의용소방대 건물 협소로 각종 의용소방대 관련 회의시 인근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비스 확대코자 고흥군 토지상에 위치한 기존 고흥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코자 함.

○종전에는 고흥군 소유토지에 고흥군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 2009. 4. 2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 및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토지개요

- 위　　치 :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9-6, 동소 169-7(2필지)
- 면　　적 : 929㎡
- 소 유 자 : 고흥군 ('73. 11.20 매입)
- 공시지가 : 263,881천원(440㎡ 323천원/㎡ + 489㎡ 249천원)

○건축개요

- 사 업 명 : 고흥119안전센터 과역지역대 신축
- 사업주체 : 전라남도지사(보성소방서장)
- 위　　치 :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9-6
- 사 업 비 : 260백만원(2010년 전라남도 일반회계)
- 건축내용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0층 1동
  - 면적 : 200㎡(60평)
  - 현황 : 사무실, 차고, 대기실, 의용소방대실, 창고 등

○주요 합의내용

-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고흥군 소유인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169-6번지와 과역면 과역리 169-7번지에 전라남도(보성소방서)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조함.
- 소유권 합의
  - 토지 : 고흥군 소유
  - 건물 : 전라남도 소유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 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코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수립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지방

의회에 통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고흥군 전역에 대해 유형별(하천, 내수, 사면, 해안, 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

○고흥군 전역에 대해 유형별 풍수해위험지구를 총 187개소 선정

○풍수해위험지구별 저감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0. 제194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5월 17일 오전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5. 17(화) ~ 5. 18(수) 〈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5. 17(화)<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2</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2</td><td>재무과</td></tr></table></td></tr>
<tr><td>5. 18(수)<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5분에 산회함.

### 1) 제19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5. 17(화) ~ 5. 18(화)〈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구성
- 주요내용
  ○위원구성 : 5명(장세선의원, 강재민교수, 박영인세무사, 장영조세무사, 이재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의규의원, 송경양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6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2011.3.8)에 따라, 군 금고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

보를 위해 군 금고를 회계의 구분없이 단일금고로 지정하되, 필요시 은행법에 의거 재무구조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하고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별도의 금고로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자금을 운용(예치) 함으로서 자금의 수익성 및 금고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군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단일금고를 선정한다. 다만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코자 함(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 연장가능)

■ 주요내용

○부칙(안)

- 기금의 일몰제(존속기한 5년)적용
-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15. 12. 29.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1. 제195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6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6월 14일 오전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6. 14(화) ~ 6. 17(금) 〈4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06.14(화)<br>10:00</td><td rowspan="3">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br>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4. 고흥유통주식회사 사업추진 상황 보고의 건<br>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6. 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5</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재무과1, 문화관광과1, 평생학습소1</td></tr><tr><td>산건위원회</td><td>2</td><td>경제유통과1, 건설과1</td></tr></table></td></tr>
<tr><td>13:30</td><td>■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td></tr>
<tr><td>06.15(수)</td><td>휴회</td><td>■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td></tr>
<tr><td>06.16(목)</td><td>〃</td><td>■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td></tr>
<tr><td>06.17(금)<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2. 고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3.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br>4.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br>5. 고흥군 농수축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br>6.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6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6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36분에 산회함.

### 1) 제1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5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6. 14(화) ~ 6. 17(금)〈4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실장
- 주요내용
  - ○추경예산규모 : 22,436백만원(기정예산 385,060 ⇒ 407,496)
    - 일반회계 : 22,588백만원(기정예산 365,646 ⇒ 388,234)
    - 특별회계 : △152백만원(기정예산 19,414 ⇒ 19,262)
  - ○일반회계 추가세입 : 22,588백만원
    - 의존수입 : 9,355백만원(지방교부세 17,918, 재정보전금 49, 보조금△8,612)
    - 자체수입 : 13,233백만원(세외수입 13,233)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 원 : 6명(김옥래, 송경석, 김주식,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의원)
  - ○위원장 : 김옥래의원, 간사 : 장세선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 고 자 : 강성채 대표

■ 질 의 자 : 2명(김주식, 송인숙의원)
■ 질의건수 : 3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인숙의원, 최설희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6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6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3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2,436백만원(기정예산 385,060 ⇒ 407,496)
• 일반회계 : 22,588백만원(기정예산 365,646 ⇒ 388,234)
• 특별회계 : △152백만원(기정예산 19,414 ⇒ 19,262)
○일반회계 추가세입 : 22,588백만원
• 의존수입 : 9,355백만원(지방교부세 17,918, 재정보전금 49, 보조금 △8,612)
• 자체수입 : 13,233백만원(세외수입 13,23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에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송달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

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제16조의 1(전자납부 세액공제) 신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 15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 300원 세액공제

○고흥군 군세감면조례 제18조 인용조문 개정

-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도화 발포역사전시체험관 개관에 따라 전시체험시설 이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운영시간

- 이용시간 : 10:00 ~ 18:00
- 휴 관 일 :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관람료

| 구분 | 개 인 | 단체(20인 이상) |
|---|---|---|
| • 청소년 및 일반인 (13세 이상) | 1,000원 | 800원 |
| • 어린이 (7세 이상 ~ 12세이하) | 500원 | 300원 |

○관람료 감면

-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및 65세 이상의 노인
- 고흥군민 및 고흥군 소재 초甦塞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고흥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

○관람제한
-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변상 및 손해배상
- 시설물을 훼손한 때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흥군 물품관리 조례 **준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고흥군민의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제3조(용어의 정의)
-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직업능력교**육,**
-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군민참여교육 등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의거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단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단체

○제4조(경비의 지원)
-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

○제5조 내지 제12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운영)
- 구성 인원수: 12인 이내(의장 부군수)
- 위원구성: 부군수, 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관 관리과장 등

○제13조 내지 제15조(평생학습관 설치 등)
-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해 고흥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효율적 관리

○외래 방문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전시판매 품목은 지역산 농수축산물, 가공품, 관관상품 등(제4조)

○운영위원회는「고흥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법인 연합조직인 고흥군유통(주), 지역농수축협, 영농 · 영어법인, 조직화 생산자단체(제8조, 제9조)

○사용료는「고흥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 부과

○전기료, 상 · 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의 부담(제15조, 제16조, 제19조)

○운영상황 실적은 매월 10일 군수에게 보고(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 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우리군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 법률에 따라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인 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이 삭제되고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과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조항 등이 신설되었으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와 일치시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함

○「기타 용도지구 · 구역의 건폐율에 대하여 일부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와 일치시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1년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7월 1일 오전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7. 1(금) ~ 7. 13(금)〈13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07.01(금)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회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 의사일정<br>1. 제19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br>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br>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br>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10:40 | | ■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

| 위원회별 | 건수 | 해당실과소 |
|---|---|---|
| 총무위 | 1 | 재무과 |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07.02(토) ~ 07.03(일) | 휴회 | ■ 공휴일 |
| 07.04(월) 10:00 | 제2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br>• 기획실 • 주민복지과 • 행정과<br>• 재무과 •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
| 07.05(화) 10:00 | 제3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br>• 문화관광과 • 환경산림과 • 농업축산과<br>• 해양수산과 • 건 설 과 • 방 재 과 |
| 07.06(수) 10:00 | 제4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질의)의 건<br>• 종합민원실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br>•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br>•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br>2. 휴회의 건 |
| 07.07(목) ~ 07.08(금) | 휴회 | ■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 07.09(토) ~ 07.10(일) | 휴회 | ■ 공휴일 |
| 07.11(월) ~ 07.12(화) | 휴회 | ■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결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 |
| 07.13(수) 10:00 | 제5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br>2. 201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 하고, 오전 10시 27분에 산회함.

### 1) 제19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7. 1(금) ~ 7. 13(수)〈13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재무과장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63,573백만원
- 세출결산액 390,235백만원
- 세계잉여금 73,33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3,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31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851백만원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158백만원
- 세출결산액 22,277백만원
- 세계잉여금 4,88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108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4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24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5종 기금의 2010년말 현재총액은 5,988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2,869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506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7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0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448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권 : 20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7,04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19백만원
- 특별회계 3,622백만원

• 채무 : 2010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3,4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1,301백만원
- 특별회계 2,197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17,3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591,931백만원
• 보존재산 733백만원
• 일반재산 124,713백만원

마) 물품결산

2010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87개이며 4,7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65개 4,528백만원
• 신규취득 51개 364백만원
• 매각 · 폐기 29개 164백만원

바) 예비비 : 2010년 예비비 지출액은 4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 6백만원
• 경상북도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군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대책비 445백만원

사) 2010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2010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922,651백만원
• 총 부 채 34,261백만원
• 순 자 산 1,888,390백만원

○2010년말 총자산은 1,922,6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4,234백만원(4.38%)
• 투 자 자 산 14,050백만원(0.73%)
• 일반유형자산 133,274백만원(6.93%)
• 주민편의시설자산 156,048백만원(8.12%)

- 사회기반시설자산 1,531,299백만원(79.65%)
- 기타비유동자산 3,734백만원(0.19%)

○2010년말 총부채는 34,2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636백만원(16.45%)
- 장기차입부채 21,841백만원(63.75%)
- 기타비유동부채 6,784백만원(19.8%)

아) 2010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2010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5,957백만원
- 총 비 용 297,878백만원
- 운영차액 98,078백만원

○2010년말 총 수익은 395,95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1,066백만원(7.85%)
- 정부간이전수익 351,782백만원(88.84%)
- 기 타 수 익 13,108백만원(3.31%)

○2010년말 총 비용은 297,878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610백만원(5.58%)
- 공공질서및안전 1,060백만원(0.36%)
- 교 육 2,949백만원(0.99%)
- 문화및관광 6,118백만원(2.05%)
- 환경보호 12,168백만원(4.08%)
- 사회복지 62,482백만원(20.98%)
- 보 건 5,383백만원(1.81%)
- 농림해양수산 85,999백만원(28.87%)
- 산업.중소기업 1,924백만원(0.65%)
- 수송및교통 7,107백만원(2.39%)
- 국토및지역개발 7,629백만원(2.56%)
- 과학기술 469백만원(0.16%)
- 기 타 87,976백만원(29.53%)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를 실시함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 처리 전반에 대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출석요구기간 : 2011. 07. 04. ~ 07. 06.(3일간)
○출석범위 : 군수,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
■ 주요내용
○위　원 : 6명(배기홍, 송우섭, 박금래, 장세선, 김의규, 최설희의원)
○위원장 : 송우섭의원, 간사 : 최설희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배기홍의원, 김옥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 55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7명(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투자정책과장, 경제유통과장, 문화관광과장)
- 질 의 자 : 10명(김옥래, 송경양, 송우섭, 송경석, 김의규, 김주식, 장세선, 최설희, 송인숙, 신태균의원)
- 질의건수 : 50건

## 라. 제3차 본회의

2011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4시 45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8명(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종합민원실장, 보건소장, 방재과장)
- 질 의 자 : 11명(박금래, 신태균, 김의규, 송우섭, 송인숙, 김주식, 송경석, 장세선, 최설희, 김옥래, 송경양의원)
- 질의건수 : 72건

## 마. 제4차 본회의

2011년 7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오전 10시 13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보 고 자 :** 4명(상하수도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질 의 자 : 9명(장세선, 송경석, 김의규, 신태균, 최설희, 김옥래, 송인숙, 김주식, 송우섭)
■ 질의건수 : 26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시
■ 주요내용 : 2011. 7. 7. ~ 7. 12.(6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바. 제5차 본회의

2011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3분에 산회함.

### 1) 2010 회계연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에 의하여 세입 · 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결산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63,573백만원
• 세출결산액 390,235백만원
• 세계잉여금 73,33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3,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31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851백만원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158백만원
• 세출결산액 22,277백만원
• 세계잉여금 4,88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108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4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24백만원임.

나) 기금결산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5종 기금의 2010년말 현재총액은 5,988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2,869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506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7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0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448백만원

다) 채권 · 채무의 결산

- 채권 : 20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7,04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19백만원
  - 특별회계 3,622백만원
- 채무 : 2010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3,4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1,301백만원
  - 특별회계 2,197백만원

라) 공유재산 결산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17,3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591,931백만원
- 보존재산 733백만원
- 일반재산 124,713백만원

마) 물품결산

2010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87개이며 4,7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65개 4,528백만원
- 신규취득 51개 364백만원
- 매각 · 폐기 29개 164백만원

바) 예비비

2010년 예비비 지출액은 4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 6백만원 경상북도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군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비 445백만원

사) 2010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2010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922,651백만원
- 총 부 채 34,261백만원
- 순 자 산 1,888,390백만원

○ 2010년말 총자산은 1,922,6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4,234백만원(4.38%)
- 투 자 자 산 14,050백만원(0.73%)
- 일반유형자산 133,274백만원(6.93%)
- 주민편의시설자산 156,048백만원(8.12%)
- 사회기반시설자산 1,531,299백만원(79.65%)
- 기타비유동자산 3,734백만원(0.19%)

○2010년말 총부채는 34,2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636백만원(16.45%)
- 장기차입부채 21,841백만원(63.75%)
- 기타비유동부채 6,784백만원(19.8%)

아) 2010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2010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5,957백만원
- 총 비 용 297,878백만원
- 운영차액 98,078백만원

○ 2010년말 총 수익은 395,95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1,066백만원(7.85%)
- 정부간이전수익 351,782백만원(88.84%)
- 기 타 수 익 13,108백만원(3.31%)

○2010년말 총 비용은 297,878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610백만원(5.58%)
- 공공질서및안전 1,060백만원(0.36%)
- 교 육 2,949백만원(0.99%)
- 문화및관광 6,118백만원(2.05%)
- 환경보호 12,168백만원(4.08%)
- 사회복지 62,482백만원(20.98%)
- 보 건 5,383백만원(1.81%)
- 농림해양수산 85,999백만원(28.87%)
- 산업.중소기업 1,924백만원(0.65%)
- 수송및교통 7,107백만원(2.39%)
- 국토및지역개발 7,629백만원(2.56%)
- 과학기술 469백만원(0.16%)
- 기 타 87,976백만원(29.5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 구분 | 건수 | 면 적 | 추정가액 | 비 고 |
|---|---|---|---|---|
| 처분 | 토지 4<br>건물 4 | 686 | 1,860<br>3,305<br>10 | • 과수연구소 리모델링 및 증축<br>(농업기술센터) |
| | | 1,754 | | • 의료시설(금산보건지소 등) 신축<br>(보건소) |
| | | 2,682 | | •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 기부채납<br>(보건소)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3. 제197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9. 6(화) ~ 9. 7(수)〈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09.06(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3</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1</td><td>행정과1, 투자정책과1</td></tr><tr><td>산건위원회</td><td>2</td><td>농업축산과1</td></tr></table></td></tr>
<tr><td>09.07(수)<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br>3.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7분에 산회함.

### 1) 제19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9. 6(화) ~ 9. 7(수)〈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0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2010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간 : 2011. 10. 12.(수) ~ 10. 19.(수)【8일간】
○대상 : 2010년도 군 발주 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시설공사 및민간자본 보조사업
○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조사반편성 : 2개반 16명(의원 12, 공무원 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제의
■ 제안이유 :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석의원, 송우섭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7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리군 한시기구인 [우주항공사업소]의 존속기한(2011.9.30) 만료를 앞두고,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의" 승인이 있어 2011.12.31. 개정 공포된 조례 제2126호의 부칙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우주항공사업소 존속기한 연장

• 기존 : 2009. 10. 1~2011. 9. 30(2년) ⇒ 연장 : 2011. 10. 1~2013. 9. 30(2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의 근거 마련

○오.폐수 배출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의 근거 마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내구연한 증가

■ 주요내용

○동강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폐수등의 배출 및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에 관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각종 농림어업 지원사업이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고 지역특성을 살리는「only one 고흥」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여부가 큰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군차원의선제적인 자체자금 확보가 절대 필요함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고「농림수산식품산업비전 5000」성공 및 목표달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고흥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을변경하여 그 내용을 전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조례 제명 변경 :「고흥군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

○연간 군비 20억원내외 출연으로 2021년까지 200억원 기금 조성(안 제3조)

○신지식 학사농업인, 귀농 · 귀촌인, 수출업체, 의욕 넘치는 고령농업인 등으로 융자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융자지원 이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확대(안 제6조, 제9조, 제10조)

- 이율 : 1~2%(위탁기관 수수료 1% ⇒ 금회 0.5~1%로 조정)
- 상환기간 조정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당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금액 : 개인은 2억원, 법인은 5억원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14. 제198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10. 11(화) ~ 10. 20(목)〈10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10.11(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19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4. 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2</td><td></td></tr><tr><td>운영위원회</td><td>1</td><td>의원발의</td></tr><tr><td>총무위원회</td><td>1</td><td>행정과</td></tr></table></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0.12 ~ 10.19 | 휴 회 | ■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br>• 조사일정에 따라 반별로 실시 |
| 10.20(목) 10:00 | 제2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br>3.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7분에 산회함.

### 1) 제19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8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10. 11(화) ~ 10. 20〈10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인
■ 제안이유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11. 11. 18. ~ 11. 26.【9일간】
○감사범위 : 행정사무 전반
• 감사대상기간 : 2010. 11. 01. ~ 2011. 10. 31.
☞ 사안에 따라 기간 예외 적용할 수 있음

○감사방법 : 수감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기관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등 :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박금래의원, 김주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0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2011. 10. 12.~10. 19.(8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4분에 산회함.

### 1)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의회가 매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간이 공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 날짜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규정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함.(안 제2조 제2항)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규정 수정보완 (안 제9조제4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대상 : 2명

- 권 기 균【(사)과학관과 문화 대표】
- 허 철 무【MD아카데미 원장】

○일시 : 2011. 11. 1(예정)

○공적내용 : 붙임 참조

○사유 :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인사로서 군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이 필요한 자로서 군민의 긍지와 사표로 삼고자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0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송우섭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 등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의 알 권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조사기간 : 2011. 10. 12. ~ 10. 19.【8일간】

○조사대상 : 2010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확 인 반 : 2개반 16명
○지적사항 : 16개 사업장 16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5. 제199회 제2차 정례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19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11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11. 10(목) ~ 12. 16(금)〈37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1.10(목)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 의사일정<br>1. 제19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br>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4. 휴회의 건 |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11.11(금)<br>10:00</td><td>휴회</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6</td><td></td></tr><tr><td>총무위</td><td>3</td><td>기획실1, 행정과1, 재무과1</td></tr><tr><td>산건위</td><td>3</td><td>경제유통과1, 방재과1, 건설과1</td></tr></table></td></tr>
<tr><td>11.12(토)<br>~<br>11.13(일)</td><td>휴회</td><td>■ 공휴일</td></tr>
<tr><td>11.14(월)<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기 획 실 • 주민복지과 • 재 무 과<br>•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br>2. 휴회의 건</td></tr>
<tr><td>11.15(화)</td><td>휴회</td><td>■ 업무보고 자료검토</td></tr>
<tr><td>11.16(수)<br>10:00</td><td>제3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환경산림과 • 농업축산과 • 방 재 과<br>• 농업기술센터 • 보 건 소</td></tr>
<tr><td>11.17(목)<br>10:00</td><td>제4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행정과 • 경제유통과 • 해양수산과<br>• 건 설 과 • 상하수도사업소</td></tr>
<tr><td>11.18(금)<br>10:00</td><td>제5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br>• 투자정책과 • 문화관광과<br>• 종합민원실 • 평생학습사업소<br>2. 휴회의 건</td></tr>
<tr><td>11.19(토)<br>~<br>11.20(일)</td><td>휴회</td><td>■ 공휴일</td></tr>
<tr><td>11.21(월)<br>10:00</td><td>휴회</td><td>■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기 획 실 • 주민복지과 • 방재과<br>• 재 무 과 • 환경산림과 • 문화관광과</td></tr>
<tr><td>11.22(화)<br>10:00</td><td>휴회</td><td>■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행 정 과 • 종합민원실 • 농업축산과<br>• 해양수산과 • 건설과 • 보건소</td></tr>
</table>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1.23(수)<br>10:00 | 휴회 |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투자정책과 • 경제유통과 • 농업기술센터<br>• 상하수도사업소 • 우주항공사업소<br>• 평생학습사업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11.24(목) | 휴회 |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현지확인 |
| 11.25(금) | 휴회 | ■ 수감자료 검토 |
| 11.26(토)<br>~<br>11.27(일) | 휴회 | ■ 공휴일 |
| 11.28(월) | 휴회 |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현지확인 |
| 11.29(화) | 휴회 |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br>• 현지확인 |
| 11.30(수)) | 휴회 | ■ 군정질문 · 답변 자료준비 |
| 12.01(목)<br>10:00 | 제6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군정질문 · 답변의 건 |
| 12.02(금)<br>10:00 | 제7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군정질문 · 답변의 건 |
| 12.03(토)<br>~<br>12.04(일) | 휴회 | ■ 공휴일 |
| 12.05(월)<br>10:00 | 제8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br>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3. 휴회의 건 |
| 11:00 | | ■ 201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12.06(화)<br>~<br>12.09(금) | 휴회 | ■ 201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 12.10(토)<br>~<br>12.11(일) | 휴회 | ■ 공휴일 |
| 12. 12(월)<br>~<br>12. 15(목) | 휴회 | ■ 2012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br>• 실과소 심사 및 계수조정 |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2.16(금)<br>10:00 | 제9차<br>본회의 | ■ 의사일정<br>1.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br>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br>3.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br>6.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7.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8.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br>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4분에 산회함.

### 1) 제19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11. 10(목) ~ 12. 16(금)〈37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흥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 답변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관한 책임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함.
■ 주요내용
○출석요구기간 : 16일간
• 2011. 11. 14. ~ 11. 18.(5일간)
• 2011. 11. 21. ~ 11. 29.(9일간)

• 2011. 12. 01. ~ 12. 02.(2일간)

○출석범위 : 군수, 고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
■ 주요내용 : 2011. 11. 11(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개 회 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임진년 한 해 우리 군 살림살이를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해 오시면서 의정과 군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군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과 군정수행에 쉼 없이 열정을 쏟아 오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로써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착과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제도적 미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운영상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만큼 뿌리내려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군민들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한 의회가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걸맞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대표임을 잊지 마시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군정수행에 충실하여 견제와 균형의 협력관계 속에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3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년도 의정과 군정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군민 중심의 생산적인 살림살이가 짜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절기상 입동이 지나고 겨우살이를 준비해야 할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군민 모두가 겨우살이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시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11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18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 질 의 자 : 11명(송우섭, 송경석, 송인숙, 김주식, 장세선, 김옥래, 신태균, 최설희, 김의규, 배기홍, 박금래의원)
- 질의건수 : 46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의안검토를 위한 상임위 활동
- 주요내용 : 2011. 11. 15(1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라. 제3차 본회의

2011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 11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방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 질 의 자 : 10명(송경양, 김의규, 송인숙, 송우섭, 신태균, 송경석, 김옥래, 장세선, 최설희, 박금래의원)
- 질의건수 : 42건

## 마. 제4차 본회의

2011년 11월 17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 21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5명(행정과장, 경재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 질 의 자 : 10명(송경석, 최설희, 김의규, 송경양, 송우섭, 신태균, 김주식, 김옥래, 송인숙, 장세선의원)
- 질의건수 : 39건

## 바. 제5차 본회의

2011년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2시 27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 고 자 : 4명(투자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실장, 평생학습사업소장)
- 질 의 자 : 9명(송우섭, 김옥래, 최설희, 장세선, 송경양, 김주식, 김의규, 송인숙, 송경석의원)
- 질의건수 : 28건

### 2)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주요내용 : 2011. 11. 19. ~ 11. 30.(12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사. 제6차 본회의

2011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4시 51분에 산회함.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질 문 자 : 5명(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박금래의원, 송경양의원, 최설희의원)
- 답 변 자 : 7명(군수, 경제유통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 질문건수 : 21건

## 아. 제7차 본회의

2011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 4시 28분에 산회함.

###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질 문 자 : 5명(김주식의원, 김의규의원, 송우섭의원, 장세선의원, 송인숙의원)
- 답 변 자 : 5명(부군수, 보건소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유통과장)
- 질문건수 : 15건

## 자. 제8차 본회의

201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25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보 고 자 : 고흥군수
- 주요내용 : 별지참조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위　원 : 6명(배기홍, 송우섭, 박금래, 장세선, 김의규, 최설희의원)
  - ○위원장 : 송우섭의원, 간사 : 최설희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1. 12. 6. ~ 12. 15.(10일간)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시 정 연 설(군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4기 고흥군수로 취임하면서 '높게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하이고흥, 해피 고흥을 만들겠다'고 군민 여러분께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은 민선 5기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지일관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심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의 시작과 더불어 800여 공직자와 함께 고흥 발전과 군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과 '으뜸행정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방재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되었고, '전라남도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우수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군정의 많은 분야에서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금자탑들이 '객관적 사실'로 나타나듯이, 올해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알차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다섯 개 업체의 입주로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고흥 조선타운」과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은 시장경기의 불확실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억제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타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반면에, 「고흥청정식품단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업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흥 신세계 리조트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 임해수련원」도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연수원은 부지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말이면 대규모 숙박시설이 완비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73% 해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구역」육지부를 40%까지 대폭 해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입지 구축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최첨단 장비를 비치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단체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등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클러스터」구축은 눈물과 땀의 도전으로 착실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확장」,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설치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조기실현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 유통의 활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미역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됐고, 고흥 쌀이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친환경 무상급식 품평회에서 최고의 고품질 친환경 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흥 초입지에는 우리 군 관광과 농수특산물을 알리는 「고흥 만남의 광장」이 개장되

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풀어주는 수단은 '공모사업 유치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그래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도화 거점면 종합개발사업」과 「도덕 오마권역 농촌정비사업」은 각각 70억 원과 3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원예브랜드 사업」,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등에 선정되어 3년 연속 공모사업 유치 100억 원 돌파라는 '신기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녹색 부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년 10월 개소한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연구소'는 고부가 바이오 물질 추출에 성공하여 국내외 신약 개발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분야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 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한 '2011 대한민국 문화관광 혁신 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요지'가 10여 년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사적'으로 최종 확정되어 「운대 도예촌」 조성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고흥 우주과학 생태체험전」은 '새로운 축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흥 선정머드림픽」은 처음 개최하는 축제임에도 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일본국 가시마시 관계자는 첫 회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 고흥군민의 넘치는 에너지와 역동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축제문화를 더욱 정제하고 개발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된 스포츠 인프라와 함께, 「김일 기념체육관」까지 준공되면서, 스포츠 강군의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 거금 생태숲」, 「거금도 연도교」와 함께 국내 최고의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인 고흥 관광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은 더욱 내실을 기하면서,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발굴과 간부

공무원 결연봉사활동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기금도 100억 원 목표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민선 4기부터 추진 중인 영어경시대회를 통한 해외연수,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 등은 성공적으로 착근되어 타 시군의 정책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을 자아냈던 「고흥읍 지하 우회배수로」는 2007년 태풍 '나리' 때보다 훨씬 많은 341mm의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전무하였습니다.

이는 당장의 문제해결이나 실익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소신 있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소중한 사례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은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써 대내외 환경은 내일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은다면 고흥발전은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소원이면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미 '투자유치의 불'은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얼어붙은 '기업 투자의 문'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조감도'가 멋진 건물, 공장으로 실체화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먼저, 「고흥 청정식품단지」는 조기 투자 실현과 함께, 제2단지도 착수하여 국내 최고의 식료품 전문 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고흥 조선타운은 실수요기업 투자 협약을 추진하고,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2단계 확장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투자협의 중인 기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투자대상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흥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상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고흥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가치를 높혀 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그친 나로호 발사가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한 번 고흥으로 집중됩니다.

더욱이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우주발사 전망대」까지 완공을 앞두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호기를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기 실현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으로,「고흥과학로켓개발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나로우주공원」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6개 사업은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바이오물질 추출 성공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은 시험생산에 돌입하고,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개방과 경쟁의 상징인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 · 어업 현실에 '적응'하고 '변화'하여야만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전체 농 · 림 · 어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민관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비전 5000' 전담팀도 구성하였습니다.

철저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은 중장기 프로젝트로써 단계적 · 연차적 계획에 따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500만 관광객 시대에 부응하는 '명품 테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는 103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고흥 관광'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

는 다양한 관광객 유인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 제주도와 우리 군간 쾌속선 취항을 위하여 접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 9미 10경 관광지 조성과 「남열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각종 섬 개발 사업 등은 계획대로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우리 군 체험형 관광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흥우주항공 축제」는 새로운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여 전국 최고의 축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고흥 선정 머드림픽」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강점은 극대화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주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고흥-여수 간 연륙 · 연도교」, 「고흥 나들목 설치」, 「녹동항 정비」 등은 예산확보가 관건인 만큼,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480억 원을 확보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본격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고흥읍 소도읍 육성」,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 등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하고 건강한 군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나눔의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하여 응급안전 돌보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 경로당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설과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냉방에서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취 · 창업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도 전개해 나가면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더욱 내실화하고, 자립생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친절하고 질 좋은 보건 · 의료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인재육성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교육발전기금 목표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이 군민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신적인 성숙' 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느끼시겠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뒷전이고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새마을 운동'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쳐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종합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짐대회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과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적입니다.

오로지 지역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예산안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 증가한 39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767억 원, 특별회계는 199억 원으로 각각 3%와 2.6%가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유치와 문화 관광 등에 231억 원, 지역인프라 확충 등에 541억 원,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1236억 원, 사회복지 향상 등에 714억 원, 환경개선 및 보건증진 등에 379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은 민선 5기 사업들이 군정방향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타당성 지수 매뉴얼'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주민 의견조사와 군민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같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저비용 · 고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비롯하여 정주여건, 복지, 교육, 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로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고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출 수도 없습니다.

'더 큰 도전'과 '성공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무한질주의 해'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고흥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라는 신념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거침이 없다면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올 것이며, 알찬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생에 몇 번은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감히 끌 수 없는 불!

가슴이 너무 뜨거워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불!**

그런 불이 우리들의 가슴에도 붙어, 고흥 성공의 희망찬 횃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1. 12. 5.

**고흥군수 박 병 종**

## 차. 제9차 본회의

2011년 12월 16일 오전 9시 20분에 개의하여 9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9시 54분에 산회함.

###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총규모 : 396,627백만원('11당초예산 385,060백만원의 3.0% 증 )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11당초예산 365,646백만원의 3.0% 증)

(단위 : 천원)

| 세 입 (재정자립도 : 8.1%) | 세 출 성질별) |
|---|---|
| • 자체수입 : 30,358백만원(8.1%)<br>– 지 방 세 : 15,100백만원(4.0%)<br>– 세외수입 : 15,258백만원(4.1%)<br><br>• 의존수입 : 346,333백만원(91.9%)<br>– 지방교부세 : 193,566백만원(51.4%)<br>– 보 조 금 : 149,767백만원(39.7%)<br>–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 0.8%) | • 일반공공행정 : 23,558백만원( 6.3%)<br>• 공공질서 및안전 : 2,986백만원( 0.8%)<br>• 교 육 : 2,965백만원( 0.8%)<br>• 문화 및 관광 : 19,958백만원( 5.3%)<br>• 환 경 보 호 : 27,326백만원( 7.3%)<br>• 사 회 복 지 : 66,432백만원(17.6%)<br>• 보 건 : 6,870백만원( 1.8%)<br>• 농림해양수산 : 111,790백만원(29.7%)<br>• 산업·중소기업 : 2,657백만원( 0.7%)<br>• 수 송 및 교 통 : 11,070백만원( 2.9%)<br>• 국토및지역개발 : 38,987백만원(10.3%)<br>• 예 비 비 : 3,767백만원( 1.0%)<br>• 기 타 : 58,325백만원(15.5%) |

• 특별회계(10개) : 19,936백만원('11당초예산 19,414백만원의 2.7% 증)

◆ 기 금(6개) : 9,021백만원('11 당초예산 7,767만원의 16.1% 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 기 금 명 | '11년도 말 현재액 ⓐ | '12년도 기금운용계획 | | 12년도 말 현 재 액 ⓓ = ⓐ + ⓑ - ⓒ | 증△ 감 ⓓ - ⓐ |
|---|---|---|---|---|---|
| | | 수입ⓑ | 지출 ⓒ | | |
| 6건 | 7,533,289 | 3,401,769 | 401,966 | 10,533,092 | 2,999,803 |
| 사회복지기금 | 3,099,942 | 296,440 | 40,000 | 3,356,382 | 256,440 |
| 신청사건립기금 | 1,029,000 | 2,598,750 | - | 3,627,750 | 2,598,750 |
| 재활용품 판매 대금기금 | 134,821 | 145,617 | 161,966 | 118,472 | △16,349 |
| 재난관리기금 | 1,601,068 | 199,261 | 140,000 | 1,660,329 | 59,261 |
| 식품진흥기금 | 60,149 | 4,620 | - | 64,769 | 4,620 |
| 체육진흥기금 | 1,608,309 | 157,081 | 60,000 | 1,705,390 | 97,081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결정 행위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군정평기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 군정 주요업무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군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위원장을 포함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 위원 자격 : 군정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군민복지, 문화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9급으로의 정원상향 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추진코자 함.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하고, 신규충원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렬간 또는 동일직렬내 정원의 조정코자 함.

■ 주요내용

○총괄 정원조정 내역(정원관리 기관별)

| 구 분 | 계 | 본청 | 의회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조정 전 | 748 | 251 | 14 | 141 | 54 | 288 |
| 조정 후 | 755 | 258 | | 141 | 54 | 288 |
| 증감 | 7 | 7 | - | - | - | - |

※ 증원분 7명은 사회복지직(주민복지과) 신규충원

○세부조정내역 – 일반직 (증원 15명)

| 구분 | 9급 (행정) | 9급 (행정+세무) | 9급 (행정+사회복지) | 9급 (행정+농업) | 9급 (행정+시설) | 8급 (행정) | 8급 (행정+세무) | 8급 (행정+사회복지) | 7급 (행정+사회복지) | 7급 (행정+농업) |
|---|---|---|---|---|---|---|---|---|---|---|
| 당초 정원 | 1 | 6 | 15 | 6 | 3 | 7 | 14 | 7 | 8 | 36 |
| 변경 정원 | 2 | 7 | 17 | 7 | 5 | | 15 | 9 | 11 | 37 |
| 증감 | 1 | 1 | 2 | 1 | 2 | 1 | 1 | 2 | 3 | 1 |

※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증원 9명(7급 1, 8급 2, 9급 6), 사회복지직렬 확충 증원 7명(7급 3, 8급 2, 9급 2), 일반직에서 연구직 이관 감원 1명(9급 1)

○세부조정내역 – 기능직 (감원 9명)

| 구분 | 기능10급 사무-조무 | 기능10급 (전화상담) | 기능10급 (사무) | 기능10급 (운전) | 기능9급 (사무+조무) | 기능9급 (전화상담) | 기능9급 (사무) | 기능9급 (운전) | 기능8급 (사무+조무) | 기능8급 (사무) | 기능7급 (사무) | 기능7급 (운전) |
|---|---|---|---|---|---|---|---|---|---|---|---|---|
| 당초 정원 | 4 | 2 | 14 | 4 | 2 | - | 16 | 20 | 2 | 4 | 1 | 3 |
| 변경 정원 | - | - | 6 | 1 | 5 | | 18 | 22 | 3 | 2 | - | 4 |
| 증감 | △4 | △2 | △8 | △3 | 3 | 2 | 2 | 2 | 1 | △2 | △1 | 1 |

※ 기능10급 기능9급 상향 13명(운전2, 사무 10, 조무 1), 동일직렬내 직급조정 3명(전화상담 2, 운전1),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감원 9명(10급 1, 9급 5, 8급 2, 7급 1)

○세부조정내역 – 연구 · 지도직 (증원 1명)

| 구분 |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농업연구사(작물+원예) | 농업지도사(농업+농촌생활) |
|---|---|---|---|
| 당초정원 | - | 1 | 30 |
| 변경정원 | 1 | 2 | 29 |
| 증감 | 1 | 1 | △ 1 |

※ 연구직 신규충원 및 보강 증원 2명(기록연구사 1, 농업연구사 1),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이관 감원 1명(농촌지도사 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 구분 | 건수 | 면 적 | 추정가액 | 비 고 |
|---|---|---|---|---|
| 취득 | 3 | 토지 9,415<br>건물 4,600 | 2,700 | •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br>(환경산림과) |
| | | 건물 732 | 3,305 | •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br>(환경산림과) |
| | | 토지 1,031<br>건물 1,024 | 1,854 |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br>(보건소) |
| 처분 | 3 | 토지 11,764 | 40 | • 일반회계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br>(재무과)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제1항 개정에 따라 우리군 전통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지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6.27일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기금 적립비율 및 사용용도 등의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기금 법정적립액 비율 하향 조정(안 제3조)

- 기금 법정적립액을 당초 30%에서 15 %로 하향 조정

○기금 사용용도 추가(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2항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근거 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7조)

-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조항 변경

○기존「지방재정법」조항 삭제에 따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적용 (안 제9조 및 제14조)

- 「지방재정법」조항 삭제로 조례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조항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자연을 접하게 하여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지 · 덕 · 체 를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며 하나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각종 연수, 회의, 수련,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역량을 제고함

○이에, 산과 바다에서 펼쳐지는 임해수련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교육력과 복지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에 청소년수련원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청소년수련원)으로 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합계 | | 799,931,389.8 | - | 799,931,389.8 | 100.00 |
| 주거지역 | 소 계 | 3,442,498 | - | 3,442,498 | 0.4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585 | - | 4,585 | 0.00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73,358 | - | 2,373,358 | 0.3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84,368 | - | 884,368 | 0.1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4,210 | - | 44,210 | 0.01 |
| | 준주거지역 | 135,977 | | 135,977 | 0.02 |
| 상업지역 | 소계 | 551,674 | - | 551,674 | 0.07 |
| | 일반상업지역 | 551,674 | - | 551,674 | 0.07 |
| 공업지역 | 소 계 | 529,649 | - | 529,649 | 0.07 |
| | 일반공업지역 | 31,310 | - | 31,310 | 0.00 |
| | 준공업지역 | 498,339 | - | 498,339 | 0.06 |
| 도시지역 미세분 | | 656,035.6 | - | 656,035.6 | 0.08 |
| 녹지지역 | 소 계 | 23,173,688 | - | 23,173,688 | 2.90 |
| | 보전녹지지역 | 720,445 | - | 720,445 | 0.09 |
| | 생산녹지지역 | 3,951,429 | - | 3,951,429 | 0.49 |
| | 자연녹지지역 | 18,501,814 | - | 18,501,814 | 2.31 |
| 관리지역 | 소 계 | 200,628,168.9 | 증) 99,002 | 200,727,170.9 | 25.09 |
| | 보전관리지역 | 52,336,712.3 | - | 52,336,712.3 | 6.54 |
| | 생산관리지역 | 62,577,210.5 | 감) 3,346 | 62,573,864.5 | 7.82 |
| | 계획관리지역 | 85,714,246.1 | 증) 102,348 | 85,816,592.1 | 10.73 |
| 농림지역 | | 408,162,144.5 | 감) 59,459 | 408,102,685.5 | 51.02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133,107,555.0 | 감) 39,543 | 133,068,012.0 | 16.63 |
| 미지정지역 | | 29,679,976.8 | - | 29,679,976.8 | 3.71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 상황 등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 등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11. 11. 21. ~ 11. 29.【9일간】

○감사범위 : 행정사무 전반(감사대상기간 : 2010. 11. 01. ~ 2011. 10. 30.)

○감사방법 : 본회의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감사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주요 지적사항 : 21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6. 제200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1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1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1. 12.20(화) ~ 12.23(금)〈4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12.20(화) 10:00 | 제1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제2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br>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br>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5. 휴회의 건 |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6</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행정1, 문화체육2</td></tr><tr><td>산건위원회</td><td>3</td><td>건설3</td></tr></table></td></tr>
<tr><td>13:30</td><td></td><td>■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r>
<tr><td>12.21(수)</td><td>휴 회</td><td>■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r>
<tr><td>12.22(목)</td><td>휴 회</td><td>■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사<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td></tr>
<tr><td>12.23(금)<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 사 일 정<br>1.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br>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3.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고흥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br>5. 군 관리계획(도화당오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 의견청취의 건<br>6. 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 변경 등) 결정 · 변경 의견청취의 건<br>7. 군 관리계획(포스코패밀리수련원조성) 결정 · 변경 의견청취의 건</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1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5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5분에 산회함.

### 1) 제2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0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1. 12. 20(화) ~ 12. 23(금)〈4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보 고 자 : 기획실장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15,658백만원(기정예산 407,496 ⇒ 423,154)

- 일반회계 : 15,671백만원(기정예산 388,234 ⇒ 403,905)
- 특별회계 : △13백만원(기정예산 19,262 ⇒ 19,249)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671백만원

- 자체수입 : △2,697백만원(지방세 △1,920, 세외수입 △777)
- 의존수입 : 18,368백만원(지방교부세 9,902 , 재정보전금 16, 보조금 8,450 )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위 원 : 배기홍, 송우섭, 박금래, 장세선, 김의규, 최설희의원

○위원장 : 송우섭의원

○간 사 : 최설희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내용 : 2011. 12. 21.~ 12. 22(2일간)까지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1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6분에 산회함.

### 1)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도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15,658백만원(기정예산 407,496 ⇒ 423,154)

- 일반회계 : 15,671백만원(기정예산 388,234 ⇒ 403,905)
- 특별회계 : △13백만원(기정예산 19,262 ⇒ 19,249)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671백만원

- 자체수입 : △2,697백만원(지방세 △1,920, 세외수입 △777)
- 의존수입 : 18,368백만원(지방교부세 9,902 , 재정보전금 16, 보조금 8,450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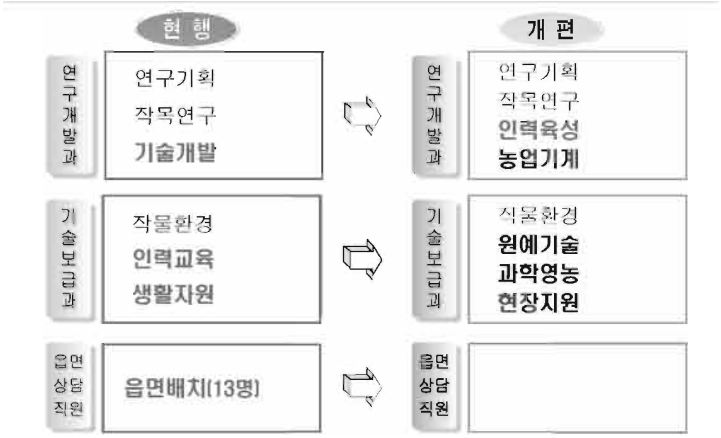
### 2) 고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와「강소농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조직의 기능과 인력의 전환 · 재배치하고자함

■ 주요내용

○조직개편(안) : 2과 8담당



※ 폐지 3(기술개발, 생활자원, 읍면상담직원), 명칭변경 1(인력육성),
신설 4(농업기계, 원예기술, 과학영농, 현장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김일선생을 추모하고 지역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김일기념체육관이 건립되어 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사용기준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김일기념체육관을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하고 사용료 및 허가 기준 명시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김일체육관 사용료 기준 명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역 자원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행정 ·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스포츠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안 제4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안 제6조~제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한 9인 이내
- 위 원 : 군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임 기 : 2년(연임가능)
- 기 능

–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전지훈련 시설 운영 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각종 스포츠 대회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군 관리계획(도화당오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2010년 02월 05일(전라남도 고시 제2010-28호)에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으며,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정비, 건축기준의 제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증대되고 도시이미지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당오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등의 건축물에 제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고흥군 도화면 당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함.

■ 주요내용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
| 합계 | 858,006 | - | 858,006 | |
| 계획관리지역 | 858,006 | - | 858,006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
| 합계 | 858,006 | - | 858,006 | |
| 당오개발진흥지구 | 858,006 | - | 858,00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구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비고 |
|---|---|---|---|---|
| 합계 | 858,006 | - | 858,006 | |
| 당오지구 | 858,006 | - | 858,006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변경 등)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 그리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의 미세분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

○지역여건 및 관리지역 세분 전에 기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리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 등을 검토

○고흥군의 성장과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 합리적인 고흥군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 면적 : 776.30㎢(읍-2개소, 면-14개소)
- 관리계획구역 면적 : 799.9㎢(도시지역:28.3㎢, 비도시지역:741.9㎢, 미지정:29.7㎢)
- 관리지역세분·변경 면적 : 23.7㎢(농업진흥지역7.0㎢, 보전산지0.2㎢, 국립공원16.5㎢)

○시간적 범위

- 계획기준년도 : 2011년
- 계획목표년도 : 2015년

○내용적 범위

- 관리지역 세분(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 지역)
-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변경(자연취락지구)
- 군계획시설 변경(도로, 주차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군 관리계획(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포스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 및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외 활동시설이 취약하여 연간 포스코 주관 110회(3,000명), 패밀리사 주관 38회(1,400명) 등의 교육 및 휴양활동을 사외시설을 임차하여 교육하고 있음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전면에 해안 전망이 우수한 지형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나로도 우주발사대 및 전망대, 청소년우주체험센터, 덕흥리 해수욕장, 팔영산 등 단체 교육 및 휴양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우수함

○따라서 동반성장, 사랑받는 기업 포스코 패밀리의 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계획의 입안)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 함.

■ 주요내용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관리 지역 | 계획관리지역 | - | 증) 44,592 | 44,592 | 100.0 |
| | 보전관리지역 | 9,048 | 감) 9,048 | | - |
| 농림지역 | | 35,544 | 감) 35,544 | - | - |

• 결정 변경사유서

|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 사유 |
|---|---|---|---|---|---|---|
| | | 기 정 | 변 경 | | | |
| 1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보전관리 지 역 | 계획관리 지 역 | 9,048 | 200 |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
| 2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 지 역 | 35,544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 적(㎡) | | |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1 | 덕흥 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 | - | 증) 44,592 | 44,592 |

• 결정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덕흥 지구 | ○ 신설<br>○ 특정개발진흥지구, 44,592㎡<br>○ 동일면 덕흥리 산1임 일원 | ○ 수련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1 |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 | - | 증) 44,592 | 44,592 | - |

• 결정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1 | 제2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 ○ 신설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br>○ 위치 : 고흥군 도화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br>○ 면적 : 44,592㎡ | ○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의 계획적·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 합 계 | 44,592 | 100.0 | |
| 공공시설용지 | 2,820 | 6.3 | |
| 도로 | 1,380 | 3.1 | ○ L=145m, B=8.0m |
| 주차장 | 1,440 | 3.2 | |
| 오수처리장 | 176 | - | ○ 지하 |
| 수 련 시 설 용 지 | 8,830 | 19.8 | |
| 수련원 | 6,175 | 13.8 | ○ 건축연면적 4,786㎡ |
| 쉼터 | 525 | 1.2 | ○ 파고라 |
| 운동시설 | 1,380 | 3.1 | |
| 헬리포터 | 750 | 1.7 | |
| 녹지시설용지 | 32,942 | 73.9 | |
| 녹지 | 32,942 | 73.9 | ○ 원지형 녹지 포함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신설 | 소로 | 2 | 1 | 8 | 집산도로 | 145 | 산7-3임 | 수련원 | 일반도로 | |

• 결정 변경사유서

| 변경전 | 변경후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
| 1 | 소로 2-1 | ○신설, B=8.0m, L=145m | ○ 교통체계 확보를 위한 내부도로의 신설 |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① | 주차장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 | 증)1,440 | 1,440 | |

• 결정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
| ① | 주 차 장 | 신설, 1,440㎡ | 수련원 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 |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
|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① | 하수종말 처리장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 | 증)176 | 176 | |

• 결정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하수종말처리장 | 신설 176㎡ |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 | 세부시설 | 획 지 | | |
|---|---|---|---|---|
|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공공시설 | |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1,440 |
| 수련시설 | 수련원 | 2-1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6,175 |
| | 쉼터 | 2-2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525 |
| | 운동시설 | 2-3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1,380 |
| | 헬리포터 | 2-4 | 동일면 덕흥리 산7-4 번지 | 750 |
| 녹지시설 | 원지형녹지 | 3-1 | 동일면 덕흥리 산1임 번지 일원 | 32,942 |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면번호 |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2 | 2-1<br>2-2<br>2-3<br>2-4 | | O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 및 관광휴게시설<br>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 | 건 폐 율 | O 40% 이하 |
| | | 용 적 율 | O 100% 이하 |
| | | 높 이 | O 5층 이하 |
| | | 형태 · 배치 | O 건축물 전면 : 바다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br>O 건축물 지붕 : 경사형 또는 조형 형태의 지붕 |
| | | 색 채 | O 사업지 특성(해안변 연수 및 휴양)과 우주항공산업의 고흥이미지를 고려하여 색채 계획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7. 제201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2월 14일 오전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2. 2. 14(화) ~ 2. 15(수)〈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 rowspan="2">2. 14(화)<br>10:00<br><br>10:3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개 회 식<br>• 개 식<br>• 국민의례<br>– 국기에 대한 경례<br>– 애국가 제창<br>–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br>• 개회사<br>• 폐 식<br><br>■ 의사일정<br>1. 제20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6</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투자정책2, 종합민원1</td></tr><tr><td>산건위원회</td><td>3</td><td>농업축산1, 건설1, 우주항공1</td></tr></table></td></tr>
<tr><td>2. 15(수)<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br>2.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3.고흥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br>4.고흥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5.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6.고흥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7.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관리 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가졌으며,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4분에 산회함.

### 1) 제20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2. 14(화) ~ 2. 15(수)〈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에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 : 2012. 03. 13.(화) ~ 03. 22.(목)【10일간】
  - ○조사대상 : 2011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조 사 반 : 2개반으로 편성운영(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배기홍의원, 최설희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개 회 사(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진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 개회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 의정에 동참하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소망과 각자 이루고자 하는 여망을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가슴에 새겼던 새해벽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기상관측 사상 55년만의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동강 얼음이 풀린다는 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탄하지만 않는 것은 기후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세계금융, 철강, 곡물시장의 대혼란과 이란산 원유의 금수조치, 미국과의 FTA 이행 등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제 경제질서는 험로를 걷고 있으며,

나라 안의 사정을 보면 날이 다르게 느껴지는 소비자 물가의 고공행진, 올 한해에 치루어야 할 양대선거로 인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관련 문제로 지역 내에서 불협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이같이 나라 안팎으로 어떤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지도층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군민들의 검약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만,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는 당면문제의 치유는 지역간 계층간의 화합이 해결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젖고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는 것이 식물의 본성이라면 우리모두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격의없는 대화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진솔한 소통이 가장 올바른 처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의 진정한 뜻을 더 깊고 자세히 헤아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가운데

군민에게는 따뜻함으로 자신에게는 서릿발처럼 엄격하라는 대인춘풍 지기추상의 선인들의 지혜를 올곧게 실천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상하는 용처럼 우리 군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7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2분에 산회함.

### 1)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2년 2월 29일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
■ 주요내용
○위촉대상자 : 송동석 변호사
○위 촉 기 간 : 2012. 3. 1. ~ 2013. 2. 28.(1년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 외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조례 · 규칙에 반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확대 필요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이행, 사후관리 강화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정확한 적용 근거 마련
• 목 적 : 상위 근거 법령을 2개에서 3개 법령으로 확대 적용(안 제1조)
• 정 의 : 4개항에서 14개항으로 세분화하여(안 제2조)
○투자유치 지원단을 설치 ·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투자유치 지원 방안 마련(안 제7조)
• 투자유치지원단 운영방안
•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및 효율적 추진
• 1실과소 1읍면 1기업유치운동 전개 등
○읍면기업유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안 제10조 )
• 위원회의 활동비 지원, 각종 투자관련 정보제공 등을 규정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공 공무원(실과소, 읍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대상, 대상 등을 규정 (안 제12조 ~ 제23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이전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등의 지원범위를 규정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

○투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조항 강화 및 신설 (안 제27조)

•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도록 개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7년 이상 영위 의무 규정 강화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3년이상 유지, 미달시환수조치 규정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안에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심의 처리도록 함에 따라 고흥군 민자유치심의 위원회 운영조례의 존속 이유가 없어짐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부폐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3226호,2011.10.17)에 따른 조례 정비

○정보공개 업무를 해당 기관 주관하에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주요내용

○종합민원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 (안 제11조의 2)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지도 · 지원
-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 **훈련**
-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농림어업 분야 정부지원 사업이 현재는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희망하는 수요자 또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림어업인 누구나 필요자금을 적기에 장기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융자한도 조정(안 제6조 제1항)

-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한 년차별 기금목표 금액이 확보될 경우
  - 융자한도 : 개인 100백만원이하, 생산자단체 300백만원이내
  - 융자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조례 제3조제 3항에 의한 년차별 기금목표 금액이 미 확보될 경우
  - 융자한도 : 개인 50백만원이하, 생산자단체 200백만원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이율 조정 (안 제6조 제1항)

- 대부 년이율 : 융자금액의 2% ⇒ 1%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교통약자(장애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안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콜택시 위 · 수탁에 관한 사항

○장애인콜택시 운영(안 제10조)

- 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 **운행**

○이용대상자 등 명시(안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등

○이용신청 등(안 제12조)

-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

○이용요금(안 제1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고흥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운영 관리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인공위성 발사광경과 다도해경관 조망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우주발**사전** 망대의 운영사항, 입장료, 수입금처리 등을 규정

우주발사전망대를 우주항공 체험시설,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주항공 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안 제4조, 제5조)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 ·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관람객 이용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시설물 훼손 시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편의시설 설치 · 운영 및 권리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8. 제202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2. 3. 12(월) ~ 3. 23(금)〈1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3. 12(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20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3. 휴회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행정과2, 재무과1</td></tr></table></td></tr>
<tr><td>3. 13(화)<br>~<br>3. 14(수)</td><td>휴회</td><td>■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검토</td></tr>
<tr><td>3. 15(목)<br>~<br>3. 22(목)</td><td>휴회</td><td>■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자료검토</td></tr>
<tr><td>3. 23(금)<br>10:00</td><td>제2차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고흥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3. 고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3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5분에 산회함.

### 1) 제20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2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3. 12(화) ~ 3. 23(금)〈1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휴회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 주요내용 : 2012. 3. 13 ~ 3. 22(10일간)까지 본회의 휴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3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12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군민의 상시상부문을 기존 4개(교육문화, 체육활동, 사회복지, 산업경제)를 2개(교육문화 · 체육, 사회복지 · 산업)로 축소 통합하여 수상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상부문 축소 통합 (4개 부문 2개 부문)
  - ○개정전 : 교육문화, 체육활동, 사회복지, 산업경제
  - ○개정후 : 교육문화 · 체육, 사회복지 · 산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산되는 명예훼손 관련 게시자료 관리에 있어 관리부서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자료를 판단하여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및 삭제 처리 기준 마련 (안 제7조 2항)

-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시자료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항에 근거하여 이해당사자가 별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삭제요청을 한 경우" 삭제 가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2.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의 법령이관을 반영하고, 일몰법에 의한 적용시한을 개정함으로써 군세 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농수산물 지방공사 감면 규정 신설(안 제3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공사 재산세 면제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안 제2조)

– 감면 대상자 명확화 및 확대(외국인 및 재혼 배우자 포함),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 세분화(안 제10조)

–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재산세 100분의 75 경감

–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재산세 면제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재산세 100분의 75 경감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구 제3조) 이관(삭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5조) 이관(개정)

○ 종교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규정 신설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9조) 이관(개정)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1조) 이관(개정)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12조) 이관(개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구 제15조) 이관(삭제)
○일몰법에 의한 부칙 개정
– 적용시한 2014. 12. 31 (개정전 : 2011. 12. 3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제 안 자 : 김주식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제202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주요내용
○조사기간 : 2012. 03. 13. ~ 03. 22.【10일간】
○조사대상 : 2011년도 읍면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조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확 인 반 : 2개반 16명
○지적사항 : 5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19. 제203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2년 4월 24일(화) ~ 4월 25일(수)〈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4. 24(화)<br>10:00</td><td rowspan="2">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2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br>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10:30</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대상실과소</th></tr><tr><td>계</td><td>4</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3</td><td>재무과1, 문화관광과1, 보건소1</td></tr><tr><td>산건위원회</td><td>1</td><td>방재과</td></tr></table></td></tr>
<tr><td>4. 25(수)<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br>2.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br>3.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br>4. 고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3분에 산회함.

### 1) 제203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4. 24(화) ~ 4. 25(수)〈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우섭의원, 박금래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 9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시호도 원시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고흥군 테마의 섬 개발계획에 의거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한 시호도 원시체험시설의 운영사항, 입장료, 위탁운영 등을 규정
○원시체험시설을 고흥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관광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 주요내용
○운영 및 관리 (안 제4조)
○운영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10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21조)
○지도감독 사항 (안 제22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2)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한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함.

■ 주요내용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안 제2조)

-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
-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안 제4조)

-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 개축 건의
-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재정 (안 제10조)

- 회원의 회비,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
-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2012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

■ 주요내용

(단위 : ㎡, 백만원)

| 구분 | 재산 | 건수 | 사업내용 | 면적 | 추가정액 | 비 고 |
|---|---|---|---|---|---|---|
| 취득 | 건물 | 1 |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 2,000 | 4,260 | • 계획 변경<br>- 사업비 24억 증액<br>- 리모델링 · 증축 신축 |
| | 토지 | 1 | 특화작목연구단지 토지매입 | 20,670 | 512 | • 풍양면 율치리 1504 등 16필지 취득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0. 제204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5월 24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2. 5. 24(목) ~ 5. 25(금)〈2일간〉

<table>
<tr><th>일시</th><th>차 수</th><th>안 건</th></tr>
<tr><td>5.24(목)<br>10:00</td><td>제1차<br>본회의</td><td>■ 의사일정<br>1. 제20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td></tr>
<tr><td rowspan="2">10:30</td><td></td><td>■ 상임위원회 의안심사<br><table><tr><th>위원회별</th><th>건수</th><th>비 고</th></tr><tr><td>계</td><td>8</td><td></td></tr><tr><td>총무위원회</td><td>7</td><td>기획실3, 행정과3, 재무과1</td></tr><tr><td>산건위원회</td><td>1</td><td>경제유통과1</td></tr></table></td></tr>
<tr><td>5.25(금)<br>10:00</td><td>제2차<br>본회의</td><td>■ 의 사 일 정<br>1.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2. 고흥군 참고흥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r>3. 고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5.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6. 고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br>8. 고흥군 유자공원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r>
</table>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5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3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5분에 산회함.

### 1) 제20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5. 24(목) ~ 5. 25(금)〈2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구성
- 주요내용
  ○위　　원 : 5명(송경양의원, 강재민교수, 박영인세무사, 이용훈세무사, 김임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다. 제2차 본회의

2012년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8건의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전 10시16분에 산회함.

### 1)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군정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군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화합과 소통의 참여 행정 실현

○고흥군의 주요정책의 입안 및 군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안 제2조)

• 군정의 발전방향 및 비전제시
•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 중요 정책결정 사항
•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자격

–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군민복지, 문화예술, 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고흥군 참고흥새마을정신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은 불법 주 · 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범 군민 지역혁신 운동으로, 더욱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추진상 문제점 및 발전적 대안 제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운영함으로써 본 운동의 효율적 ·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추진분위기 조성을 통해 진정한 범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민간추진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

-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범군민 확산을 위한 발전 대안 제시 및 의견제출
- 분기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범군민 참여 유도
- 읍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기타 제반사항 협의 등

○민간추진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 협의회장과 고문 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 위원 자격

–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4대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장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 실천 의지가 있는 사람
–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읍면 단위 민간추진협의회장
– 고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거동이 불편한 오 · 벽지 주민의 순회 방문진료 요구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관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진료소 및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보건진료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할구역을 일부 개정코자 함.

○사업소 · 출장소의 새주소 일부변경

■ 주요내용

○보건소 · 보건진료소 새주소 및 관할구역 일부변경

- 포두 옥강 보건진료소 : 옥강리, 세동리 ⇒ 옥강리, 세동리, 차동리
- 대서 신기 보건진료소 : 안남리 ⇒ 안남리, 송림리
- 보건소 · 보건지소 새주소 일괄변경

○사업소 · 출장소의 새주소를 [별표 2], [별표 3]과 같이 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4)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고흥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2차)을 위한 정원 조정에 따른 조례일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9급으로의 정원 상향조정

■ 주요내용

○별정직(정원 27명) ⇒ 별정직(감원 26명)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대상자 26명 → 일반직 정원 편입

| 구분 | 기관별 /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당초 | 별정직 | 27 | | | 27 | | |
| 변경 | 별정직 | 1 | | | 1 | | |
| 증감 | | △26 | | | △26 | | |

○기능직(정원 103명) ⇒ 기능직(감원 9명)

▶ 기능직(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대상자 9명 → 일반직 정원 편입

| 구분 | 기관별 /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당초 | 기능직 | 103 | 42 | 4 | 8 | 11 | 38 |
| 변경 | 기능직 | 94 | 37 | | 8 | 11 | 34 |
| 증감 | | △9 | △5 | | | | △4 |

○6급이하 일반직(정원 550명 ⇨ 585명 변경) 증 35명

▶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26명 + 기능직 일반직 전환 9명 = 총35명

| 구분 | 기관별 /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
| 당초 | 6급이하 일반직 | 550 | 200 | 7 | 70 | 39 | 234 |
| 변경 | 6급이하 일반직 | 585 | | 7 | 96 | 39 | 238 |
| 증감 | | 35 | 5 | | 26 | | 4 |

○기능직 비율 조정(10급 폐지) ⇒ 기능 9급(5% 증)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 2012. 5. 23.

| 구분 | 기관별 / 직급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
| 당초 | 비율 | 6% 이내 | 15% 이내 | 22% 이내 | 52% 이내 | 5% 이상 |
| 변경 | | 6% 이내 | | 22% 이내 | 57% 이상 | 폐지 |
| 증감 | | | | | 5% 증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고흥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고흥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와 관련,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코자 함.

■ 주요내용

○고흥군청 및 읍면사무소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

| 현 행 | | 개 정 안 |
|---|---|---|
| 군·읍·면 명 | 소 재 지 | 소 재 지 |
| 고흥군청 |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00-2 |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
| 고흥읍 |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7-3 |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1 |
| 도양읍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699-23 |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14 |
| 풍양면 |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515-4 | 고흥군 풍양면 풍양로 5 |
| 도덕면 |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41 | 고흥군 도덕면 고흥로 499 |
| 금산면 |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672-1 | 고흥군 금산면 거금중앙길 84 |
| 도화면 |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10 | 고흥군 도화면 오치길 37 |
| 포두면 |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296-1 |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597 |
| 봉래면 |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878-146 |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16 |
| 동일면 |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808-4 | 고흥군 동일면 양화길 8 |
| 점암면 | 고흥군 점암면 모룡리 796-3 | 고흥군 점암면 모룡길 48 |
| 영남면 |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511-4 | 고흥군 영남면 해맞이로 10 |
| 과역면 |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04-7 | 고흥군 과역면 송학큰길 52 |
| 남양면 |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520-1 | 고흥군 남양면 남양희망길 19 |
| 동강면 |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194-8 | 고흥군 동강면 서민호길 9 |
| 대서면 | 고흥군 대서면 금마리 22-5 | 고흥군 대서면 동서로 464 |
| 두원면 |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780-1 | 고흥군 두원면 두원로 480-1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6) 고흥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2.3.15일자로 한미 FTA협상이 발효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하고 부과의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함.

■ 주요내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안 제24조 제1호의 **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 비영업용 | | 비영업용 | |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배기량 | 시시당세액 |
| 8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80원 |
| 1,000cc이하 | 100원 | | |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40원 |
| 2,000cc이하 | 200원 | 1,600cc**초과** | **200원** |
| 2,000cc초과 | 220원 | |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7)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행정협의회 구성

-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남도 남해군의 각 자치단체장으로 구성

○특별회원 위촉 :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되 의결권은 없음

○의결사항
- 협의회의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경비부담 : 경비 지출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보고

○사무의 인계인수
-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차기 회장에게 인계 · 인수하여야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고흥군 유자공원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농수특산물 및 향토음식 판매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우리군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내방객 편의제**공**

■ 주요내용

○지역 농수특산물 및 향토음식 전시판매 운영 근거 마련(안 제1조, 제4조)
- 특산품판매장 설치목적 및 용도를 지역농수특산물로 확대
-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판매로 확대

○위탁운영자의 자격 확대(안 제22조) : 관내 농업협동조합, 농업경영인연**합회,** 새마을부녀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개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1. 제205회 임시회

## 가. 집회공고 및 의사일정

### 1) 집회공고

제20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주식의원 등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2012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집회함.

### 2) 의사일정 : 2012. 6. 21(목)〈1일간〉

| 일시 | 차 수 | 안 건 |
|---|---|---|
| 06. 21(목) 10:00 | 제1차 본회의 | ■ 의사일정<br>1. 제20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br>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br>3.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br>4.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br>5.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6.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의 건<br>7.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8.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 나. 제1차 본회의

2012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오전 11시 10분에 산회함.

### 1) 제20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
- 주요내용 : 2012. 6. 21.(1일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주요내용 :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선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3)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의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박금래 의원 당선

## 당 선 인 사(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고흥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의장으로 당선된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군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다짐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일부 의견을 달리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행위가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발로한 것으로 저 자신부터가 이를 기꺼이 수용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군의회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진정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속에서 우리 군의회의 의정기조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이 구현되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부의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배기홍 의원 당선

**당 선 인 사(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총무위원회위원 : 6명(배기홍, 송경석, 송우섭, 장세선, 김의규, 송인숙의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 : 5명(김옥래, 신태균, 김주식, 송경양, 최설희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5)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총무위원회위원장 : 장세선 의원 당선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송경양 의원 당선

### 당 선 인 사(총무위원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의원도 상처가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에는 송인숙 의원님을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 선 인 사(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후반기 2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최설희 의원님을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위원 : 5명(송우섭, 장세선, 송경양, 송인숙, 최설희의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 8)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의 건

- 제 안 자 : 의장
- 제안이유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결과 : 송우섭 의원 당선

## 당 선 인 사(의회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고흥군의회 위상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후반기에 새롭게 당선된 박금래 의장님과 배기홍 부의장님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는 물론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신태균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6대 후반기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또 형님 먼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크나큰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김주식 선배 의원님께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서고보니까 벌써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김주식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너무 잘하셨죠.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께서 쉽게 저를 심부름시킬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랑스런 마음으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최설희 의원님을 호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제3장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절 행정사무감사
제3절 행정사무조사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제3장

##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제1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1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제1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0년 8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옥래의원, 간사에는 장세선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 간 | 안 건 | 비 고 |
|---|---|---|
| 8. 23(1일간) | ○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8월 2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 · 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집행기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0년 제1회추경 이후 변경된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 의무적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의 해결 등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8,938백만원(기정예산 385,866 ⇒ 414,804)
• 일반회계 : 29,678백만원(기정예산 362,811 ⇒ 392,489)
• 특별회계 : 740백만원(기정예산 23,055 ⇒ 22,315)
○일반회계 추가세입 : 29,678백만원
• 자체수입 : 16,567백만원(지방세 60, 세외수입 16,507)
• 의존수입 : 13,111백만원(지방교부세 9,330, 재정보전금 1,960, 보조금 1,821)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0년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 안 번 호 | 21 |
|---|---|

2010. 8.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0. 8. 12.
나. 회 부 일 자 : 2010. 8. 12.
다. 상 정 일 자 : 2010. 8. 23.

##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414,804,429 | 385,866,202 | 28,938,227 | 7.5 | |
| 일반회계 | 392,489,051 | 362,811,127 | 29,677,924 | 8.2 | |
| 특별회계 | 22,315,378 | 23,055,075 | △739,697 | △3.2 | |

##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5. 검토의견(요지)

○당초 예산확정이후 국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사항 정리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법정 · 의무적 경비 적정편성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위원회 참석현황

○총 원 : 6명
○재 적 : 6명
○참 석 : 6명
○반 대 : 없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0. 8. 24(화) 10:00
제1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입니다.

제1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하였던 2010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8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총 4,148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858억 6천 6백만원에 비해 289억 3천 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24억 8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3,628억 1천 1백만원보다 296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억 1천 5백만으로 기정예산 2백 30억 5천 5백만원보다 7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하

여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 정리,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적정 편성 여부 및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예산 배분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0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옥래의원, 간사에는 장세선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 간 | 안 건 | 비 고 |
|---|---|---|
| 9. 8~9. 9(2일간) | o 2009년도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br>•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안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 · 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세입 · 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 · 세출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550,344백만원
- 세출결산액 457,501백만원
- 세계잉여금 92,843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9,57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4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624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274백만원
- 세출결산액 20,900백만원
- 세계잉여금 6,374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627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20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7백만원임.

〈 기금결산 〉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등 6종 기금의 2009년말 현재총액은 4,825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꿈나무장학기금 | 924백만원 |
| • 노인복지기금 | 1,037백만원 |
| • 체육진흥기금 | 1,424백만원 |
| • 식품진흥기금 | 53백만원 |
|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 59백만원 |
| • 재난재해기금 | 1,328백만원 |

〈 채권 · 채무의 결산 〉

- 채 권

2009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6,872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일반회계 | 3,242백만원 |
| – 특별회계 | 3,630백만원 |

- 채 무

2009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5,56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일반회계 | 22,861백만원 |
| – 특별회계 | 2,699백만원 |

〈 공유재산 결산 〉

2009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498,6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 행정재산 | 392,813백만원 |
| • 일반재산 | 105,815백만원 |

〈 물품결산 〉

2009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65개이며 4,5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49개 4,155백만원
- 신규취득 51개 629백만원
- 매각 · 폐기 35개 256백만원

〈 예 비 비 〉

2009년 예비비 지출액은 7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양 농어촌폐기물소각시설공사 대금 청구소송"공사대금 564백만원
- 인공위성 나로호발사 행사비용 30백만원
- 수산피해 사유시설물 선지급금 23백만원
- 신종플루 치료약품 예방물품 및 예방 백신 비용 96백만원
- 신종플루 다중집합소 손소독기 구입 비용 48백만원

〈 2009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

(1) 2009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693,577백만원
- 총 부 채 34,180백만원
- 순 자 산 1,659,397백만원

(2) 2009년말 총자산은 1,693,5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109,803백만원(6.48%)
- 투 자 자 산 7,881백만원(0.47%)
- 일반유형자산 108,098백만원(6.38%)
- 주민편의시설자산 121,215백만원(7.16%)
- 사회기반시설자산 1,344,468백만원(79.39%)
- 기타비유동자산 2,112백만원(0.12%)

(3) 2009년말 총부채는 34,18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6,208백만원(18.16%)
- 장기차입부채 23,499백만원(68.75%)
- 기타비유동부채 4,473백만원(13.09%)

〈 2009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1) 2009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77,806백만원
- 총 비 용 292,096백만원
- 운영차액 85,710백만원

(2) 2009년말 총 수익은 377,806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2,003백만원(8.47%)
- 정부간이전수익 343,656백만원(90.96%)
- 기 타 수 익 2,147백만원(0.57%)

(3) 2009년말 총 비용은 292,09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5,840백만원(5.42%)
- 공공질서및안전 1,551백만원(0.53%)
- 교 육 5,193백만원(1.78%)
- 문화및관광 8,406백만원(2.88%)
- 환경보호 14,510백만원(4.97%)
- 사회복지 61,547백만원(21.07%)
- 보 건 5,159백만원(1.77%)
- 농림해양수산 79,791백만원(27.32%)
- 산업.중소기업 5,717백만원(1.96%)
- 수송및교통 10,124백만원(3.47%)
- 국토및지역개발 14,239백만원(4.87%)
- 과학기술 305백만원(0.10%)
- 기 타 69,714백만원(23.86%)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1 |
|---|---|

2010. 9.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0. 7. 29.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0. 8. 30.
다. 상 정 일 자 : 2010. 9. 8.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 회계연도 세입消셌 결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일반회계

- 세입결산 : 550,344 백만원
- 세출결산 : 457,501 백만원
- 세계잉여금 : 92,843 백만원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7,274 백만원
- 세출결산 : 20,900 백만원
- 세계잉여금 : 6,374 백만원

## 3. 검토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김학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은 99.1%로 전년과 대비 다소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이 4,643백만원(지방세1,189, 새외수입 3,454)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불능 세입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됨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7%에 해당하는 457,500 백만원이며 이월액 69,577백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21,999백만원으로 사업예산편성시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됨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총액이 2,240백만원으로 이중 원금이 560백만원이고 나머지 1,680백만원은 대부분 연체이자로서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분석 조기 회수 대책을 적극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사유에 해당 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 적 : 6명
○참 석 : 6명
○찬 성 : 6명
○반 대 : 없음.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0. 9. 17(금) 10:00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옥 래 의원입니다.

제187회 고흥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심사했던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의 검사위원들이 세입消셌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29일자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 세출 예산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5852억 7천 2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5776억 1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7%의
다소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미수납액은 73억 7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 4천 3백만원으로 징수불능 세입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27억 2천 7백만원 중 22억 4천만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이며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 · 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29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784억원으로 83.5%를 집행하였고
이월사업비는 742억 3백만원, 집행잔액은 2백 3억 7천 8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695억 7천 7백만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71건에 219억 9천 9백만원으로
다수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강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 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3건으로
세입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 5천 4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실과소별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입 업무 전문성 결여 및 징수업무 관리 소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 하는 등
징수율 제고 노력이 적극 요구되며

세출분야는 중요전산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재고물품 계정처리 소홀로 적정 수요량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 관리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적된바 이후부터는 적정 조달수요량의 정확한 분석 및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팔영산 도유림 일대 416㏊의 수령30여년 편백조림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12㎞의 편백건강 숲길과 편익시설을 조성
군민 등 탐방객에게 건강레저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100여명의 공공근로 요원에게 일자리를 창출 · 제공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와 부산물을 매각 3천 8백만원의 수입을 꾀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2011년 예산편성과
2010년 예산결산 시에는 2009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0년 11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 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옥래의원, 간사에 장세선 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12. 9.~12.16(8일간) | ㅇ 2011년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 계수조정<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 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ㅇ총규모 : **385,060백만원('10당초예산 384,119백만원의 0.2% 증 )**

ㅇ일반회계 : 365,646백만원('10당초예산 361,099백만원의 1.3% 증)

(단위 : 천원)

| 세 입 (재정자립도 : 8.8%) | 세 출 (성질별) |
|---|---|
| • 자체수입 : 32,283백만원(8.8%)<br>– 지 방 세 : 16,980백만원(4.6%)<br>– 세외수입 : 15,303백만원(4.2%)<br><br>• 의존수입 : 333,363백만원(91.2%)<br>– 지방교부세 : 174,028백만원(47.6%)<br>– 보 조 금 : 156,335백만원(42.8%)<br>–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 0.8%) | • 일반공공행정 : 23,040백만원( 6.3%)<br>• 공공질서 및안전 : 7,844백만원( 2.2%)<br>• 교 육 : 3,783백만원( 1.0%)<br>• 문화 및 관광 : 18,015백만원( 4.9%)<br>• 환 경 보 호 : 18,559백만원( 5.1%)<br>• 사 회 복 지 : 65,961백만원(18.0%)<br>• 보 건 : 7,469백만원( 2.0%)<br>• 농림해양수산 : 98,915백만원(27.1%)<br>• 산업 · 중소기업 : 1,915백만원( 0.5%)<br>• 수송 및 교통 : 12,801백만원( 3.5%)<br>• 국토및지역개발 : 45,162백만원(12.4%)<br>• 과 학 기 술 : 4,227백만원( 1.2%)<br>• 예 비 비 : 3,690백만원( 1.0%)<br>• 기 타 : 54,265백만원(14.8%) |

○특별회계(10개) : 19,414백만원('10당초예산 23,020백만원의 △15.7%)

○기 금(6개) : 7,767백만원('10 당초예산 5,684만원의 36.6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37 |
|---|---|

2010.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0. 11. 22.
나. 회 부 일 자 : 2010. 12. 8.
다. 상 정 일 자 : 2010. 12. 9.

## 3.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385,060 | 384,119 | 941 | 0.2 | |
| 일반회계 | 365,646 | 361,099 | 4,547 | 1.3 | |
| 특별회계 | 19,414 | 23,020 | △3,606 | △15.7 | |

##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5. 심사결과 : 총 40건 2,517,100천원 삭감, 수정가결(내역별첨)

## 6. 위원회 참석현황

○재 적 : 6명 ○참 석 : 6명
○찬 성 : 6명 ○반 대 : 없음

#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별 | 건 수 | 삭 감 내 역 | | 비 고 |
|---|---|---|---|---|
| | | 증 액 | 삭 감 | |
| **계** | 40 | | 2,517,100 | |
| 기획실 | 1 | | 50,000 | |
| 주민복지과 | 3 | | 130,000 | |
| 투자정책과 | 1 | | 200,000 | |
| 문화관광과 | 2 | | 34,000 | |
| 경제유통과 | 3 | | 63,000 | |
| 환경산림과 | 2 | | 85,000 | |
| 농업축산과 | 9 | | 1,439,100 | |
| 건설과 | 1 | | 300,000 | |
| 농업기술센터 | 2 | | 15,000 | |
| 우주항공사업소 | 6 | | 100,000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5 | | 60,000 | |
| 의회사무과 | 4 | | 25,000 | |
| **읍면(16)** | 1 | | 16,000 | |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계 | | | | | | △2,517,100 | 40 건 |
| 기획실 | 214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50,000 | | △50,000 | ·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
| 주민복지과 | 233 | 민간이전 | 민간행사보조 | 20,000 | 10,000 | △10,000 | · 고흥군자원봉사자 대회 |
| | 248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100,000 | | △100,000 | · 경로당 시설 현대화사업 |
| | 290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 30,000 | 10,000 | △20,000 | · 고흥호국문화공원 조성 용역 |
| 투자정책과 | 375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425,000 | 225,000 | △200,000 | · 투자보조금 지원 |
| 문화관광과 | 445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0,000 | | △30,000 | · 고흥상징조형물 설계용역 |
| | 421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8,000 (도 4,000) (군 4,000) | 4,000 | △4,000 | · 한스타일박람회 참가 |
| 경제유통과 | 397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19,440 | 11,440 | △8,000 | · 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 (장바구니, 앞치마, 리후렛) |
| | 403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90,000 (도 20,000) (군 70,000) | 40,000 | △50,000 | · 마을단위 반찬사업 |
| | 408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5,000 | | △5,000 | · 농수축산물판매장 유지보수 |
| 환경산림과 | 463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 5,000 | | △5,000 | · 야영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
| | 495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80,000 | | △80,000 | · 국도변 소공원 조성 |
| 농업축산과 | 526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95,800 (도 16,906) (군 78,894) | 75,800 | △20,000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 | 529 |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1,000,500 | 500,500 | △500,000 | · 친환경 무농약 농업단지 조성 |
| | 535 | 재료비 | 재료비 | 73,200 (도 10,980) (군 62,220) | 23,200 | △50,000 | ·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
| | 539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76,000 (도 19,000) (군 57,000) | 19,000 | △57,000 | ·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 541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1,248,000 (기 499,200) (도 74,880) (군 673,920) | 1,148,000 | △100,000 | · 시설원예 품질개선 |
| | 542 | 〃 | 〃 | 175,000 (도 52,500) (군 122,500) | 105,000 | △70,000 | ·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
| | 545 | 〃 | 〃 | 30,000 | | △30,000 | · 미생물 발효배합기 지원 |
| | 543 | 일반보상금 | 기타보상금 | 304,290 (도 91,280) (군 213,010) | 254,290 | 50,000 | · 한계농지 약용작물조성 |
| | 542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1,510,000 (국 740,000) (도 207,900) (군 562,100) | 947,900 | 562,100 | ·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
| 건설과 | 559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500,000 (국 1,500,000) (군 2,000,000) | 3,200,000 | △300,000 | · 공용주차타워 건립 |
| 농업기술센터 | 707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5,000 | | △5,000 | · 초영마늘 큰주아 재배단지 조성 |
| | 709 |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비 | 10,000 | | △10,000 | · 아열대 틈새작목 시험연구 |
| 우주항공사업소 | 826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 30,000 | | △30,000 | · 고흥로켓개발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
| | 828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10,000 | | △10,000 | · 고흥만 과학생태체험전 운영 |
| | 828 | 민간이전 | 민간행사보조 | 30,000 | 10,000 | △20,000 | · 고흥만 과학생태체험전 |
| | 830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20,000 | 10,000 | △10,000 | · 천문과학관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
| | 832 | 〃 | 〃 | 50,000 | 30,000 | △20,000 | ·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국제포럼 개최 |
| | 832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 30,000 | 20,000 | △10,000 | ·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및 연관산업 육성 연구용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 880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20,000 | 10,000 | △10,000 | ·제61회 한국전 참전 호주시드니, 골드코스트 초청 공연출연료 |
| | 896 | 민간이전 | 민간행사보조 | 50,000 | 40,000 | △10,000 | ·제7회 고흥우주마라톤대회 |
| | 〃 | 〃 | 〃 | 50,000 | 40,000 | △10,000 |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
| | 897 | 〃 | 〃 | 50,000 | 40,000 | △10,000 |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대회 |
| | 〃 | 〃 | 〃 | 270,000 | 250,000 | △20,000 | ·한국 초중고교 축구연맹전 유치 및 대회추진 |
| 의회사무과 | 193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8,000 | | △8,000 | · 의장기 배구대회 |
| | 193 | 〃 | 〃 | 5,000 | | △5,000 | · 의장배 정구대회 |
| | 193 | 〃 | 〃 | 7,000 | | △7,000 | · 의장기 태권도대회 |
| | 194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5,000 | | △5,000 | · 의장기 배구, 정구, 태권도대회 보상 |
| 읍면 | 읍면 (16)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16,000 | | △16,000 | · 동서화합교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명칭변경, 목변경)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비고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 계 | | | | 126,000 | 126,000 | 0 | 6 건 | |
| 주민복지과 | 294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50,000 | 50,000 | | · 원남촌 부녀복지회관 신축 (1개소)<br>⇒ 동일 노인회관신축(1개소) | 명칭변경 |
| 건설과 | 609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20,000 | 20,000 | | · 도덕면 내봉마을 농로포장<br>⇒ 당남마을 농로포장 | 〃 |
| | 609 | 〃 | 〃 | 20,000 | 20,000 | | · 동일면 사동농로포장(20,000)<br>⇒ 구룡농로포장(10,000)<br>소영안길포장(10,000) | 〃 |
| 방재과 | 647 | 〃 | 〃 | 20,000 | 20,000 | | · 점암 안치 소하천개거<br>⇒ 점암 평촌 소하천개거 | 〃 |
| 경제유통과 | 398 | 일반운영비 ⇓ 민간자본이전 | 행사운영비 ⇓ 민간자본보조 | 6,000 | 6,000 | | · 녹동시장 이벤트 행사 | 목변경 |
| 농업기술센터 ⇓ 주민복지과 | 728 | 재료비 | 재료비 | 10,000 | 10,000 | | · Happy 고흥이동봉사단 운영 부품 | 주민복지과 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0. 12. 17(금) 10:00
제18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옥 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11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도 예산안 총액은 3,850억 6천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0.2% 증가 하였고

◎ 이중 일반회계는 1.3%가 증가한 3,656억 4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가 감소한 194억 1천 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국가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인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투자에 대한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한편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이 농·어업인 점을 감안 농어업의 고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 4유통분야 원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 경상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일반회계 예산 3,656억 4천 6백만원 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예산 25억 1천 7백 1십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긴축을 통한 건전 예산편성을 기하였습니다.

◎ 한편 특별회계 예산 194억 1천 4백만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2011년도 사회복지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9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꿈나무장학기금 등 3개 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 대안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임에 유의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애써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제1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송경양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옥래의원, 간사에는 장세선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12. 21(1일간) | ○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br>• 계수조정<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도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52백만원(기정예산 414,804 ⇒ 415,056)

• 일반회계 : 1,274백만원(기정예산 392,489 ⇒ 393,763)

• 특별회계 : △1,022백만원(기정예산 22,315 ⇒ 21,293)

○일반회계 추가세입 : 1,274백만원

• 자체수입 : 1,803백만원(지방세 2,070, 세외수입 △267)

• 의존수입 : △529백만원(지방교부세 378 , 재정보전금 △332, 보조금 △575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 의안 번호 | 56 |
|---|---|

2010.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0. 12. 14.(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0. 12. 21.
다. 상 정 일 자 : 2010. 12. 21.

## 3.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415,055 | 414,804 | 251 | 0.06 | |
| 일반회계 | 393,762 | 392,489 | 1,273 | 0.3 | |
| 특별회계 | 21,293 | 22,315 | △1,022 | △4.6 | |

##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위원회 참석현황

○재 적 : 6명 ○참 석 : 6명
○찬 성 : 6명 ○반 대 : 없음.

## 7. 심사의견

○ 군정의 마무리 집행 및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추가편성 예산안으로서 원안가결 함.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0. 12. 22(수) 11:00
제1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 고흥군의회에 제출되었으며,

◎ 제190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15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4,148억원의 0.06%인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12억 7천만원이 늘어난 3,937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2천만원이 줄어든 212억 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1억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등에 48억원,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프랜트사업 출연금 4억 4천만원,
남양 선정마을 창조지역 활성화 2억 6천만원,

금산 어전지구 채석종료지 대집행복구비 6억원이며,
행정사무비 등 경상적 경비는 4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동강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국비 미지원 등 10억원이 줄어들어
총 212억 9천만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95개 사업 203억원과 계속비 29개 사업 179억원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 세부사업 계획수립 미흡, 부적정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지연 등으로 다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 앞으로 신규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투자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 한편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군정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 집행과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정리예산안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제1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1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김옥래의원, 송경석의원, 김주식의원, 장세선의원, 송경양 의원, 송인숙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옥래의원, 간사에 장세선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6. 16(1일간) | ○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 계수조정<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 · 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22,436백만원(기정예산 385,060 ⇒ 407,496)

• 일반회계 : 22,588백만원(기정예산 365,646 ⇒ 388,234)

• 특별회계 : △152백만원(기정예산 19,414 ⇒ 19,262)

○일반회계 추가세입 : 22,588백만원

• 의존수입 : 9,355백만원(지방교부세 17,918, 재정보전금 49, 보조금 △8,612)

• 자체수입 : 13,233백만원(세외수입 13,23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78 |
|---|---|

2011. 6.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1. 6. 10.
나. 회 부 일 자 : 2011. 6. 16.
다. 상 정 일 자 : 2011. 6. 16.

##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407,495,915 | 385,060,307 | 22,435,608 | 5.8 | |
| 일반회계 | 388,233,768 | 365,646,341 | 22,587,427 | 6.2 | |
| 특별회계 | 19,262,147 | 19,413,966 | △151,819 | △0.8 | |

##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5. 심사의견(요지)

○당초 예산확정이후 국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사항 정리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적정편성
○각종현안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위원회 참석현황

○총 원 : 6명 ○재 적 : 6명
○참 석 : 6명 ○반 대 : 없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09. 6. 17(금) 10:00
제1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옥 래 의원입니다.

제19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하였던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6월 10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4천 7십 5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 8백 5십 1억원보다
2백 2십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는
3천 8백 8십 2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 6백 5십 6억원보다
2백 2십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1백 9십 3억원으로 기정예산 1백 9십 4억원보다 1억여원 감소하였습니다.

◎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예산의 정리, 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 의무적 경비와 당면한 군정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예산배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1년 7월 1일 오전 10시에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의원, 송우섭의원, 박금래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 송우섭의원, 간사에는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7. 11.~7.12.(2일간) | o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br>•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집행기관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463,573백만원
- 세출결산액 390,235백만원
- 세계잉여금 73,338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53,170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31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851백만원임.

(2)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27,158백만원
- 세출결산액 22,277백만원
- 세계잉여금 4,881백만원

– 세계잉여금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108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4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24백만원임.

## 〈 기금결산 〉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등 5종 기금의 2010년말 현재총액은 5,988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금 2,869백만원
- 체육진흥기금 1,506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57백만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10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1,448백만원

## 〈 채권 · 채무의 결산 〉

- 채 권

– 2010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7,04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3,419백만원

– 특별회계 3,622백만원

- 채 무

– 2010년말 현재 채무총액은 23,49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21,301백만원

– 특별회계 2,197백만원

## 〈 공유재산 결산 〉

2010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717,37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재산 591,931백만원
- 보존재산 733백만원
- 일반재산 124,713백만원

## 〈 물품결산 〉

2010년말 현재 물품보유 총수는 487개이며 4,728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전년도말 현재액 465개 4,528백만원
- 신규취득 51개 364백만원
- 매각 · 폐기 29개 164백만원

## 〈 예 비 비 〉

2010년 예비비 지출액은 4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 6백만원
- 경상북도 안동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군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대책비 445백만원

## 〈 2010 회계연도말 재정상태(이하 재무보고서) 〉

(1) 2010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음(일반 특별 기금회계 총괄)

- 총 자 산 1,922,651백만원
- 총 부 채 34,261백만원
- 순 자 산 1,888,390백만원

(2) 2010년말 총자산은 1,922,65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자 산 84,234백만원(4.38%)
- 투 자 자 산 14,050백만원(0.73%)
- 일반유형자산 133,274백만원(6.93%)
- 주민편의시설자산 156,048백만원(8.12%)
- 사회기반시설자산 1,531,299백만원(79.65%)
- 기타비유동자산 3,734백만원(0.19%)

(3) 2010년말 총부채는 34,261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유 동 부 채 5,636백만원(16.45%)
- 장기차입부채 21,841백만원(63.75%)
- 기타비유동부채 6,784백만원(19.8%)

## 〈 2010 회계연도말 재정운영 결과 〉

(1) 2010년말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총 수 익 395,957백만원
- 총 비 용 297,878백만원
- 운영차액 98,078백만원

(2) 2010년말 총 수익은 395,957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체조달수익 31,066백만원(7.85%)
- 정부간이전수익 351,782백만원(88.84%)
- 기 타 수 익 13,108백만원(3.31%)

(3) 2010년말 총 비용은 297,878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공공행정 16,610백만원(5.58%)
- 공공질서및안전 1,060백만원(0.36%)
- 교 육 2,949백만원(0.99%)
- 문화및관광 6,118백만원(2.05%)
- 환경보호 12,168백만원(4.08%)
- 사회복지 62,482백만원(20.98%)
- 보 건 5,383백만원(1.81%)
- 농림해양수산 85,999백만원(28.87%)
- 산업.중소기업 1,924백만원(0.65%)
- 수송및교통 7,107백만원(2.39%)
- 국토및지역개발 7,629백만원(2.56%)
- 과학기술 469백만원(0.16%)
- 기 타 87,976백만원(29.5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81 |
|---|---|

2010. 9.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1. 6. 27.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6.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7. 12.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일반회계**

- 세입결산 : 463,573 백만원
- 세출결산 : 390,235 백만원
- 세계잉여금 : 73,338 백만원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7,158 백만원
- 세출결산 : 22,277 백만원
- 세계잉여금 : 4,881 백만원

## 3. 검토의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 최생환)

○2010년도 군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8.3% 징수실적을 올렸으나 미수납액이 80억 66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징수불능 세입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결손처분 등 미수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예산현액 84.3%인 412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52억 78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01억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30억 5600만원중 27억 7000만원이 주택사업체납액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적극 강구하기바라며 결손처분사유에 해당 할 경우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 적 : 6명
○참 석 : 6명
○찬 성 : 6명
○반 대 : 없음.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1. 7. 13(수) 10:00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우 섭 의원입니다.

제19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했던
201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의 검사위원들이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7일자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 세출 예산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991억 1천 7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4,907억 3천 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 미수납액은 80억 6천 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억 1천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30억 5천 6백만원 중 27억 7천만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으로 연체이자
누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 · 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92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4,125억원으로 84.3%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52억 7천 8백만원,
집행잔액은 214억 6천 9백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 531억 7천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99건에 201억 6천만원으로
다수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예산편성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강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열 두건으로 세입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내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고

신고기간 경과 시는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일부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속 부과 징수하는 등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보건소 의약품의 재고자산액이 2010년에 4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익년도 입찰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익년 사용 예측분을 미리 구입하였다고 하**나**

의약품의 유효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요예측으로 익년도 분에 대하여 조기 입찰 등을 실시하여 이월자산 발생억제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2008년 전국 군단위 최초로 계약심사제 시행이후 작년에 물품구매 공사, 용역대상 476건에 대하여 철저한 원가 분석결과 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으로 가정형편 등에 따라 3년 이상 고향방문을 못한 저소득 결혼 이민자 12가정에 대하여 2천 9백만원을 지원 친정나들이 사업 추진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가족애를 돈독히 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의 확대 시행이 필요 하는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2012년 예산편성과 2011년 예산결산 시에는 2010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1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의원, 송우섭의원, 박금래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에 송우섭 의원, 간사에는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12. 12 ~ 12. 15(4일간) | ○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br>• 계수조정<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2011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 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확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총 규 모 : 396,627백만원('11당초예산 385,060백만원의 3.0% 증 )

• 일반회계 : 376,691백만원('11당초예산 365,646백만원의 3.0% 증)

| 세 입(재정자립도 : 8.1%) | 세 출(성질별) (단위 : 천원) |
|---|---|
| • 자체수입 : 30,358백만원(8.1%)<br>– 지 방 세 : 15,100백만원(4.0%)<br>– 세 외 수 입 : 15,258백만원(4.1%)<br><br>• 의존수입 : 346,333백만원(91.9%)<br>– 지방교부세 : 193,566백만원(51.4%)<br>– 보 조 금 : 149,767백만원(39.7%)<br>– 재정보전금 : 3,000백만원( 0.8%) | • 일반공공행정 : 23,558백만원( 6.3%)<br>• 공공질서 및안전 : 2,986백만원( 0.8%)<br>• 교 육 : 2,965백만원( 0.8%)<br>• 문화 및 관광 : 19,958백만원( 5.3%)<br>• 환 경 보 호 : 27,326백만원( 7.3%)<br>• 사 회 복 지 : 66,432백만원(17.6%)<br>• 보 건 : 6,870백만원( 1.8%)<br>• 농림해양수산 : 111,790백만원(29.7%)<br>• 산업 · 중소기업 : 2,657백만원( 0.7%)<br>• 수 송 및 교 통 : 11,070백만원( 2.9%)<br>• 국토및지역개발 : 38,987백만원(10.3%)<br>• 예 비 비 : 3,767백만원( 1.0%)<br>• 기 타 : 58,325백만원(15.5%) |

○특별회계(10개) : 19,936백만원('11당초예산 19,414백만원의 2.7% 증)

○기 금(6개) : 9,021백만원('11 당초예산 7,767만원의 16.1% 증)

■ 의결결과 : 수정가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97 |
|---|---|

2011. 12.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1. 11. 18. 고흥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2. 9.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2.

## 3. 예산안 규모 및 특징

가. 규 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396,627,257 | 385,060,307 | 11,566,950 | 3.0 | |
| 일반회계 | 376,691,417 | 365,646,341 | 11,045,076 | 3.0 | |
| 특별회계 | 19,935,840 | 19,413,966 | 521,874 | 2.7 | |

나. 특 징

○투자유치 문화관광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 위해 지속적 재정 확대 등 지방경재 활성화를 위한 제정운용

○국가 감세정책과 지방교부세 감세 등 어려운 세입여건 의한 사회복지향상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재정부담 가중 예상

○농·축산분야의 주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지원 및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 4. 검토의견(검토자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란)

○국가의 감세정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 건전예산 편성 위해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고려 예산에 반영하여 국·도비 지원사업과 민선4기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회복지 향상, 문화관광 환경개선사업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 되었으나 전년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 5.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삭감조정액 : 1,678,930 천원)

○일반회계 : 수정가결(삭감액 : 18 건, 1,678,930 천원)

○특별회계 : 원안가결

## 7. 위원회 참석현황

○총 원 : 6명

○재 적 : 6명

○참 석 : 6명

○반 대 : 없음.

## 8. 기타 필요사항 : 없 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 총 삭감건수 : 18 건, 삭감액 : 1,678,930천원

(단위 : 천원)

| 운영위원회별 | 위원회 삭감 | | 예결위 최종조정 | | 비 고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과목및부기변경 |
| **합 계** | 47 | 4,415,600 | 18 | 1,678,930 | 과목변경 4건<br>부기변경 9건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총무위원회** | 15 | 1,731,740 | 5 | 868,120 | 과목변경 3건<br>부기변경 3건 |
| 산업건설위원회 | 32 | 2,683,860 | 13 | 810,810 | 과목변경 1건<br>부기변경 6건 |

○삭감액 대책 : 예비비로 조정 계상키로 함.

※ 삭감 및 과목, 부기 변경 조서 별첨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소관별 : 총무**위원회 5건, 868,120 **천원**

(단위 : 천원)

| 실과소별 | 총무위원회 삭감 | | 예결위 최종조정 | | 비 고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과목및부기변경 |
| **합 계** | 15 | 1,731,740 | 5 | 868,120 | 과목변경 3건<br>부기변경 3건 |
| **기획실** | 1 | 70,000 | - | - | |
| **주민복지과** | 2 | 510,000 | 1 | 500,000 | |
| **행정과** | 1 | 30,000 | - | - | |
| 재무과 | - | - | - | - | |
| 투자정책과 | - | - | - | - | |
| **문화관광과** | 3 | 647,000 | 1 | 200,000 | 2건<br>(과목변경) |
| 종합민원실 | - | - | - | - | |
| 보건소 | 1 | 100,000 | 1 | 100,000 | |
| 평생학습<br>사업소 | - | - | - | - | |
| 문화체육시설<br>사업소 | 7 | 374,740 | 2 | 68,120 | 2건<br>(과목변경1, 부기변경1) |
| 읍면 | - | - | - | - | 2건<br>(부기변경)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소관별 : 산업건설위원회 13건, 810,810**천원**

(단위 : 천원)

| 실과소별 |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 | 예결위 최종조정 | | 비 고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과목및부기변경 |
| **합 계** | 32 | 2,683,860 | 13 | 810,810 | 과목변경 1건<br>부기변경 6건 |
| **경제유통과** | 4 | 438,000 | - | - | |
| 환경산림과 | 3 | 80,000 | 1 | 10,000 | |
| **농업축산과** | 10 | 783,000 | 3 | 185,000 | |
| 해양수산과 | - | - | - | - | 1건<br>(과목변경) |
| 건설과 | 3 | 580,000 | 1 | 180,000 | 5건<br>(부기변경) |
| **방재과** | 4 | 490,000 | 1 | 350,000 | 1건<br>(부기변경) |
| 농업기술센터 | 8 | 312,860 | 7 | 85,810 | |
| 상하수도<br>사업소 | - | - | - | - | |
| 우주항공<br>사업소 | - | - | - | - | |

#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세부사업 | 예산과목 편성목 | 예산액 요구액 (A) | 예산액 조정액 (B) | 예산액 증감액 (C=A-B) | 내역 | 비고 |
|---|---|---|---|---|---|---|---|---|
| **계** | | | | | | **1,678,930** | **18 건** | |
| 주민복지과 | 207 |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수혜금 | 23,705,922 | 23,205,922 | △500,000 | · 기초노령연금 지급 | 군비 |
| 문화관광과 | 383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400,000 | 200,000 | △200,000 | ·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 군비 |
| 보건소 | 716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456,150 | 1,356,150 | △100,000 | · 보건지소 신축(도양, 두원중앙) | 군비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863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5,000 | - | △35,000 | · 문화회관 및 수영장 보조보일러 설치 | |
| 〃 | 880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66,240 | 33,120 | △33,120 |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 군비 |
| 환경산림과 | 411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48,000 | 38,000 | △ 10,000 | · 폐기물불법투기지역경고판 제작 | |
| 농업축산과 | 484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300,000 | 180,000 | △120,000 | · 벼자동화 육묘장 지원 | |
| 〃 | 492 | 〃 | 민간자본보조 | 25,000 | - | △ 25,000 | · 오리사육농가 현대화 지원 | |
| 〃 | 493 | 〃 | 민간대행사업비 | 40,000 | - | △ 40,000 | · 한우암소검정지원 | |
| 건설과 | 554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180,000 | - | △180,000 | · 도로유휴부지 태양광발전단지 설치 | |
| 방재과 | 605 |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 350,000 | - | △350,000 | · 도덕 신양 소하천 정비 | |
| 농업기술센터 | 674 |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보조 | 32,000 | 20,000 | △12,000 | ·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등2건 | |
| 〃 | 679 | 〃 | 〃 | 8,000 | 4,000 | △4,000 | · 소비자 맞춤형 청결고추 생산시범 | |
| 〃 | 679 | 〃 | 〃 | 12,000 | 6,000 | △6,000 | ·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 |
| 〃 | 694 | 일반보상금 | 행사일비보상금 | 17,350 | 8,950 | △8,400 | · 농촌지도자 과재교육증식 등 | |
| 〃 | 708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4,210 | 5,000 | △9,210 | · 남계택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 |
| 〃 | 708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6,800 | - | △16,800 | · 경운정지 트랙터 임차료 | |
| 〃 | 708 | 재료비 | 재료비 | 34,400 | 5,000 | △29,400 | · 남계택지구역 재료구입 | |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송우섭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과목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비고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 계 | | | | | | |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876 | | | 12,105 | 12,105 | | 사계절 잔디재배 지원 인건비 및 재료비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 |
| 문화관광과 | 384 | 일반운영비 | 행사운영비 | 20,000 | 20,000 | |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변경 (살아있는 갯벌체험여행) | |
| 〃 | 〃 | 〃 | 〃 | 20,000 | 20,000 | |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변경 (시호도 원시체험 여행) | |
| 해양수산과 | 515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30,000 | 30,000 | | 점암 여호 어장진입로 및 농로확장을 건설과 취약지 개발 시설비로 변경 | |
| | | | 이 | 하 | 여 | 백 | | |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송우섭 ㊞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 실과소 | 예산안 페이지 | 예산과목 | | 예산액 | | | 내역 | 비고 |
|---|---|---|---|---|---|---|---|---|
| | | 세부사업 | 편성목 | 요구액 (A) | 조정액 (B) | 증감액 (C=A-B) | | |
| 계 | | | | | | |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872 |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 19,500 | 19,500 | | •김태영축구장 주변폐기물 처리비를 도양축구장 방풍림 시설비로 부기변경 | |
| 방재과 | 617 | 〃 | 〃 | 30,000 | 30,000 | | •장덕지구 경작로 포장을 매곡지구 경작로 포장으로 부기변경 | |
| 건설과 | 569 | 〃 | 〃 | 20,000 | 20,000 | | •유둔마을 하수도정비를 장동마을 배수로 및 경작로 포장으로 부기변경 | |
| 〃 | 〃 | 〃 | 〃 | 20,000 | 20,000 | | •원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마동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로 부기변경 | |
| 〃 | 〃 | 〃 | 〃 | 20,000 | 20,000 | | •오수 배수로정비를 한천리 배수로 정비로 부기변경 | |
| 〃 | 〃 | 〃 | 〃 | 35,000 | 20,000<br>15,000 | | •죽산마을 진입로변 배수로정비를 운동마을 부속건물로 부기변경<br>죽산마을 진입로변 배수로정비를 유둔,죽산,평촌회관 보수공사로 부기변경 | 민자 |
| 〃 | 〃 | 〃 | 〃 | 18,000 | 18,000 | | •한천뜰 배수로정비를 들택촌 배수로정비로 부기변경 | |
| 읍면시설비 | 944 | 〃 | 〃 | 19,000 | 19,000 | | •원매곡 배수로정비를 대강, 매곡 농로 및 배수로정비로 부기변경 | |
| 〃 | 〃 | 〃 | 〃 | 20,000 | 20,000 | | •구오수 배수로 및 포장을 장월마을 농로 및 배수로정비로 부기변경 | |
| | | | 이 | 하 | 여 | 백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송우섭 ㊞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1. 12. 16(금) 09:20
제199회 고흥군의회 2차 정례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예산안의 규모는
총 3,966억 2천7백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0%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가 증가한 3,766억 9천 1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가 증가한 199억 3천 6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 예산안의 심사기준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인 건전재정 운용과 서민생활 안정,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 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고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절감하여
효율적이면서 친서민적이고 건전하면서도 역동적인 예산 배분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3,766억 9천 1백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반예산 16억7천8백9십3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여 긴축적이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예산 199억 3천 6백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 위원회와 예결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지적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 제2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가. 위원회 구성

2011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위원으로 배기홍의원, 송우섭의원, 박금래의원, 장세선의원, 김의규의원, 최설희의원 등 6명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에 송우섭의원, 간사에 최설희의원을 호선함.

## 나. 의사일정

| 기간 | 안 건 | 비고 |
|---|---|---|
| 12. 22(1일간) | ○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br>• 계수조정<br>• 심사보고서 작성 | 예결위원회실 |

## 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법령에 근거, 분야별 질의·답변과 서류심사를 거쳐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마감함.

■ 제 안 자 : 고흥군수
■ 제안이유 :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한 국 도비 보조사업 및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도모
■ 주요내용
○추경예산규모 : 15,658백만원(기정예산 407,496 → 423,154)
• 일반회계 : 15,671백만원(기정예산 388,2346 → 403,905)
• 특별회계 : △13백만원(기정예산 19,2626 → 19,249)
○일반회계 추가세입 : 15,671백만원
• 자체수입 : △2,697백만원(지방세 △1,920, 세외수입 △777)
• 의존수입 : 18,368백만원(지방교부세 9,902 , 재정보전금 16, 보조금 8,450 )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011년도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의안 번호 | 106 |
|---|---|

2011. 12.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심사대상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1. 12. 14.
나. 회 부 일 자 : 2011. 12. 15.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22.

## 3.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회 계 별 | 예 산 액 | 기정예산액 | 증 감 | 증감율(%) | 비 고 |
|---|---|---|---|---|---|
| 계 | 423,154,329 | 407,495,915 | 15,658,414 | 3.8 | |
| 일반회계 | 403,904,799 | 388,233,768 | 15,671,031 | 4.0 | |
| 특별회계 | 19,249,530 | 19,262,147 | △12,617 | △0.07 | |

## 4. 질의 및 답변내용 : 생 략

## 5. 검토의견(요지)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정
○당초 예산확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사항 정리
○필수적인 법정, 의무적 경비의 적정편성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위원회 참석현황

○총 원 : 6명 ○재 적 : 6명
○참 석 : 6명 ○반 대 : 없음.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2011. 12. 23(금) 10:00
제2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 우 섭 의원입니다.

제2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하였던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입**니다.**

◎ 먼저, 심사경과는
지난 12월 14일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규모는 4천 2백 3십 1억원으로 기정예산 4천 7십 5억원보다
1백 5십 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는 4천 3십 9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 8백 8십 2억원보다 1백 5십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백 9십 2억 4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백 9십 2억 6천 2백만원 보다 1천 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태풍 무이파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확정과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국 · 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예산의 정리, 조정
필수적인 법정 · 의무적 경비와 군정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예산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政白書



## 제3장

## 제2절 행정사무감사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제2절 행정사무감사

#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며,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0. 11. 18 ~ 11. 24【7일간】

**3) 감사장소 :** 소회실 및 사업장 현지

**4) 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5) 대상사무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6) 감사방법(감사실시 주체) :** 본회의 실시

### 7) 감사반 편성

| 상임위원회별 | 감사위원 명단 | 감사보조자 |
|---|---|---|
| 산업·건설위원회 | • 위 원 장 : 의 장<br>• 부위원장 : 부의장<br>•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최설희, 송인숙의원 | 전문위원 **김학수**<br>전문위원 **박서규**<br>전문위원 **김병조** |

### 8) 감사일정

| 월 일 | 감사대상기관(실과소) | 비고 |
|---|---|---|
| 11. 18(목) | 기획실, 주민복지과 | •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감사 실시<br>• 실과장의 보고 및 답변 |
| | 행정과, 재무과 | |
| 11. 19(금) | 투자정책과, 경제유통과 | |
| |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 |
| 11. 22(월) |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 |
| | 건설과, 방재과 | |
| 11. 23(화) | 종합민원실, 농업기술센터 | |
|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
| 11. 24(수) | 우주항공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 감사일정은 의사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임위 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의함

### 9) 감사요령

○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 병행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 10) 감사자료 제출

○ 제출서식 : 별지참조
○ 작성 기준일 : 2010. 10. 31.(2009. 11. 01.~2010. 10. 31.)
(특별한 기간 명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제출기한 : 2010. 11. 5.까지
○ 제출부수 : 20부

### 11) 감사진행 절차

| | |
|---|---|
| ○ 감 사 선 언 | 감사위원장 |
| ○ 인 사 말 씀 | 감사위원장 |
| ○ 선 서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
| ○ 업 무 보 고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
| ○ 질 의 및 답 변 | |
|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
| ○ 감 사 종 료 선 언 | 감사위원장 |

###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감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 기간 · 대상기관 ·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

### 13) 기타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본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름.

### 14) 첨부서류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
○ 증인 선서서
○ 감정인 선서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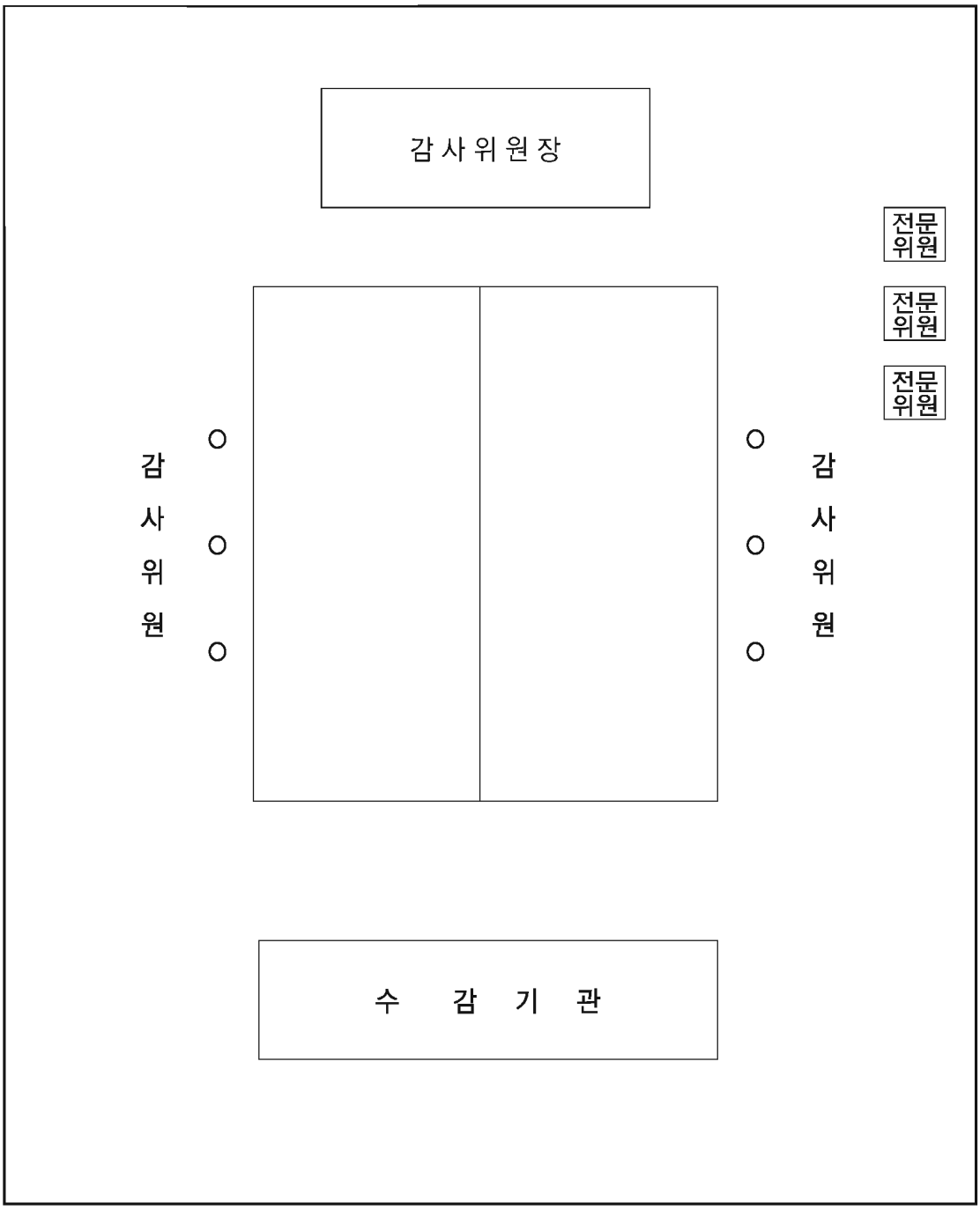
별지 1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위원장 : 인

| 연번 | 실과소 | 제 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 | | |

## 별지 2 감사장 배치도(예시)



별지 3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의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 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별지 4 증인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별지 5 감정인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감 정 인 : (인)

## 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기 획 예산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소홀 | • 200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 중 환경산림과의 구간별 가로수 식재 부적절과 간척사업소의 해창 · 오마간척지 매각대금 징수소홀 2건이 추진 중으로 지적사항 처리에 소홀함. | • 조속히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시는 그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주 민 복지과 | 경로당 등록 개소수 및 지원기준 불합리 | • 경로당 급식비를 원칙없이 지원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경로당 난방 · 운영비도 원칙없이 지원함.<br>두원은 경로당 수가 56개로 면세가 비슷한 대서 33개, 남양 36개, 동강 39개임.<br>• 이는 민선4기 이후, 마을 호수와 관계없이 작은 마을도 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객관적인 등록기준에 따라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하나 이에 따른 방안은 미흡함. | • 객관적, 합리적인 경로당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행 정 지원과 | 군수 읍 · 면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 업무추진 소홀 | • 군수 읍 · 면 순방 시 건의사항을 처리한 142건 중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한 점암면 부녀회 운영비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해결하였으며, 또한 강산 · 점암 · 천학지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 처리사항도 미비한 점이 많은데 해결했다고 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함. | • 실과소에 통보하여 투명하고 사실적인 처리결과 제출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재무과 |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 | •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8,348천원으로 체납처분 등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를 해야 함에도 대부료 채납액 징수 업무추진에 소홀함. | •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재검토** | • 지방세 결손 처분액이 3억6천만원 정도로 이 중에는 징수할 수 있는 사유의 결손처분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 앞으로는 지방세 결손처분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결손처분한 898건에 대하여 재검토 후 결과보고 |
| |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대책 소홀 | • 지방세 1백만원 이상 고액 **채납액이** 21억 9천만원으로 체납자 중에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으므로 재산압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징수해야 함에도 업무추진을 소홀함. |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대책 소홀 | • 200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19억6천만원이며, 2007년과 2008년도 도세와 군세 중 지난연도 징수율은 20% 전후로 결손액이 1억원 정도임. 과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 • 지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총무위원회에 보고후 결과 보고할 것이며,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투자 정책과 | 투자유치 및 조선산업 등 추진 사항에 대한 군민홍보 미흡 | • 투자유치를 하면 군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등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자료가 너무 미흡하며, 조선산업, 남열리조트, 농공단지조성에 대한 자료는 전혀없음.<br>이들 사업의 전반에 걸친 추진사항, 애로사항, 대책 등이 투명하게 보도되고 홍보하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홍보 미흡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 • 투자유치에 관한 자세한 자료제출과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결과보고 |
| | 관내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대책 강구 | •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주)동성 에서 농업용 비닐을 생산하는 등 관내 농공단지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바 제품의 질이 하자 없다면 군 차원에서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군 차원에서 농공 단지 생산재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 동강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침수피해 방지 대책 강 | • 동강농공단지 조성으로 우기 시 관덕천이 범람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폭우 시 인근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시행 시 배수 및 안전시설 등을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동강농공단지 인근 지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문화 관광과 | 우주발사준공식 예산의 군민의 날 옥내 행사비로의 집행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 | • 200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건 중 환경산림과의 구간별 가로수 식재 부적절과 간척사업소의 해창·오마간척지 매각대금 징수소홀 2건이 추진 중으로 지적사항 처리에 소홀함. | • 조속히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시는 그에 따른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 체육시설에 대한 동계전지훈련 유치 실적 저조 및 홍보 대책 소홀 | • 우리지역은 날씨가 온화하여 동계 전지훈련을 하는데 적지이고 잔디구장 등 좋은 환경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유치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미흡함. | • 전담반 편성 등 유치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열린 민원과 |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연체자금 해소 대책 소홀 | •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에 대한 연체액 누증으로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해소대책이 미흡함. | •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액 정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보건소 | 보건지소의 동절기 건축은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바 공사중지·연기 등 대책강구 | • 보건지소 건축 공사기간이 대부분 겨울철로 되어 있어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바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중지 또는 연기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동절기 부실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결과보고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공설운동장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등 대책강구 | •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생활체육시설, 공설운동장, 팔영체육관 등 유지·관리 시설은 계속 늘어가고 군비는 열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등 대책은 미흡함 | • 생활체육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정 등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결과보고 |
| | 팔영체육관 지붕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등 대책 강구 | • 팔영체육관 지붕의 누수현상이 발생된 지가 오래 되었으나 방치되고 있으며, 누수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등 행사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수공사 등 조치해야 할 사항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에 따른 대책은 미흡함. | • 팔영체육관 지붕 누수방지 보수공사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결과보고 |
| 농업축산과 | 200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소홀 | • 200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업인회관 신축공사 소홀 건에 대하여 기 확보된 사업비 5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사업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09년 예산 9억 2천만원 요구는 부당함. | • 사업부지 확보 후 의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 결과보고 |
| | 공수의 진료 수당 지급 소홀 | • 공수의 진료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서 진료 실적이 2,630두에서 3,426두까지 일정하지 않음에도 5,880천원씩 동일하게 지급됨. | • 2009년부터는 공수의 진료수당을 진료실적에 따라 지급조치하고 결과보고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환경 산림과 | 통합 숲 가꾸기 사업 등 사업자 선정 소홀 | • 통합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관련 사업(37건 3,152백만원)을 추진하면서 관내 사업체 4개사가 있음에도 08년 전체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추진됨. | • 관내업자에게도 사업계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후 결과보고 |
| | 산지전용허가 업무처리 소홀 | • **태양**광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협의시 동강 매곡, 포두 송산지구는 난개발이 심함에도 산림훼손 협의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 • 산지전용허가 시 심사숙고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기준 강화 및 복구조치 후 결과보고 |
| 수산과 | 도양 도선대기소 설치사업 추진 소홀 | • 08년 명시이월 사업인 도양 도선대기소 설치사업이 녹동항 정비 계획 중이라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30,000천원의 예산이 불용위기에 처하는 등 추진 소홀 | • 08년 2월말까지 사업착공하도록 하고 준공 후 결과보고 |
| 재난 관리과 |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 • **하천** 점·사용료 부과액 169명 13,538천원 중 79명 6,557천원만 징수하고 90명 6,981천원이 미징수 되었으나 행정조치 미이행 등 조치 소홀 | • 미징수액 6,981천원 조기 징수 후 결과보고 |

| 실과소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농업<br>기술센터 | 마을 공동 휴식터<br>사업 추진 부적정 | • 08년 마을 공동 휴식터 조성사업 (5건 75,000천원)이 소액 지원으로 인한 소규모 시설로 주민 이용도가 떨어지고 건설과에서 동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은 **부적절함.** | • 09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사항 결과보고 |

# 결 과 보 고 서

2010. 12. 17.(금) 10:00
제189회 제2차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주 식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10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방법은
제18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14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0년도 기능성 쌀 생산시설 보조사업 추진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고흥군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한 2010년도 기능성 쌀 생산가공시설 보조사업은 2010년 3월 10일 착공하였으나

2010년 11월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은 완공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완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지도 · 감독을 적극 실시

조기에 보조사업이 마무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념물인 금사리 은행나무 보호관리 소홀입니다.
영남면 금사리 소재 은행나무는 수령이 500여년생인 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은행나무 주변 지반이 약화되는 등으로 생육지장 및 보호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사리 소재 은행나무는 적극 보호되어야 할 기념물로 주변 지반보강 등 대책을 조속히 강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 철저 및 농협보조금 지원참여 대책강구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 시 읍 · 면 납품업체 선정위원회에서 납품업체를 선정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해 오고 있으나 저품질 유기질비료가 납품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지침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지역 농협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유기질비료 납품업체 선정 시 품질을 최우선적 선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읍 · 면 지도를 강하토록 하고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이 보조금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함은 물론 관내 농가에 우리 군 자체에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 · 공급할 수 있는 농협을 중심으로 한 생산시설 확충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요구합니다.

◎ 다음은
도양읍 도시계획 도로 확 · 포장공사 추진 지연입니다.

평화~북촌간 도시계획도로 확 · 포장공사 추진에 있어 종배수관 역구배 시공 등으로 침수피해를 초래하는 등 민원발생은 물론 당초 준공기한을 8개월 가량 도과하여
장기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2차 공사 추진 시에는 철저한 지도 · 감독을 통하여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관내보안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있어 에너지 관리 등록업체와 계약 고장 등 발생시 계약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으나 주민의 고장신고 시 즉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범죄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적극 유념하여 고장발생 시 즉시 보수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인 · 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축사 등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시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 저해를 우려 인근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 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의문을 제기함은 물론 주민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 시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사전 지역주민의 이해와 조정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보다 더 적극 행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이를 시정 · 개선토록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며,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1. 11. 21 ~ 11. 29【9일간】

**3) 감사장소 :** 소회실 및 사업장 현지

**4) 대상기관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5) 대상사무 :**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6) 감사방법(감사실시 주체) :** 본회의 실시

**7) 감사반 편성**

| 상임위원회별 | 감사위원 명단 | 감사보조자 |
|---|---|---|
| 산업 · 건설위원회 | • 위 원 장 : 의 **장**<br>• 부위원장 : 부의**장**<br>• 위　　원 :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최설희, 송인숙의원 | **전문위원 이선란**<br>전문위원 송여종 |

### 8) 감사일정

| 월 일 | 감사대상기관(실과소) | 비고 |
|---|---|---|
| 11. 21(월) | 기획실, 주민복지과, 방재과 | •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감사 실시<br>• 실과장의 보고 및 답변 |
| 11. 22(화) | 행정과, 재무과. 건설과 | |
| 11. 23(수) | 투자정책과, 경제유통과, 문화관광과 | |
| 11. 24(목) |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 |
| 11. 28(월)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
| 11. 29(화) | 종합민원실, 우주항공사업소,<br>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 감사일정은 의사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임위 원회별 감사계획서에 의함

### 9) 감사요령

○ 수감자료 보고 및 질의 답변
○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병행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

### 10) 감사진행 순서

○ 감 사 선 언 ····· 감사위원장
○ 인 사 말 씀 ····· 감사위원장
○ 선 서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 수감자료보고 ····· 피 감사기관장(실과소장)
○ 질의 및 답변 ····· 감 사 반
※ 필요시 현지확인 병행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감사위원장

### 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감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 기간 · 대상기관 ·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

### 11) 기타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본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름.

### 11) 첨부서류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
○ 증인 선서서
○ 감정인 선서서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식)

### 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은 감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 기간 · 대상기관 · 실시경과 등 일반사항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등을 포함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

### 13) 기타사항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음.
○ 본 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름.

### 14) 첨부서류

○ 감사장 좌석 배치도
○ 피 감사공무원 선서서
○ 증인 선서서
○ 감정인 선서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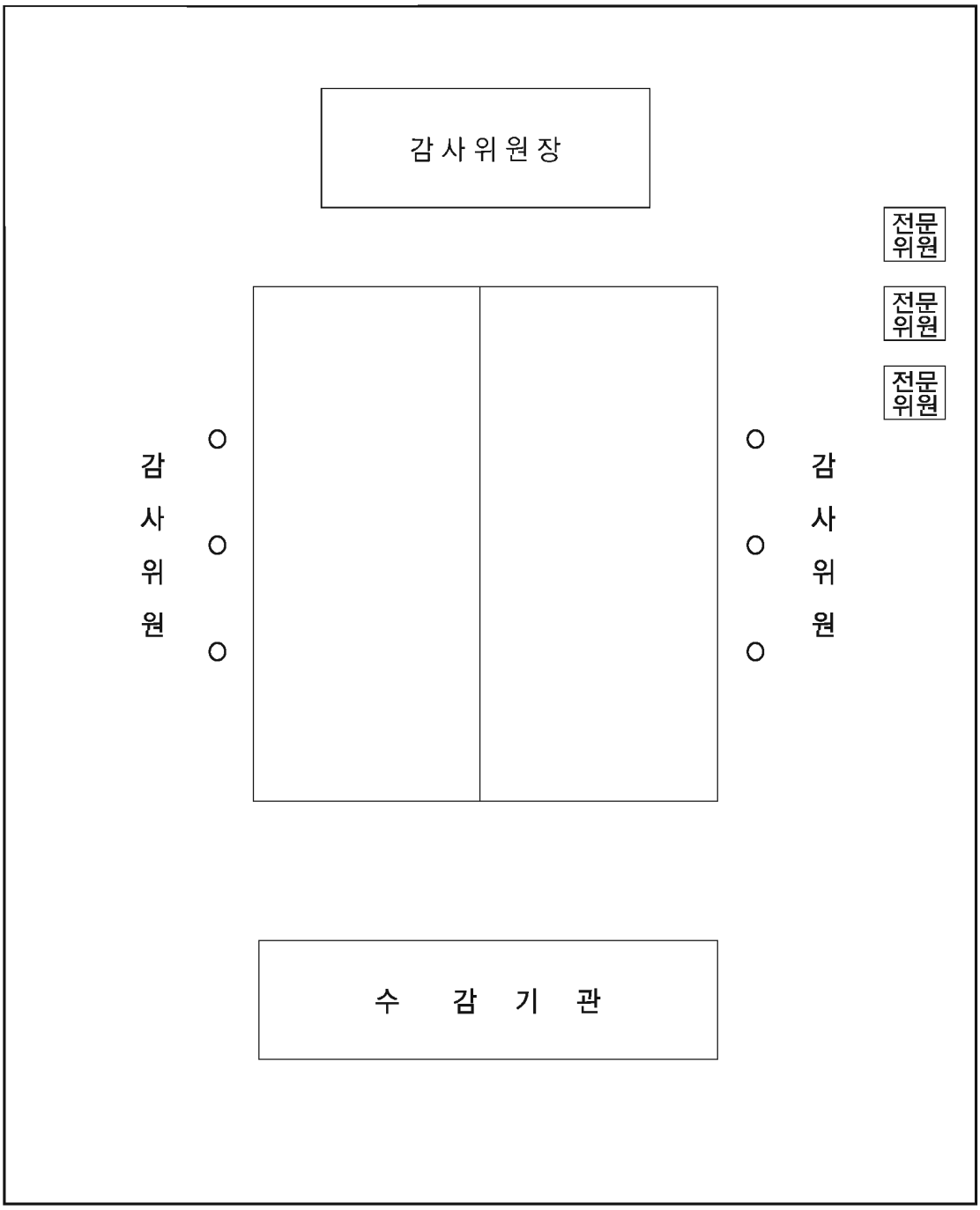
별지 1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위원장 : 인

| 연번 | 실과소 | 제 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 | | |

## 별지 2 감사장 배치도(예시)



별지 3 피감사공무원 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의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별지 4 증인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증 인 : (인)

별지 5 감정인선서서

# 선 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감 정 인 : (인)

## 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1 | 기 획 실 (전실과소) | • 감사 자료 보완 | • 홍보물, 현수막등 자료 제출시 건수만 파악 제출하여 실과소간 가격 비교등이 어려움. | • 2012년부터 보완 제출 건(종)당 매수를 통합 기재. 예시) 프랑 카드 3종 48매 |
| 2 | 재 무 과 | • 군 소유 차량 매각시 사후 관리 철저 | • 군에서 차량 매각시 고흥 랜드 마크가 있는채로 매각 매입자가를 이를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여 자칫 군 이미지 훼손또는 권한 남용등 악용의 우려 | • 관용차량 매각시 적절한 방안 강구 |
| 3 | 투자정책과 | • 감사 자료 보완 | • 풍양농공단지 현황 감사 자료 누락됨 | • 2012년부터 보완 제출 |
| 4 | 〃 | • 품질위반 유류업체 등록 취소 이후 관리 철저 | • 유류등 판매업체가 품질 검사에서 적발되어 등록 취소 되었으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음. 군민의 피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관리 철저 | • 등록 취소 업체의 사후 관리 방안 강구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5 | 경제유통과 | • 친환경 쌀 가공 공장 지도 단속 소홀 | • 관내 2개소의 친환경쌀 가공공장이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쌀 매입 및 가공을 기피하고 외지 쌀을 대량 입가공하는 등 당장의 이익실현에 급급하고 있음.<br>• 3년에 걸쳐 28억을 지원받은 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br>•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소득증진과 우리군 친환경쌀의 이미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2개 친환경 쌀 가공업체의 친환경 쌀 매입, 가공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br>• 향후 보조 사업 지원시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강구 |
| 6 | 〃 | •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 농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시 일부 영세 수출업자와 관내 수출업체 우선 지원을 위한 조례를 련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지원 현실을 개선하기 바람. | • 조례제정 검토 시행 |
| 7 | 문화관광과 | •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 검토 | •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이 증대 되 가고 있으나 처우가 타 지역보다 열악하여 침체될 우려 있음. | • 이동 수단과 근무 수당에 대한 처우 개선 검토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8 | 환경산림과 | • 국도 27호선 가로수 종 선정 부적정 | • 국도 27호선에 식재한 가로수인 종려 나무는 불안한 식재로 활착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사하고 있고 또한 이종의 종려나무가 혼식되어 가로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감사시 마다 지적되어 수차례 보식을 하고 있는등 잘못된 수종선택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 당시 수종 선정 공무원이 누군지 왜 이 수종을 선정하였는지 원인 규명하기 바람. |
| 9 | 〃 | • 팔영산 편백림 매입 예산성립시 검토소홀 | • 팔영산 편백림 매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세워 불용처리 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는등 예산 성립 부적정 | • 향우 예산 성립시 면밀한 검토 |
| 10 | 〃 | • 임도 시설 개보수후 사후 관리 소홀 | • 임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으나 우기가 지난 후에 도로가 패어 있는등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음.<br>• 최근 임도 트레킹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론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경관 관리 철저 | • 임도의 사후 관리 철저<br>• 트레킹 관광 트렌드 대비 임도 경관 관리 철저 및 홍보 대책 마련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11 | 농업축산과 | • 친환경 시설채소 사업장<br>(파프리카, 토마토)<br>• 관광마케팅(체험관 관등) 검토 | • 친환경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원받는 흥양영농조합에 (2년간 5종 사업에 5,936,000 천원)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험농장등을 기획 관광산업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체험 농장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 검토 보고 |
| 12 | 〃 | • 법인에 지원된 기계화 시설 사후 관리 철저 | • 법인에 지원된 기계화 시설등은 회원간 공유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유화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인등 단체에 지원된 설비에 대한 사후 사용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 기계화 시설 지원 법인 지도 감독 철저 |
| 13 | 〃 | • 유휴지 권장 작목 수급 조절 지도 철저 | • 비전5000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가을철 유휴지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br>• 이들 작목 수확시 예견되는 판로와 다량출하로 인한 가격하락등이 예상 되므로 사전 사후 지도 철저 | • 품목 선정 지도 및 사후 판로 안내 철저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14 | 농업축산과 | • 농업 관련 지원예산 편중 지원 여부 검토 철저 | • 농업관련 보조금이 일부 법인, 단체, 개인등 소위 아는 자만 지원을 반는등 지나치게 편중 지원되고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됨<br>• 소외되는 영세농에게 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중복 지원 검토 철저 | • 관련 부서간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 할것. |
| 15 | 해양수산과<br>건 설 과 | • 해안도로 자동차 교차지점 확대 설치 검토 | • 어촌종합개발사업중 남양마을 해안 도로에서 우도마을 해안도로까지 차량 교차지점이 한군데 밖에 없어 이용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함<br>• 또한 우도 가족의섬 해안도로에는 차량 교차지점이 전무한 실정임.<br>• 교차지점 추가 개설 검토 바람 | • 신공사 부서(건설과)와 협의하여 자동차 교차지점 추가 설치 |
| 16 | 건 설 과 | • 녹동권 연안 인근섬 주민 생활권 변경을 위한 노선변경 및 증차 방안 긍정 검토 | • 녹동 연안 인근섬 평일도. 충도.금당도 주민의 생활권이 고흥군이었으나 여러 여건상 장흥,완도등으로 생활권을 바꾸고 있음.<br>• 거금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 유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차량의 노선변경 및 증차 운영 검토 추진 | • 노선 변경 및 증차 운영 방안 검토 적극 추진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17 | 농업기술센터 | • 고흥쌀 브랜드 제고 노력 소홀 | • 탑라이스 시범 재배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고 있으나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도 들지 못하는 등 성과 미흡 | • 고흥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추진 |
| 18 | 보 건 소 | • 공중 보건의 복무관리 소홀 | • 공중 보건의에 대한 민원 불편사례가 많은 상황임 엄연히 국가가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 이므로 이들에 대해 엄격한 복무규정을 적용 지도 감독을 해야 하나 이에 소홀함이 있음.<br>• 특단의 대책을 마련,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 • 공중보건의 근태 관리 및 친절 교육 실시등 관리 감독 철저 |
| 19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감사 자료 보완 | • 녹동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 징수현황이 감사 자료에 누락됨, | • 2012년 감사자료 작성시 보완 |

| 연번 | 실과 | 제 목 | 지적(시정)사항 | 조 치 의 견 |
|---|---|---|---|---|
| 20 | 문화체육 시설사업소 | • 생활체육지도사 운영방법 개선 및 감독 철저 | •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에서 임용하고 기금과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5명의 생활체육지도사는 지역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현장지도와 각종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군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로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 관리 될 수 운영방법 개선 및 감독 철저 | • 규정에 맞게 근태상황을 관리 기록하고 근무평정을 실시함은 물론 지역정서에 맞게 이들을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임. |
| 21 | | • 김태영축구장 측구 배수로 준설 및 방품림 조성 검토 |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진흥과 동절기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완공된 도양읍 용정리 1087 번지에 조성된 김태영축구장의 측면 배수로가 빗물로 유실된 토사로 200m(총연장660m)매몰되었으니 준설 조치.<br>• 아울러 축구장 위치상 바람이 강해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 향후 방품림 조성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 배수로 준설 조치 및 방품림 조성 검토 추진 |

# 결 과 보 고 서

2011. 12. 16.(금) 09:20
제199회 제2차 정례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주 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방법은
제19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에서 실시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21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친환경 쌀 가공공장 운영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 관내 친환경 영농법인 2개소에 지원된 친환경 고품질 벼 건조, 저장, 가공시설은 고흥쌀을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하고, 산지 쌀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8억원의 보조금을 투자, 시설을 완공,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인이 본래의 운영 목적과는 다르게 관내 친 환경쌀 재배농가의 쌀 가공을 기피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쌀을 대량 가공하여 당장의 이익 실현에만 급급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로 지원된 시설임에도 오히려 친 환경 쌀 재배 농가의 의욕을 떨어드리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 한 일입니다.
관련 부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상기 영농법인 2개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시설 투자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우리군 친환경 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향후 추가 지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과를 따져서 실행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 다음은,
임도 시설 개 · 보수후 사후 관리 소홀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산의 임도를 보수하고 있으나
우기가 지난 후 도로 패임 상태가 오랜기간 방치되는 등 사후 관리가 소홀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올레길, 둘레길 등을 걷는 트레킹 관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주요 산의 임도를 산행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도 주변에는 야생 들꽃이 철따라 피어나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산행길도 비교적 쉬워서 잘 가꾸고 보존하여 홍보한다면 새로운 둘레길을 개발하지 않고도 트레킹을 즐기는 관광객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임도 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임도 보수에 따른 사후 관리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군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고흥쌀 브랜드 제고 노력 소홀입니다.

우리군은 탑 라이스 시범 재배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도 선정되지 못하는 등 예산 투자 대비 성과가 미

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쌀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받고 자라 전국 어느 지역 쌀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수도권 학교급식등에서 우리군의 친환경 재배 쌀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호기를 맞아 농업관련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분담과 협조를 공고히 하여 10대 브랜드 선정기준에 맞춤 전략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고흥쌀 브랜드가 전남이 아닌 전국의 탑 브랜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공중 보건의 복무 관리 소홀 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보건 지소에는 37명의 공중 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중보건의의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근무 행태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왕림하고, 불친절한 응대로 불쾌감을 느끼는 등
이용 주민의 불만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 대체근무자로 엄연히 국가가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이기에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엄격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수시로 복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 체육지도자 운영 방법 개선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전라남도 생활체육회에서 임용하고, 기금 50% 군비50%로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현장지도와 각종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배치된 지도자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 해야 함에도 인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규정대로 근태 상황을 관리하고 각자의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재임용 시에 반영함은 물론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민의 생활체육 진흥과 어르신들의 건강체조 지도 등
다양한 군 시책과 접목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며

타 부서 유사 사업 활동 인력과도 중복됨이 없는 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2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거금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녹동권 연안 인근섬 주민의 생활권 유입을 위해 차량 노선 변경과 증차 운행을 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고흥군 연안 인근섬인 평일도. 충도. 금당도 주민의 생활권이 과거에는 고흥이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장흥. 완도 등으로 생활권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금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다시 고흥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우리 군을 왕래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의 노선 변경과 증차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지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21건의 지적 사항은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3장

## 제3절 행정사무조사

1. 제187회 제1차 정례회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2. 제192회 임시회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3. 제198회 임시회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4. 제202회 임시회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3절 행정사무조사

## 1. 제187회 제1차 정례회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가.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09년도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실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2) 추진방침

○ 민원발생 사업장은 최우선하여 현지확인 실시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 3) 추진계획

○ 기　　간 : 2010. 09. 10. ~ 09. 16.〈7일간〉
○ 읍면별 현지확인 일정 : 별지참조
○ 조사대상 : 16개 읍면(2009년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2개반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주요내용
  •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
    – 보고자 : 읍면장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조사

○ 조사반 편성

| 구 분 | 의 원 | | 수 행 | 대상읍면 |
|---|---|---|---|---|
| | 반장 | 반원 | 공무원 | |
| 계 | 2명 | | 4명 | 16읍면 |
| 1반 | 김옥래 | 배기홍, 송경석, 송우섭, 송인숙의원 | 박서규<br>김선홍 | 고흥, 점암, 영남, 과역<br>남양, 동강, 대서, 두원 |
| 2반 | 박금래 |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 최설희의원 | 김병조<br>신상훈 | 도양, 풍양, 도덕, 금산<br>도화, 포두, 봉래, 동일 |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확인

## 4) 협조사항

○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자료 비치

○ 사업장별 관계서류(설계도서 등) 사전준비

○ 해당 읍면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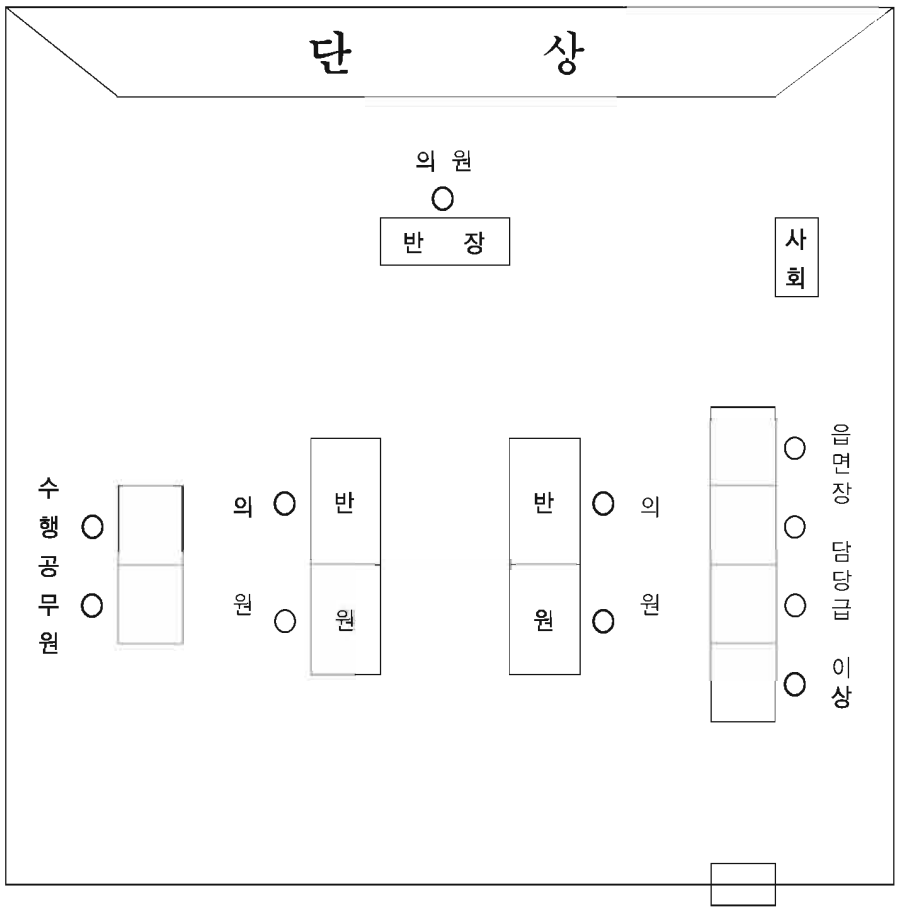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수산과

## 5) 행정사무조사 일정

| 구분 | 확 인 읍 면 | | | |
|---|---|---|---|---|
| | 1반 | | 2반 | |
| 월 일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 09. 10(금) | | 동강면 | 봉래면 | 동일면 |
| 09. 13(월) | 남양면 | 과역면 | 도화면 | 포두면 |
| 09. 14(화) | 점암면 | 영남면 | 풍양면 | 도덕면 |
| 09. 15(수) | 고흥읍 | 두원면 | 금산면 | 도양읍 |
| 09. 16(목) |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 |
| 위 일정은 각 반별 활동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

# 보고회장 배치도

【장소 : 읍면회의실】




◦ **의　　원** : 5~6명

◦ **수행공무원** : 2명

## 나. 2009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 지적사항 목록

| 일련번호 | 위치 읍면 | 위치 리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1 | 도양 | 용정 | 잠두배수로 시설공사 | • 전석쌓기 55m (H=2.0m)<br>• 사업비 19,580천원 | 〈사업계획 부적정〉<br>• 사업계획 수립 시 잔여 사업량이 소규모일 경우 완공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하여야 하나 잔여구간 사업 미시행으로 주민불편초래 | • 추후 사업시행 시 잔여 사업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하여 우선 시행토록 할 것. |
| 2 | 금산 | 신촌 | 중동하수구 정비공사 | • 개리 41m(0.6 0.6)<br>• 포장 16m<br>• 사업비 15,000천원 | 〈하자보수소홀〉<br>• 하수구 뚜껑과 연결된 구체 콘크리트 이탈로 인한 하수구 뚜껑 파손으로 교통사고 우려 및 통행지장 초래 | • 즉시 하자보수 조치하고 결과보고 |
| 3 | 도화 | 신호 | 반장골 배수로정비공사 | • L=78m(0.8×0.8)<br>• 사업비 18,859천원 | 〈공사 뒷마무리 소홀〉<br>• 배수로 벽면 거푸집 연결핀 미제거로 안전사고 우려 | • 즉시 연결핀을 제거하고 결과보고 |
| 4 | 봉래 | 예내 | 창포배수로 보수공사 | • 암거 22m(1.58×1.5)<br>• 포장 22m<br>• 사업비 19,700천원 | 〈암거 시공계획 부적정〉<br>• 암거 시점부는 토사 등 퇴적물이 유입되는 곳이나 맨홀시설이 없어 토사 등이 암거 내부로 유입되어 사후관리 불편초래 | • 토사 등 퇴적토 저류시설 설치 후 결과보고 |
| 5 | 봉래 | 예내 | 교동진입로 포장공사 | • 암거 16m(1.2×1.2)<br>• 사업비 18,635천원 | 〈사전조사설계 소홀〉<br>• 전입로 확장시 암거를 시설하였으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 미검토 | • 추후 공사 시는 예산절감 방안 강구(공법 비교검토) |
| 6 | 동일 | 덕흥 | 동일 덕흥 농로정비공사 | • 포장 198m (b=2.5m, t=0.15)<br>• 사업비 13,772천원 | 〈콘크리트 포장계획 부적정〉<br>• 농로포장 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등 교행 불가능 | • 추후 사업시행 시 농기계 등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교차시설 설치 |

| 일련번호 | 위 치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읍면 | 리 | | | | |
| 7 | 점암 | 장남 | 옥천<br>농로포장공사 | • 콘크리트포장 236m (b=3.0m)<br>• 사업비19,600천원 | 〈포장사업계획 부적정〉<br>• 포장공사를 진입부부터 시행치 않고 종점부부터 시행하여 통행불편 초래 |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조속사업 시행토록 조치할 것. |
| 8 | 도덕 | 도촌 | 도촌 중앙공원<br>배수로 정비공사 | • 배수로 206m (0.5×0.5)<br>• 사업비 19,518천원 | 〈사후관리 소홀〉<br>• 배수로 주변 잡초 및 퇴적토 미제거로 배수기능 장애 초래 | • 잡초 등을 즉시 제거하고 결과보고 |
| 9 | 영남 | 사도 | 사도마을 소공원<br>정비공사 | • 공원조성 A=2,078㎡<br>• 사업비 17,640천원 | 〈하자보수공사 및 관리소홀〉<br>• 식재된 등나무 3주 고사 및 잡초 미제거로 식재목 생장지장 초래 | • 즉시 고사된 수목보식 및 잡초제거 후 결과보고 |
| 10 | 영남 | 사도 | 사도<br>농로포장공사 | • 콘크리트 포장 211m (b=3.7m)<br>• 사업비 17,460천원 | 〈포장공사계획 부적정〉<br>• 산지 구간의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등 교행불편 초래 | • 차량 등이 교행 할 수 있도록 교차시설 설치 후 결과보고 |
| 11 | 과역 | 도야 | 도야<br>농로포장공사 | • 콘크리트 포장 346m (b=3.0m)<br>• 사업비 19,888천원 | 〈콘크리트타설 부적정〉<br>• 동절기 공사로 일부 포장표면이 재료분리 발생 | • 추후 동절기 공사 시는 콘크리트 타설 시기를 적정온도 이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온조치 |
| 12 | 과역 | 하송 | 과역면 도로변<br>경관조성공사 | • 식재 177주<br>• 사업비 19,800천원 | 〈수종선정 소홀〉<br>• 식재된 수종이 주변과 조화가 되지 않음. | • 추후 수종선정 시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식재토록 조치 |

| 일련번호 | 위 치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읍면 | 리 | | | | |
| 13 | 남양 | 장담 | 장담<br>농로포장공사 | • 콘크리트 포장 245m (b=4.0m)<br>• 사업비 19,685천원 | 〈진입시점부 안전시공소홀〉<br>• 시점부 진입부분 기각정리 미시공으로 농기계 등 통행불편 및 사고우려 | • 추후 사업시행 시는 기각부를 완화하여 시공토록 할 것. |
| 14 | 동강 | 한천 | 운동<br>농로 확포장공사 | • 포장 66m(b=3.0m)<br>• 사업비 19,147천원 | 〈콘크리트타설 소홀〉<br>• 일부 경사면의 포장면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미관 및 통행불편 초래 | • 추후 사업시행 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 철저 |
| 15 | 동강 | 매곡 | 쌍암 구 국도변<br>소공원 조성사업 | • 1식<br>• 사업비 19,200천원 | 〈사후관리 소홀〉<br>• 소공원 내 잡초 미제거로 경관저해 등 공원기능 상실 | • 즉시 풀베기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 |
| 16 | 대서 | 남정 | 중산마을<br>안길정비공사 | • 포장 30m(b=2.0m)<br>• 개거 130m(0.6 0.6)<br>• 사업비 19,000천원 | 〈포장수축줄눈시공소홀〉<br>• 콘크리트의 팽창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수축줄눈 미설 | • 콘크리트 컷터작업 재시공 후 결과보고 |
| 17 | 두원 | 대전 | 송정<br>농로포장공사 | • 콘크리트포장 381m (b=2.7m)<br>• 사업비 15,000천원 | 〈노견 되메우기 소홀〉<br>• 포장공사 후 노견 되메우기 미실시로 통행불편 초래 | •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결과보고 |

# 결 과 보 고 서

2010. 9. 17(금) 10:00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박 금 례 의원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 · 면 693개소였으나 의사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64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이유로 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 사업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양읍 잠두배수로 시설공사는 소액의 사업비 투자로 잔여 사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미 시행구간에 대한 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봉래면 교동진입로 포장공사는 소규모 농기계 등이 통행하는 도로이**나** 통수단면을 계산
하지 않고 포장구간에 암거를 시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과
비교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암면 옥천농로포장공사는 진입부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종점부부터 사업시
행을 함으로써 주민과 차량 등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과역면 도야 농로포장공사는 동절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일부 포장 면에 재료분리 현상
이 발생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시는 시방서 규정에 따라 일정온도 이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타설 후 보온을 철저히 하여 동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서 중산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콘크리트 팽창 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두원 송정 농로 포장공사는 포장공사 완료 후 노견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세 번째로
하자보수 소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영남면 사도마을 소공원 정비공사는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어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
수목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산면 중동하수구 정비공사는 하수도 뚜껑과 연결된 구체 콘크리트 이탈로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어 사고 위험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즉시 하자보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도화 반장골 배수로정비공사는 배수로 벽면의 거푸집 고정핀이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사업이 잘된 사례입니다.

포두면에서 시행한 중흥 농로포장공사와 상포지구 농로포장공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건설공사 시방서규정에 맞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견실한 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1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제192회 임시회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가.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0년도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2) 추진방침

○ 민원발생 사업장은 최우선하여 현지확인 실시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 3) 추진계획

○ 기　　간 : 2010. 03. 17. ~ 03. 23.〈7일간〉
  • 읍면별 조사일정 : 별지참조
○ 조사대상 : 16개 읍면(2010년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2개반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주요내용
  •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
    – 보고자 : 읍면장 – 배석 : **담당급**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조사
○ 조사반 편성

| 구 분 | 의 원 | | 수 행 공무원 | 대상읍면 |
|---|---|---|---|---|
| | 반장 | 반원 | | |
| 계 | 2명 | | 5명 | 16읍면 |
| 1반 | 배기홍 |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 송인숙의원 | 신세경 신상훈 | 고흥, 점암, 영남, 과역 남양, 동강, 대서, 두원 |
| 2반 | 장세선 | 박금래, 김주식, 김의규, 송경양, 최설희의원 | 송여종 김선홍 | 도양, 풍양, 도덕, 금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확인

### 4) 협조사항

○ 보고장소 마련 : 읍면 회의실(배치도 별지 참조)

○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자료 비치
– 사업조서도 함께 비치

○ 사업장별 관계서류(설계도서 등) 사전준비

○ 해당 읍면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등 현지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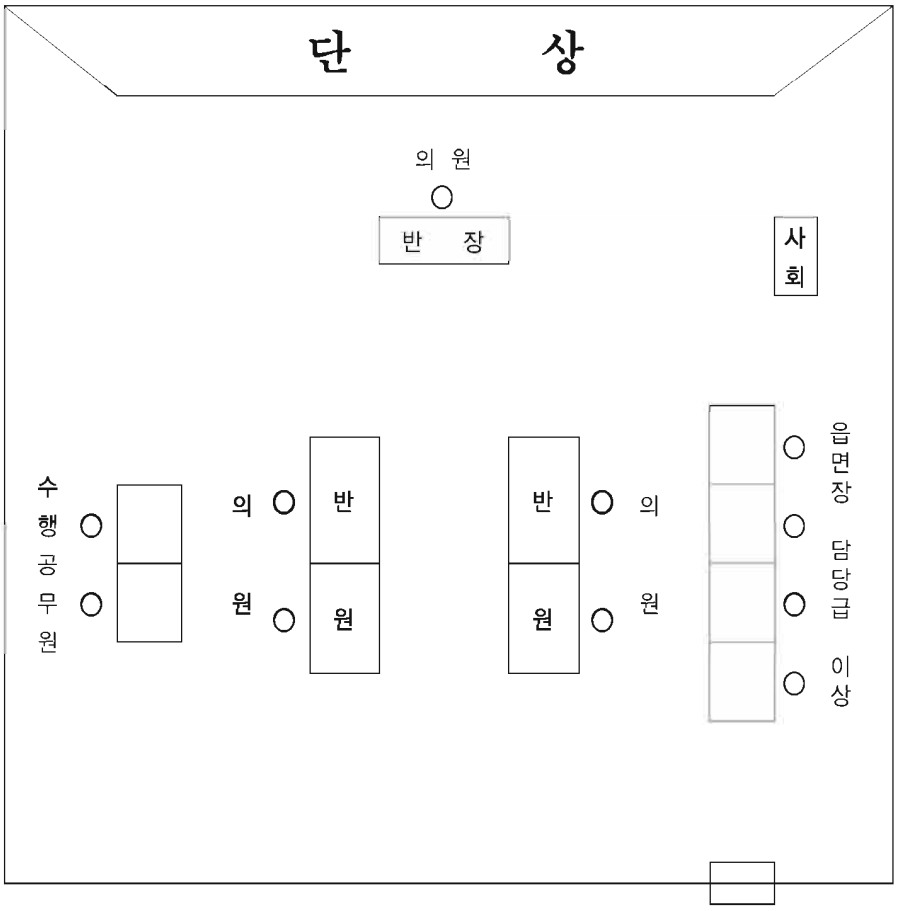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수산과

### 5) 행정사무조사 일정

| 구분 / 월 일 | 확 인 읍 면 | | | |
|---|---|---|---|---|
| | 1반 | | 2반 | |
|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 03. 17(목) | | 동강면 | 봉래면 | 동일면 |
| 03. 18(금) | 남양면 | 과역면 | 도화면 | 포두면 |
| 03. 21(월) | 점암면 | 영남면 | 풍양면 | **도덕면** |
| 03. 22(화) | **두원면** | 고흥읍 | 금산면 | **도양읍** |
| 03. 23(수) |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 |
| 위 일정은 각 반별 활동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

# 보고회장 배치도

【 장소 : 읍면회의실 】




◦ **의　　원** : 5~6명

◦ **수행공무원** : 2명

# 나. 2010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 지적사항 목록

| 일련번호 | 위치 읍면 | 위치 리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1 | 고흥 | 남계 | 고흥 봉동 하수도 보수공사 | • 하수도 39m<br>• 사업비 11,820천원 | 〈현장사전조사 설계소홀〉<br>• 하수도 시설위치가 차량통행이 많고, 중차량통행이 예상되므로 스틸그레이팅 자재두께를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75mm로 반영하여야 하나 50mm로 설계되어 금후 유지 관리곤란. | • 앞으로 현장조사 시 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의견을 반영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설계시공 할 것. |
| 2 | 도양 | 용정 | 안평 안길 포장공사 | • J형측구 53m<br>• 사업비 19,840천원 | 〈공사마무리 소홀〉<br>• 안평 안길 포장공사가 J형 측구로 L=53m 시공되어 있으나 시점부 거푸집 등이 제거되지 않아 측구기능 저해. | • 즉시 거푸집 제거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3 | 풍양 | 한동 | 대청 농로포장공사 | • 포장공 : L=194m<br>B=3.5m<br>T=0.20m<br>• 사업비 18,000천원 | 〈공사마무리 소홀〉<br>• 농로포장공사 후 노견 되메우기 미 실시로 통행불편 초래. | • 즉시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4 | 도덕 | 신양 | 회룡 농로포장공사 등 9건 | • 석축쌓기 L=42m<br>• 광장포장 L=50m<br>• 사업비 18,606천원 | 〈준공검사 소홀〉<br>•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감독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고, 공사 준공검사 시 반드시 명예감독관 입회하여 준공처리 하여야하나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입회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은 부당함. | • 앞으로는 준공검사 시 명예감독관을 입회하여 사업이 주민의견 대로 최종확인이 되므로써 민원발생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할 것. |

| 일련번호 | 위 치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읍면 | 리 | | | | |
| 5 | 금산 | 석정 | 적대봉 등산로 체육시설 조성사업 | • 4식<br>• 사업비 14,508천원 | 〈사후관리 소홀〉<br>• 사업시설물 부지 줄떼시공 잔디 일부가 동해로 고사되어 사후관리가 소홀함. | • 즉시 잔디를 보식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6 | 도화 | 봉룡 | 봉서 용배수로 정비공사 | • L=102.0m<br>• 사업비 10,906천원 | 〈공사마무리 소홀〉<br>• 공사 배수로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L=16m가 연결부 모르터가 조잡 시공되어 유지관리 곤란. | • 즉시 L=16m 구간 모르터 시공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7 | 포두 | 봉림 | 금사농로포장공사 | • 개거 60m(0.8×0.8)<br>• 집수정 1개소<br>• 사업비 18,000천원 | 〈공사뒷정리 소홀〉<br>• 농로포장공사 시 레미콘을 소운반하면서 기준 포장도로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통행불편 초래. | • 즉시 포장도로에 떨어진 레미콘 제거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8 | 동일 | 덕흥 | 덕흥간척지 농로포장공사 | • L=226m<br>• 사업비 17,402천원 | 〈공사마무리 소홀〉<br>• 도로 횡배수관 유입부분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계획 배수를 할 수가 없음. | • 즉시 횡배수관 유입부분 단면 확보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9 | 영남 | 남열 | 남열광장포장 및 농로포장공사 | • 박스포장 L=50 (1.0×0.8)<br>• 사업비 19,522천원 | 〈현장조사 설계 소홀〉<br>• 광장포장공사 현장조사 시 사업장 내에 일부 포장된 기존시설물이 있으므로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기존 시설물과의 접합부가 미 포장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 | • 앞으로는 현장조사 시 세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것. |
| 10 | 과역 | 연등 | 과역 연등 농로포장공사 | • L=208m<br>• 사업비 19,628천원 | 〈사업계획수립 소홀〉<br>•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의 노상, 노체, 법면을 완벽하게 먼저 시공하고 포장하여야 하나 도로주변과 법면이 정리되지 않아 강우로 인한 월류 등으로 세굴붕괴된 상태이며, 통행에 불편 초래 | • 이후 법면보강공사가 시급히 요구됨으로 금후 사업시행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일련번호 | 위 치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 읍면 | 리 | | | | |
| 11 | 남양 | 대곡 | 하와하수도 정비공사 | • L=95m, L=95m<br>• 사업비 14,820천원 | 〈하자보수 소홀〉<br>• 하수도 맨홀을 설치 함에 있어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포장면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하나 2개소가 높게 설치되어 배수처리 기능을 할 수 없음.<br>• 콘크리트 포장 표면이 심하게 균열되어 금후 유지관리가 어려움. | • 하수도 맨홀 2개소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고<br>• 포장표면 균열에 대하여는 금후 강우 시 와이어 멧쉬의 녹슬음 방지와 겨울철 동파 및 지반함수 증가예방을 위하여 표면처리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12 | 동강 | 죽암 | 죽림마을 농로포장공사 | • 포장공 : L=156m<br>B=3.0m<br>T=0.15m<br>• 사업비 15,000천원 | 〈공사준공처리 소홀〉<br>• 농로포장공사 포장두께가 설계상 15cm이나 L= 5m가 10cm로써 부족시공 되었음. | • 포장두께 부족시공분에 대하여는 정산처리 후 공사비 과다지급액은 회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 13 | 대서 | 화산 | 서호마을 농로포장공사 | • 포장공 : L=260m<br>B= 3.0m<br>T=0.25m<br>• 사업비 19,400천원 | 〈사업계획 소홀〉<br>• 농경지 진입로를 시설할 경우 배수로를 먼저 정비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나 진입로를 먼저 설치하여 배수로가 기능을 할 수 없음. | • 현재 시설된 농경지 진입로 3개소 배수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 하단부 준설조치 하고 결과보고 할 것. |
| | | | 읍·1면기타 공통사항 | | • 예산이 연말에 전도되어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발생<br>– 공사기간 촉박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므로써 우리군 생산자재를 시공자가 일부 관외에서 구입 시행.<br>–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br>• 농로포장공사 시 사유지에 포장을 시공함은 부당함. (예:묘지진입로 등) | • 예산성립 즉시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할 것.<br>• 군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지역경재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구매<br>• 공종별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시공 조치.<br>•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현장조사로 사유지 포장 근절 |

# 결 과 보 고 서

2011. 3. 24(목) 10:00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장 세 선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던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 · 면 88개소였으나 의사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64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이유로 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어서 부분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과역면 연등 농로포장공사는 도로를 먼저 완벽하게 시공하고 포장을 하여야 하나 법면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포장하여 법면이 강우 등으로 세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로 법면보강공사가 시급히 요구됨으로
금후 사업시행 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대서면 서호마을 농로포장공사는 농경지 진입로를 시설할 경우 배수로를 정비 후 시행하여야 하나 진입로를 먼저 설치하여 진입로 3개소 시설부분이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없어 금후 강우 시 침수피해가 예상됨으로 진입로 하단부를 준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양면 대청 농로포장공사는 포장공사 완료 후 노견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도화면 봉서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16m구간 접합부 마감 모르터가 조잡 시공되어 보완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양면 하와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 맨홀을 설치함에 있어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포장면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하나 2개소가 높게 설치되어 배수처리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강면 죽림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설계상 포장두께가 15㎝이나 5m구간이 10㎝로 부족시공 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세 번째로 하자보수 소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양읍 안평 안길포장공사는 J형 측구로 53m가 시공되어 있으나 시점부 거푸집 등이 제거되지 않아 측구의 기능을 저해함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즉시 거푸집 등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산면 적대봉 등산로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시설물 부지 줄떼시공 잔디 일부가 동해로 고사되어 즉시 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포두면 금사 농로포장공사는 레미콘을 소운반 하면서 기존 포장도로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바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면 덕흥간척지 농로포장공사는 도로 횡배수관 유입부분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계획 배수를 할 수가 없음으로 유입부분 단면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사업이 잘 된 사례입니다.

봉래면 축정2구 안길 확 · 포장 및 방호벽설치 공사는 현장이 해안가 악조건임에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심한 현장조사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선택, 견실하게 시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공복으로써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제198회 임시회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가.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0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시정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1) 추진방침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 2) 추진계획

○ 기　　간 : 2011. 10. 12. ~ 10. 19.【8일간】
※ 세부 조사일정 별지 참조
○ 대상사업 : 2010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의원 12명(수행공무원 4명)
○ 조사방법 : 서류 및 자료 사전검토, 대상사업 중 표본선정 현지확인조사

### 3) 확인 조사반 편성

○ 편성인원 : 2개반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 구 분 | 의 원 | | 수 행 공무원 | 대상읍면 |
|---|---|---|---|---|
| | 반장 | 반원 | | |
| 1반 | 송우섭 |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최설희 | 송여종<br>김선홍 | 고흥, 점암, 영남, 과역<br>남양, 동강, 대서, 두원 |
| 2반 | 장세선 | 박금래, 김주식, 김의규, 송경양, 송인숙 | 노수철<br>신상훈 | 도양, 풍양, 도덕, 금산<br>도화, 포두, 봉래, 동일 |

※ 의장님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참여**

### 4) 협조사항

○ 2010년도 군 발주사업 자료제출 : 2011. 10. 04.까지

○ 해당 실과소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 등 현지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 현지확인 운행 차량 및 선박

- 승합차량 1대(운전원 포함) : **재무과**
- 화물트럭(임차), 코아채취기(종사원 포함) : 건설과
- 어업지도선 : 수산과

### 5) 행정사무조사 일정

| 월 일 | 반별 | 조사지역 | 대상 실과소 |
|---|---|---|---|
| 10. 12.(수) | | 오전 : 대서<br>오후 : 동강 | |
| | 2반 | 오전 : 봉래<br>오후 : 동일 | |
| 10. 13.(목) | 1반 | 오전 : 남양<br>오후 : 과역 | |
| | 2반 | 오전 : 도화<br>오후 : 포두 | |
| 10. 17.(월) | 1반 | 오전 : 점암<br>오후 : 영남 | |
| | 2반 | 오전 : 풍양<br>오후 : 도덕 | |
| 10. 18.(화) | 1반 | 오전 : 고흥<br>오후 : 두원 | |
| | 2반 | 오전 : 금산<br>오후 : 도양 | |
| 10. 19. |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
| ※ 의사운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나.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 지적사항 목록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1 | 국도27호선 가로수 식재사업 | • 위 치 : 고흥읍 등암리<br>• 사업량 : 종려나무 등 2,086주<br>• 사업비 : 286백만원<br>· 도급액 : 286백만원<br>· 관급액 : -<br>• 공사기간<br>• 착공일 : '10.4.22<br>• 준공일 : '10.7.20<br>• 도급자<br>· 회사명 : 고흥군 산림조합<br>· 대표자 : 송영현 외 | 〈하자보수소홀〉 소홀<br>• 가로수식재사업완료후 관리상태가 매우불량함<br>· 고사된가로수제거후 미보식 248주<br>· 고사된 가로수 : 93주<br>· 미활착되어 보식대상가로수 110주<br>총합계 451주 하자보식요구됨 | • 고사되어 제거하거나 미활착으로 보식하여야 할 종려나무 451주 즉시 하자 · 보식할 것 | 환 경 산림과 |
| 2 | 점암 상배들 소하천 정비공사 | • 위 치 : 점암면 장남리<br>• 사업량 : 호안공 A=3,933㎡<br>• 사업비 : 365백만원<br>· 도급액 : 216백만원<br>· 관급액 : 149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10.3.25<br>· 준공일 : '10.12.10<br>• 도급자<br>· 회사명 : ㈜하주건설<br>· 대표자 : 김하주 | 〈하자보수 소홀〉<br>• 본 공사는 호안블럭이 주공종이며 3개소에 54㎡(2,53만 8천원)가 하자발생되어 금후 강우시 피해 확대 우려됨 | • 하자발생된 호안블럭 3개소 54㎡에 대하여 즉시 하자보수토록 할 것 | 방 재 과 |
| 3 | 과역 소하천 정비공사 | • 위 치 : 과역면 과역리<br>• 사업량 : 호안공 A=770㎡<br>• 사업비 : 373백만원<br>· 도급액 : 257백만원<br>· 관급액 : 116 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10.3.26<br>· 준공일 '10.9.26<br>• 도급자<br>· 회사명 : ㈜신상건설<br>· 대표자 : 윤용해 | 〈현장조사설계소홀〉<br>• 하천내 제수문비의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금후 강우시 마다 퇴적토로 작동불능<br>• 공사현장이 전반적으로 조잡시공 되었음 | • 제수문비를 철거토록하고, 조잡시공부분은 현장확인 후 보완계획수립제출후 정비할 것 | 〃 |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4 | 남양면 선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 위 치 : 남양면 망주리<br>• 사업량 : 급배수관로 L=4,897m<br>• 사업비 : 186백만원<br>· 도급액 : 109백만원<br>· 관급액 : 77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10.4.29<br>· 준공일 :'10.12.10<br>• 도급자<br>· 회사명 : ㈜나영건설<br>· 대표자 : 노종선 | 〈현장조사설계소홀〉<br>• 기존 지하수 채수량이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사용량 증가로 부족현상 발생 | • 선정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 마을자체급수지구를 파악 지방 또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계획수립 추진요망 | 상하수도 사 업 소 |
| 5 | 동강면 세곡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 • 위 치 : 동강면 오월리<br>• 사업량 : 급수관로 L=5,616m<br>• 사업비 : 243백만원<br>· 도급액 : 145백만원<br>· 관급액 : 98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10.4.19<br>· 준공일 : '10.9.14<br>• 도급자<br>· 회사명 : 에스이엔씨㈜<br>· 대표자 : 해재영 | 〈시공소홀〉<br>• 지하수 수중모터를 적정수위에 설치하여 이용하여야 하나 적정수위 아래에 설치되어 흙탕물이 채수되고 있음 | • 수중모터를 적정수위에 조정설치후 24시간이상 채수후 기본검사 확인하고 급수에 지장없도록 할 것 | 〃 |
| 6 | 안남권역 농촌종합개발 | • 위 치 : 대서면 안남리<br>• 사업량 : 도농교류센터340㎡<br>석축공344m<br>일출일몰조망시설<br>246㎡등8종<br>• 사업비 : 1,928백만원<br>· 도급액 :<br>· 관급액 : 888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10.6.23<br>· 준공일 '11.10.30<br>• 도급자<br>· 회사명 :수성종합건 설㈜<br>· 대표자 황정숙 | 〈시공소홀〉<br>• 대서 봉계마을 게이트볼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입구의 경사가 급하여 차량 진·출입 지장초래 | • 소형, 대형차량이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 | 방 재 과 |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7 | 도양 도시계획도로 (평화-북촌) 확포장 | • 위 치 : 도양읍 봉암리<br>• 사업량 :경계석 L=600m<br>아스콘포장A=40.69a<br>• 사업비 : 142백만원<br>· 도급액 : 89백만원<br>· 관급액 : 53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11. 4<br>· 준공일 : 2011. 4. 3<br>• 도급자<br>· 회사명 : 세현종합건설<br>· 대표자 : 이래균 | **〈배수처리설계 부적정〉**<br>• 도로 하단부에 위치한 주택이 노면보다 낮음에도 주택쪽으로 구배가 시공되어 강우시 가옥 침수로 다수의 민원발생 | • 강우시 유역수가 주택 지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보조시설물 설치 후 보고 할 것 | 건 설 과 |
| 8 | 도양 축구장 조성공사 | • 위 치 : 도양읍 용정리<br>• 사업량 : 법면보호-7,088㎡<br>U형측구 -343m<br>조경석 - 733 톤<br>포장 - 220m<br>• 사업비 : 688백만원<br>· 도급액 : 517백만원<br>· 관급액 : 171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9. 16<br>· 준공일 : 2010.11. 19<br>• 도급자<br>· 회사명 : 지구종합개발<br>· 대표자 : 김양곤 | **〈축구장 주변 정비 미흡〉**<br>• 축구장 진입로(70m) 포장 누락 및 배수로 미설치로 사업효과 미흡<br>• 데크시설 주변 배수로 및 잔디 조잡시공으로 추가 유실 우려 | • 시설물 이용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미설치 된 시설물 및 조잡시공정비추진계획 수립 보고할 것 | 문화체육시 설 사 업 소 |
| 9 | 천등산 철쭉생태공원 조성공사 | • 위 치 : 풍양면 풍남리<br>• 사업량 : 전망대 190㎡<br>산책로 207m<br>화장실 2동<br>진입로포장 149m<br>• 사업비 : 745백만원<br>· 도급액 : 445백만원<br>· 관급액 : 300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7. 30<br>· 착 · 공일 : 2011. 2. 17<br>• 도급자<br>-회사명 : (주)효원조경<br>· 대표자 : 김정미 | **〈화장실 시설 부적정〉**<br>• 천등산 산책로 옆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심한 악취발생 및 분뇨수거등 관리 미흡 | • 현지 여건에 맞는 친환경공중화장실 시설로보완하고 결과 보고할 것 | 문 화 관광과 |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10 |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 • 위 치 : 풍양면 율치리<br>• 사업량 : 건축 604.54㎡<br>• 사업비 :381백만원<br>· 도급액 : 343백만원<br>· 관급액 : 38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12.16<br>· 준공일 : 2011. 4.13<br>• 도급자<br>· 회사명 : 우경건설<br>· 대표자 : 채오성 | 〈농기계임대사업 홍보부족〉<br>• 조사일 현재 농기계를 임대한 70농가 중 5개면(봉래,점암, 영남,과역,남양)사용자가 전무하며 농기계 36종중 17종만 임대실적이 있음 | • 전체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홍보 및 장비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 보고 할 것<br>• 법인등에 대한 임대보다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농업기술센 터 |
| 11 | 금산홍련 도로 개선공사 | • 위 치 : 금산면 신평리<br>• 사업량 : L= 540m<br>B= 8m<br>• 사업비 : 1,060백만원<br>· 기투자 : 763백만원<br>· 2010년 : 297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05. 5. 31<br>· 준공일 : 2011. 2. 20<br>• 도급자<br>· 회사명 : (주)건도<br>· 대표자 : 김종훈 | 〈사업설계 부적정〉<br>• 명천에서 월포진행 구간 오르막 차로 경사가 심한 편구배로 사고위험 상존 다수민원 발생 | • 도로 편구배가 완만한 윗부분으로 차선규제봉 위치 변경등 개선방안 마련 보완 후 결과보고 | 건 설 과 |
| 12 | 거금생태숲 조성사업 | • 위 치 : 금산면 오천리<br>• 사업량 : 122ha<br>• 사업비 : 3,154백만원<br>· 기투자 : 622백만원<br>· 2010년 : 2,221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2. 8<br>· 준공일 : 2011. 4. 7<br>• 도급자<br>· 회사명 : (주)지오션<br>· 대표자 : 박수경 | 〈기본계획수립부적정〉<br>• 숲환영소를 관광객 유치 효과가 높은 도로변에 건축하지 않고 가시권밖에 설치하였고 활용계획도 재검토필요<br>• 숲환영소 명칭 재검토 | •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시 관광객유치효과 등을 분석 최적의 장소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숲환영소 활용 계획 및 명칭도 생태체험관 등 생태숲이미지에 맞게 재검토 할 것 | 환 경 산림과 |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13 | 해창만간척지 공원화사업 | • 위 치 : 포두면 송산리<br>• 사업량 : 선착장 L = 40m<br>경계석 2,017m<br>• 사업비 : 699백만원<br>· 도급액 : 272백만원<br>· 관급액 : 427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10.28<br>· 준공일 :<br>• 도급자<br>· 회사명 : (주)임광종합<br>· 대표자 : 김희림 | 〈기본설계 및 사업추진 소홀〉<br>• 토질이 척박하여 조경목 활착우려<br>• 선착장앞 수심이 낮아 보트등 접안 곤란<br>• 도급회사 부도로 공사 지연 | • 조경수종선택에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복토후 식재토록할것<br>• 준설 또는 부잔교를 시설할수 있도록 검토 보고할 것<br>• 보증회사 등 적격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준공될 수있도록 조치할 것 | 문 화 관광과 |
| 14 | 남성갯벌 체 험 로 | • 위 치 : 포두면 남성리<br>• 사업량 : L= 1,385m<br>• 사업비 : 337백만원<br>· 도급액 : 250백만원<br>· 관급액 : 87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6. 11<br>· 준공일 : 2011. 2. 23<br>• 도급자<br>· 회사명 : 예당건설<br>· 대표자 : 소수영 | 〈기본계획수립 소홀〉<br>• 갯벌로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어야 하나 4공구로 각각 분산 설치되어 사업효과 반감됨 | •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조치 | 해 양 수산과 |

| 일련번호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대 상 실과소 |
|---|---|---|---|---|---|
| 15 | 봉래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 • 위 치 : 봉래면 신금리<br>• 사업량 : 처리장Q=380톤<br>오수관로L=5.7㎞<br>• 사업비 : 6,717백만원<br>· 도급액 : 3,161백만원<br>· 관급액 : 3,556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2. 12<br>· 준공일 : 2011. 6. 29<br>• 도급자<br>· 회사명 : 남해종합개발<br>· 대표자 : 김응서 | 〈기본계획수립 미흡〉<br>• 처리구역내 600가구중 140가구의 오수관로 연결이 누락되었음<br>• 시설물 주변의 조경등 환경 열악 | • 오수관로연결이 누락된 140가구를 추가 연결되도록 처리계획 재검토<br>•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경등 주변 환경 보강 | 상하수도 사 업 소 |
| 16 | 덕흥지구 임도개설공사 | • 위 치 : 동일면 덕흥리<br>• 사업량 : L=880m<br>• 사업비 : 82백만원<br>· 도급액 : 70백만원<br>· 관급액 : 12백만원<br>• 공사기간<br>· 착공일 : 2010. 6. 25<br>· 준공일 : 2011. 2. 18<br>• 도급자<br>· 회사명 : 고흥군산림조합<br>· 대표자 : 송영현 | 〈설계등 계획수립 미흡〉<br>• 배수처리 설계 미흡으로 사면 일부가 유실<br>• 하단부 맨홀박스 미설치로 토사가 적치되어 배수곤란 | • 맨홀박스 설치등 보완 조치하고 결과보고 | 환 경 산림과 |

# 결 과 보 고 서

2011. 10. 20(목) 10:00
제19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 위원장 김 의 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2010년도 군 발주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지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기간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현지확인 조사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집행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선정은
2010년에 고흥군에서 발주 시행한 사업 중 도급액 1천만원 이상 사업장 560**개소와**
민간자본보조사업 407개소 등 총 967개소였으나,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과별로 해당 읍면별 3~4개 사업장을 선정 총 54개소를 추출하여
사전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확인한 결과, 열여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사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부족 및 주민여론 수렴 미흡,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민원처리 소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도 27호선 가로수식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고흥읍에서 도양읍간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8천 6백만 원을 투입 종려나무 2천 8십 6주를 식재하였으나

현재 유지관리상태를 확인한 바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후 미보식한 곳이 248주, 고사된 가로수 93주, 미활착되어 교체 보식대상 가로수 110주등 총 451주가 하자보수 보식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본 국도 27호선 4차로 도로는
우리군 기반시설의 핵심 도로임을 감안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암 상배들 소하천 정비 공사는
주 공종이 호안블럭으로써 3개소 54㎡가 붕괴등 하자가 발생되어 앞으로
강우시 피해 확대가 심히 우려되므로 즉시 하자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서면 안남권역 농촌 종합개발 사업중 봉계마을 게이트볼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였으나

입구 경사가 심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활하게 통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양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 하단부에 위치한 주택들이 노면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쪽으로 편구배 시공되어 강우시 가옥침수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보조시설물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양축구장 조성공사에 있어서는
축구장 진입로 70m가 미포장되고, 배수로가 미설치되어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반면에, 데크시설 주변 배수로 및 잔디조잡시공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 제출 후 빠른 시한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를 임대한 70농가 중 5개면은 사용자가 전무하며 농기계 36종 중 17종만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현장조사를 소홀히하여 과역면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또한 마을급수시설 시공과정에서 세심한 지도감독 소홀로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풍양면의 천등산 공원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심한 악취가 발생
이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금산면 명천에서 월포간 오르막 차로 경사가 심한 편구배로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금 생태숲 조성 환영소는 관광객이 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시권 밖에 설치되어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사업의 조경수 역시 토질이 척박함으로 수종선택 및
사후관리 그리고 활착 등 세심하게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두면 남성갯벌체험로는 4개 공구가 각각 분산 설치되어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부터
4개 공구가 연결되어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확인조사 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제202회 임시회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 가.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2011년도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고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 2) 추진방침

○ 민원발생 사업장은 최우선하여 현지확인 실시
○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 사업장 중점적으로 확인조사
○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재발방지 대책 강구

### 3) 추진계획

○ 기　　간 : 2011. 03. 13. ~ 03. 22.〈10일간〉
  • 읍면별 조사일정 : 별지참조
○ 조사대상 : 16개 읍면(2011년 발주 시설공사 중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 조 사 반 : 2개반 16명(의원 12, 수행공무원 4)
○ 주요내용
  •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청취
    - 보고자 : 읍면장 - 배석 : 담당급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조사
○ 조사반 편성

| 구 분 | 의 원 | | 수 행 공무원 | 대상읍면 |
|---|---|---|---|---|
| | 반장 | 반원 | | |
| 계 | 2명 | | 5명 | 16읍면 |
| 1반 | 송인숙 | 배기홍, 김옥래, 송경석, 송우섭의원 | 송여종<br>김선홍 | 고흥, 점암, 영남, 과역<br>남양, 동강, 대서, 두원 |
| 2반 | 최설희 | 박금래, 김주식, 장세선, 김의규, 송경양의원 | 노수철<br>박상욱 | 도양, 풍양, 도덕, 금산<br>도화, 포두, 봉래, 동일 |

※ 의장은 반별 구분없이 수시 참여

### 4)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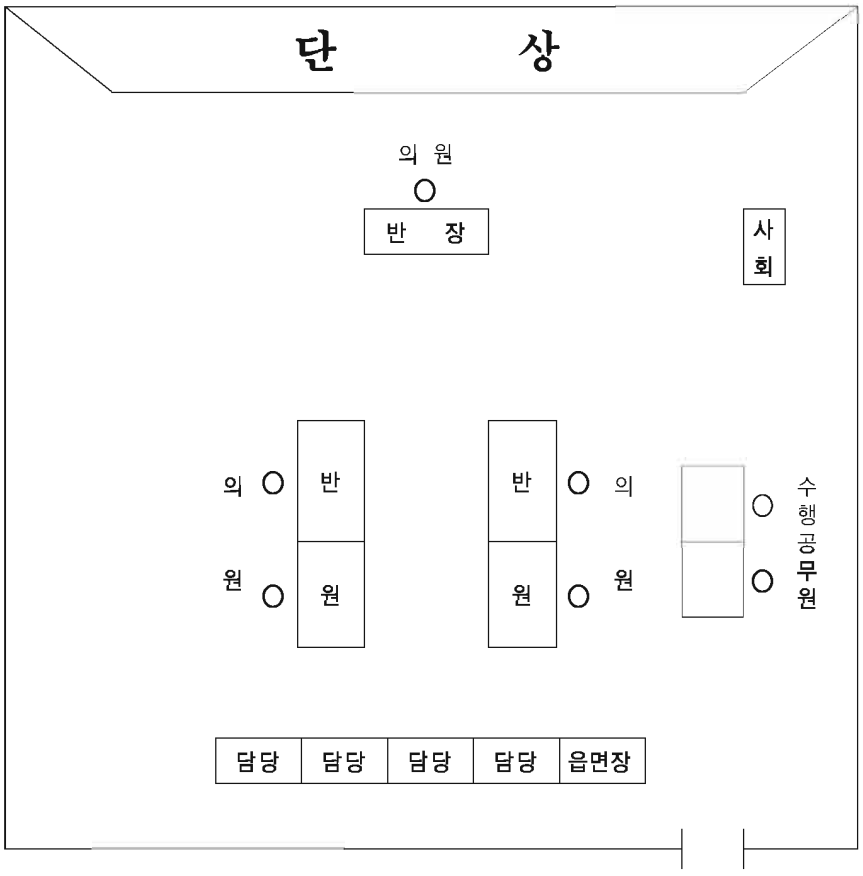
○ 보고장소 마련 : 읍면 회의실(배치도 별지 참조)
○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추진현황 보고자료 비치
– 사업조서도 함께 비치
○ 사업장별 관계서류(설계도서 등) 사전준비
○ 해당 읍면장은 조사일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장 안내등 현지확인에 차질없도록 조치

### 5) 행정사무조사 일정

| 구분 | 확 인 읍 면 | | | |
|---|---|---|---|---|
| | 1반 | | 2반 | |
| 월 일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 03. 13(화)~ 03. 14(수) | | | | |
| 03. 15(목) | 대서면 | 동강면 | 봉래면 | 동일면 |
| 03. 16(금) | 남양면 | 과역면 | 도화면 | 포두면 |
| 03. 19(월) | 서 류 검 토 | | | |
| 03. 20(화) | 점암면 | 영남면 | 풍양면 | 도덕면 |
| 03. 21(수) | 두원면 | 고흥읍 | 금산면 | 도양읍 |
| 03. 22(목) | 자료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위 일정은 각 반별 활동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

# 보고회장 배치도

【 장소 : 읍면회의실 】




◦ **의　　원** : 5~6명

◦ **수행공무원** : 2명

## 나. 2011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 ■ 지적사항 목록

| 일련번호 | 위치 읍면 | 위치 리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지적사항 | 처리요구사항 |
|---|---|---|---|---|---|---|
| 1 | 풍양 | 당두 | 공호농로포장공사 | • 포장공 L= 193m<br>• B=3.0m T= 0.15m | 〈사업계획 소홀〉<br>• 사업계획수립시잔여사업량이소규모일 경우 완공위주로 사업계획수립하여야하나 잔여구간 사업미시행으로 주민이용불편 초래 | • 앞으로 시행지구 사업비를 사전판단하여잔여구간발생이예상될때에는 군발주로 계획추진하는 등 사업 완공위주로 시행할 것 |
| 2 | 동일 | 봉영 | 대영마을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 • 포장공 L=74,B=7.4<br>• 배수로 L=8,D=300 | 〈시공소홀〉<br>• 마을진입농로확포장시 통신주(3개)미이설로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위험상존 | • 안전사고발생예방 및 이용에 불편없도록 즉시 통신주를 이설하고 결과 보고할 것 |
| 3 | 남양 | 망주 | 망주배수로 준설사업 | • 절토 1554㎥ | 〈시공소홀〉<br>• 준설토량을 처리함에 있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금후강우시 2차피해 우려 | • 앞으로는 준설토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 사업시공물량확인은 물론 금후강우시 2차 피해예방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처리 할 것 |
| 4 | 동강 | 마륜 | 덕촌용배수로 정비공사 | • L=286m<br>• B=0.6 – 0.8m<br>• H=0.6m | 〈사업계획소홀〉<br>• 소규모 용배수로 겸용농로는 용배수로를 먼저 시행하고 농로를 포장하여야 하나 포장후 용배수로를 시행하여 조잡시공, 자투리땅발생 콘크리트포장스래브세굴등 발생하여 부적합 | • 금후 사업추진시 주민이 포장을 먼저 시행요구하더라도 충분히 인식시켜 사업우선 순위 대로 하여 미관은 물론 완벽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
| 5 | 대서 | 송강 | 신촌배수로시설공사 | • 도로 1식<br>• 구조물공 (L=47m) | 〈사업계획소홀〉<br>• 농경지 지구내 배수로는 현지여건상 완제품 (B.F)시공이 가능하나 개거로 시행하여 과다한 예산투자로 부적정 | • 금후 농경지 지구내 용수로 또는 용배수로 겸용을 제외한 배수로는 현지여건을 감안 B.F등으로 시공하므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것 |

# 결 과 보 고 서

2012. 3. 23(금) 10:00
제202회 임시회

◎ 산업건설 위원장 김의규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회기중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搔 601개소였으나 의사일정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49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5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명예감독관 운영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과거와는 달리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뜻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모두가 공감하고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이유로

소규모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 사업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을
한 층 더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어서 부분별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풍양면 공호농로포장공사는 소액의 사업비 투자로 잔여사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시행지구 사업비를 사전 판단하여 군사업으로 시행 검토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미시행 구간에 대한 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강면 덕촌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용배수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농로를 포장하여야 하나 농로 포장후 용배수로를 시공하므로써 조잡시공, 자투리땅 발생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하부가 세굴 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주민이 포장을 먼저 시행요구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시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서면 신촌배수로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농경지 지구내 배수로의 경우 현지 여건상 벤치플름관 시공이 가능하나 개거로 시행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었기에 앞으로는 농경지 지구내 용수로 또는 용배수로 겸용을 제외한 배수로 시설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동일면 대영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시행하기 전에 지장물을 철거 완료 후 해야하나 아직까지 통신주 3주를 미이설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주민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양면 망주배수로 준설사업은 준설된 토량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여 사업시공 확인은 물론, 금후 강우시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2차예방 및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주민명예감독관 운영과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제4장 군정질문 및 답변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1.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 2010. 11. 29(월) 제7차 본회의
  2010. 11. 30(화) 제8차 본회의
- 질문의원 : 8명(박금래, 송우섭, 김옥래, 송인숙, 송경양, 김주식, 장세선, 최설희의원)
- 질문건수 : 39건
- 답 변 자 : 10명(환경산림과장, 우주항공사업소장, 경제유통과장, 투자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복지과장, 부군수, 농업축산과장, 방재과장)
- 진행방법 : 일문일답
- 질문요지서

| 의원명 | 질 문 요 지 | 소관부서(답변자) |
|---|---|---|
| 박 금 래 | 고흥군 측백나무 면적은? | 환경산림과장 |
| | 고흥군 측백나무(편백)로의 수종변경 중장기 계획은? | 〃 |
| | 고흥군 측백나무 산림산업과 관광산업 2차, 3차산업 계획은? | 〃 |
| | 고흥만간척지 준공 시기는? | 우주항공사업소장 |
| | 2010년 고흥만 간척지 가경작 소득은? | 〃 |
| | 고흥만간척지 농지 분배 계획은? | 〃 |
| | 고흥만간척지 시설지구의 요구사항, 면적은? | 〃 |
| 송 우 섭 | 우리군 명품유자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 경제유통과장 |
| | 고흥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 〃 |
| | 비위생, 불량, 저질상품으로 인해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과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으므로 생산가공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방안과 적발 등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
| | 동강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대책은? | 투자정책과장 |
| |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은 없는지와 단지조성으로군민의 고용효과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 〃 |
| | 풍양농공단지의 그동안 운영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 〃 |

| 의원명 | 질 문 요 지 | 소관부서(답변자) |
|---|---|---|
| 김 옥 래 |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 | 해양수산과장 |
| | 김양식유기산(김활성처리제)의 산도와 문제점 | 〃 |
| | 어선감척 실적과 앞으로 계획 | 〃 |
| | 불가사리 피해 및 앞으로 대책 | 〃 |
| |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지원 및 앞으로 계획 | 〃 |
|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 | 〃 |
| | 초영마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하여 우리군의 장려품종인지 여부 | 농업기술센터소장 |
| 송인숙 |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 현황은? | 주민복지과장 |
|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은? | 〃 |
| 송 경 양 |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지역특화와 지역 연계에 대한 기본 구상은? | 부 군 수 |
| | 관광홍보의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 〃 |
| | 고흥 관광산업의 지역 농수산업과의 연계 계획은? | 〃 |
| | 고흥의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은? | 〃 |
| | 해창만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 우주항공사업소장 |
| | 고흥한우의 체계적인 유통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 농업축산과장 |
| 김 주 식 |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현황? | 부군수 |
| |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 〃 |
| | 국도 77호선, 지방도 830호선의 미개량 구간 사업추진 현황? | 〃 |
|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대비책은? | 〃 |
| | 바다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은? | 해양수산과장 |
| | 지역 연고사업으로 전복 브랜드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은? | 〃 |
| 장 세 선 | 미역생산을 통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매생이,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관광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 |
| | 미역귀를 활용한 퇴비가공공장 설치와 미역귀 활용의 다각적인 대책은? | 〃 |

| 의원명 | 질 문 요 지 | 소관부서(답변자) |
|---|---|---|
| 최 설 희 |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추진 횟수, 참여인원 및 지원한 예산액을 밝혀 주기 바람. | 주민복지과장 |
| |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좌명칭과 실시 횟수, 참여 인원 수, 교육장소, 예산 지원액 등 추진 실적은? | 〃 |
|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기본계획과 예산반영 등 추진 방향은? | 〃 |



박 금 래 의원

## ■ 질문요지

① 측백나무 면적과 측백나무로의 수종변경 중장기 계획 및 측백나무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은?
② 고흥만간척지 준공시기, 가경작 소득, 농지분배 계획은?
③ 고흥만간척지 시설지구의 요구사항과 면적은?

## ☞ 질문내용

평소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 고흥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예상치 않은 이상적인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과실류, 채소류의 작황 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산지 볏값 하락은 농업에 대한 의욕과 실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시련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고흥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 및 환경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여건을 충분히 살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육성에 최대한 집주하여 산림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형성해 보고자 고민을 해 보자는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산수가 아름다운 곳으로 연관 산업과 연계만 잘해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산림수종 식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6,000㏊로 현재 8%에 해당하는 3,680㏊에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23㏊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활용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항균작용, 숙취해소, 면역기능 증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림 관광산업화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산림관광 자원화 계획 프로그램이 개발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도 팔영산 도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단기적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고흥군 유통활성화심포지엄 발제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계절의 한계가 뚜렷하지 못한 이변현상으로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를 통계로 볼 때 1977~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흥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나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차별성과 우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 여건이 기대 이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산림정책 방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에 목적을 두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림은 자원화의 관점에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생활의 활력이 되는 만큼 우리 군 산림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환경산림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수긍하고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가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가 그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어 왔는데 사실상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9년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용역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부터 매년 가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2009년도 가경작 농지면적은 1,617㏊로 연 소득이 1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생한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각각 얼마쯤이며, 군에서 받아들인 금액 일시경작 사

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전에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구분해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종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군민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변해져 가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 모든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환경산림과장

먼저, 고흥군 편백나무 조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박금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편백림 조성은 제2차 치산녹화기간인 1978년부터 식재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3,680ha를 조림하여 우리 군 임야면적 46,210ha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의 대단위 조림지는 49필지에 534.1ha이며, 최고령목은 봉래면 봉래산에 1920년대에 식재한 90년생 된 편백과 삼나무숲이며, 70년대부터 80년대에 식재한 수령 20~30년생이 2,185ha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10년 미만 어린나무가 1,495ha로 향후 약 20년이 지나야 벌기령에 도달, 용재로써 경제적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편백나무로의 수종변경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수분이 적당히 함유된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산 계곡부와 하단부가 적지로서 우리 군 산림면적의 약 10%인 4,600ha를 편백 조림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의 조림 5개년 계획 등 정부의 조림시책에 따라 920ha를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경제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흥군 편백나무 산림산업과 관광산업 2차, 3차 산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의 건강, 휴양 등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측면과 편백 목재생산과 편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물질 생산 등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 활용방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 많이 연구하고 앞선 곳에서 배워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건강?휴양을 위한 건강체험숲 등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팔영산 일원의 편백 건강숲 조성은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금년 여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팔영산 일원의 국립공원 승격과 맞물려 답보상태에 있으나, 금년 말까지 국립공원 승격 문제가 마무리되면 개발방향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영산 일원의 편백림과 함께 군내에 조성된 3ha 이상 10개소 대단위 편백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등 육림작업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휴양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편백림이 벌기령에 도달되지 않은 미성목으로 현재는 솎아베기 등 육림 작업단계로서 향후 약 20년 후부터 목재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몇 군데 회사에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간벌재를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생활용품, 가구, 완구제작과 에센스 등 향신료 개발, 히노끼탕 등 건

강 생활용품 개발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금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고흥군의 조림수종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팔영산 일원에 비자림 조성을 4,0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림계획을 수립할 때 비자림이나 황칠 등 난대수종을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참고로 난대수종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난대수종 시험포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난대수종이나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는 시험포를 올해부터 설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종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 답변자 : 우주항공사업소장

고흥만 간척지에 대하여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박금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금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 2010년도 간척지 가경작 소득, 농지분배 형식,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의 요구사항과 면적 및 추진사항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4개 읍면에 걸쳐 총면적 3,100㏊를 매립하여 농지조성 1,701㏊, 담수호 745㏊, 인공습지 280㏊, 기타시설 374㏊에 3,969억 원을 투입, 2008년 12월 30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 법률에 의하여 현재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도 고흥만 간척지 가경작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 조성면적은 1,701㏊이며, 금년도에는 1,617㏊에 일시경작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년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추계소득 기준으로 산출하면 약 8,000톤의 쌀을 수확하여 총 164억 6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는 농업기반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산출근거에 의하여 지난해에는 5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확기 평균 쌀가격이 고시되는 대로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고흥만 간척지 농지분배 형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률에 의하여 준공검사와 관리처분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농지은행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하여 관리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만 간척지는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 검사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와 농식품부의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농지은행에 인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하여 우리 군 농업발전과 첨단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고흥만 간척지는 매각 또는 임대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군민과 군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승인 이전에 우리 구민들께 간척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활용가능한 고흥만 간척지 시설지구의 요구사항과 면적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만 간척지는 91년 농경지 목적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매립당시와 현재의 산업구조 및 지역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우리 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에 간척지 일부를 용도변경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말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산업연구원 용역이 3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완료되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 14개 사업들을 투자유치와 국가계획 확정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고흥만 간척지에 330㏊, 정도를 교육과학단지, 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목적 변경을 계획하였으나 고흥읍 간천마을과 두원면 두곡마을 인근에 산업형 특화단지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투자유치를 통해 조성 중에 있고 로켓개발센터 등 일부 사업들이 당초 용역결과물의 지역과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약 100㏊와 고흥만 생태공원 조성 10㏊ 등 총 110㏊를 간척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매립목적 변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이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주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고 고흥만 생태공원 조성부지는 이미 관광농업단지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매립목적이 가능하다는 공유수면매립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에 협의와 건의를 하여 20년 전 농업목적으로 매립했던 고흥만간척지가 우리 군의 새로운 발전동력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 우 섭 의원

## ■ 질문요지

① 우리군 명품유자의 소비촉진 및 홍보방안과 유자가공업체의 지도단속 강화 방안은?
② 동강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추가 조성 계획 및 고용효과와 소득증대 전망은?
③ 풍양농공단지의 운영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역할을 했는지?

## ☞ 질문내용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연평도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또한 부상자들도 하루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솔개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 잠깐 소개하고 질문할까 합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새로서 70세쯤 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40세 되었을 때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40세쯤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 집니다.

이제 솔개에게는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아주 높은 산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수행을 시작합니다.

솔개는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낡고 딱딱한 부리가 깨져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새 부리와 발톱으로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깃털이 빠지면서 연한 새로운 깃털이 나옵니다.
반년쯤 지나 새 깃털을 갖게 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70세까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덧 2010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하면서 군의회 의원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비장한 각오로 일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고흥호는 틀림없이 우주를 향해 솟아오를 것이며 솔개와 같이 해피데이, 해피고흥, 하이고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올해는 제6대 고흥군의회와 민선5기가 시작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 군 의정과 군정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우리 군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초선인 본 의원은 의정의 모든 면이 새롭고 생소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아프고 가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발로 뛰고 그곳이 어디든 마다않고 찾아가는 현장의정을 펼쳐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기찬 고흥 살기 좋은 고흥을 위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민의 화합에 앞장서 오신 신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어렵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첫 군수직에 출마하면서 군민들의 머슴이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열심히 희망찬 고흥건설을 위해 군정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신 박병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경쟁과 특히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열악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벼 수확량이 작년 대비 20%가량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군민의 주 소득원인 쌀 가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고 이로 인한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안일한 답습의 사고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보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농수축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볼 때 아직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의 소득에는 농수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제유통과장께 고흥군 브랜드인 유자에 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는 유자수확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유자생산량이 줄어 상대적으로 유자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두세 배에 수매되고 있으며, 파지의 경우 kg당 500원에서 최고 4000원에 까지 수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유자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기호식품으로 우리 군의 명품유자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가격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해는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어떤 해는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수급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과 홍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방송사의 시간 때우기 식으로 유자농가에서 촬영한 내용을 방영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는 홍보효과가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유자의 특장점과 인체에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가공된 유자 관련 식품이 엄격한 품질관리와 위생처리 그리고 유자 특유의 맛과 향을 제대로 살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비위생, 불량, 저질 상품으로 인해 청정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과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방안과 적발 등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흥유자가 우리 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고흥명품 브랜드로 거듭나 명품유자로서 국내는 물론 수출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투자정책과장께 묻겠습니다.
동강면 장덕리에 15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2,443㎡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친환경식품 농공단지조성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 조성된 풍양농공단지를 거울삼아 현재 조성중인 친환경식품 동강농공단지는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소득증대의 극대화는 물론 농공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조성 중인 친환경 식료품 전문 동강농공단지는 규모면에서 소규모의 농공단지입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은 없는지, 또한 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민의 고용효과와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와 1990년에 조성된 풍양농공단지는 그동안 운영 성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경제유통과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명품유자의 안정적인 가격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고흥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 비위생, 불량 상품으로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생산가공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 명품 유자의 가격 안정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유자는 1,761농가에서 총 430㏊를 재배하여, 올해 생산량은 약 4,12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한파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년의 6,800톤에 비해 약 40%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금년의 유자가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풍작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관내 수출가공업체들은 원재료의 원자재 값과 경영난이 예상되어 고흥군유자연합회와 협의를 통하여 유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흉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유자가격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생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내 계약재배는 한성푸드를 비롯해서 선도농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흥유자 생산량은 2005년 394㏊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했다가, 그간 지속적인 지원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고품질 유자차 생산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소비촉진, 판로개척 등 수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실적으로는 지역특화사업, 향토사업 등으로 7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공시설 현대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지원으로 전국 최대 유자재배와 최고의 현대화 가공시설로 전국 유자차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거점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신선농식품 수출 5위를 차지하며 세계일류식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도 농식품부 지역전략식품산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유자식품 신제품 개발 및 가공시설 확충, 해외시장 개척 마케

팅 등을 통해 유자의 세계일류식품 도약 및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흥유자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자재배 전국 최대 주산지로서 전국 대비 32%, 도 대비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지리적표시 제14호 등록과 단체표장을 등록하였으며 고흥유자와 유자차의 우수성을 다각적인 방법과 채널을 통하여 국내외에 홍보한 결과 고흥유자는 국내외 파워브랜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사항으로는 전국, 해외 박람회 및 판촉홍보를 20회 실시하였으며, 전국 유자요리경연대회 참여를 하였고 대도시 지하철 광고를 10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신문 및 방송 인터뷰 홍보를 17회 이상 게재가 되었으며 TV 광고 제작 및 중앙방송 MBC, YTN에 3개월 이상 반영된 바 있습니다.

유자수확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10분용으로 SBS에 방영을 하였고 해외수출국 국영방송 홍콩, 대만, 중국에 홍보가 되었으며, 농식품부 파워브랜드상에 3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가공식품 부분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위생, 불량, 저질상품으로 인해 고흥유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데 생산가공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적발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 유자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하품 파지를 사용하거나 원료함량 기준을 위배한 저품질, 비위생 유자차의 생산근절을 위해 유자차 생산 출하시기에 맞춰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점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내용량 표시위반, 기준규격위반, 표시사항 미표기, 품목제조 미보고 등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고흥유자 명품육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고흥유자차 가공 자체품질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송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투자정책과장

송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는 지역부존자원 창출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조성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강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무이한 식료품 전문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약 156억 원을 투입해서 전체면적 142,000평방미터를 개발을 해서 단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142,000평방미터 중에서 공장용지 면적으로는 8개 블록에 21개 소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7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우리하고 계약체결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분양율은 61%로 지금 현재 나머지 (주)또하나의바다 등 여러 업체와 입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금년 말로 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 11월 12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볼 때 동강농공단지는 약 500억에서 600억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유발 효과에 액수 측면에서는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해놓은 연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화된 것은 동강농공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료품 전문농공단지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브랜드도 한층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제약 여건이 개발이 더딘 곳, 오지, 또는 벽지로 이렇게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생활의 트랜드가 아시다시피 적지나 오지가 청정지역이다 라는

이점으로 그래서 제약여건이 이점으로 반영되는 그런 호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가 고흥 나들목 설치라는 이점이 부가됨으로 해서 접근성이 훨씬 향상이 되고 이 접근성이 생산력으로 또 품질력으로 접근되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추가조성계획은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항상 확장성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써 분양가가 잠정가격입니다마는 25만 9000원에도 불구하고 입주하려는 업체가 쇄도하는 것은 바로 고흥이 갖고 있는 특장이고 또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또 이러한 식료품 전문단지로서의 명성을 날린다면 더욱 수효가 증가될 것이다. 이 증가되는 측면을 예측 가능하고 또 행정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확장성을 염두해 두고 해서 앞으로 확장계획은 수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양농공단지는 물론 1/5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90년도에 조성이 된 풍양농공단지는 사실상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석재공장이 입주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경제 부양이나 부존자원 창출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고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이 또 생산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62명 고용인원 중에서 외부인 1명을 제외한 61명이 전부가 다 고흥 군민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생산 측면에서 보면 작년 매출액이 약 105억 원 정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거의 2배, 200억에서 25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농공단지가 앞으로 내부 환경을 좀 깨끗이 가꾸고 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보다 이것을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양농공단지를 교훈삼아서 동강농공단지를 활착을 시키고 또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동강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같지 않은 농공단지,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현장에서 보셨듯이 조경을 아주 계획 있고 치밀하게 해서 그 지역이 바로 공원화가 되고 공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바로 청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농공단지로 조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옥 래 의원

## ■ 질문요지

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대책
② 김양식유기산(김활성처리제)의 산도와 문제점
③ 어선감척 실적 및 계획과 불가사리 피해 대책
④ 자율관리 어업지원 및 계획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
⑤ 초영마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하여 우리군의 장려품종인지 여부

## ☞ 질문내용

올해는 대체적으로 풍년작을 웃도는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 보다는 앞으로 걱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활을 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빗나가고 4대강 사업이란 목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과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제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촌의

실상이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3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듯이 21세기는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신해양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 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어 가기 전에 잘 가꾸고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 집단의 관계에 얽매어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 활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촌이 잘 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 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분야에 군의 위상제고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해양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환경의 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하여 해상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해 해상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각종 폐스티로폼, 폐어망, 양식자제 등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율관리 어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이란 어업인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 어촌 사랑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어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 자율관리 공동체 및 어촌계는 몇 개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 양식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기산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산을 공급하였음에도 김 생산 어민들이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산보다 유기산이 산도가 너무 약해 잡초제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김 생산자들이 유기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기산은 산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김을 생산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민들과 잠수부의 말에 따르면 지금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 표면의 갯뻘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바지락 양식장 및 꼬막 양식장에 널려 있는 해적 불가사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진척이나 구제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 집행지침을 어겨가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무리일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안어선 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관내 보유어선은 감척 전후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하여 수산물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세어민들은 대형저장창고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손쉽게 수산물 저장과 유통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행정에서는 대형저장고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 영세어민은 도저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마늘 품종개량에 있어 2003년부터 우량품종 선발 연구를 위해 멀칭방법구멍 볏짚피복 순으로 생육을 양호하여 토종마늘을 우량품종으로 선발 시험하여 토종마늘 우량증식 시범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소득 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마늘은 크기가 작아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 지역 적응에 맞는 초영마늘 증식포를 설치 파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생산 가능한 품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먼저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 특성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조류  패류 등 양식어업이 성행하고 있어 어업활동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육지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가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바다경관 및 주민생활 환경훼손, 관광객들의 불쾌감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깨끗한 해안경관 조성과 해양환경을 보존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효과제고

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티로폼, 폐어망 · 유실 어망 등이 산재해 있는 우심지구와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읍면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지원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종류별로 선별하여 캔류, 프라스틱 병 등은 재활용, 대나무 등 초목류는 읍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스티로폼, 어망 · 어구 등의 폐기물은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 ·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실적으로는 812톤, 수거疎낯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업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해양오염 방지대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해안가는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인도 등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바다청소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여 바다청소 시 모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는 일시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수거 · 처리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율관리 어업에 대한 지원 및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에서 벗어나 자원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어촌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33개소의 참여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지원현황으로는 양식어장 조성, 패류살포, 어류치어 입식, 부잔교 시설, 어구보관창고 등에 44억 3600만 원이 지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6개소에 6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상지는 전남도 자율관리추진위원회에서 공동체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의 사후관리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연도부터 형식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대상 읍면

을 통해서 운영실태를 점검받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김 양식 유기산의 산도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성분은 유기산 15% 이상, 염소이온이 8% 이상 9.5% 이하로 고시되어 사용 어민의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성전해수도 유기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29일 고시되어 김 양식 어민의 사용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공급 현황은 2009년도에 2,527드럼, 2010년도 2,271드럼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1995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왔으며 보조율이 65%이며, 자부담이 당초 1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호응도는 2009년의 경우 시설량이 많은 무노출 양식장에서 일부 무기산 사용으로 적발된 양식 어민이 있었으나, 유기산 산도 조정 후 많은 김 양식 어민이 유기산 사용을 선호하고 있고 뒤집기 발의 경우 병해가 적어 산처리도 적어지고 있고, 산성전해수도 사용할 수 있어 양식어민의 유기산과 전해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불가사리 피해 및 앞으로 대책입니다.
바다의 해적이라 불리는 불가사리는 대표적인 극피동물로 세계적으로 1,800여 종, 국내에는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지역 해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별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빨강불가사리 등의 4종으로 이 중 바다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다 자란 아무르불가사리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바지락 16개와 피조개 2개, 전복 2마리를 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좋아 패류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가 서식하는 마을어장 등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득량만 · 여자만, 나로도해역의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어장 및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하여 패류자원의 번식보호와 생산력향상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750톤에 3억 7500만 원을 31개소에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지원실적으로는 봉래면 사양어촌계 등 18개 어촌계에 사업량 265톤, 사업비 1억 3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300톤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사리 1kg에 500원으로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한 불가사리는 대부분 과수농가에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어선감척 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90척에 136억 원 사업비를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50척에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대상어선 선정을 위해 입찰을 완료하고 실체확인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30척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근해어업 감척 신청물량이 적어 잔여 사업비를 연안어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선감척과 연안어업 감척사업을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효과가 미비하지만 점차적으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신선도 유지와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중요하며 신선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소형 저온저장고 20개소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업이 배정되지 않았고, 2009년 이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지사님께서 우리 군 방문 시 도비사업으로 특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도 해양수산환경국에도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만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 내년 사업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을 시 군비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김옥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에 따른 우리 군 대책 등 6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마늘 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옥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 우리군의 장려품종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입니다.
토종마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상대대로 재배를 해왔던 마늘입니다마는 마늘 맛은 좋지만 구가 적고 마늘 인편수가 너무나 많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병해충도 약하고 저장성도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량하고 있는 도중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유자시험장에 파견 나와 있던 연구사께서 관심을 갖고 고흥토종마늘을 가져가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하여 새로 육성한 품종이 초영마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영마늘은 기존에 있던 토종마늘에 비해서 인편수가 좀 줄어들고 구도 커지고 수량도 좀 늘어나고 병충해나 저장성도 높아지고 한 반면에 맛은 고유의 토종마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순천대학교 식품연구소에 의뢰해서 영양분석을 해본 결과 초영마늘이 남도마늘보다 비타민 B1 함량이 69%, 알리신은 18%, 유리당은 50%가 더 많이 들어 있고, 당도가 19% 높고, 마늘 맛을 좌우하는 피르브산 함량은 23%가 낮아서 생마늘은 맛이 순하고 찐마늘은 점성이 강하고 식미가 우수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초영마늘은 구피색이 적자색으로 상품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생육특성 조사결과 인편수가 7.5개로 기존의 남도마늘보다 0.8개가 적었고, 마늘통이 벌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장려품종 여부입니다.
초영마늘을 최초 보급하는 2006년도에는 전남의 마늘 주산지역인 고흥을 비롯하여 해남

군과 무안군 3개 군에 각기 15kg씩 종구를 분양을 해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해서 개량한 초영마늘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것이 아니라 고흥군에 특화를 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당시 박준영 지사님의 도 간부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대 재배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종구증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확대 보급을 해서 23.8ha를 재배를 하였습니다.

초영마늘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남도마늘에 비교한다면 구가 다소 작고 수량성이 좀 낮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 트랜드가 모든 것이 크기 보다는 맛과 품질, 기능성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영마늘이 비록 남도마늘보다 생산성은 좀 떨어지고 구는 적다 하더라도 영양면에서나 기능성 면에서나 이런 걸로 본다면 기존의 마늘 품종을 대체해서 충분히 상품성이 있고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초영마늘을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고흥유통 등과 연계해서 유통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 인 숙 의원

## ■ 질문요지

①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 현황은?
②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현황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은?

## ☞ 질문내용

군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을 대변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한없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국제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시장경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허리띠를 졸라 맸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이 한 곳에 치우쳐 내수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었고 생활마저 어려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본 의원의 마음도 한없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서민생활이 더욱 침체되어 인구감소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현상은 단순한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인구가 가파르게 감소되어 190만 명 선마저도 붕괴우려가 있으며, 9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광주 · 전남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1.4%로 경북 의성, 군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전남 타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성 29.1%, 곡성 28.7%, 신안 27.9%, 진도 · 장흥27.8%, 강진 26.6%, 완도 25.9%로 농촌이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기피, 경제 인구전출,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심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더욱더 군민생활은 피폐해져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외받은 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농촌과 군민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소외계층 특히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나름대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인 미기가 출산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무지개 꿈을 안고 한국에 결혼 이주해 온 아름답고 꽃다운 미기는 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면서도 출산준비를 위해 열심히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했지만 끝내 핏덩이 아들만

남겨두고 3일만에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직업도 없는 그리고 생활도 넉넉지 않는 삼중고 사중고의 삶을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는 안내자, 인도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의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는 군민들도 모두가 함께하고 같이 가야할 군민들로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 현황과 이들과의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현황 비교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고, 또한 이들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주어 불만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많습니다. 국적을 버리고 결혼해 와서 열심히 문화와 언어를 익히기 위해 고생하고 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2세를 낳는 등 애쓰는 그들을 다문화가정이 아닌 우리 군민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가야합니다.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국가경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아닌 군민 모두가 지난날의 불행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고흥,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고흥,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고흥이 되어 지난날 웅성 했던 20여만 명의 군민이 함께 사는 풍요로운 고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답변자 : 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조손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현황과 기초수급자와의 지원 현황 비교분석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소외계층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373가정으로 베트남 167명과 중국 89명, 필리핀 68명 등의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하여 1,176명입니다.

조손가정은 181세대 466명, 모자가정은 108세대, 부자가정은 66세대로 한부모가정은 174세대 512명이고, 독거노인 7,442세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51세대에 77명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 지원현황과 국민기초수급자와의 지원내용을 비교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및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의 지원과 함께 주거 현물급여로 집수리사업과 정부양곡할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우리 군에는 3,540세대 5,059명이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별 지원현황으로는 먼저 우리 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2008년 3월에 개소하여 2009년 2월 고흥군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해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통해서 한글교육, 우리 사회 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 또는 지리적 여건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방문지도사 16명을 가정에 파견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초기 가족과의 언어소통을 위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로 우리 군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많아 베트남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인터넷 사용요금에 대해 매월 15,0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자체시책으로 올해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친정나들이 사업을 추진해 왕복항공료로 1가정당 4인 기준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한 취·창업 교육으로 제빵과정, 요양보호사, 이미지메이킹, 화장품 제조법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해 102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우리문화 적응훈련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캠프를 열어 가족애와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주간행사 다문화 백일장, 여성테마교육으로 생활자기 만들기 체험 등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들을 함께 참여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모·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 수업료, 생활안정금 등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비, 위로금,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소외계층이 국민기초 수급자일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받음과 동시에 별도 개별 법령에 의하여 추가 지원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송 경 양 의원

## ■ 질문요지

①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지역특화와 지역 연계에 대한 기본 구상은?
② 관광홍보의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③ 고흥 관광산업의 지역 농수산업과의 연계 계획은?
④ 고흥의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은?
⑤ 해창만 배수개선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⑥ 고흥한우의 체계적인 유통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 ☞ 질문내용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지역경쟁력 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성장의 원동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 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유산과 함께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창조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부사업은 타 지자체 성공모델의 벤치마킹에 급급한 나머지 인적 · 물적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발전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지역브랜드의 독창성을 부각시켜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징과 매력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자발적인 사업추진 의지의 연대성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된 지역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원동력을 창조해냄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눈에 보이는 고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고흥군은 잘 아시다시피 농수산업이 주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지역경제의 침체는 이농과 더불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고의 노령화된 지역사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민선자치시대 이후 외부의 투자유치에 군정의 역점을 두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치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역사적인 문화의 유적을 발굴、재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군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일컬어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 창출산업, 21세기 고성장산업" 등 관광산업 앞에 붙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 및 미래성장 잠재력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 산업으로 내수의 진작 및 인구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관련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이점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들은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2개, 3개, 4개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예라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 5일제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연 관광 레저 분야일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 지난 2009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하여 총 65건의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중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조성과 지역

관광 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의 확충,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 지역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주변의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우리 군도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청정자원과 우주항공 관련 산업, 역사문화, 그리고 특색있는 축제를 발굴 개최하여 지역 특화함과 동시에 2010년 전남·경남·부산 3개 광역지자체가 협의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 활용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 연계를 구축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흥군의 관광산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앞서 말한 지역특화, 지역연계에 관한 기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홍보는 언론매체·인터넷·주위 사람에 의한 구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고흥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다양하게 시행한 관광홍보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흥군의 통계연보를 보면 관광사업체 수의 감소와 관광숙박업소의 답보, 관광모범음식점 지정 감소 등 지역경제와 맞물린 사업이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특히 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곳이 극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를 위해서는 9미를 전문 취급하는 모범음식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객 모범음식점 실태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전남대 2010년 관광지 음식에 대한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동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이 2박 3일 농어촌 관광 후에 그 지역을 구전 홍보하는 효과는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 6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특화 관광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이 농어촌 관광산업의 지역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중 수익성 조사에 의하면 농특산품 판매가 47.8%, 지역향토음식이 18.1%, 숙박비가 15.5%, 체험프로그램이 15.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농촌지역 특화관광에서 중시되는 체험마을 관광이 농어촌의 1·2차 산업과 직접 연계되어 효과가 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도 현재 5~6개 이상의 농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흥지역 농특산물 판매 실적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보물 4개, 천연기념물 2개, 유형문화재 11개, 기념물 23개, 무형문화재 2개, 문화재자료 11점 등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후 문화유적의 보수·정비와 발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할 문화유적의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고흥을 찾는 관광객이 고흥의 문화유적을 거쳐갈 수 있도록 특단화된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도 이제는 과거 선조들이 남기고 간 과거를 팔아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야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금 발포지구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은 순천 6개, 여수 18개, 고흥 8개, 진도·해남이 16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충무공의 활동영역을 말해줌과 동시에 지역간 연계성을 확인해 주는 분포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여수간 연도교가 완공되어 교통이 용이해 진다면 이충무공 유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연계 관광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수와 진도·해남과의 이충무공 역사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복원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이충무공에 대한 역사만 집중하고 지역 인물에 대한 조명이 없다면 지역 역사가 죽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활약한 고흥인물에 대한 조명과 기념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관리차원에서 묻겠습니다.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이 발굴되었습니다. 백제중앙정부가 지방의 토착세력에 하사하는 금동관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조사되어 길두리 해창만 해상에 막강한 세력이 존재했고 신라와 가야 및 외국과 교섭하는 창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 고흥군의 고대사에 대한 중대한 흔적이며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굴 후 이에 대한 성역화 작업은 전무한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군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질문을 마치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대표적인 온천관광지인 오이타현 벳푸와 그 옆 지역인 유후인의 사례는 관광사업이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쳐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표본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벳푸는 70~8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호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관광추세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남성 중심에서 여성과 가족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잘된 것에 현실에 완주하다 보니까 시대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구 13만 명의 벳푸는 연간 250만 관광객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전 관광객 숫자하고 비슷하게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만 2,000명의 유후인은 현재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후인의 성공 원인은 잘되는 곳의 벤치마킹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미리 간파하여 창조적인 대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삶의 필수요건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생명을 영위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산업을 생명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 욕구 중의 하나인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단한 재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시작한 해창만 간척지 사업문제는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실경작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만한 사업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생산성의 확대 및 노후노동력의 농작업 편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인 포두면、점암면、영남면 지선인 해창만 간척지 배수개선 사업과 대구획 정리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간척지 조성사업 준공 이후 매년 되풀이 되는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키로 한 본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지금까지 사업 추진결과로 볼 때 처음 시공 시의 설계계획과 사업현장과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의 사업공정으로 인해서 기 기공된 사업의 유실과 설치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주시고, 농업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일환인 대구획 정리사업이 지금까지의 실적과 계획된 사업기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 사업완료 후에는 해창만 관리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경작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이고 실경작자들의 민원해결 방법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대표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쌀과 마늘, 유자, 양파 등 몇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2009년 통계연보를 보면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주요 작물의 조수익과 고흥한우의 조수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작목 중 하나인 것이 한우 분야이기 때문에 민선 5기 군정을 펼쳐가는 데도 고흥한우산업의 발전은 군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흥한우는 1979년부터 두원면을 필두로 육용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혈통만큼은 알아주는 한우로 평이 나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교역의 세계화로 인해서 가축질병의 만연으로 소비자가 안전먹거리를 선호하는 현시점에서 지리적인 특성상 가축질병의 차단이 용이하며 청정양축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우리 고흥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기술과 사육기반은 그동안 양축인과 군정간의 연계하에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주 소비시장인 서울과 부산의 원거리 운송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유통비용의 증가와 함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하여 유통의 문제점을 절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사료를 제조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균일한 품질의 고급 고흥한우의 생산과 더불어서 확고한 고흥한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고흥한우에 대한 생산과 고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유통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군수

존경하는 송경양 의원님께서 지역발전과 새로운 원동력을 창조하기 위해 관광산업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관광산업 지역 특화와 지역 연계에 대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이 없는지, 관광홍보의 지금까지 성과와 계획, 모범음식점 지정실태와 육성방안, 농어촌 체험마을 농수산물 판매실적에 대한 통계와 농어촌 체험마을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유적 보수정비 기본 방향, 이충무공 관련 유적지 복원계획의 기준과 임정 양란 고흥인물의 재조명 방안, 길두리 안동고분 정부계획과 군 차원의 대책 등 일곱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질문요지 네 가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지역특화와 지역 연계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서 자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 등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인근 여수와 순천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광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민선 4기부터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문화상품 개발, 관광마케팅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유일의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체험센터, 우주과학관, 우주천문과학관, 발사전망대 등 우주항공시설과 소록대교, 팔영산, 능가사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의 경우 연말까지 예약이 매진된 상태로 전국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우주항공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는 데 역량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광객을 우리 고흥군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박람회조직위와 합동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모범음식업소와 숙박업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영산에는 국내 최대규모의 캠핑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남열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와 도화 신세계 리조트 등 민자유치사업을 조기에 성사시키고 테마·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진지도·우도·시호도에 대한 테마의 섬 개발, 고흥만·해창만지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오마지구 한센인 테마공원, 발포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는 한편, 농어촌 체험마을조성, 천등산·적대봉 생태공원, 팔영산 편백숲길, 고흥 10경 둘레길, 자전거 도로 개설 등 녹색관광 자원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 농어촌 체험마을 5개소, 전통테마마을 1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 1촌 1색마을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지역경제의 효과나 생산유발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서 신기와 금산 명천의 녹색체험마을의 경우 2009년도 2,881명이 방문 2284만 원의 소득을 올린 데 이어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4,721명이 방문 6133만 원의 소득을 올려 168%가 늘어나고 있으며, 포두 남성 등 3개소의 어촌체험마을에도 지난해 22,907명이 방문해서 2127만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통 테마마을인 포두 상오 별나로마을은 2009년 9월 개장 이후 금년 11월까지 3,608명이 방문해서 4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산 명천과 대서 신기 정보화 마을의 경우도 체험상품과 전자상거래 등으로 금년 10월까지 각각 3억 9279만 원과 4279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농어촌마을을 관광상품과 결합해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투자효과가 점진적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판촉을 위해서 농어촌 체험마을 등에 지원한 포장재 지원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자연합회와 석류연구회 등 11개소에 18만 매를 지원하였으나 이 역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유통비용 절감과 우리 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Only

One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관광홍보에 대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홍보는 관광정책에서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 지하철역과 대합실 1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팸투어, 전국단위 관광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다각적인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16만 부를 제작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제관광박람회, 관광팸투어 등 전국적인 주요 행사 시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하는 등 고흥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관광객 수가 2005년 348만 명에서 2009년 456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8%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역에 대한 관광홍보물 배부와 박람회 참가, 대도시권 조명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홍보효과가 큰 만큼 전 직원 블로그 개설, 트위터 홍보를 활성화 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관광산업의 지역 농수산업과의 연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지역 농수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 판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과 함께 주요 관광지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한편 대도시 소비자층 그린투어 관광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과 농수산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책들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농수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소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9미 요리를 개발하여 다양한 조리법을 수록한 9미 요리백서를 발간 보급하고 전문식당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업주들이 제철 9미 재료를 선호하고 재료를 저장·보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장성이 양호하고 단순조리가 가능한 단품메뉴로 상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 보수·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정문화재 대한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발굴과 보수·정비를 위해서 2003년도에 순천대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한 바 있으나 우리 군 자체 발굴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두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물은 2006년도에 전남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 삼국시대 금동관모, 금동신발 등 100점이 출토되어 현재 전남대학교 박물관팀이 보관하고 있으나 출토유물은 국고로 귀속되어 문화재청이 지정한 국립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고분 발굴 이후 보존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정비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수·균열 등 훼손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0건에 12억 2138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17건에 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정 양란 고흥의 인물 역사적 재조명 문제는 그동안 1관 4포의 역사, 고흥과 임진왜란, 이순신의 사람들, 역사추적 프로그램 제작, 전라좌수영 1관 4포 역사테마파크 전시관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흥 인물과 관련해서는 류몽인 위성공신 교서, 이충무공 친필첨자, 정걸가 교지류 고문서 등 8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흥출신 인물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 임정 양란 고흥인물전 편찬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질문을 통해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 우리 군 특산물 9미 재료를 활용해서 취급하는 음식업을 일제 조사해서 9미 맛집 6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812개소 중에서 모범음식점 53개소를 지정하였고 이 모범업소에는 찬기 보급, 음식업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답변자 : 우주항공사업소장

먼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착공, 1,556ha에 총사업비 48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도년까지 배수장 9개소, 방수제 40km, 배수문 35개소 등 39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공정률은 82%입니다.

총사업 준공예정일은 2012년 말까지이며, 배수장, 배수문 등 10개 과목에 85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당초 목적과 같이 해창만 침수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상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난해에 왔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당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서 일부 2003년, 2004년 세동제나 이런 데는 호안블록이 70조 정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시 이런 부분들, 또 2001년도에 설계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앞으로 이런 또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하라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비 노후화 및 유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유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이런 소규모 유실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구가 될 것으로 보고 설비장비 노후화는 현재 저희들이 배수장은 4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송산、남촌、길두、시목 배수장이 2003년, 2004년에 이런 배수장이 설치됐는데 조금 고장이 있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수장이 2곳이 있습니다. 송산양수장하고 길두양수장이 있고, 배수갑문이 해창만 1호 갑문, 2호 갑문, 3호 갑문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89년, 90년도에 준공이 돼서 일부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한 20년 됐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경작농민들의 안전 영농을 위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간척농지 1,835㏊에 47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2003년 가을착수부터 금년도 봄마무리까지 1,251㏊의 농지정리를 완료하여 총공정률은 68%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220ha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잔여 대상사업인 364ha에 대해서는 2011년도 가을착수, 2012년도 봄마무리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105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에는 10여 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획 정리사업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창만은 대부분은 매각이 되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이 1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또 지난 말에 농식품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임대 토지들은 가급적이면 농지은행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창만 관리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관리하면 어떠느냐 해서 그런 협의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경작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지가 한 2,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한 1,500명에서 2,000명 이렇게 되

다 보니까 농번기 때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농로에 대해서 사리부설에 대한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용수공급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피해에 대한 민원이 주요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화가 오거나 특히 우리 송경양 의원님께서 자주 전화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즉시즉시 **그때 못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은 저희들이 4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을 상주시켜서 농번기 때는 저희들이 열심히 용수공급을 하고, 단지 하단부에는 집중되다 보면 물이 즉시즉시 공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창만이 가장 배수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우주항공사업소입니다마는 비가 오면 또 가물 때나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배수갑문, 배수장 관리원들하고 해서 침수 때도 저희들이 즉시즉시 일기예보를 예찰해서 물관리를 하고 지난해에는 참고로 한 이틀 정도 침수는 됐습니다마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창만은 주요 침수지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이나 대구획 정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마무리 돼서 경작자들에게 안전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송경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농업축산과장

먼저, 각종 영농자재와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늘어나고 쌀의 소비 둔화와 생산·재고량 증가로 인하여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이 감소되어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흥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 브랜드 개발, 활성화, 유통의 획기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한우 산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동안 번식우 중심 영세농가로 평균 사육규모가 9두로 전남의 13두, 전국 15두보다 낮으나 최근 전업 규모화로 빠르게 증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 말 한우 사육두수가 33,000여 두로 전남의 7.5%, 전국의 1.2%를 점유하여 도내 장흥, 무안, 나주에 이어 4위로 우수송아지와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업소득 중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산업이며, 특히 한우의 우수형질 보존과 가임 암소비율이 높아 송아지 생산두수가 많으며, 광활한 간척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여건과 한우 산업을 특화 육성해 나가는 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조성 역사가 깊고 꾸준한 혈통 등록 지원을 통하여 밑소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우수형질의 송아지 생산과 등록우 13,340여 두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육두수의 40% 수준의 우수형질을 보존하여 품질 우수성이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 차원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고흥만간척지 등 2,300㏊를 최대한 활용 조사료 자급화로 친환경축산물 생산인증 220호, HACCP인증 32호 등 고흥의 청정 이미지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축협과 한우작목반의 생축과 도축 출하물량은 5,660여 두 중 1등급 출현율이 4,000여 두로 72%를 점유하여 전남 평균 59% 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은 축협을 통해 일부 지리산 순한 한우로 출하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생축 출하량의 13%에 불과한 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유 브랜드가 없어 도매시장 생축 위주 유통과 대도시판매장 등 소비처가 미약하여 소비자로부터 고흥한우의 품질 우수성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마케팅 체계가 미흡하여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고흥한우 산업발전 방안은 암소개량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우량송아지 안정적 생산기지화와 고급육 생산농가조직 규모화이며 고흥만간척지 등 조사료 재배 확대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축사시설개선, 환경오염 최소화, 가축질병예방 체계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과 고흥한우 지리적 표시등록과 전문유통체계 구축, 유자골 한우 브랜드육성 및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흥한우의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급육 생산 농가를 조직화 하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의 소비시장을 장악해 나갈 전문유통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축협·한우협회·생산작목반 대표 등이 참여한 한우산업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수렴하고, 전문유통경영체 설립 방향 설정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유통경영체의 조직화, 자본금 확보, 유통법인 설립 방안에 있어 참여조직은 고급육 사양관리, 출하두수 안정적 확보 공급에 역점을 두고 유통법인은 대도시 직판장, 프랜차이점 등 소비시장 영역확대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행정기관은 유통법인과 참여조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흥한우가 체계적인 유통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난 9월에 고흥한우 전문유통경영체 설립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은 바 있으며, 앞으로 한우 유통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 함평, 장수, 횡성군과 축협 등의 유통경영체 견학과 대도시 직판장, 프랜차이점 등 운영 사례 등을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 기본계획을 구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한우 유통활성화에 대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방안을 주시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안은 적극 검토 보완하고 고흥한우 유통전문경영체 설립 등 한우산업 육성 발전에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주 식 의원

## ■ 질문요지

①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현황?
②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③ 국도 77호선, 지방도 830호선의 미개량 구간 사업추진 현황?
④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대비책은?

## ☞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과 창조적 리더쉽으로 고흥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올바른 군정을 위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으로 함께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고흥,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고흥건설을 위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망을 담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과 더 낮은 자세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솔선수범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우리 고흥은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로 변한 연평도를 보면서 안이한 대응으로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고 네 분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도 확전방지를 언급하며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한 정부를 보면서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맡은 바 위치에서 행복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손잡아 주며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사랑받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흥군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민선 4기와 민선 5기가 출발하여 기업유치의 불모지를 투자적지로 탈바꿈하며 산업단지와 리조트조성, 군민복지 향상 등 고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가꾸고 그동안 경제 악화로 인해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이 시행사의 전액부담으로 실시설계를 착수,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며, 지방의 발전 잠재력 개발, 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녹동과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양중학교에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에탄올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도양축구장 전지훈련팀 유치,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건립을 통한 외래 관광객 볼거리를 제공하고 녹동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신명나는 주말장터 운영 등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해양레저 친수공간조성 사업으로 녹동항 가치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위해 국가계획 및 예산이 반영된 많은 사업들이 조기 실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정연설 가운데서 본 의원은 우리 고흥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키워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위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서는 총체적인 군정방향 제시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부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녹동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항정비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녹동항이 우리 군의 중추적인 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항으로 재정비하여 거금도, 소록도 연륙·연도교 개통과 더불어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대처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명품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녹동항은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도 1항 개발 원칙에 따라 여수국동항이 선정되고 녹동항은 다기능항에 준하는 녹동항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흥군의 미래를 위해 녹동항 정비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동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군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을 기필코 조성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고흥의 미래가 보장되는 선도적 최고의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열정으로 고흥조선타운 조성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온 걸로 압니다. 지난 2008년 4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흥·도양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계속되는 침체로 인해 산업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흥조선타운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대비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가뭄의 심화, 잦은 홍수발생, 사막화, 해수면 상승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도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실제로 시설원예농가들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재난발생 빈도와 규모 면에서도 과거의 양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우리 군 녹동항에서는 인근 상가부근까지 바닷물이 월류하여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1992년 리우회의 세계기후변화 협약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다양한 대비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재난안전 대비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군수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 답변은 담당 과장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고 녹동경제가 살아야 고흥의 경제가 사리라 확신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 답변자 : 부군수

첫째, 녹동항 정비사업은 녹동항을 수산물 유통과 해양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2014년까지 총사업비 436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500m, 접안시설 380m, 친수호안 314m, 연결교량 90m를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4일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서측 돌제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비로 100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감스럽게도 49억 원만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49억 원을 확보하기까지는 김주식 의원님의 도움이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9월 26일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조선업의 업황 부진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맞물리면서 투자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민간투자자를 발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조선업의 업황 호전과 투자기업의 자금사정 등 복합적인 변수가 많은 사항

이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까지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 대비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 해수면의 상승 등 재난 발생의 빈도와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은 다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 · 도양 상습침수지구는 항구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210억 원을 투입하여 우회배수로를 설치 완료하였고,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311개소, 재해위험지구 16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고흥 수덕지구에 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봉래 축정지구는 67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녹동항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녹동항 물량장 정비 사업도 현재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물량장 높이를 4.4m에서 5m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및 침수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 세 선 의원

## ■ 질문요지

① 바다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은?
② 지역 연고사업으로 전복 브랜드화를 위한대책과 방안은?
③ 미역생산을 통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매생이,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관광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④ 미역귀를 활용한 퇴비가공공장 설치와 미역귀 활용의 다각적인 대책은?

## ☞ 질문내용

지난 7월 의회가 개원된 이후 합리적인 사고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잘사는 고흥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꿈을 현실로 하이고흥 해피고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행복과 고흥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제6대 고흥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군민 여러분의 과분한 성원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군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항상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원,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군민의 머슴으로 어렵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경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 군민 모두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는 물론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변화되어 현실을 타계해 나가는 역량과 저력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관광객 등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산물과 농산물의 주산지인 우리 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잘사는 고흥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중에서도 3면으로 둘러 쌓인 바다를 정리하고 아껴서 오염되지 않는 무궁무진한 해산물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바다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면이 바다이고 고흥군 행정구역상 아직까지 섬으로 남아 있는 거금도는 삭막한 도시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참살이 공간으로 마음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도교 가설이 완공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우리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청정바다가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농자재, 생활폐수 등 주위환경을 해치는 원천과 근본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우리가 먼저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 어업의 비중은 현재 11%를 차지하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가의 주민들에게는 다수의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어획량 감소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형태로 어민들의 수입원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폐어구로 대표적인 통발이 바다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류 등 해양생물도 걸려 죽게 만들고 바닷속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있으며 조업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 통발 발생 방지를 위한 어업인의 사전대책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통발을 조금만 보수하면 재활용도 가능할 것 같은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연고산업 육성입니다.
3면이 바다이고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한 우리 군의 수산세가 타 시군에 비해 미비함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인근 완도군에서는 201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에 완도전복 글로벌 상품화 및 마케팅사업으로 국비 18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다 합니다.

천혜의 환경과 양식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고흥도 과감한 투자로 양식장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공급을 통해 고흥전복을 브랜드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고흥전복 브랜드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특산 8품의 하나인 미역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가공공장도 근래와서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좋은 미역을 고르는 방법은 생미역은 줄기가 가늘고 잎이 넓으며, 손으로 만져 보아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좋으며, 색깔은 선명한 녹색에 반투명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조미역은 줄기보다도 잎의 비중이 크고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고 심이 가늘고 광택, 윤기 있는 것이 좋으며 물에 담갔을 때 잎이 조각조각 풀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최고 품질인데 반해 판매 시 아직까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한 선별, 가공, 포장을 거쳐 질 높은 미역 생산을 통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역과 더불어 생산되고 있는 매생이,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관광상품으로 적극 소개 될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귀는 쫄쫄이 미역종자로 미역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품화로 활용이 안 돼 바다에 버려졌으나 이를 상품화시킴으로써 **어민들의** 부수입을 올리고 미역귀를 활용한 식자재, 사료 및 퇴비가공공장을 시설하여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고 고기잡는 어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민들의 시설투자를 줄이고 소득은 높아짐에 따라 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생육을 좋게 하여 더욱더 질 좋은 미역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미역귀를 활용한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보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

이는 제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의회, 집행부가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날의 낡은 관행을 모두 털어버립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머뭇거리는 군정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우리 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 역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먼저, 바다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질문하신 김옥래 의원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폐통발 어구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두고 어업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연고 사업으로 전복 브랜드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패류의 황제라 불리는 전복은 예로부터 진상 또는 관아용 명목으로 상납하는 귀한 해산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양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나 그동안 생산위주의 양식으로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0월 기준 전복 전국 생산량은 7,130톤이며, 그중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이 5,847톤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산량은 전국의 2%인 120여 톤에 미치지 못하고 생산 어업인들의 유통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2008년도에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송차량을 지원하여 상당한 소득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복 수요량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복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생산자 실명제 도입 및 전문기업과 제휴하여 생산嘯"脯판매搔뗑 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은 물론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전복을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역 생산을 통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매생이,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관광상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를 양식하는 어가는 약 510호로 연간 126,600톤을 생산하여 16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역의 경우 전량 생산 현장에서 물미역의 상태로 kg당 100원 내외로 판매되어 관내 가공공장에서 가공되고 있으며, 고흥 미역이 가장 품질이 양호하며 가공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포장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다시마도 건조 후 여러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톳은 건조되어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매생이는 건강 기호식품으로 비싼 가격에 전국에 kg당 4000원 이상으로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수산물의 관광 상품화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건미역, 컷트미역, 염장미역, 건다시마, 자른다시마, 염장다시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포장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인터넷을 통하여도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흥바다가 청정해역으로 인정되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타 지역 생산품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소비처인 수퍼마켓이나 군납, 대량급식소, 아파트 단지 등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판매망 확대로 소비층을 다양화 하고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제품 홍보를 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귀를 활용한 퇴비가공공장 설치와 미역귀 활용의 다각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미역 생산량은 300어가에서 연간 11만 톤을 생산하고 1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역잎을 채취하고, 미역귀와 뿌리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투기되는 미역귀의 양은 정확히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나 약 15% 내외로 추정할 때 약 16,5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역생산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역양식 어민의 노동력 부족과 처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미역 채취과정에서 미역귀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고, 이의 행정적인 지도와 단속은 사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역귀가 버려짐에 따라 바다 저층에서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망이나 낭장망 어구에 걸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나로도 자망어민들로부터 어획곤란과 그물 훼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역귀를 활용한 부산물 사료화 공장 건립을 위하여 2010년 사업으로 사업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았으며, 또한 2011년 사업으로 해조류 부산물 사료화 공장 88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사료화 공장은 수산분야에는 지원 사례가 없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역귀를 활용한 공장건립을 위하여는 일반 사료공장 건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을 재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비사업으로 미역귀의 일부라도 수매하여 처리하고자 미역귀 수매사업비로 2000만 원을 예산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미역귀 발생량의 2%정도의 수매를 시험적으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한편, 내년에는 국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역귀의 사료화 또는 사용가능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활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 설 희 의원

## ■ 질문요지

①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추진 횟수, 참여인원 및 지원한 예산액은?
②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좌명칭과 실시 횟수, 참여 인원 수, 교육장소, 예산 지원액 등 추진 실적은?
③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기본계획과 예산반영 등 추진 방향은?

## ☞ 질문내용

군민의 권익신장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군정의 큰 목표 달성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원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지역발전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실태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들의 직업훈련 실태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군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이며 이는 현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방향은 미래사회 관리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적극적 리더쉽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들도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는 용기와 학습에 대한 열망,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심, 실패에 대한 과감한 용인, 탁월한 기획력 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의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가능성의 감소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의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47.7%이며, OECD 국가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화라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여성의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09년 여성취업자 수는 977만 2,200명으로 2008년보다 10만 3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이 3만 1,000명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성차별의 대책으로 노동부는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을 위해 금년 2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시행했던 출산여성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대안이 현재의 여성차별문제와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갖게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여성관련 단체에 몸담고 활동해 오면서 여러 분야를 체험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들어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일선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군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제도적 미비점도 있을 수 있으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인력부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책 입안과정에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졸속으로 시행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입맛에 맞게 모든 시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훈련 등 여성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갖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흐름은 영국 노동당이 주장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유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갖고 우리 고흥이 복지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께 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 역할증진과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고자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진한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프로그램 명칭과 추진횟수, 참여인원 및 지원한 예산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각종 교육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현대인의 삶을 살찌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기회균등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추진 현황에 대하여 강좌명칭과 실시횟수, 참여인원 수, 교육장소, 예산지원액 등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군의 기본계획과 예산반영 상황 등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 : 주민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은 크게 3가지로 여성직업훈련, 여성취미교실 운영,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성직업훈련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부마사지반, 요양보호사반, 웃음치료사반 등 총 8개 과정의 여성직업훈련을 실시하였고, 추진 횟수는 과정별 2~3개월로 지금까지 총 208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원예산은 2008년과 2009년에는 도, 군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보다 다양한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군비사업 외에 군비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208명 중 최종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피부마사지과정이 4명, 요양보호사 과정이 28명, 웃음치료사 과정이 5명으로 총 37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 수료 시 교육생에 대한 사전 설문을 통하여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교실 운영으로 이 프로그램은 문화회관과 평생교육관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읍면별 특성을 살려 농한기 등을 이용,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요가 등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도록 이동취미교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총 435회에 걸쳐 15,031명이 참여하였고, 강사료 등 군비 37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별 참여인원으로는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이 모두 참여하여 읍면 평균 1,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음걷기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자매도시 창원시 여성단체 교류행사에 매년 13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강좌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과 테마교육을 실시해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데 먼저, 자녀양육, 건강강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연령별, 대상별로 매년 여성 50명씩 최근 3년 동안 총 1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회관, 여성회관, 테마별 주제공간에서 도·군비 300만 원을 들여 여성테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임원, 여성이장, 그리고 여성공무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총 240명의 여성지도자들에게 군비 3600만 원을 투자해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도 중앙단위 각종 워크샵과 교육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여성의 잠재력과 의식함양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는 모든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로써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지자체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양성 실적으로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추진 정책 중에서 특정 성에 불리한 정책을 찾아내 양성평등한 정책을 개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제 선정 시 본 평가에 대한 부서별 이해부족으로 총괄부서 위주의 업무에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12월 중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2.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 의사일정 : 2011. 12. 1(목) 제6차 본회의
  2011. 12. 2(금) 제7차 본회의
- 질문의원 : 10명(김옥래, 송경석, 박금래, 송경양, 최설희, 김주식, 김의규, 송인숙, 송우섭, 장세선의원)
- 질문건수 : 36건
- 답 변 자 : 9명(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산림과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농업축산과장, 경제유통과장, 부군수, 보건소장, 문화관광과장)
- 진행방법 : 일문일답
- 질문요지서

| 의원명 | 질 문 요 지 | 소관부서(답변자) |
|---|---|---|
| 김 옥 래 |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 해양수산과장 |
| |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 | 〃 |
| | 불가사리 피해 및 앞으로 대책 | 〃 |
| | 미역귀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 | 〃 |
| | 해안쓰레기 수거 및 앞으로 대책 | 〃 |
| | 초영마늘의 장려품종으로써 상품성 적합성과 고흥마늘로의 브랜드 육성 가능성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
| 송 경 석 |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 군 수 |
| | 고흥우주해양리조트,신세계리조트,씨월드리조트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 〃 |
| 박 금 래 | 산림정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수립 계획은? | 환경산림과장 |
| | 편백나무 식재면적? | 〃 |
| | 앞으로 편백나무 확대 식재할 용의는? | 〃 |
| | 편백나무의 산림관광 산업화 계획은? | 〃 |
| | 고흥만 간척지 준공과 처분계획은? | 우주항공사업소장 |
| | 고흥만간척지 현재까지 총소득은? | 〃 |
| | 고흥만 간척지 초지조성은? | 〃 |

| 의원명 | 질 문 요 지 | 소관부서(답변자) |
|---|---|---|
| 송 경 양 | 비젼 5000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은? | 농업축산과장 |
| | 친환경 쌀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은? | 〃 |
| | 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 선택과 생산계획은? | 〃 |
| 최 설 희 | 쌀 브랜드화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방안은? | 경제유통과장 |
| |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과 개선대책은? | 환경산림과장 |
| | 농사용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 〃 |
| 김 주 식 | 순천시국제정원박람회,여수시세계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 부 군 수 |
| |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 〃 |
| 김 의 규 | 방역사업 추진상황은? | 보건소장 |
| | 방역약품 희석비율 방법은? | 〃 |
| |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상황은? | 〃 |
| 송 인 숙 |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 대책은? | 문화관광과장 |
| | 고흥 만남의 광장 청소인력 관리 대책 | 〃 |
| | 고흥 만남의 광장내 유휴부지 활용방안은? | 〃 |
| 송 우 섭 | 농수산물 수출현황 및 추진계획은? | 경제유통과장 |
| | 한미 FTA 발효시 농림수산식품 비젼 5000 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은? | 농업축산과장 |
| | 축산 · 과수 · 특용작물 재배농가 현황과 한미 FTA의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은? | 〃 |
| 장 세 선 | 요즘 관광객들의 선호 추세를 분석한 기초자료 준비유무 및 활용 계획은? | 문화관광과장 |
| | 고흥관광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 〃 |
| | 관광객들의 관심지역과 시설물 · 음식은 무엇이며,다시 찾도록 대비는 잘 하고 있는지? | |
| | 전통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표축제 계획은? | |



김 옥 래 의원

## ■ 질문요지

①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②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계획
③ 불가사리 피해 및 앞으로 대책은?
④ 미역귀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은?
⑤ 해안쓰레기 수거 및 앞으로 대책은?
⑥ 초영마늘의 장려품종으로써 상품성 적합성과 고흥 마늘로의 브랜드 육성 가능성은?

## ☞ 질문내용

올해는 대체적으로 평년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수확량은 다소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 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 보다는 앞으로 걱정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행정의 불신과 계층간의 갈등, 집단 이기주의 심화 등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경제를 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 생활 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빗나가고 4대강 사업이란 목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우리 군의 현안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에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경제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지닌 무공해 청정지역이며,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

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건강에도 일익을 담당해 왔음에도 공업화에 밀려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산분야가 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을 핵심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으며, 어업의 실상이 취약한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배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에 대한 심각성과 우리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주민을 홍보하고 계도하여 깨끗이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근시안적인 욕구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어 가기 전에 잘 가꾸고 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자만하지 말고 너, 나 할 것 없이 바다 환경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식구조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로 다가가야 하겠으며,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살기 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수입수산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과학 영어를 실현하여야 하고 고품질 계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취약한 수산관계 틀 속에서 이해 집단의 관계에 얽매어 대의를 외면하고 어업인들은 어업인들 대로 생산 활동의 고충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으며, 행정은 행정의 논리만을 주장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화합이 필연적으로 뒤엉켜 양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촌이 잘살고, 풍요로워야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상 부서간의 관심과 이해 속에서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다 건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관광휴양명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흥이 우주항공 도시로 부상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해 지고 인구의 유입과 아울러 먹거리와 볼거리가 조화됨으로써 관광고흥의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 군의 위상제고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 분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형 저온 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 실적과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저 표면의 개펄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해적 불가사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구제에 있어 진척이나 기

대에는 못 미칩니다.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있어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역귀 활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역귀로 인하여 어업관련 수산단체, 전남연안 통발어업, 새우조망어업, 연안 자망어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미역귀를 활용하여 퇴비가공공장을 비롯한 그 외에 다각적으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바닷가의 폐스티로폼, 폐어구류 및 양식자재류 등 육지에서 유입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해상으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에 의한 해양 경관훼손은 물론 연안 어장 등 문제가 심각하고 또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해양환경의 보호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과 소득을 위하여 마늘 품종개량과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왔으나 소득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는 초영마늘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는 초영마늘의 우수성과 상품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추진 실적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사업은 어선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국비154억 원, 군비 38억 원 등 총 192억 원의 사업비로 490척을 감척하여 척당 평균 3915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은 72척, 2011년은 28척을 감척하여 2년간 소요된 사업비는 46억 1500만 원으로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2012년은 사업비 12억 3000만 원으로 30여 척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현황 및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수산물은 생산 단계부터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중요하며, 신선도 유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패류 등 수산물의 보관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 및 냉장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동 사업은 2011년 당초사업으로 30개소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입니다.

2012년 사업비로 34개소에 4억 1000만 원을 도비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불가사리를 퇴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남해안에 밀식 밀도가 가장 높아 1ha당 1만 3500미가 분포하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하며 마을어장과 패류양식장에서 바지락, 새고막, 피조개 등 유용 패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바지락 등 패류가 서식하는 마을어장을 위주로 구제하고 있으나 봄철에는 개체수가 많았으나 여름부터 현재까지는 개체수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내년 봄에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불가사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군비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4개 어촌계에서 250톤을 수거하여 농업용

퇴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바지락 등 패류양식 주산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20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퇴치는 현재는 인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뿐으로 불가사리 구제를 위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미역귀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미역 생산량은 300어가에서 연간 11만 톤을 생산하여 1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역 잎을 채취하고 미역귀와 뿌리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투기되는 미역귀의 양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미역생산량의 20~30% 내외로 추정할 때 약 2만 2000~3만 3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미역 생산 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역양식 어민은 노동력 부족과 처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미역 채취과정에서 일부 미역귀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적인 지도와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역귀가 버려 짐에 따라 바다 저층에서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망이나 낭장망 어구에 걸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나로도, 도화 발포 자망어민들로부터 어획 곤란과 그물 훼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역귀를 활용한 부산물 사료화 공장건립을 위하여 국고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올해 풍양면 풍남 보라수산에서 6억의 사업비로 미역엽체 및 미역귀 가공을 위해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미역귀 뿌리 재활용 사업으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올해는 군비 2000만 원으로 215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미역귀의 사료화 또는 사용가능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밀려있는 해양쓰레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어구, 폐양식자재, 폐스티로폼 등이 있고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인 폐가전제품을 비롯하여 비닐, 철재, 섬유 등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유형을 보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선어업과 수산 증양식 시설과정에서 발생된 폐어구와 수산양식 폐자재로 일정한 규모 내에서 발생하는 반면 육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산업화 및 경제 향상에 따른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집중호우 또는 태풍, 강풍에 의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나 해안가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밀려있는 쓰레기는 매월 수거하여 일정량이 모아지면 군에서 일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해양환경보전과 연안어장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총 8종에 15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청소 및 연안어장 3790ha 경운작업과 침적된 오폐물 1240톤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으며, 해안가 쓰레기 수거 공공근로 인부임 1억 1600만 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 사업비를 포함 총 7종에 11억 9300만 원을 해안가 청소 및 연안어장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오폐물 수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연안어장 보호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주민계도와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영마늘이 우리 군의 장려품종으로써 상품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고흥마늘로의 브랜드 육성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영마늘의 상품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입니다.

초영마늘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토종마늘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순천대학교 식품연구소에 의뢰하여 영양분석한 결과 초영마늘이 남도마늘보다 비타민 B1 함량은 69%, 알리신은 18%, 유리당은 50%가 더 많으며, 당도가 2.5 x 높고, 피르브산 함량은 23%가 낮아 생마늘은 맛이 순하고 찐마늘은 점성이 강하여 식미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영마늘은 구피색이 적자색으로 상품화에 유리하며, 생육특성 조사 결과 인편수는 7.5개로 남도마늘 8.3개보다 0.8개 적지만 마늘통이 벌어지지 않아 상품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고흥마늘의 브랜드육성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영마늘은 최초 보급단계에서 마늘 주산지역인 고흥, 해남, 무안 3개 군에 각각 15kg씩 분양 재배를 하였으나, 고흥토종마늘을 모본으로 개량한 우수한 품종이므로 고흥군에만 특화하라는 박준영 지사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확대재배 기반구축을 위해 종구증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2010년에는 143농가에 14.7ha,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면적 23.8ha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재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가을 파종면적 조사 결과 101농가에 9.2ha로 감소가 됐습니다.

재배면적이 이와 같이 감소한 원인은 초영마늘이 맛이 순하고 마늘의 기능성 성분들이 남도마늘보다 많이 함유되어 품질이나 영양상으로는 우수하지만 실제 초영마늘 생산성이 일반 남도마늘보다 30% 정도 낮아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초영마늘이 상품화되어 소비시장에 출시된 기간이 짧아 초영마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영마늘을 고흥마늘의 브랜드로 육성하여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초영마늘 재배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최상품을 생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경 석 의원

## ■ 질문요지

①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② 고흥우주해양리조트,신세계리조트,씨월드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 ☞ 질문내용

새해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군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우리 군의 번영과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금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국제적으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불안정의 여파가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을 휩쓸어 세계 경기가 폭풍에 직면한 조각배처럼 진로를 잃고 어둡고 긴 불황의 터널 속을 헤매고 있고, 국내 정세 또한 이와 같은 세계 경제상황의 여파로 증시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며, 한미 FTA 국회비준 등 여 · 야의 정쟁 때문에 좀처럼 앞날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국내 · 외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번영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 나름 애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과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 그리고 씨월드 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진행과정과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오해스러운 억측을 해소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취약한 우리 군의 산업 구조와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 외 경제동향과 조선시황,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연 군에서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이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본 건을 물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관광고흥을 표방하는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써 고흥조선타운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성장동력으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총사업비 3239억 원 중 대부분이 민간자본 유치에 의존해야 하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경기의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데도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본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구 내 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투자회사와 토지보상가격은 협의되었는지?
가급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씨월드 리조트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군의 핵심사업으로써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와 억측들이 생긴 데는 군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본 의

원은 판단합니다.

투자유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는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면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고 할 것이며, 양자 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우리 군의 열정과 의지만으로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잘 압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군민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또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보다 진솔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군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여파로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 자금이탈, 저축률 감소, 원화가치 급락, 경기침체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와 비금융권 그리고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총부채율이 333%로서 일본, 영국,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 국가라는 사실이 실로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처럼 정체와 발전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외부의 여건변화에 따라 좌우되는 시기에 우리 군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정에 대한 협조와 참여,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 대안 제시라는 주인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송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투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와 우주항공리조트 특구는 고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우

리 군에서 주도하여 전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계획한 사업이며, 씨월드 리조트는 민간 부분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 정부로부터 고흥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기반시설 사업비로 480억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상기 사업장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최근 개별사업장에 대한 투자자와의 활발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조선타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새로운 지역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활로 모색이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상황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도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작하였던 고흥조선타운은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경기가 절정의 활황을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열악한 지리적 여건과 산업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악전고투 끝에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받아냈고, 같은 해 9월에 도양일반산업단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내는 등 본격적인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2008년 말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불가항력적인 경기 상황을 맞아 민간 투자자인 부산저축은행에서 SPC 설립 후 증자를 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위축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외부적 악조건 속에서도 고흥조선타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자 물색에 발버둥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에는 시행과 시공 · 분양 함께하겠다는 (주)안정개발 및 경진엔지니어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새로운 시행 기업마저 좋지 않은 경기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협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실시계획을 마무리 지을 사업자를 찾았으며, 금년 9월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5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당초 우리 군이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민간투자 사업 특성상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맞닥트리게 되면서 자금조달과 투자시기에 대한 재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당초 우리 군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타운 조성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지역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이루어 낼 것이며, 현재의 상황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마무리 짓고 유치업종을 조선과 조선기자재에 국한하지 않고 임해산단에 필요한 다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기업유치와 투자자 발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개발계획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산업단지를 1단계로 개발하고 난 후, 2단계로 배후 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009년 11월 24일 제180회 고흥군의회 정례회 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송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흥、도양일반산업단지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조자가 하나 없는 듯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 어렵다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과 산업단지 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임해산단은 더 이상의 신규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선타운이 갖는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양일반산업단지 지정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흥발전의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산단개발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온 군민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염원하고 함께 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사항입니다.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더불어 관광레저 수요 증가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민간 투자유치가 가능한 분야 중의 하나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 순수한 민간투자 자금으로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과 2009년도에 두 차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 받았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당초에 PF 참여키로 했던 두산중공업과 우리은행이 이탈함으로써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 기업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토지 매수 준비를 하던 중 결렬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겪으면서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에 경기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깨닫게 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몇몇 굴지의 국내기업과 희망적인 상황으로 실 투자에 대한 교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양자간 협의사항으로 당분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조절을 할 수 없어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는 일이겠으나 성급한 판단으로 포기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고흥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염려하시는 군민이라면 힘을 보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마치 안 되는 것인 양 매도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3000억여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피땀 흘려 인 · 허가를 받아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기 사업을 허가한 지식경제부에서도 특례 적용을 잘한 표본적 사례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

한 바 있으며, 여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협력과 협조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씨월드 리조트 추진 현황입니다.

금산면에 추진 중인 씨월드 리조트 사업은 미국 모어랜드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월드 리조트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에 MOU를 체결하여 그동안 사업부지 확보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4월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모어랜드 코리아를 설립하여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산면 명천지구에 약 28만㎡ 부지를 대상으로 70%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씨월드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대서면 상남리에 15만㎡의 면적에 목조주택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1억 5000만 원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거친 후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 및 건설회사와의 구체적인 투자 협약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부터 우리 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 지역교육 진흥과 투자유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100억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을 때 어느 누구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95억여 원의 기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국도비 확보도 중요한 일이였기에 각종 공모사업에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온 결과,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2008년부터 45건에 439억 원의 공모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기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노력의 땀방울이 소망스런 결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회고해보건대 도양일반산업단지는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선거 공약이었고,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수 취임 이후 쉬운 길로 가기보다는 그 여정이 고달프고, 책임이 무겁더라도 웅군이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고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리조트 특구조성이 가장 절실하다는 숱한 고심 끝에 그 어려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투자유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고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처음에는 의문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민선4기부터 현재까지 13건에 629억여 원의 투자 실현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여 건의 투자유치 대상 사업도 10건에 147억 원의 사업비가 우리 군에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변변한 제조공장 하나 없었고 고흥에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선입견을 깨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결코 순탄하지 않는 길입니다. 투자 실현까지 수많은 좌절과 인내, 그리고 반복된 협상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고, 군정과 의정의 존재가치마저도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절망을 뛰어넘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흘려왔던 눈물과 땀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넉넉한 유산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아가야 하기에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흥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제 삶의 터전이며, 저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고흥을 지키고 살아가는 뼛속까지 고흥사람이기에 그 1%의 가능성을 100%의 투자로 이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갖고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편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군민에게는 물론 우리의 후손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기에 실패에 대한 주저함이나 염려가 아닌 성공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1년 신묘년 화두가 "유지경성"이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화두는 2011년 화두가 아니라 우리 고흥군민 모두가 믿고 가슴에 새겨야 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 금 래 의원

## ■ 질문요지

① 산림정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수립 계획은?
② 편백나무 식재면적은?
③ 앞으로 편백나무 확대 식재할 용의는?
④ 편백나무의 산림관광 산업화 계획은?
⑤ 고흥만 간척지 준공과 처분계획은?
⑥ 고흥만간척지 현재까지 총소득은?
⑦ 고흥만 간척지 초지조성은?

## ☞ 질문내용

군민의 권익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우리 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과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개방의 파고에, 내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갖춘 외국 농消快축산물의 수입 확대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이러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여건을 충분히 살려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가야 할 산림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질문한 사항이니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냉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산업을 관광과 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현황과 앞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역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산림수종 변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은 4만 6183ha로 현재 3692ha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184ha에 편백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면적을 조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나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편백나무 숲을 이용해 관광자원화 해 나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편백나무 집단 군락지를 잘 정비하여 이를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환경산림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영산 국립공원과 봉래산 일대에 조림된 편백나무 숲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계획과 편백나무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산림 정책에 대한 방향을 건의하니 신중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봄과 가을은 현저하게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이 길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더욱 온난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흥군의 기온변화에 대한 통계를 보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기온이 0.7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산림기후대는 난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여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이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편백나무숲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등 산림자원 육성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산림정책 방향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의 소신 있는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일시경작에 들어간 고흥만 간척지는 그동안 군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준공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상 준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만 간척지 농지 분배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2010년 답변에는 1~2년 걸려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관련법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준공 이전에 초지조성 지구, 원예단지 등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고흥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매년 일시경작한 농지에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 왔습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 총소득이 얼마이며, 2011년도의 생산량과 추정소득을 각각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울러 군에서 받아들인 일시경작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다변해져 가는 국 · 내외 여건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위주의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환경산림과장

우리 군 산림면적은 4만 6183ha이고 임상별 면적은 편백 등 침엽수가 1만 9626ha, 활엽수가 7093ha, 혼효림이 1만 9464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과 전라남도 조림5개년 계획 등에 의거 금년도에 61ha의 조림사업과 3640 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금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오천리 일원 122ha에 거금 생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두면 옥강리 군유림 5.7ha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4억 원을 투입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의 산림정책 중장기 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수종 조림 및 휴양림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편백나무 식재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 조성은 제2차 치산녹화 시기인 1978년부터 식재하여 금년까지 총 3692ha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 임야면적 4만 6183ha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1ha 이상의 대단위 조림지는 49필지에 534.1ha입니다.

수령에 따른 분포도는 전국에서 최고령목인 90년된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봉래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30년 된 조림면적이 2185ha이며, 10년 미만인 어린나무가 1507ha로 향후 20년이 지나야 용재로서 경제가치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편백나무 확대식재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는 난대수종이며, 추위에 약해 내륙지역에서는 조림이 제한되어 중·남부 이남에서만 식재가 가능하였으나 지구온난화로 중부지방에서도 조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일원에 시험 조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림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편백나무는 새로 집을 지을 때 접착제에 함유된 프롬알데이드로 인한 새집증후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하여 실내인테리어 제품이나 가구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톤치드의 발생량이 소나무의 3배가 많아 아토피 치료, 스트레스 해소, 면역강화와 천식치료 물질인 샤비넨을 함유하여 최근 치유의 숲 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수분이 적당히 있고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산계곡부와 하단부가 적지로서 우리 군 산림면적의 약 10%인 4600ha가 편백조림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조림 5개년 계획 등 정부 시책에 따라 기 조림된 3692ha 외에 908ha를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백나무의 산림관광산업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림은 건강·휴양 등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한 관광객유치 측면과 목재생산 및 편백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등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방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편백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약 2년 정도로 초기 단계이며, 선점한 자치단체는 포화상태이므로 우리 군의 장점인 숲 가꾸기 체험현장 교육 등으로 활용하고, 타 지

역보다 항균작용이 높은 알파니넨 성분이 1.5배 이상 높은 우수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팔영산 일원의 편백건강 숲은 전국 최대규모로서 현재 산책로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완료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최고수령인 봉래산 편백ㆍ삼나무 숲을 우주센터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양읍 장기산과 도덕면 적산 등 관내에 조성된 2ha이상 대단위 편백림은 숲가꾸기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적 이용 제고 측면에서는 우리 군 관내에 조성된 대부분의 편백림이 벌기령에 도달되지 않은 미성목으로 현재는 솎아베기 등 육림작업 단계로서 향후 약 20년이 지나야 목재생산이 가능하여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몇 곳 회사에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벌재를 활용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생활용품, 가구, 완구제작과 히노끼탕 등 건강 생활용품 개발에도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우주항공사업소장

박금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인 고흥만 간척지의 사실상 준공시기, 준공 후 간척지 농지분배 계획, 준공 이전에 원예단지 등 활용 가능한 시설지구 지정 계획 및 이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사항, 그리고 2003년부터 매년 일시경작 한 농민들의 총소득 및 2011년 총생산량과 추정소득, 일시경작 사용료 부과 금액 등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준공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은 1991년 10월 착공하여 4개 읍、면에 걸쳐 3100ha를 매립한 사업으로 농지조성 1701ha, 담수호 745ha, 인공습지 280ha, 기타 시설 374ha를 조성, 총사업비 39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30일 내부개답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어촌 정비법 114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금년 12월 또는 내년 1월 준공신청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준공 후 간척지 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간척지 준공이 완료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및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인계 관리토록 관련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매립지 등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는 장기 임대 등으 방법으로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초지 조성지구, 원예단지 등 고흥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구지정 등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안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준공 이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당초에는 산업단지, 비행시험센터 등 300ha를 매립목적 변경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형 특화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가 고흥만간척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어 현재는 고흥항공센터 인근에 국가비행시험센터 설립을 위하여 100ha를 용도변경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군 의견과 조금 다르며 지식경제부는 국가비행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우리 군 입장과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지식경제부에 항공산업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현재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고흥만 간척지 일시경작 총소득 및 2011년 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30㏊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농경지의 95%인 1617㏊에 일시경작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소득액은 662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생산량과 추정소득은 아직 정부에서 단위당 생산량과 쌀 가격이 고시되지 않아 소득을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난해 총생산량인 6700톤을 비교해보면 소득액은 금년도에는 134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일시경작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시경작 사용료는 5억 3800여만 원이며, 지금까지 총사용료 징수액은 24억 8000여만 원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송 경 양 의원

## ■ 질문요지

① 비젼 5000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은?
② 친환경 쌀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은?
③ 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선택과 생산계획은?
④ 쌀 브랜드화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방안은?

## ☞ 질문내용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높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이 가득 찬 고흥을 이루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어진 역할은 상호 다르지만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기름진 땅 고흥을 풍요롭고 살맛나는 지역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군민으로부터의 무거운 책무를 안고 이 자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의 우리 고흥은 내·외세로부너의 무한한 변화 요구에 의해 자유무역이라는 족쇄에 걸려서 반만년을 우리와 함께 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UR협정에 이은 제2의 개방이라는 자유무역협정은 실 내용상으로 보면 선진농업국가들에게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의 완결판입니다.

UR농산물 협상이 전면 시장개방 대상이 아닌, 즉 취약한 농수축산업에 관세를 매겨서 일정부분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관세화 협상이었다면 오늘의 자유무역협정은 그나마 있는 보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개방이라는 종점 없는 경쟁체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비준된 미국과의 자유협정으로 인하여 매년 우리 전남의 농업 손실액이 1000억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동안 나름대로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와 선진 성공 사업모델의 벤치마킹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주산업인 농수축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였으나, 그동안의 인적 · 물질적 재원의 투자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걱정도 같이 됩니다.

그나마 작금의 농수축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기 위하여 군 농정이 야심차게 지역 농산업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수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미래 고흥의 농수축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을 살펴보면 고흥군 농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에서 1 · 2단계를 합쳐 복합농 40%, 전업농 25%, 축산농 10%, 수산 8%, 기타 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에서 복합농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합농의 경우 우선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데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계획에서는 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 농민의 사업 선호도를 높여주어야 하는데 사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생산지원이나 판매 수취값 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40%대의 복합농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선택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작목별 재배환경, 재배기술교육 등 철저한 농가교육과 선진농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완벽한 계획하에 육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화작목의 선택과 집중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하면 아직도 우리 농가의 주소득 작목이자 주소득원입니다.
쌀소득이 농가소득의 주 기반이며 지역 농업경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값이 폭락했던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정부가 올해 비축미 64만 6000톤을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쌀값 하락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봅니다.

이러한 쌀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은 그동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적지 않는 인적 · 물질적 자원을 투자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실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뿐이 아니라 친환경 무농약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친환경쌀 생산량 중 저농약 비중이 47.6%로 나타나 다음 단계인 무농약 친환경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된 노동력의 한계는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제초작업의 어려움 등 친환경 생산에 한두 가지 현실적인 난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 하는 정신적 · 경제적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고흥군의 경우 저농약 1㏊당 20만 원과 인증비 60% 보조, 무농약은 1㏊당 71만 원과 인증비 70% 보조로 친환경 쌀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순천시의 무농약 1㏊당 100만 원 지원과 인증비 100% 지원에 비하면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쌀 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쌀 생산비 지원에 대한 사업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납품처가 학교급식이며, 주 농산물 품목은 친환경 쌀이 주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은 물론 시대적인 흐름인 친환경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들의 의욕을 돋구워 주는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비전 5000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고흥산업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생산의 모토가 되는 지력증진사업이 특별히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지력강화사업이 중요사업지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의 특별한 지력증진 강화사업이 비전 5000에는 제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고흥군의 국가적인 시책 외에 고흥군에서 독자적으로 지역증진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주)리서치앤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쌀의 구매 동기유발 의향을 묻는 질의에 원산지와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는 사람이 54.5%, 친환경인증표시를 보고 산다는 사람이 26.1% 순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을 구입할 때 우려하는 사항으로는 잔류농약을 60% 정도가 우려하고, 중금속 함유를 20% 정도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적 의향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특히 브랜드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후 정부가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 쌀값하

락분의 일정부분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양정제도를 바꾸어 쌀 생산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대비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을 그동안의 물가인상률과 비교한 결과 실질 소득은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직불금을 포함해도 실질소득 감소액이 전국적으로 15조 8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통계 분석 되었습니다.

2011년 올해도 약 3조 5082억 원, 많게는 4조 1468억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마당 80kg로 환산하면 2004년 대비 2011년도에 우리가 받는 금액은 6만 4667원에서 7만 8687원 정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도 2011년에 1만 4038㏊ 식부면적에서 생산되는 7만 442톤 정도의 생산량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약 409억 원 정도가 2004년보다 우리 고흥군 쌀 생산 농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쌀 생산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원인은 첫째는 추곡수매제도의 폐지로 인한 본 제도의 고유기능인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를 예방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이 상실됐고 둘째, 소득보전 직접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의 한계점으로 인한 목표가격 자체를 2001년~2003년 쌀 농가 소득 수준인 17만 83원으로 정해놓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 인하를 계속 설계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하락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인 설계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쌀 유통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온저장고시설, 건조저장시설, 고품질 완전미시설, 브랜드 파워시설, 친환경 도정시설, 유색미 도정시설, GAP보완시설 등 6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쌀가공유통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홍수출하기에 적정가격에 저장 시설용량 한계까지 매입하여 홍수출하 방지와 고품질의 고흥쌀이 연중 소비지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출하로 생산의 의욕을 증대시켜 고흥쌀 산업의 기반을 확립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빈약한 재정 속에도 막대한 재원을 가공유통시설에 투입한 것은 고흥쌀의 브랜드가치를 확립함으로써 쌀생산 농가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공유통산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주체인 우리 군 행정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적기에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되어 왔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고흥관내 농협조합장 협의회에서 통합RPC설립안을 결의하고 가칭 고흥군통합RPC설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목적은 관내 농협수매량 100만 가마니 정도를 수매해서 브랜드화하여 유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흥에 앞서 장성·강진·보성 장흥 등 타 시군은 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선례에 비추어 우리 고흥에 통합RPC가 설립된다면 장·단점이 무엇이며 군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간과한체 단순한 먹거리 식량공급의 경제적 논리만을 이야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물에너지의 근간이며 생명공학, 기후변화, 전통의 지역지식과 지역사회의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인류문명의 중심산업임을 우리 모두가 사고를 바꾸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해 이미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오에서 세계 각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인류와 국토가 살고 건강한 국토가 있어야 또 국민이 살 것이며 우리 군민의 앞날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농업, 농촌이 살아야 우리 모두를 있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 ☞ 답변자 : 농업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전 5000과 관련해서 복합영농가가 많은데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 친환경 쌀 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 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한 품목선택과 생산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 친환경농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4749ha로 경지면적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농약이상은 2497ha로 경지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벼가 3667ha, 과수 610ha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채소, 전작, 기타작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3292ha로 전년보다 795ha가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관련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반구축이 되어 가고, 저농약 단계를 무농약이상 상향하는 시책을 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비전 5000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계획적인 생산과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 제2차 5개년계획 2년차를 맞이하여 친환경농업단지 4627ha, 지구조성사업 1개소 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주력하여 왔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인증비용 지원, 소비자안심보험 지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우리 지역 논밭에 맞는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물 생육촉진 및 미생물 번식에 필수적인 석회와 규산질비료를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보조사업으로 전액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유기물 생성에 필수적인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연차적으로 공급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1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3만 9477톤을 공급하였으며 포대당 국비 1000원 지방비 600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농경지에 대한 헤어리벳치 등 논작물 종자 298톤을 공급하여 금년도에도 3830ha를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파종하고 주변 경관조성은 땅심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지원을 위해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과 연계하여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타깃 농가와 강소농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전 5000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까지는 복합영농, 전업농 등 2000가구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선 3000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복합영농 중심 경종분야 1300여 농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컨설팅 및 규모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강소농 등 700여 농가에 대해 틈새 소득작물 등 맞춤형 작목입식과 유휴농지 최소화로 토지이용률을 높여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 4038㏊를 벼재배면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간척지랄지 습답을 제외하면 한 65% 정도 저희들이 2모작 가능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벼를 수확한 다음에 우리밀 재배를 400㏊까지 늘렸고, 그리고 녹비작물을 3830㏊와 조사료를 3700㏊, 또 각종 지역특성에 맞는 시금치랄지 그런 작목으로 해서 겨울철 농지이용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공모사업인 2013년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신청하여 소규모 고비용 친환경농업방식을 저비용 고효율의 대규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사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과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전통식품 생산기반, 고소득작물 생산기반, 농수산물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비전 5000 추진 사업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능성 있는 타깃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쌀 생산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만 4038ha이며, 이 가운데 친환경 벼 인증면적은 유기농 53ha, 무농약 2273ha, 저농약 700ha 등 3026ha로 재배면적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잔류농약검사 실시로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하고 친환경농업 부정행위 적발 시는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초기 생산비 투자에 대한 농가지원을 위해 184개 단지에 총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ha당 유기농은 108만 원, 무농약은 71만 원, 저농약 20만 원을 인증결과에 따라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인증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타 시군에 비해 지원단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말 인증취소, 포기 등 인증결과에 따른 잔여사업비 발생 시 단가 재조정으로 단지별 지원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전으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기농, 무농약은 70%, 저농약은 60%를 지원하여 도 지원기준보다 10% 상향지원 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쌀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에 대비하여 친환경 쌀 농업단지 74개소와 지역농협, 한우리영농조합, 고흥친환경영농조합 등과 일미, 새누리 품종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 2730ha를 계약 재배하고 농약잔류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된 벼는 시중가격보다 포대당 무농약이상은 9000원~1만 4000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농협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8개 지구 관할 62개 학교에 연간 37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셋째, 쌀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을 위하여 품목선택과 생산계획에 대해서는 11월 말 현재 작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벼 3026ha, 유자, 마늘, 참다래,

양파, 석류 등 49개 품목에 총 4144ha로 이 중에서 벼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에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해서 학교 급식과 그런 곳의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우선 농약사용량이 적고 친환경농업 실천이 용이한 기능성보리, 더덕, 고사리, 산채류 등의 품목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 쌀 생산 수급 안정을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콩, 고추, 조사료, 과수 등 대체작물 441ha에 타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벼 적정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 품목이면서 재배면적 대비 인증실적이 낮은 마늘, 양파, 방울토마토 등 시설채소는 작목반 구성을 해서 계약재배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해 나가고 2015년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라 연차적으로 무농약이상 인증상향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비전 5000 목표달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미FTA 발효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업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 답변자 : 경제유통과장

금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농어가의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사려 깊게 생각하시고, 또 유통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경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브랜드화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07년도 흥양농협에서 '라이스큐', 09년도에 고흥RPC에서 '사랑해미'가 전남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목표 매출액인 30억 원 미달과 품질관리 미흡으로 그다음 연도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브랜드 진입 부진사유로는 체계적인 미질관리 미흡에 따른 품종 혼입, 농가의 계약재배의 어려움, 관행농법을 고수로 담백질 함량 관리 소홀,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장 평가 저하 등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통합RPC 현대화 시설에서 생산된 쌀의 브랜드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진입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을 위한 농협RPC 통합을 위해 조합장 협의회 4회, 실무협의회 2회, 통합RPC 견학 2회 등을 통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통합 결성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향후 통합RPC 국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흥양RPC에서 전용투입구 1기, 저장시설 400톤 1기 지정 관리 등을 통해 브랜드 평가용 벼를 별도 매입 관리하고 있으며, 흥양농협에서 자체예산 5000만 원을 들여 내焰瓶 및 바닥 도색 등 현장 평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전남 10대 브랜드 진입을 위하여 행정과 농협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통관리를 위하여 우수품종 선발, 품질단일화 재배단지를 지정하여 전량 계약 재배를 하고 혼입방지, 단백질 함량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표 브랜드 관리를 위해 농가계약재배, 브랜드 관리 능력, 매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개 업체를 선정, 관리하도록 하여 농협 RPC 통합으로 신설예정인 현대화 시설 쌀사업단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농협, 고흥군유통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흥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 고흥쌀 브랜드를 꼭 만들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등 쌀가공업체 역할 및 통합RPC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 등 쌀가공업체 역할 및 통합 RPC 지원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친환경 전문도정공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2010년산 벼를 3만 5510톤을 매입하여 2만 4279톤을 판매하였으며, 2011년산 벼는 지금까지 5만 1846톤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산 벼 매입량 중 친환경벼는 2030톤으로 무농약이상 친환경벼는 별도 관리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수급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 농협, 농민단체, 독농가 등으로 구성된 쌀 수급안정대책 협의회를 설치하여 수확철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매입을 원칙으로 하여 홍수출하 등 수급조절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RPC 등 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높은 가격을 받고 원물 상태로 판매하는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RPC가 결성된 후 행정지원 및 지도 ·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RPC가 결성되면 벼 매입자금은 5년간 약 1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품질 쌀 육성사업에 22억 원, 건조 ·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9억 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 3억 원, 브랜드 경영체 선정 시설지원사업으로 40억 원을 국도비를 포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RPC는 참여 농협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단 조직이 구성되므로 또 자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행정에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 설 희 의원

## ■ 질문요지

①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과 개선대책은?
② 농사용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 ☞ 질문내용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탁월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화합 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애정을 가지고 고흥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 의원이 지닌 섬세함을 강점으로 미처 살피기 어려운 군민의 생활 불편과 애로를 꼼꼼히 챙기고 그늘지고 외로운 곳을 두루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국내 · 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이상기후마저 지속되어 참으로 노심초사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이도 가을 태풍은 우리 지역을 비껴가고 늦더위로 인한 따가운 햇살은 우리 지역에 풍요로운 수확을 선물하였기에 어려운 군민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구는 갖가지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일본의 후쿠시마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최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우기로 국토의 60%가 침수되는 위기를 맞은 태국 등 지구의 현실은 가히 공포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누려온 번영과 혜택 속에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를 도외시함으로써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만한 소비와 무절제한 환경파괴로 이제 세상은 그 어느 곳도 편하게 숨쉴만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문제, 한정된 공간에서 범람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밀려 정책도 늘 차 순위가 돼버리는 현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참 고흥 새마을정신 운동의 하나로 녹색생활 정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지 않는 군민 의식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집장에서 분리수거 현장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일선에서 일을 수행하시는 미화요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자원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시책은 꼭 필요한 것이며 매우 시기적절한 움직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배출 쓰레기 중에서도 토양오염, 질병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농사용 폐비닐 처리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에서 발생되는 연간 음식물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고흥읍을 예로 든다면 각 골목마다 노란색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찢겨져 침출수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한 악취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은 지금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에는 미화요원 통합관리로 인한 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쓰레기 처리 환경이 더 나빠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관리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 시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쇼핑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낱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마트에서 쇼핑봉투 대신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 관내 마트 등에서는 무조건 비닐봉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군민의 재산 낭비는 물론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봉지 쓰레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고흥군 관내에 농사용 폐비닐을 처리하는 공동 집하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연간 처리량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문제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지도층에 있는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 계도를 생활화함은 물론, 좋은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고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자 : 환경산림과장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방법, 환경미화원 통합관리 운영 등과 농사용 폐비닐 수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 방법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군 생활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26.8톤으로써 소각을 11.2톤, 매립은 12.7톤, 재활용품은 2.9톤으로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약 11톤을 매립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는 고흥, 도양읍은 매일하고 기타 면 지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환경미화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도양읍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흥읍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종량제 봉투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고양이나 쥐 등이 훼손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10월부터 동물이 싫어하는 향이 첨가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특별 제작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통합운영은 미화원들간 쓰레기 처리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화원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후 자연감소 미화원 4명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휴게시설 등 쓰레기 수거 시작 시간을 4시에서 6시로 변경하는 등 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가전제품이나 생활쓰레기를 집중수거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한 고흥 이미지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문제점이라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생활민원 쓰레기 수거를 미화원이 처리하였으나, 통합 후 이동거리가 있어 처리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트 등에서 쇼핑용 봉투를 판매하는 이유는 1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자원을 절약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체 제작한 쇼핑용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를 쇼핑용 봉투로 판매하도록 협의하여 군민들이 종류제 봉투 사용이 생화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사용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등 재배 시 사용한 농사용 폐비닐로 인한 토양오염과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 차원에서 수거 장려금을 1kg당 100원을 지원하여 영농폐비닐 수집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수집한 폐비닐을 환경부에서 위탁업체로 지정한 한국환경관리공단 수거사업소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1462톤을 수거하여 1억 4600만 원의 수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수거사업소의 인력과 운반 차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집한 폐비닐을 제때에 수거하지 못하여 수집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농촌환경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마을에 수집된 폐비닐을 읍면 쓰레기 선별장으로 운반한 후 수거사업소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 줄이기 등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은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류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주 식 의원

## ■ 질문요지

① 순천시국제정원박람회,여수시세계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②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 ☞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의정으로 군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시고 계신 신태균 의장님과 지역민과 항상 소통하고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실현 가능한 비전과 뚝심 있는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고흥을 건설하고자 오로지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을 추진함은 물론이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옮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풀뿌리 민주대상 수상과 행정안전부와 16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정책경진대회에서 230개 지자체가 경쟁력을 비교 측정 심사한 결과물로 제1회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우수상과 으뜸행정상 수상의 영광을 8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우리 군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으로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행복한 고흥, 세계 속에 고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을 현실로 끈질긴 노력으로 4수만에 기필코 성사시킨 85억 규모의 농수산물 마늘 브랜

드 공모사업 등 지역개발과 농수산 분야에서 총 45건의 공모사업 유치로 691억 원을 확보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 행복에 두고 "열린 마음 낮은 자세"로 다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솔선수범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더** 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해 풍년의 기쁨으로 고흥의 하늘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9년 한·미 FTA 개방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어 우리 군 농消快축산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리라 생각하니 한없는 자괴감과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모두를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잡아 주며 군민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항공 관련 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고 여수세계박람회,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와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거금도가 오랜 숙원으로 이제는 황금교량으로 이어져 우리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다도해국립공원, 소록도, 나로도 우주발사기지 등과 연계된 관광밸트 조성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고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 불모지나 다름없던 고흥은 도양일반산업단지, 고흥산업형특화단지,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청정식품단지 조성으로 투자의 최적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 고흥을 욕심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 53건의 협약실적 중 13건이 완료되고 33건이 추진 중에 있는 투자유치의 효과는 분명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 천혜의 자원과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칭하는 21세기 고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 문화관광 혁신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시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부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미래성장 잠재력이 타 분야보다 높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예향 고흥으로서 능가사 동종, 금탑사 쾌불탱, 유몽인 위성공신교서 등 소중한 보물과 황금과일인 유자, 석류, 해미, 수미 등 8품.

영양도 만점이요 맛도 만점인 참장어, 낙지, 삼치 등 9미와 구름도 쉬어가는 팔영산 팔봉, 사슴의 섬 소록도, 비자나무 숲, 금산 해양경관이 있는 10경이 있지만 넉넉한 인심이 넘실대는 고흥의 들녘이 있어 좋고 아름다운 미래가 출렁이는 고흥의 바다 존재자체가 예술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충무공의 혼이 서린 발포, 해상교통의 요충지요 활기 넘치는 녹동항,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고흥만이 있지만 보다 나은 기대효과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산업에 대해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지난 11월에 세계 7대 문화유산으로 확정된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유치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첫째, 인근 시 · 군 제행사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계획은 있는지?

둘째,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선정에 따른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한 언행으로 고흥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 모두 반성하며, 다시는 후회 없도록 우리 군에서는 고흥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고객을 위한 친절, 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위생업주 숙박업, 식당업, 목욕탕, 회타운 등 자발적 참여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군의 실질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교육 없이는 친절 · 청결운동이 실천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끊임없는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광해설사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

이 고흥관광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맞춤형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밋빛 청사진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책으로 군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중 주정차 질서운동과 친절, 청결운동은 우리 군을 찾아오는 고객을 위한 주인의 역할이며, 의무입니다.

이 운동효과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들과 바다의 이야기가 있는 고흥, 나눔과 정이 넘쳐나는 고흥, 건강한 먹거리, 풍성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고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더욱 새롭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다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부군수

우리군 인근 지역 시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또 하나는 2013년에 개최되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국제 축제에 대한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여수에서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 동안 여수 신항에서 10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축제 행사입니다.

박람회개최로 12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어 여수시는 물론 1시간 30분 이내의 인근 시군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에 박람회를 ᄎᆞ는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일부 숙박업소와 위생업소에 대해 박람회 지정업소로 지정하고 친절, 위생교육을 수차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촌 갯벌체험 마을도 지정하여 시설물도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 입구인 동강 한천에 고흥 만남의 광장을 개장하여 관광안내도와 관광 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또 그 옆에 유자, 석류 등 우리 군 특산물 판매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고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절과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전 군민이 참여하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전개해 주정차 질서 확립 등 4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고흥하면 다 알다시피 우주입니다. 그래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천문과학관 등을 관광코스로 개발했습니다.

여수 박람회 관광객 유치 기본전략을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엑스포 구경은 여수에서 하고 관광과 자고 먹고 하는 것은 고흥에서" 라는 전제하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람회를 구경한 후에 그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수항에서 나로도항과 또 녹동항까지 유람선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운항토록 하여 아까 말씀드린 지정된 업소에서 자고 먹고 또 우리 군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금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대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차도와 자전거도로, 인도로 복층 구조로 분리돼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일요일에 제7회 고흥우주마라톤대회가 아주 청명한 날씨 속에서 군민과 마라토너 한 4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마라톤 동우회에서는 한 6000명이 참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5㎞를 갖다 왔습니다.
마라톤 대회 때 민간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헌신적인 자원봉사 등 성숙된 우리 군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화합의 분위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군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비전 5000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서 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전국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기적을 이루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박람회 기간 93일 동안 전국 자전거 동호회의 주관 하에 전경이 수려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하이킹이 되도록 조직위원회 또 전라남도, 또 자전거 동우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전거도로를 우리 군의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군수님한테 결심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 사적으로 그 자건거도로 인도에 작은 풍물시장도 한번 제 나름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수역과 박람회 환승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또 엑스포 주요 볼거리 지점에 우리 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셔틀버스도 우리 군까지 무료로 운행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우리 군의 축제가 있습니다. 천등산 철쭉제, 녹동바다 불꽃축제, 남양 선정 머드림픽, 도화발포 해수욕장 해변축제 등을 계속 개최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내내 날마다 축제 아니면 미술품 전시회, 음악회 등 조그만 것이라도 계획해서 박람회 기간 내내 상시 축제가 열리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양시에서는 93일 동안 서커스 공연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서커스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민도 손님맞이를 위해서 내 집 앞 청소하기, 무단 주정차 안하기, 친절, 청결 등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2013년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유치계획은 내년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 유치 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좀더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특색 있는 자연환경 체험 관광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우리 군으로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지 7곳 중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선정되어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가 막대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국격을 한 단계 높인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동-제주도 간 뱃길이 열려 있는 우리 고흥군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금대교 관광 상품과 우주체험상품, 섬 여행 상품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도-녹동 간 뱃길을 이용한 관광객을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고흥에 머무르게 하여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되도록 여행사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집중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서귀포시와 두 시군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 의 규 의원

## ■ 질문요지

① 방역사업 추진상황은?
② 방역약품 희석비율 방법은?
③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상황은?

## ☞ 질문내용

어려운 농어촌 여건 속에서도 고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의 땀방울을 흘리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과의 소통은 물론 견제와 균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 꿈이 현실이 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과 의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애정어린 채찍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로 늪에 빠졌고 올해에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이변과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국제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고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고용악화 등이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곳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와 농촌경제 침체로 이어져 우리 군의 경우 IMF 때

보다 더 힘들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경제침체에도 국내 우수의 기업이나 경제기관에서는 내년부터 경기가 좋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상승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고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는 국가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불확실한 미래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한 낙후된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상호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산간오지와 도서가 많아 자칫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어렵거나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에 아주 세심하게 노인복지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져왔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농어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거기에 걸맞는 방역체계와 방역실시현황, 이와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상황을 알아보고 부족한 예산과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지역별 형평성과 정책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방역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방역약품 구입내역 및 구입일자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약품의 종류가 동일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왜 각각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역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에서는 현재 방역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무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막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 중인 차량탑재 소독용 경유통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약품희석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역 후 소독약품통의 잔량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과다 희석비율로 잘못 배합된 약품으로 방역하게 되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방역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을단위 방역단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단원들은 약품의 희석 비율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방역 유류대 자금배정은 언제하고 공급은 언제 했는지? 집행결과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시간대에 방역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현재 그 시간에 맞춰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침체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마음자세를 털어버리고 6대 의정, 그리고 민선 5대 군정을 미래 지향적이며, 진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두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보건소장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의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사업 추진 일반현황과 소독약품의 희석비율,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 등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사업 추진 일반현황으로 먼저 방역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탑재용 다목적 연무기 1대와 읍면 차량용 방역장비 44대, 마을자율방역단 장비 525대 등 총 5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총예산 3억 1500만 원 중 살충제 8종 2억 9300만 원과 살균제 2종에 220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방역소독 방법과 연무、연막소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무 소독방법만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해충서식지나 출연장소에 직접 살포하는 방법으로 살충효과가 크고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구제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약품 희석 시 경유대신 물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입니다. 그러나 분사거리가 짧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연막、연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주로 연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막은 소독범위가 넓고 풀숲 등의 방제에 효과적이며 지하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대기오염 유발, 소독시간 제한, 연막 형성으로 교통흐름을 차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독약품 희석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의 경우 모기는 200배 희석입니다. 경유 199 에 약품 1 입니다. 파리는 100배 희석입니다. 경유 99 에 약품 1 입니다. 연무나 분무의 경우는 150배 물 149 에 약품 1 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품 과다 배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접분사에 의한 인체 흡입하였을 경우 두통이나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식약청 보고 인체 유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충제 중독 증상에 대비해 살포기구 점검, 살충제의 운반 및 보관 철저, 작업자의 보호기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단 구성현황입니다. 515개 각 마을과 해수욕장, 해안가 등 밀집취약지역 10개로 총 525개 방역단이 있으며, 방역장비와 약품을 공급받아 마을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태 및 교육 지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역소독은 이장이 주축이 되어 방역을 하고 있으며, 교육 및 지도에 대해서는 약품 배정 시 각 읍면에서 약품사용법 등의 교육과 함께 보건소에서는 매년 2회 3~4월 해빙기 방역 시 현장 방역점검과 하절기에 자율방역단 순회 방문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송 인 숙 의원

## ■ 질문요지

①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 대책은?
② 고흥 만남의 광장 청소인력 관리 대책
③ 고흥 만남의 광장내 유휴부지 활용방안은?
④ 농수산물 수출현황 및 추진계획은?

## ☞ 질문내용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군민 체감도 높은 의정실현을 위하여 고심하고 노력하는 존경하는 신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수준 높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유럽과 미국의 금융 위기설로 안개 속에 서있는 듯이 답답한 국내외 경제 현실과 파고 높은 바닷물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개방의 압력에 굴복한 최근 FTA 비준이 가져다주는 막막한 농촌 현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세계 각국이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인명피해, 참으로 시련과 고난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군도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전력난으로 인해 원전유치의 찬반물결을 헤쳐 나오느라 진력을 다했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서민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이를 악물고 힘쓰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지만 눈만 뜨면 슬픔과 절망뿐인 현실을 극복해야 할 책무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한탄해 보면서 인구밀도는 낮고 재정자립도는 바닥인 고흥군의 실정 속에서 빠듯한 살림을 열심히 살아주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잘 알면서 더 잘하라는 채찍이 무정하다 싶겠지만 풍부한 자원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마저 열악함 속에서 그나마라도 긴축 또 긴축하며 내 집 살림하듯 쪼개 살아보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우리 군의 관문인 동강면 한천리에 고흥 만남의 광장이 군민의 기대 속에 개장하였습니다.

고흥 관광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본 시설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알리고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만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장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서 득실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공을 드린 본 시설이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는 무엇인지요?

고흥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버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광장을 거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과 커피숍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편의점과 커피숍이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겨우 커피 한두 잔을 파는 게 고작이고 편의점 또한 월 40~50만 원의 전기료는 물론이고 인건비는 생각지도 못할 매출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 할 수도 없고 개폐장 시간 또한 무작정 강요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록 임대를 해 주었지만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만남의 광장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지난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흥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로 선정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본 화장실이 지금은 그런 영예가 무색하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주변에서는 화장실에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본 시설의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흥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차량이 들어와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으로서는 주유소나 식당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광홍보물과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고흥을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

과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청정 먹거리로 고흥의 8품 9미를 선정하고 요리책을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작 고흥의 어느 식당도 8품 9미가 특화된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부지에 이런 특색 있는 식당을 운영한다면 내방객의 증가는 물론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남의 광장 지붕과 관련하여 후속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도 빗물도 가려주지 않는 현재의 지붕은 기능 자체도 미완성이고 경관 또한 눈에 띄지 않아 인근을 지나가는 관광객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만한 매력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가로등 또한 조도가 매우 낮아 밤이면 어둡고 음침해서 무서운 생각까지 든다는 게 이용자들의 여론입니다.

고흥의 관문인 만남의 광장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한 장소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만남의 광장 지붕은 물론 외부 가로등과 관련하여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지적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유통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흥의 농수특산물을 자랑하고 외지인들에게까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산물 판매장 역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관광객에게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특산물 판매장은 고흥군유통공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산물 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다양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고 노인과 여성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남녀노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의 밀감 초콜릿, 선인장 초콜릿처럼 우리 군 특산품인 유자, 석류를 넣어 많든 과자류나 젤리, 비스킷, 센베과자, 초콜릿 등도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포장 또한 대、중、소로 다양하게 하고 각 제품별 상표 통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해 한우판매장을 식당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장흥 토요시장, 안동시 삼진 나룻터의 예처럼 주말장터를 열어서 특색 있는 홍보를 기

획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좀더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심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제2의 소록도 휴게소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고흥군의 농수산물 수출현황은 어떠하며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농어업이 주업으로 소득은 낮으나 천혜의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유자를 비롯한 석류, 파프리카, 그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품이 상품화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는 40여 개소로서 연간 6000여 톤의 물량에 2000만 달러가 넘게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내에서 생산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에 준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가 수출업체를 병행할 경우 이중 수혜 차단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지난 2010년에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수출실적 20만 불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수출물류비지원 전산시스템(ISP)을 개발함으로써 영세 수출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영세하게 상품을 수출하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이었다면 이제 영세업체도 수출물류비의 혜택을 지원하여 힘차게 창업 개발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출 물류비 지급대상자를 본 군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영세 수출업자부터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데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영세 수출업자를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송영길 시장이 백석동 매립지의 악취를 민원으로만 듣지 않고 직접 주변 아파트에 2개월간 입주하여 생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함을 함께 체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참으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공직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관과 민이 서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간다면 우리 군이 지금보다 더욱더 풍요롭고 활기찬 고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주센터, 스페이스 캠프, 천문과학관 등 첨단 우주 과학시설들이 집적화 되어 많은 관광객

이 고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여수, 순천에서 개최되는 해양엑스포와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에게 고흥이 다시 찾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풍요롭고 활기찬 고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송인숙 의원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에게 주었던 질문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까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 질문, 관광안내소 운영성과, 그리고 관광버스의 만남의 광장 주차대책**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은 관광안내를 목적으로 지난 7월 30일 준공되어 8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외 입점업체로는 커피점, 편의점, 별도의 농산물 판매점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1일 이용객 등 불편 이런 사항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 수를 농산물 판매장을 합쳐서 평일과 주말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평일에 최고 80명에서 120명, 최저 40명, 주말에는 150명에서 300명, 최저 100명, 편의점 매출 커피점 매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꼭 성과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개소해서 친절한 관광안내와 맞춤형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가 만남의 광장에 주차하게 하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첫째, 모든 관광의 시작을 우리는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해서 만남의 광장으로 끝을 낸다는 그런 시스템 개편입니다.

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우리 군에 관광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남의 광장에서 해설사를 동승시켜서 관광안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토요일 상시공연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커피점과 편의점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입점업체와 저희들에게 주문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업체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지자체의 관광 바로미터가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저희 과에서 저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 과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 관광안내소 화장실이 19개, 해수욕장이 11개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읍면에 있는 우리 미화원들이 군으로 기동배치가 되어서 금년 여름에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수욕장은 담당자를 전담해서 지정을 했고, 일반 관광지는 특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중산 일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인근 70대 어르신을 고용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서 민원을 일소했고, 다만 산에 있는 천등산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민원을 충분하게 해소하지를 못했습니다.
비근한 일례를 든다면, 금년에 우리가 선정 머드림픽 행사를 했을 때 저희 주차장에 시설되어 있는 화장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수리를 해서 5시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만남의 광장 화장실이 영예롭지 못한 지적에 대해서는 고장 원인이 변기가 통째로 이렇게 파손되는 그런 결과가 와가지고 제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수리를 하는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영예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남의 광장 내 여유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여유부지 여기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이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식당, 그다음에 장미공원 등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주유소는 현재 동강-녹동 4차선 구간에 8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하행 3개, 상행 5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 주유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여론조사도 하고 많은 설문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식당은 팔영산이 국립공원화 되면서 엄청난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벌교 꼬막정식을 드시러 가시고 장흥 한우를 드시러 가실 때 관광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우리도 빨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패류전문을 하는 음식점이라든가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이런 것을 넣어서 관광객을 우리가 흡수해서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남의 광장 지붕 후속 대책은 우리 군이 우주항공 컨셉과 조형미를 맞추다보니까 아마 우주선 모양으로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준공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원형으로 된 문제점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단층구조로 되어서 꺼져있는 상태로 들어나지를 않아서 당초에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조명시설을 해보라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요가 돼서 또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한 2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또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서 광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서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답변자 : 경제유통과장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송인숙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흥 만남의 광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은 우리 군의 초입에 있어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문으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고흥 농수특산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 판매장은 고흥군유통(주)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에서 생산한 80개 품목을 규격화하고 또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문객 수를 조사해 보면 월평균 한 2400여 명 됩니다.

1일 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점차적으로 우리 농수산물 판매장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상황을 분석해 보면, 농산물에 비해 수산물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수산물 특성화에 주력하고, 수요예측을 통한 수급조절로 농어가의 소득창출에 역점을 두고 판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외부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는 고객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전화주문 택배 등 재구매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고흥특산품을 이용한 잼, 젤리, 초콜릿, 센베 등의 과자류도 먹거리 개발로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보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특산물 판매장이 소량 판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대량 구매를 원할 때 만남의 광장 농수특산물 판매장에서 대량 구매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입점업체와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욕구, 즉 소비자의 미질을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해보고, 타 지역 직거래장터 성공사례를 최대한 벤치마킹도 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만남의 광장 고흥농수특산물 판매장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수산물 수출 현황으로는 유자차를 비롯해서 연간 수출량은 6000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자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 근거는 우리 전라남도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에 따라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농어가의 경우는 수취가격의 6%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에 따라 물류비의 5%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주 물류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는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등 4개 지자체에서 수출물류비 지원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전라남도 역시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출물류비를 영세 기업부터 우선 지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반면, 수출을 시행한 영세 업체가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 우 섭 의원

## ■ 질문요지

① 한미 FTA 발효시 농림수산식품 비젼 5000 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은?
② 축산 · 과수 · 특용작물 재배농가 현황과 한미 FTA의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은?

## ☞ 질문내용

군민을 위해 궂은 일 마다않고 발로 뛰면서 현장 의정을 펼쳐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신묘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한 스스로의 약속을 충분히 이행 했나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아쉬움만 남기고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민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오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소득 농림어가 5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꿈과 희망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착안 · 입안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조그마한 질서하나라도 나부터 지키자는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참고흥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전개하여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잘사는 고흥, 행복한 고흥건설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도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4월까지 우리나라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구제역과 AI사태를 겪었고 마음속까지도 움츠리게 한 기나긴 한파,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농산물의 작황부진, 어획량 감

소 등 여기에다 지난 달 22일에는 우리 농어민과 서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우려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안이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 날치기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농업의 무장을 사실상 해제한 시간이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니 하늘도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강제로 연행하는 이 정부를 과연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따를 뿐입니다. 이러한 작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기에 더더욱 염려되는 것은 한·EU,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도 불을 보듯 뻔히 통과될 텐데 우리의 농촌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미 FTA로 당장 농도인 우리 전남지역의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94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축산분야가 700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 채소, 특작곡물 등 모든 분야가 총망라될 것으로 농촌진흥연구원과 전남도가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열악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보다 근본적이고 창의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1차 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이 32%를 넘게 차지하고 재정자립도도 도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소득을 높여야 행복한 고흥을 만들 수 있다는 일념으로 꿈과 희망의 비전 5000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FTA로 인한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지난 8월 농어업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발 빠르게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리라 보면서 농업축산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어촌의 실질적인 발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민관협의로 추진한 우리 군 잘살기 운동의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목표달성 방안은 무엇이며, 한·미 FTA 발효 시 비전 5000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소득 농림어가 외 군민의 32% 이상이 노령화 되어 있고 영세 농어가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축산, 과수, 특용작물 재배현황과 한·미 FTA 발효 시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 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기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을 믿고 다시 한층 더 분발해서 꼭 잘살고 행복한 고흥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화합, 단결하여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다같이 만들어 갑시다.

## ☞ 답변자 : 농업축산과장

먼저,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추진방향과 목표달성 방안, 한·미 FTA 발효 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계획을 수정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과 고소득 농림어가 이외 영세규모 농가에 대한 보호육성 방안과 우리 군 축산·과수·특용작물 재배현황과 한·미 FTA가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종합추진 계획은?
농림어가 소득향상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농정의 여건을 변화시키고 1만 5720여 농림어가가 일정수준 소득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농림어가의 소득증대를 달성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군정사상 처음으로 전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실시 실태를 분석하고 농림수산업 정책목표를 구체화, 실천화를 위해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계획과 추진목표, 추진체계 및 지원협의회 운영, 부서별 역할과 혁신추진사항, 농림어업의 전략적 소득증대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5000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농업여건과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 소득을 올리고 다같이 잘살아 보기 위해 노력하자는 계획으로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나 앞으로 한·미 FTA 발효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 도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 농업여건에 맞게 분야별, 목표별로 치밀한 분석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어업이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지이용율 증대와 경영·생산비 절감, 고소득 농수산물 재배확대, 생산인프라 조직화, 규모화 추진과 농수산 정책자금 확충 및 혁신적 농업인력 육성, 고흥군유통(주)의 역할증대, 산지유통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수·축협의 협동조합의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등 이러한 10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비전5000 추진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농림어가 이외의 영세규모 농가에 대한 보호 육성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2010년 말 농어가 소득 실태조사 결과 5000만 원 미만 가구가 1만 4520여 호로 대상농가 1만 5720호의 92% 수준으로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림어업소득 5000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해서는 고령가구나 영세농어가도 단계별로 일정수준까지 소득을 올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전 5000 정책의 대상으로 소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세농가 등 다수 농어업인이 소득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군 자체 재원으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내년부터 10억 원씩 출연하여 100억 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농가까지 융자대상으로 확대하고, 융자조건과 상환기간 연장, 융자한도증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기금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과 농ㆍ수ㆍ축협 등과 연계하여 농가경영에 대한 분석 및 1:1 경영컨설팅을 통한 강소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가 소득증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작은 규모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가족농과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과 벼 이모작 위탁경작, 밭작물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육성과 마을기업 등 민간주도형 기업참여를 통해 노년층에 맞는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시책을 차근차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화작목 등 소량 생산으로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이나 고흥군유통으로 하여금 계약재배나 수탁사업을 통해 우수한 농수산물 생산자가 당당하게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ㆍ과수ㆍ특용작물 재배농가 현황 및 한·미 FTA 발효 시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는?

농수산업이 5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강력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현황으로는 한우, 젖소, 양돈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한 규모는 3735 농가에 6만 2729두이며, 연 392억 원의 소득으로 우리 군 농업생산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도내에서 축산 점유율이 7.4%로 6위를 차지하고 축산 규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 축산분야는 주요 축산물인 쇠고기, 삼겹살, 유제품, 닭, 오리고기 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관세철폐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축산농가의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 면적을 금년 가을에

3700ha까지 확대하고 생산기계장비 지원과 경영체를 육성하는 등 조사료 자급화 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동물복지형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차별화를 위해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136건, HACCP 인증 36건, 유기축산물 인증 1건 등 173건의 인증이 완료된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또한 축사 시설 규모화, 현대화하고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서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의 예방 등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청정지역 유지와 품질을 고급화하여 수입 축산물들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형질의 고급육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 및 가맹점을 개설하여 고급육 유통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용작물 재배 현황으로 유자, 참다래, 단감, 하나봉 등 주요 과수 작목에 대한 생산현황은 3300여 농가에 933ha로 생산량은 9047톤을 생산하여 약 25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관세 철폐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국산과수에 대한 대체소비로 인해 수입되지 않는 과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 주요 과수에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소비에 따른 국산 과일 소비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군 과수산업에 대한 제2차 발전대책을 도와 농식품부와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GAP,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비가림시설, 방풍시설 등 생산시설을 개보수 현대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자와 참다래의 FTA기금 육성사업은 품종갱신과 시설현대화로 품질고급화는 물론 전문APC 설치로 생산자 조직화 및 규모화를 추진하여 FTA대응 수출 유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봉 등 아열대 과수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비가림하우스시설 및 생산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하여 특화 과수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내 시장 선점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양파 등 특용작물 재배 현황은?

우리군은 전국 제1의 마늘 주산지로 전국마늘 생산량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 등 양념채소 특용작물의 경우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어려워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은 낮으나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늘을 우리 군 농업 주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물류혁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하여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흥마늘을 명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한 농자재 공급과 기계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고흥군유통과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보완 반영하고 비전 5000 목표달성과 한 · 미 FTA 발효 등으로 어려운 농업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 세 선 의원

## ■ 질문요지

① 요즘 관광객들의 선호 추세를 분석한 기초자료 준비 유무 및 활용 계획은?
② 고흥관광 활성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③ 관광객들의 관심지역과 시설물 · 음식은 무엇이며, 다시 찾도록 대비는 잘 하고 있는지?
④ 전통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표축제 계획은?

## ☞ 질문내용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군정을 견제하면서 실속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 때 그려왔던 밑그림들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5기를 더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뛰고 달리면서 군민의 행복과 고흥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종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흥군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모자라서 군민의 뜻을 다 채워드리지 못해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솔직히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2년째 의정활동에 접어들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걱정과 초조함은 커지기만 합니다.

과연 가슴으로 군민을 대하면서 군민과 소통이 잘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역할은 잘하고 있을까?
지역구 유권자의 성원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감사하며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서 군민의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있을까?

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공약은 차질 없이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사항은 커지는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 최하위여서 중앙정부 보조예산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우리 군 재정형편도 알면 알수록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집행부 역량과 고흥출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확보 성과는 값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좁은 것 또한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근성은 떨어지고 유통비용도 많이 들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턱없이 오른 부지매입비 등은 투자유치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일로써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고 우리 모두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의회는 물론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들을 타개해나가는 역량과 저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켜 군민소득을 증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고흥을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표현합니다.

이제 지붕 없는 미술관에 현대식 최고의 걸작품 복층구조 거금대교가 오는 12월 16일 개통됩니다.

이번 제7회 거금대교 개통기념 우주마라톤대회만 보더라도 6000여 명이 참석해서 대교자체도 보기 드물게 웅장하고 멋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들이 아름다워 다리 위를 달리던 선수들이 연호하는 감탄과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소록도와 거금대교를 연계한 고흥관광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인접 시에서 2012년 여수엑스포와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됨으로 우리 군이 더불어서 특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호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런 때 우리 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준비와 계획이 있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은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해외여행이나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를 즐겨 찾고 얼마 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일시에 1만 명이 넘게 제주도를 찾아와서 숙박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때,

첫 번째, 우리 군에서는 요즘 관광객이 선호하는 흐름이나 추세에 대해서 분석한 기초 자료는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었다면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한 고흥관광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의 해소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만한 시설이나 유적지 빼어난 천혜의 자연경관 그리고 역사적 인물, 특별한 먹거리 등을 찾기가 힘든 고장인지?
아니면, 자원은 많이 있는데 투자나 관심이 부족해서 부각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우주항공축제를 대표 축제로 개최해오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하고 매년 내용이 달라지는 1회성 소규모 행사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지역을 대표하고 고흥을 상징성 있게 꾸며주면서 계속 확대 발전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애정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낡은 관행은 모두 털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는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인 추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기업적인 마인드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개성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덧붙이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경제적으로 부흥은 물론 군민 모두가 긍정적이고 질책과 질타에 앞서 칭찬이 먼저 오고 가는 마음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정착되길 기원하며, 저 역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고흥, 마음이 아름답고 잘사는 고흥을 만들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문화관광과장

요즘 관광객이 선호하는 흐름이나 추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관광 흐름의 추세가 육상 관광에서 해상 관광, 보고 참여하는 관광에서 체험 및 웰빙 관광, 단체 관광에서 가족단위 관광으로, 숙박은 모텔 위주에서 한옥 또는 펜션 위주의 숙박으로 모든 관광 패턴이 이와 같이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고흥군의 주된 대응 전략은 기존 자연관광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대응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올리겠지만 내용별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지금 섬개발 진지도, 시호도 또는 명품 해수욕장 조성, 유람선 항로 개발, 제주도 뱃길 고속화 등을 통해서 수도권, 경남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체험관광으로는 나로도와 적대봉 목장성에 민자유치사업의 승마체험, 고흥만과 해창

만 내수면에 자연체험과 보트체험, 우주천문체험, 운대 분청도요지 체험 등 체험 시설을 확충하고 가족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옥단지 조성 등의 펜션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광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를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인 제가 우리 관광의 가장 큰 걸림돌 세 개를 말씀드린다면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수도권 관광객이나 경북 쪽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관광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접근성, 그리고 종착지 관광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 보성이나 장흥 이런 데 경유지 관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오는 그런 관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체험시설의 3박자를 갖춘 문화관광시설의 명소 이런 관광시설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세 번째로는 숙박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소득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박사업자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한 것인지, 자원은 많이 있는데 투자가 부족해서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과 계장님들 이하 업무담당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화관광사업이 의원님 보시기에 아주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 중인 그런 업무를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림이 옳다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어제 송경석 의원님께서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을 너무 앞서서 발표하는 것은 좀 질책에 가까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은 크게 소록도권, 나로도권, 팔영권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관광코스별 방문객 수는 소록도권 40%, 나로도권 25%, 팔영권이 20%, 기타 15% 순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관광자원의 보고인 소록、 나로、팔영권의 관광자원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광상품화 하여 군민이 동의하고 공감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어제 박금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팔영산 편백림, 봉래산 삼나무 숲, 또 장기산 편백 숲 이런 엄청난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장성구이나 장흥군에서는 이것을 이미 관광자원화 해서 1년에 30~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측과 환경산림과, 또 저희 문화관광과 이렇게 힘을 합해서 후발주자로 장성군을 능가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고생에게 수학여행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제주도, 우리 전남의 1위는 담양, 2위는 보성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보성은 집단화된 차밭, 율포 관광특구 이런 영향이 있었고 담양은 죽림원, 가사문학의 산실 소쇄원이라는 역사 문화자원이 자연자원과 어울렸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성 차밭, 담양 죽림원처럼 대규모 우리 군의 특산품인 석류공원을 조성한다면 담양 죽림원이 30만 평입니다. 그 정도의 석류공원을 조성해서 입장료도 받고 제품도 팔고 생과도 팔고, 꽃필 때 꽃질 때 1년에 두 번 이렇게 축제를 하면 관광지 명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의 3요소는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소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명승지가 만들어져야만 우리 군의 관광이 빨리 후진성에서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성은 과연 녹차밭에서 어떤 소득이 있냐를 저희들이 봤더니 보성은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녹차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농어촌 통계를 보니까 거기에서 연 4000억 원의 농업 고부가치와 제품을 700~1300억 원을 파는 소득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양은 입장료만 20~30억 원을 징수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대규모 석류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에 버금가는 그런 관광명소를 만들지 않냐 이런 각오를 해 봅니다.

세 번째로, 강릉 경포대 같은 명품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명품 해수욕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섬개발에 대한 특별지시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59개의 무인도가 있습니다. 섬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미 시호도, 진지도, 또 사람이 사는 우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지도도 지금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비가 오는데 제가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섬을 거제 외도를 모델로 해서 한다면 거제 외도는 입장 수입이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인구가 28% 이렇게 했을 때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제주 뱃길 고속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탠다면 엄청난 해양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김해 분청 도요촌 같은 우리 운대 분청 도요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운대 분청은 12월 14일 국가사적지정을 위한 최종 심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대 분청 도요촌을 이렇게 김해나 고령 같은 그런 분청 못지않게 역사문화자원으로 조성한다면 우리 군민의 자긍심도 있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크게 기여도 하고 수학여행 코스로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 관광상품으로서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흥의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시군과 비교해서 너무나 문화자원에 소홀히 한 게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강진에는 청자, 보성에는 옹기, 해남에는 녹청자, 장흥에는 기와, 영암에는 토기, 목포는 현대공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고흥에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웃 시군에는 전부 문화행사를 많이 합니다.

보성은 조정래 문학관이 있고 장흥은 이청춘, 해남은 김남규, 강진은 윤선도, 광양은 매천문학, 순천은 무려 4개나 되고 곡성이나 이런 데는 소설 속에나 있는 심청이를 브랜드화 해서 하고 있고, 또 장성은 홍길동이라는 소설 속의 인물을 지자체 브랜드로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설화문학의 대가인 유몽인이라는 선대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미처 우리가 관광상품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을 만든다면 충분한 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화관광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예촌, 설화문학관, 고흥역사문화 이런 3개를 한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흥군 대표 축제 계획입니다.
고흥군의 전통성과 상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대표 축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감사원 통계에 의하면 1460개의 축제가 있고, 또 관광공사에 의하면 870개, 관광부에 의하면 76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은 지금 현재 이웃 시군과 축제를 통합해서 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축제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축제는 군 이미지 향상은 물론 관광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표 축제 개발은 군민의 집약된 의사가 존중되고 방문객의 평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우주항공축제가 군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축제 중단 이후 우리 군은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목포대 용역, 축제TF팀 구성 운영, 우주항공 및 축제 전문가 자문 등 폭넓고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고비용 약 1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고비용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인정을 받을 만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좀더 진솔한 말씀을 올리자면 축제 개발에 있어서 군민과 출향 향우들의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다시 시작하는 축제가 실패를 한다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축제 기간, 축제 시기, 축제 방향, 축제 프로그램, 인접 시군 축제 연계 방안, 도와 공동주체 방안, 축제 자원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대표 축제 개발을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상설축제장 및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여건이 개선되는 2013년이나 2014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우리 군 대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2년도 축제는 여수 엑스포 관광객 유치와 맞춤형으로 병행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제5장 부 록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제1절 의회에서 하는일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제3절 회의규칙
제4절 의회용어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제5장

## 제1절 의회에서 하는일

1. 의회의 역할
2. 의회의 권한
3. 의회의 운영
4. 의안처리 절차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1절 의회에서 하는일

## 1. 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 결산안의 승인과 청원 ·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 조사, 동의, 승인을 하고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 기능, 행정감시 기능의 역할을 한다.




## 2. 의회의 권한

### ○ 의결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을 심의 ·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청원처리권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을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한다.

### ○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임시회의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의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의원의 징계, 자격에 관한 심사
-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 3. 의회의 운영

의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개회하여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이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 ○ 본회의

군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군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 의회운영위원회

- 구성 :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 총무위원회

- 구성 : 총무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재무과, 투자정책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 산업건설위원회

- 구성 : 산업건설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관부서 : 경제유통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우주항공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 ○ 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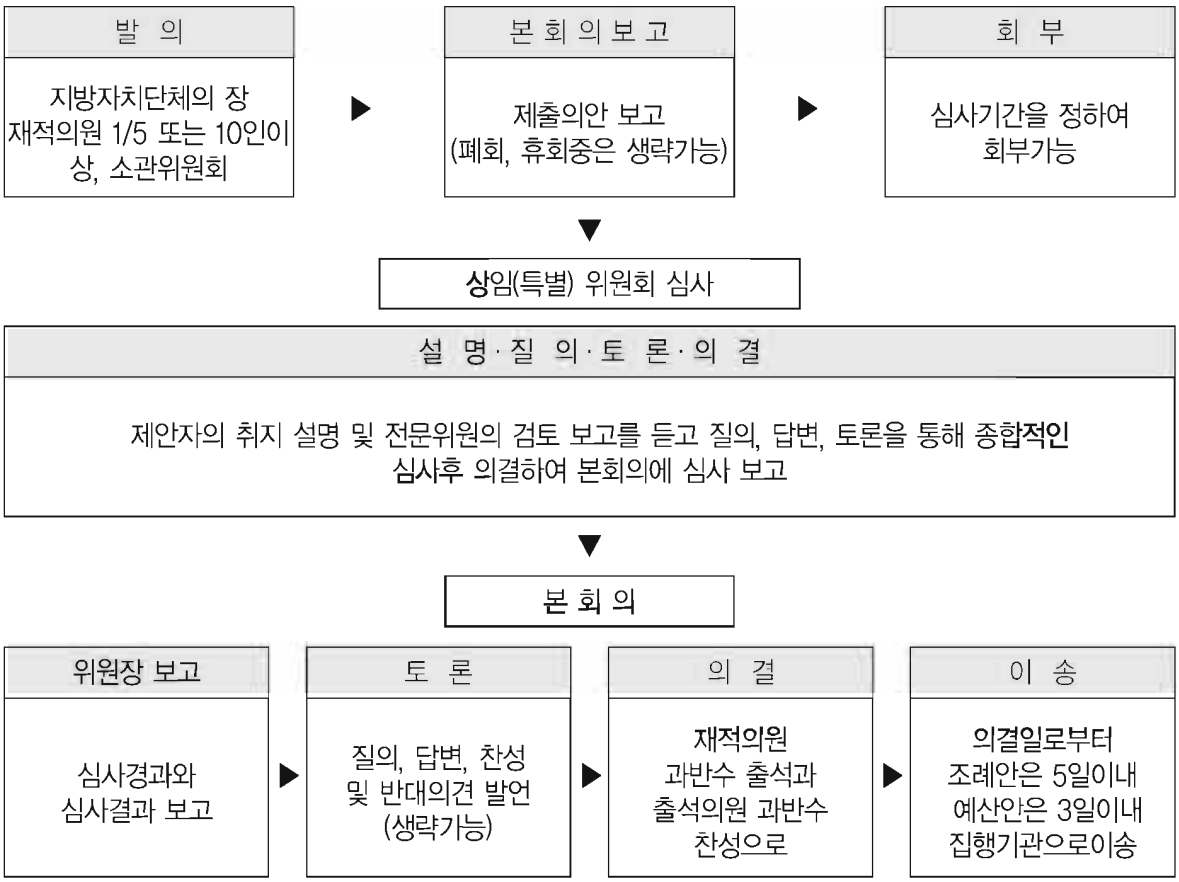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회부된 안건이 철회되거나 그 안건이 실현되는 등 심사의 대상이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자동 소멸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 4. 의안처리 절차

### ○ 일반의안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 발의는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소관 위원회에서 발의하며,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의 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 ○ 예산안과 결산안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승인요구(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중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의 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확 정

**결산안 승인과정**

승인 요구(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군의회에 승인요구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 행정사무감사 및 청원처리

### 행정사무감사 절차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감사계획서 작성(상임위원회)

▼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포함

감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지체없이 군수에게 승인사항 통보

감사실시(본회의,상임위원회)

▼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사생활 침해, 재판간섭, 수사중인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서는 안됨

감사실시 보고 및 채택(상임위원회)

▼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처리

시정요구 ↓ ↑ 처리결과 보고

집행기관

### 청원처리 절차

청원서 제출(주민)

▼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 소개의원 의견서를 **첨부**

청원서 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불수리

청원서 심사(소관 위원회)

▼ 소개의원은 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시 청원의 취지 설명 불수리시 청원인에게 결과 통보

청원서 채택(본회의)

▼ 본회의 심사 · 의결을 거쳐 채택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집행부에 이송 군수는 의회에 처리결과 보고.

심의 · 의결 승인(본회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제5장

## 제2절 역대 의회구성 현황

1. 의장단
2. 위원회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1. 의 장 단

## 1) 의 장

| 연번 | 기 간 | 성 명 | 취임당시 연 령 | 취임당시 의정경력 | 비 고 |
|---|---|---|---|---|---|
| 1 | 1991. 4. 15 ~ 1993. 4. 14 | 박채주 | 51 | 초선 | |
| 2 | 1993. 4. 15 ~ 1995. 6. 30 | 박동래 | 57 | 〃 | |
| 3 | 1995. 7. 1 ~ 1997. 1. 6 | 송복조 | 51 | 2선 | |
| 4 | 1997. 1. 7 ~ 1998. 6. 30 | 김동인 | 51 | 〃 | |
| 5 | 1998. 7. 1 ~ 2000. 7. 9 | 김동인 | 52 | 3선 | |
| 6 | 2000. 7. 10 ~ 2000. 12. 10 | 장귀석 | 58 | 2선 | |
| 7 | 2000. 12. 11 ~ 2002. 6. 30 | 류준상 | 48 | 3선 | |
| 8 | 2002. 7. 10 ~ 2004. 6. 30 | 김성철 | 50 | 2선 | |
| 9 | 2004. 7. 19 ~ 2006. 1. 11 | 신광주 | 57 | 2선 | |
| 10 | 2006. 1. 19 ~ 2006. 6. 30 | 송경량 | 53 | 초선 | |
| 11 | 2006. 7. 5 ~ 2008. 6. 30 | 송경석 | 52 | 2선 | |
| 12 | 2008. 7. 1 ~ 2010. 6. 30 | 함채규 | 63 | 2선 | |
| 13 | 2010. 7. 7 ~ 2012. 6. 30 | 신태균 | 56 | 3선 | |

## 2) 부 의 장

| 연번 | 기 간 | 성 명 | 취임당시 연 령 | 취임당시 의정경력 | 비 고 |
|---|---|---|---|---|---|
| 1 | 1991. 4. 15 ~ 1993. 4. 14 | 유택근 | 44 | 초선 | |
| 2 | 1993. 4. 15 ~ 1995. 6. 30 | 김동인 | 47 | 〃 | |
| 3 | 1995. 7. 1 ~ 1997. 1. 6 | 〃 | 49 | 2선 | |
| 4 | 1997. 1. 7 ~ 1998. 6. 30 | 고임준 | 53 | 〃 | |
| 5 | 1998. 7. 1 ~ 2000. 7. 9 | 류준상 | 46 | 3선 | |
| 6 | 2000. 7. 10 ~ 2002. 6. 30 | 송대석 | 64 | 초선 | |
| 7 | 2002. 7. 10 ~ 2004. 6. 30 | 신광주 | 55 | 2선 | |
| 8 | 2004. 7. 19 ~ 2006. 1. 11 | 곽상률 | 52 | 2선 | |
| 9 | 2006. 1. 19 ~ 2006. 6. 30 | 송재효 | 59 | 2선 | |
| 10 | 2009. 7. 5 ~ 2008. 6. 30 | 이재후 | 52 | 2선 | |
| 11 | 2008. 7. 1 ~ 2010. 6. 30 | 김옥래 | 61 | 2선 | |
| 12 | 2010. 7. 7 ~ 2012. 6. 30 | 박금래 | 61 | 3선 | |

# 2. 위 원 회

## 1) 상임위원회

| 구성시기 | 상임위원회수 | 상임위원회 명칭 |
|---|---|---|
| 1992년 4월 | 3 | 의회운영위원회<br>총 무 위 원 회<br>산업 · 건설위원회 |
| 1993년 4월 | 3 | 〃 |
| 1995년 7월 | 3 | 〃 |
| 1997년 1월 | 3 | 〃 |
| 1998년 7월 | 3 | 〃 |
| 2000년 7월 | 3 | 〃 |
| 2002년 7월 | 3 | 〃 |
| 2003년 12월 | 3 | 〃 |
| 2004년 7월 | 3 | 〃 |
| 2006년 7월 | 3 | 〃 |
| 2008년 7월 | 3 | 〃 |
| 2010년 7월 | 3 | 〃 |
| 2012년 7월 | 3 | 〃 |

## 2) 상임위원장

| 성 명 | 상임위원회명 | 재 임 기 간 | 취임당시 연 령 | 취임당시 의정경력 | 비 고 |
|---|---|---|---|---|---|
| 김동인 | 의회운영위원회 | 1992. 4. 27~1993. 4. 14 | 45 | 초 선 | |
| 송기복 | 총 무 위 원 회 | 〃 | 61 | 〃 | |
| 김남규 | 산업건설위원회 | 〃 | 63 | 〃 | |
| 송기복 | 의회운영위원회 | 1993. 4. 15~1995. 6. 30 | 63 | 〃 | |
| 고임준 | 총 무 위 원 회 | 〃 | 49 | 〃 | |
| 신윤식 | 산업건설위원회 | 〃 | 47 | 〃 | |
| 박채주 | 의회운영위원회 | 1995. 7. 1~1997. 6. 30 | 55 | 2 선 | |
| 류준상 | 총 무 위 원 회 | 〃 | 45 | 〃 | |
| 장귀석 | 산업건설위원회 | 〃 | 53 | 초 선 | |
| 신광주 | 의회운영위원회 | 1997. 7. 1~1998. 6. 30 | 50 | 〃 | |
| 박창규 | 총 무 위 원 회 | 〃 | 64 | 〃 | |
| 김성철 | 산업건설위원회 | 〃 | 45 | 〃 | |
| 장귀석 | 의회운영위원회 | 1998. 7. 1~2000. 7. 9 | 56 | 2 선 | |
| 박동래 | 총 무 위 원 회 | 〃 | 62 | 〃 | |
| 박채주 | 산업건설위원회 | 〃 | 58 | 3 선 | |
| 윤경식 | 의회운영위원회 | 2000. 7. 10~2002. 6. 30 | 53 | 초 선 | |
| 박채주 | 총 무 위 원 회 | 〃 | 60 | 3 선 | |
| 박동래 | 산업건설위원회 | 〃 | 64 | 2 선 | |
| 신태균 | 의회운영위원회 | 2002. 7. 10~2004. 6. 30 | 48 | 초 선 | |
| 배기홍 | 총 무 위 원 회 | 〃 | 50 | 〃 | |
| 송경량 | 산업건설위원회 | 〃 | 49 | 〃 | |
| 김옥래 | 의회운영위원회 | 2004. 7. 19~2006. 6. 30 | 56 | 〃 | |
| 박금래 | 총 무 위 원 회 | 〃 | 55 | 〃 | |
| 송경석 | 산업건설위원회 | 〃 | 52 | 〃 | |
| 김영길 | 의회운영위원회 | 2006. 7. 6~2008. 6. 30 | 51 | 2 선 | |
| 신태균 | 총무위원회 | 〃 | 52 | 〃 | |
| 김주식 | 산업건설위원회 | 〃 | 52 | 초 선 | |
| 김영길 | 의회운영위원회 | 2008. 7. 1~2010. 6. 30 | 53 | 2 선 | |
| 김주식 | 총무위원회 | 〃 | 54 | 초 선 | |
| 김의규 | 산업건설위원회 | 〃 | 49 | 〃 | |
| 김주식 | 의회운영위원회 | 2010. 7. 7~2012. 6. 30 | 56세 | 2선 | |
| 송경양 | 총무위원회 | 〃 | 58세 | 〃 | |
| 김의규 | 산업건설위원회 | 〃 | 51세 | 〃 | |

# 3.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 1) 초대 의회

○ 임　기 : 1991. 4. 15 ~ 1995. 6. 30(4년)
○ 전반기 : 1991. 4. 15 ~ 1993. 4. 14
- 의　장 : 박 채 주
- 부의장 : 유 택 근
- 상임위원회 (별첨2)

○ 후반기 : 1993. 4. 15 ~ 1995. 6. 30
- 의　장 : 박 동 래
- 부의장 : 김 동 인
- 상임위원회 (별첨2)

※ 의원현황(별첨1)

## 2) 제2대 의회

○ 임　기 : 1995. 7. 1 ~ 1998. 6. 30(3년)
○ 전반기 : 1995. 7. 1 ~ 1997. 1. 6
- 의　장 : 송 복 조
- 부의장 : 김 동 인
- 상임위원회 (별첨4)

○ 후반기 : 1997. 1. 7 ~ 1998. 6. 30
- 의　장 : 김 동 인
- 부의장 : 고 임 준
- 상임위원회 (별첨4)

※ 의원현황(별첨3)

## 3) 제3대 의회

○ 임　기 : 1998. 7. 1 ~ 2002. 6. 30(4년)
○ 전반기 : 1998. 7. 1 ~ 2000. 7. 9
- 의　장 : 김 동 인
- 부의장 : 류 준 상

• 상임위원회 (별첨6)

○ 후반기 : 2000. 7. 1 ~ 2002. 6. 30

〈1기〉 2000. 7. 10 ~ 12. 10

• 의　장 : 장 귀 석
• 부의장 : 송 대 석
• 상임위원회 (별첨6)

〈2기〉 2000. 12. 11 ~ 2002. 6. 30

• 의　장 : 류 준 상
• 부의장 : 송 대 석
• 상임위원회 (별첨6)

※ 의원현황(별첨5)

### 4) 제4대 의회

○ 임　기 : 2002. 7. 1 ~ 2006. 6. 30(4년)

○ 전반기 : 2002. 7. 10 ~ 2004. 6. 30

• 의　장 : 김성철
• 부의장 : 신광주
• 상임위원회(별첨8)

○ 후반기 : 2004. 7. 19 ~ 2006. 6. 30

〈1기〉 2004. 7. 19 ~ 2006. 1. 11

• 의　장 : 신광주
• 부의장 : 곽상률
• 상임위원회(별첨8)

〈2기〉 2006. 1. 19 ~ 2006. 6. 30

• 의　장 : 송경량
• 부의장 : 송재효
• 상임위원회(별첨8)

※ 의원현황(별첨7)

### 5) 제5대 의회

○ 임 기 : 2006. 7. 1 ~ 2010. 6. 30(4년)
○ 전반기 : 2006. 7. 1 ~ 2008. 6. 30
- 의 장 : 송경석
- 부의장 : 이재후
- 상임위원회(별첨10)

○ 후반기 : 2008. 7. 1 ~ 2010. 6. 30
- 의 장 : 함채규
- 부의장 : 김옥래
- 상임위원회(별첨10)

※ 의원현황(별첨 9)

### 5) 제6대 의회

○ 임 기 : 2010. 7. 1 ~ 2010. 6. 30(4년)
○ 전반기 : 2010. 7. 1 ~ 2012. 6. 30
- 의 장 : 신태균
- 부의장 : 박금래
- 상임위원회(별첨12)

○ 후반기 : 2008. 7. 1 ~ 2014 . 6. 30
- 의 장 : 박금래
- 부의장 : 배기홍
- 상임위원회(별첨12)

※ 의원현황(별첨 11)

## 〈별첨 1〉

### ■ 초대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주요경력 | 비 고 |
|---|---|---|---|---|---|---|
| 고흥읍 | 이경수 | 38. 8. 2 | 고흥농고졸 | 상업 | • 중학교 교사(5년)<br>• 반핵자문위원 | 835-2789 |
| 도양읍 | 유택근 | 47. 7. 3 | 한양대졸 | 상업 | • 도양 청년회의소 회장<br>• 전남지구청년회의소 상무위원<br>• 전반기 부의장 | 842-0009 |
| **풍양면** | **박동래** | 36. 4. 6 | 광주공고졸 | 토건업 | • 풍양중 육성회장<br>• 고흥군체육회 이사<br>• 화성건설 이사 | 832-4715 |
| 도덕면 | 신윤식 | 46. 10. 23 | 전대경영<br>대학이수 | 농업 | • 흥진기업 이사<br>• 고흥군 체육회 이사<br>• 향토예비군 중대장 | 843-0765 |
| 금산면 | 김남규 | 28. 11. 26 | 일 본<br>정칙중졸 | 농업 | • 경찰공무원(경위)<br>•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br>• 고흥군 경우회장 | 843-8789 |
| **도화면** | **김동인** | 46. 4. 23 | 순천제일<br>대학졸업 | 자영업 | • 도화중 육성회장<br>• 도화교회 장로(현)<br>• 전반기 운영위원장 | 833-0123 |
| **포두면** | **류준상** | 52. 10. 27 | 순천제일<br>대학졸업 | 토건업 | • 고흥군 체육회 이사<br>• 동창건설 이사(현) | 835-8708 |
| 봉래면 | 고임준 | 44. 12. 12 | 순 천<br>매산고졸 | 수산물 | • 봉래중 육성회장<br>• 봉래국교 후원회장 | 832-0777 |
| 동일면 | 최형문 | 42. 10. 8 | 부 산<br>해양고졸 | 중개업 | • 백양국교 후원회장<br>• 봉래종합고교 이사 | 833-7074 |
| **점암면** | **박채주** | 40. 12. 10 | 조선대3년<br>수료 | 농업 | • 점암면자율방법협의회장<br>•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전반기 의장 | 833-9400 |
| 영남면 | 김선규 | 27. 5. 30 | 보통학교졸 | 농업 | • 고흥군 향토사 연구위원<br>• 고흥군수협 총대 6년 | 832-8852 |
| 과역면 | 송복조 | 44. 1. 3 | 과역중졸 | 농업 | • 고흥군번영회 부회장<br>• 과역면 번영회장<br>• 과역택시(유한) 대표이사 | 833-5001 |
| 남양면 | 박용호 | 28. 5. 28 | 과역국교졸 | 운수업 | • 고흥군 산림조합장(8년)<br>• 고흥군 교육위원회 위원<br>• 남양면의회 의장 2년 | 833-5472 |
| 동강면 | 송기복 | 30. 1. 12 | 동강국졸 | 농업 | • 초등학교 교사 4년<br>• 동강면 총무계장<br>• 전반기 총무위원장 | 833-2401 |
| 대서면 | 송용현 | 39. 5. 15 | 서울한강고등<br>공민교중퇴 | 농업 | • 대서중 육성회 부회장<br>• 대서중 이사 및 감사 | 833-3577 |
| 두원면 | 정영표 | 38. 1. 6 | 고 등<br>군사학교졸 | 농업 | • 육군 대위(전상) 퇴역<br>• 고흥군 보훈회장(10년)<br>• 두원면 번영회장 | 835-4010 |

〈별첨 2〉

■ 초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박 채 주 · 부의장 유 **택 근**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동인 | 류준상 | 박동래, 최형문, 송복조 |
| 총 무 위 원 회 | 송기복 | 박동래 | 신윤식, 고임준, 박용호, 송용현, 정**영표** |
| 산업건설위원회 | 김남규 | 송복조 | 이경수, 유택근, 류준상, 최형문, 김**선규** |

■ 초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박 **동** 래 · 부의장 김 **동 인**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송기복 | 정영표 | 김선**규**, 최형문, 송용현 |
| 총 무 위 원 회 | 고임준 | 김선규 | 김남규, 김동인, 박채주, 박용호, 송**기복** |
| 산업건설위원회 | 신윤식 | 최형문 | 이경수, 유택근, 류준상, 송복조, 송**용현** |

## 〈별첨 3〉

### ■ 제2대 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직 업 | 주요경력 | 비 고 |
|---|---|---|---|---|---|---|
| 고흥읍 | 김복수 | 31. 3. 29 | 순천고중퇴 | 수산업 | • 고흥군 수협조합장<br>• 고흥군 번영회장 | 835-2728 |
| 도양읍 | 김성철 | 52. 2. 16 | 순천고졸 | 토건업 | • 도양읍 체육회 부회장<br>• 새마을금고 부이사장<br>• 고흥군재향군인회부회장 | 842-3322 |
| 풍양면 | 이규홍 | 37.10. 30 | 고흥중졸 | 농업 | • 풍양농협 이사<br>• 고흥군농지개량조합이사<br>• 스트롱케미칼(주)회장 | 835-9555 |
| 도덕면 | 신윤식 | 46. 10. 23 | 전대경영<br>대학이수 | 농업 | • 흥진기업 이사<br>• 고흥군 체육회 이사<br>• 향토예비군 중대장 | 843-0765 |
| 금산면 | 신광주 | 47. 8. 18 | 전대경영<br>대학이수 | 석산업 | • 고흥군 체육회 이사<br>• 금산면 금의회장<br>• 청송석재사업 대표 | 843-0765 |
| **도화면** | **김동인** | 46. 7. 23 | 순천제일<br>대학졸업 | 자영업 | • 도화중 육성회장<br>• 도화교회 장로(현)<br>• 제2대 후반기 의장 | 833-0123 |
| **포두면** | **류준상** | 52. 10. 27 | 순천제일<br>대학졸업 | 토건업 | • 포두중 육성회장<br>• 제2대전반기총무위원장<br>• 고흥군 체육회 이사 | 835-8708 |
| 봉래면 | 고임준 | 44. 12. 12 | 순 천<br>매산고졸 | 수산물<br>중개업 | • 봉래JC회장<br>• 봉래국교 후원회장 | 832-0777 |
| 동일면 | 정종열 | 52. 5. 28 | 전대경영<br>대학이수 | 토목업 | • 자유총연맹동일면위원장<br>• 고흥군 체육회 이사<br>• 백양중학교 육성회장 | 833-7454 |
| **점암면** | **박채주** | 40. 12. 10 | 조선대3년<br>수 료 | 농업 | • 점암면자율방법협의회장<br>• 점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초대 전반기 의장 | 833-9400 |
| 영남면 | 장귀석 | 42. 4. 20 | 전대경영<br>대학이수 | 한약업 | • 제2대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br>• 새마을운동고흥지회장<br>• 전라남도한약협회부회장 | 834-7755 |
| 과역면 | 송복조 | 44. 1. 3 | 과역중졸 | 운수업 | • 고흥군번영회부회장<br>• 과역면 번영회장<br>• 제2대 전반기 의장 | 833-5001 |
| 남양면 | 송진수 | 44. 9. 17 | 두원국교졸 | 농업 | • 남양면느타리버섯작목회장<br>• 고흥군민주발전협의회장 | 833-1349 |
| 동강면 | 송재효 | 47. 12. 24 | 벌교중졸 | 농업 | • 동강 새마을금고 이사<br>• 동강국교 후원회장<br>• 동강면지방자치위원장 | 833-2248 |
| 대서면 | 송용현 | 39. 5. 15 | 서울한강고등<br>공민교중퇴 | 농업 | • 대서중 육성회 부회장<br>• 대서중 이사 및 감사 | 833-3577 |
| 두원면 | 박창규 | 33. 1. 20 | 고흥농고졸 | 농업 | • 두원면 부면장<br>• 두원면지방자치위원장 | 835-4028 |

〈별첨 4〉

■ 제2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송 복 조 · 부의장 김 **동 인**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박채주 | 송재효 | 박창규, 이규홍, 김성철 |
| 총 무 위 원 회 | 류준상 | 박창규 | 박채주, 김동인, 송용현, 송재효, 송진수, **정종렬** |
| 산업건설위원회 | 장귀석 | 김성철 | 김복수, 이규홍, 고임준, 신윤식, 신광주 |

■ 제2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동인 · 부의장 고 **임 준**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신광주 | 장귀석 | 이규홍, 신윤식, 송용현 |
| 총 무 위 원 회 | 박창규 | 이규홍 | 신윤식. 고임준, 정종렬, 장귀석, 송복조, **송재효** |
| 산업건설위원회 | 김성철 | 신광주 | 김복수, 류준상, 박채주, 송진수, 송용현 |

## 〈별첨 5〉

### ■ 제3대 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직 업 | 주요경력 |
|---|---|---|---|---|---|---|
| | | | 자 택 | 사무실 | | |
| 고흥읍 | 김복수 | 31. 3. 29 | 835-2728 | | 수산업 | • 고흥군 수협조합장<br>• 고흥군 번영회장 |
| 도양읍 | 유택근 | 47. 7. 3 | 842-0009 | 842-2547 | 상 업 | • 초대 전반기 부의장<br>• 녹동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 풍양면 | 박동래 | 36. 4. 6 | 832-4715 | | 토목업 | • 초대 후반기 의장<br>• 제3대 전반기 총무위원장,<br>• 후반기 산건위원장 |
| 도덕면 | 정순열 | 52. 5. 26 | 842-1213 | 843-1995 | 건설업 | • 순천 제일대학 기성회 이사<br>• 전문건설협회 전남장학회 이사 |
| 금산면 | 김수경 | 46. 6. 27 | 843-6969 | | 농 업 | • 금산면사무소 근무(23년)<br>• 금산면 번영회장 |
| 도화면 | 김동인 | 46. 7. 23 | 833-0123 | | 자영업 | • 도화교회 장로<br>• 제2대 후반기 의장<br>• 제3대 전반기 의장, |
| 포두면 | 류준상 | 52. 10. 27 | 833-8708 | 832-1290 | 토건업 | • 제2대 전반기 총무위원장<br>• 제3대 전반기 부의장,<br>• 후반기 의장(2기) |
| 봉래면 | 윤경식 | 47. 3. 15 | 833-6497 | | 수산업 | • 지방공무원 근무(10년)<br>• 봉래면 번영회장<br>• 제3대 의회운영위원장 |
| 동일면 | 곽상율 | 52. 5. 8 | 833-7056 | 835-7236 | 자영업 | • 백양초등학교 후원회장<br>• 면 체육회 이사 |
| 점암면 | 박채주 | 40. 12. 10 | 833-9400 | | 농 업 | • 초대 전반기 의장<br>제3대 전반기 산건위원장,<br>후반기 총무위원장 |
| 영남면 | 장귀석 | 42. 4. 20 | 834-7755 | 834-8855 | 한약업 | • 전남 한약협회 전남도지부장<br>• 제2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br>• 제3대 후반기 의장(1기) |
| 과역면 | 송복조 | 44. 1. 3 | 833-5001 | | 운수업 | • 제2대 전반기 의장<br>• 면 번영회장 |
| 남양면 | 송진수 | 44. 9. 17 | 833-1349 | | 농 업 | • 남양면 느타리버섯 작목회장<br>• 제2대 의원 |
| 동강면 | 송충섭 | 48. 1. 16 | 835-4842 | 835-6459 | 회사원 | • 동강면사무소근무(20년)<br>• 현대산업(주)관리이사 |
| 대서면 | 송대석 | 36. 1. 21 | 833-3198 | | 농 업 | • 대서면 의용소방대장(10년)<br>• 대서면새미을금고 이사장(10년)<br>• 제3대 후반기 부의장 |
| 두원면 | 송기웅 | 58. 5. 10 | 835-5544 | | 농 업 | • 두원우체국업무계장(12년)<br>• 두원중학교 후원회장 |

〈별첨 6〉

■ 제3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동 인 · 부의장 류 준 상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장귀석 | 송기웅 | 정순열, 윤경식, 송충섭 |
| 총 무 위 원 회 | 박동래 | 정순열 | 류준상, 곽상율, 장귀석, 송진수, 송대석, **송기웅** |
| 산업건설위원회 | 박채주 | 윤경식 | 김복수, 유택근, 김수경, 송복조, 송충섭 |

■ 제3대 후반기 의회구성(제1기)

의 장 단

· 의장 장 귀 석 · 부의장 송 대 석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윤경식 | 정순열 | 유택근, 곽상율, 송진수 |
| 총 무 위 원 회 | 박채주 | 유택근 | 김복수, 윤경식, 송복조, 송진수, 송충섭, **송대석** |
| 산업건설위원회 | 박동래 | 곽상율 | 정순열, 김수경, 김동인, 류준상, 송기웅 |

■ 제3대 후반기 의회구성(제2기)

의 장 단

· **의장** 류 준 상 · 부의장 송 대 석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윤경식 | 정순열 | 유택근, 곽상율, 송진수 |
| 총 무 위 원 회 | 박채주 | 유택근 | 김복수, 윤경식, 송복조, 송진수, 송충섭, **송대석** |
| 산업건설위원회 | 박동래 | 곽상율 | 정순열, 김수경, 김동인, 장귀석, 송기웅 |

## 〈별첨 7〉

### ■ 제4대 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직 업 | 주요경력 |
|---|---|---|---|---|---|---|
| | | | 자 택 | 사무실 | | |
| 고흥읍 | 배기홍 | 52. 2. 4 | 834-7000 | | 자영업 | •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br>•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
| 도양읍 | 김성철 | 52. 2. 16 | 844-4343 | | 자영업 | •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18년)<br>•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
| 풍양면 | 김영길 | 55. 4. 23 | 832-5131 | | 농 업 | • 풍양농협 감사(4년)<br>• 풍양중학교 운영위원장 |
| 도덕면 | 박금래 | 49. 9. 26 | 843-2727 | | 자영업 | • 도덕중앙초등학교교사재직<br>•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br>• 범죄예방 위원 |
| 금산면 | 신광주 | 47. 8. 18 | 844-8700 | | 광산업 | • 금산면 번영회장<br>•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
| 도화면 | 함채규 | 45. 9. 15 | 832-6968 | 832-0157 | 자영업 | • 고흥군 태권도 협회장<br>• 재향군인회 고흥군회장 |
| 포두면 | 송경양 | 53. 7. 3 | 834-6449 | | 축산업 | • 포두면 농업경영인 회장<br>• 포두 한위회 작목회장 |
| 봉래면 | 명재탁 | 60. 7. 21 | 833-0998 | 834-6162 | 건설업 | • 법무부 범죄예방 선도위원<br>• 고흥체육회 이사 |
| | 고철웅 | 60. 5. 10 | 833-6532 | | 상 업 | • 나로도청년회의소제20대회장<br>• 삼영수산 대표 |
| 동일면 | 곽상률 | 52. 5. 8 | 833-7056 | 835-7236 | 자영업 | • 동일면 체육회 이사<br>• 제3대 고흥군의회 의원 |
| 점암면 | 송경석 | 54. 1. 24 | 834-1074 | | 건설업 | • 점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1,2,3대)<br>• 고흥군 축구협회회장 |
| 영남면 | 김옥래 | 48. 9. 27 | 832-8887 | | 농어업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br>• 범죄예방 위원<br>• 협동영어법인 대표 |
| 과역면 | 신태균 | 54. 2. 08 | 832-2494 | | 건설업 | • 과역중학교 운영위원장<br>• 고흥군 배구협회 회장 |
| 남양면 | 이재후 | 54. 7. 22 | 832-1580 | | 농 업 |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br>• 범죄예방 위원<br>• 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 동강면 | 박용주 | 39. 1. 20 | 833-3678 | | 농 업 | • 농촌지도직공무원재직(33년)<br>• 새천년민주당 21세기<br>• 국정자문위원 |
| | 송재효 | 47. 12. 24 | 833-2248 | | 농 업 | • 동강초등학교 운영위원장<br>• 제2대 고흥군의회 의원 |
| 대서면 | 송영수 | 57. 1. 6 | 833-3239 | | 자영업 | • 대서라이온스 회장<br>• 대서면 농업경영인회 회장 |
| 두원면 | 류중재 | 40. 2. 12 | 835-4290 | | 농 업 | • 지방공무원 재직(27년)<br>• 제19대 두원면장 |

〈별첨 8〉

■ 제4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김 성 철 · 부의장 신 **광 주**

상 임 위 원 회 (1기)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신태균 | 박금래 | 명재탁, 송경석, 박용주 |
| 총 무 위 원 회 | 배기홍 | 송경석 | 김영길, 박금래, 신광주, 함채규, 신태균, **류중재** |
| 산업건설위원회 | 송경양 | 명재탁 | 곽상률, 김옥래, 이재후, 박용주, 송영수 |

상 임 위 원 회 (2기)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신태균 | 박금래 | 송경석, 이재후, 송영수 |
| 총 무 위 원 회 | 배기홍 | 송경석 | 김영길, 박금래, 신광주, 함채규, 신태균, **류중재** |
| 산업건설위원회 | 송경양 | 이재후 | 고철웅, 곽상률, 김옥래, 송재효, 송영수 |

## ■ 제4대 후반기 의회구성(제1기)

의 장 단

· 의장 신 광 주 · 부의장 곽 **상 률**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옥래 | 이재후 | 김영길, 송영수, 류중재 |
| 총 무 위 원 회 | 박금래 | 송영수 | 김성철, 송경양, 곽상률, 고철웅, 김옥래, **이재후** |
| 산업건설위원회 | 송경석 | 김영길 | 배기홍, 함채규, 신태균, 송재효, 류중재 |

## ■ 제4대 후반기 의회구성(제2기)

의 장 단

· 의장 송 경 양 · 부의장 송 **재 효**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옥래 | 이재후 | 김영길, 송영수, 류중재 |
| 총 무 위 원 회 | 박금래 | 송영수 | 김성철, 고철웅, 김옥래, 이재후 |
| 산업건설위원회 | 송경석 | 김영길 | 배기홍, 함채규, 신태균, 송재효, 류중재 |

## 〈별첨 9〉

### ■ 제5대 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주요경력 |
|---|---|---|---|---|---|
| | | | 자 택 | H·P | |
| 고흥가 | 배기홍 | 52. 2. 4 | 834-7000 | 017-615-4040 | •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br>•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br>• 4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 〃 | 송경석 | 54. 1. 24 | 834-1074 | 011-604-3746 | • 전남축구협회부회장<br>• 고흥군축구협회장<br>• 5대의회전반기의장 |
| 〃 | 김옥래 | 48. 9. 27 | 832-8887 | 011-608-8878 | • 고흥군수협이사<br>• 4대의회후반기운영위원장<br>• 5대의회후반기부의장 |
| 고흥나 | 이재후 | 54. 7. 22 | 832-1580 | 011-633-1580 | • 고흥군재향군인회부회장<br>• 팔영농협,산림조합감사<br>• 5대의회전반기부의장 |
| 〃 | 신태균 | 54. 2. 08 | 832-2494 | 011-622-6005 | •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4대의회전반기운영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 고흥다 | 김영길 | 55. 4. 23 | 832-5131 | 010-9924-9930 | • 풍양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풍양중학교 운영위원장<br>• 5대의회전 · 후반기운영위원장 |
| 〃 | 김주식 | 54. 10. 09 | 844-2918 | 011-611-3435 | •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br>• 5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
| 〃 | 박금래 | 49. 9. 26 | 843-2727 | 011-626-9802 | • 도양읍번영회부회장<br>• 4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예결위원장 |
| 고흥라 | 함채규 | 45. 9. 15 | 832-6968 | 011-627-4968 | • 대한태권도협회고흥군회장<br>• 재향군인회 고흥군회장<br>• 5대의회후반기의장 |
| 〃 | 김의규 | 59. 7. 17 | 832-7458 | 011-645-7458 | •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br>•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5대의회후반기산업건설위원장 |
| 비례대표 | 차성자 | 42. 6. 14 | 832-6914 | 011-688-3205 | • 국제로타리도화클럽회원 |
| 〃 | 서향자 | 46. 3. 21 | 833-4993 | 011-621-2068 | • 전국주부교실고흥군지회장<br>•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 |

〈별첨 10〉

## ■ 제5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송 경 석 · 부의장 이 **재 후**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영길 | 서향자 | 박금래, 김의규, 차성자 |
| 총 무 위 원 회 | 신태균 | 김의규 | 배기홍, 이재후, 김영길, 서향자 |
| 산업건설위원회 | 김주식 | 차성자 | 김옥래, 박금래, 함채규 |

## ■ 제5대 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함 채 규 · 부의장 김 **옥 래**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영길 | 박금래 | 이재후, 차성자, 서향자 |
| 총 무 위 원 회 | 김주식 | 차성자 | 송경석, 김옥래, 이재후, 박금래 |
| 산업건설위원회 | **김의규** | 서향자 | 배기홍, 신태균, 김영길 |

## 〈별첨 11〉

### ■ 제6대 의원 현황

| 출신지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 주요경력 |
|---|---|---|---|---|---|
| | | | 자 택 | H·P | |
| 고흥가 | 배기홍 | 52. 2. 4 | 834-7000 | 017-615-4040 | • 고흥군생활체육협의회장<br>• 고흥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br>• 4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 〃 | **김옥래** | 48. 9. 27 | 832-8887 | 011-608-8878 | • 고흥군수협이사<br>• 4대의회후반기운영위**원장**<br>• 5대의회후반기부의**장** |
| 〃 | 송경석 | 54. 1. 24 | 834-1074 | 011-604-3746 | • 전남축구협회부회장<br>• 고흥군축구협회장<br>• 5대의회전반기의장 |
| 고흥나 | 송우섭 | 60. 7. 7. | 833-2228 | 016-626-7789 | • 고흥군체육회이사<br>• 민주통합당고흥보성**지역**<br>• 위원회사무국장<br>• 6대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 〃 | **신태균** | 54. 2. 08 | 832-2494 | 010-3622-6005 | • 과역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4대의회전반기운영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총무위원장 |
| 고흥다 | 박금래 | 49. 9. 26 | 843-2727 | 010-3636-2328 | • 도양읍번영회부회장<br>• 4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예결위원장 |
| 〃 | 김주식 | 54. 10. 09 | 844-2918 | 011-611-3435 | • 고흥항운노동조합위원장<br>• 5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br>• 5대의회후반기총무위원장 |
| 〃 | 장세선 | 53. 12. 1. | 843-9128 | 010-5347-5288 | • 거금도농협장(3선)<br>• 협중앙회경제사업발전위원<br>• 고흥군2011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 |
| **고흥라** | **김의규** | 59. 7. 17 | 832-7458 | 011-645-7458 | •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br>• 도화면체육회상임부회장<br>• 5대의회후반기산업건설위원장 |
| 〃 | 송경양 | 53. 7. 3. | 835-6449 | 011-897-6449 | • 해양경찰청근무<br>• 4대의회전반기산업건설위원장<br>• 4대의회후반기의장 |
| **비례대표** | **송인숙** | 49. 5. 2. | 833-2075 | 010-5359-1128 |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br>• 고흥군새마을부녀회**장**<br>• 전남여성신지식인회**장** |
| 〃 | **최설희** | 54. 11. 21. | 835-2356 | 010-9154-5966 | •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br>• 한국걸스카웃고흥지회장<br>•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 |

〈별첨 12〉

■ 제6대 전반기 의회구성

의 장 단

· 의장 신 태 균 · 부의장 박 금 래

상 임 위 원 회

| 위원회별 | 위원장 | 간 사 | 위 원 |
|---|---|---|---|
| 의회운영위원회 | 김주식 | 송우섭 | 김의규, 송경양, 장세선 |
| 총 무 위 원 회 | 송경양 | 장세선 | 배기홍, 박금래, 김주식, 최설희 |
| 산업건설위원회 | 김의규 | 송우섭 | 김옥래, 송경석, 송인숙 |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제5장

## 제3절 회의규칙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2010. 7. 1 ~ 2012. 6. 30

## 제3절 회의규칙

# □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정 1991.04.13 규칙 제713호
개정 1992.04.10 의회규칙 제3호
1999.03.08 의회규칙 제7호
2004.05.24 의회규칙 제8호
2006.09.29 의회규칙 제10호
2007.06.08 의회규칙 제11호
(일부개정) 2007.12.26 의회규칙 제 12호
(일부개정) 2009.07.10 의회규칙 제 13호
(일부개정) 2010.02.04 의회규칙 제 1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2.4)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6.8)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5.2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 ·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5일전까지 실시한다.(신설 2006.9.29)
③ 제1항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 · 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신설 2006.9.29)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삭제 2006.9.29)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 · 부의장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3장 회 의

###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기별 횟수 부여방법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한다.
(신설 2010.2.4)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개정 2007.6.8)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 정회 ·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12.26, 2009.4.10)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7.6.8)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상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고흥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의 5일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6.8)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나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의안 · 동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의장은 삼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때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단,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06.9.29)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 제4절 발 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

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발언은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5.24)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개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2.4)

⑤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매 본회의 시마다 3인 이내로 하며,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9.3.8, 개정 2010.2.4)

##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② 의장이 표결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4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 · 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0)

## 제6절 회 의 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10.2.4)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 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 제출 · 회부 · 환부 ·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 의장대리한 부의장 ·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4)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07.6.8)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 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개 ·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4장 위 원 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7.6.8)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8)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원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한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 ·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6.8)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때에는 안건 · 일시 · 장소 · 진술인의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급 기준은「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7.6.8, 개정 2010.2.4)

제57조(심사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07.6.8)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 날인한다.
(개정 2007.6.8)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2.4)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 예결위원회 " 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다시 증액하고자 할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6.9.29)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 답변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 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나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개시일 48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수는 답변서 또는 답변 요지서를 질문 개시일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4.5.24)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 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6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6)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9.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6.9.29)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장 질 서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 잡지 ·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은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 성명 ·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2.4)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0.2.4)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 녹화 ·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 · 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할는 자는 매회기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

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 녹화 ·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9.29, 2007.12.2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09.29)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0.2.4)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09.29)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경)

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7.6.8)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9)

②징 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10 규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3.08 규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4 규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9.29 규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08 규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규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0 규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2.04 규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제5장

## 제4절 의회용어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議·政·白·書
# 의정백서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GOHEUNG COUNTY COUNCIL JEONNAM KOREA

## 제4절 의회용어

# □ 의 회 용 어

### ○ 가결과 부결

「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 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간 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幹事」라는 명칭을 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 ○ 간사의 직무

①간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함에 있어 협의에 응하며,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③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위원수가 많은 교섭 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④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②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협의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가진다.

### ○ 감 사

감독하고 검사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등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등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 감표위원

무기명투표시에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 ·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의장이 2 3인 정도를 지명한다. 그리고 잘못 표시 된 투표의 유효 · 무효판정 투표한 의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 ○ 개 의(開議)

당일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 개 정 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 · 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 ○ 개 회

「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開議와 開會」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 · 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 ○ 경 호 원

회기중 의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 ○ 계 류

의회의 심의 · 결의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 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 ○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 ○ 공 전

「流會」의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流會」또는「空轉」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流會,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空轉이라 한다.

### ○ 공 청 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 ○ 공 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 과 반 수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 결의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상은 2분의 1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 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이 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 · 도 의회라 한다.

### ○ 군 의 원

군의원은 군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군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군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

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해당 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 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군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 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의회라고 표현한다.

### ○ 규칙(規則)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날 인

서명은 본인의 자필로 이름을 써넣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 날인은 문서, 회의록 등의 공적 신뢰도를 보장하는 상징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국회법상 의안의 발의시에는 서명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의록의 보존이나 청원서의 제출시에는 의장, 위원장 또는 청원인의 서명, 날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록의 서명과 함께 날인은 회의록 작성의 완료를 뜻한다

### ○ 대　안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代案은 1개 명칭의 조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안이 심사·회부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인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회부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즉 폐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 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동　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동 의 안

도지사·시장·군수등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의 한 종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얻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종류를 동의안이라고 한다.

### ○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 ○ 명　　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出缺用 名牌」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 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 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 ○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 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 ○ 미　　결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 ○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 · 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 · 처리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

### ○ 발　　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가 되는 사항은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 ○ 발 언 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

### ○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 준비와 발언기회 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 직전 또는 개의후 당해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 · 토론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 · 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 ○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 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 ○ 발 의 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 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털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 ○ 발 의 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 ○ 방　　청

일반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직접 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회방청규칙, 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청을 하려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입장시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석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 ○ 번　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 ○ 보충보고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

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 ○ 본안(本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요건 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 ○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 ○ 본회의(本會議)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 ○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등에 희망, 권고, 경고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 ○ 부 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 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 ○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 부칙(附則)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 ○ 비공개 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 사회권(社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 ○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 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 ○ 상 정

「上程」이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 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OOO을 상정합니다」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안건이 한번 상정하여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당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되는 경우 한 개 안건이 몇번 상정되게 된다.

### ○ 서면답변

[광의]의원의 질의, 질문(서면질문포함)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함. 의원의 안건에 대한 질의나 대정부 질문시 또는 청문회, 공청회등에서 의원의 질문(신문)에 대하여는 회의석상에서 구두답변을 하는 것이 통례이나, 회의운영과 정상 구두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례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협의]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한 경우 정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국회법상 답

변의 형식을 뜻함. 구두질문에 대하여 관례상 용인되는 서면답변과는 달리, 서면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질문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서면질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는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전반 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 선결문제(선결동의)

동의의 내용상 그 동의를 먼저 의제로 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든지 심의중인 의제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든가 또는 처리하지 않으면 성립된 동의가 무의미해지는 동의가 있다. 이러한 동의를 「선결문제」, 또는 「선결동의」라 하여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의사일정 변경없이 진행중인 의제보다 먼저 처리하게 된다.

### ○ 세목(稅目)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 (예외: 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 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 ○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그 내용이 세입세출결산과 동일하나 입법과목 이외에 행정과목과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된 사유 등이 표시되고 있다. 세입결산보고서는 관, 항, 목까지 구

분하여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예산현액 익년도이월액, 불용액을 표시한다.

### ○ 소수의견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의견이 다수 의원(위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부결)된 의견을 일반적으로 소수의견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주로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이용되는데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가 안건을 가결시켰을 때에는 부결된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 안건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가결시키자는 내용이나 채택되지 않은 수정내용이 소수의견이 되는데 소수의견이 수정인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수정동의를 제출하여 부결된 것이라야 한다.

### ○ 소위원회(小委員會)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심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중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수의약1/3~1/4정도)으로 구성하는 회의체를 소위원회라 한다.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로부터 심사하라고 맡겨진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 속개(續開)

속개란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의되는 때와 같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 ○ 속기

일반인이 사람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모두 빠짐없이 적는 것을 속기라 한다

### ○ 속기록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 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 ○ 속기사(速記士)

속기된 내용은 다시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글자로 전환시킬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속기업무를 담당하여 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부른다.

### ○ 수정동의(修正動議)

국회법 또는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상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으로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또는 13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동의이다.

일반적으로 동의에는 안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 많으나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동의와 같이 의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그 성격이 동의인 점에서 의안과 구별된다. 또, 안을 갖추어 사전에 제출된다는 점에서 의안이나 안건과 그 성격이 같다.

### ○ 수정안

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 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정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 승인안(承認案)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승인 안이 있다. 헌법, 국회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 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행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제출하는 승인 안으로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승인의 건이 있고 의장이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의장이 제의하는 승인 안으로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선이 있으며, 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승인 안으로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등이 있다.

### ○ 시행규칙(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 대통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등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각종의 용어를 사용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 ○ 심사보고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당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심사경과 및 결과를 위원장이나 간사가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심사보고」라 한다.

### ○ 심의와 심사

「심의」와 「심사」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논의 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 안 건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 · 연설 보고 등이 있다.

### ○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 예규(例規)

상급행정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

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 ○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의 재심사」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재회부」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 회계연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이 원칙안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재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의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 ○ 요 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요구」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 ○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 ○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 · 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 ○ 유 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에 이 경우를 유회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 ○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위원회(委員會), 상임위원회(常任委員會), 특별위원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 ○ 의결과 결의

「의결」과「결의」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 ○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 ○ 의 사

의사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정리권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 · 산회 선포시, 정회 · 속개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 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 ○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 두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

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 ○ 의 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 ○ 의 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 ○ 의사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

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 ○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 소속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 ○ 의 원(議員)

일반적으로 합의체 조직의 구성원을 말하나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가 4년으로 같으나 그 지위와 특권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 의 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등을 갖고 있다.

### ○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의 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 의 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 이 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이송이라 한다.

### ○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 ○ 일괄질의(一括質疑)

개별질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질의, 답변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답변해야 할 사람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 따로 따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다수의 답변자를 상대로 질의하거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와는 달리 질의할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나위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데 묶어서 질의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도 있다.

### ○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 · 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

이 된다.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 ○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 ○ 입법과목(立法科目)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관·항과 세출예산의 장·관·항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과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음. 입법과목은 과목의 상호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제한을 받는다.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따른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다.

### ○ 재 개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 재의요구(再議要求)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환부」라고도 한다.

### ○ 재적의원수와 재석의원수

「재적의원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말하며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수에 산입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등으로 결원된 경우에는 재적의원수에서 제외시킨다.

### ○ 재　청(再請)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 ○ 재회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보고 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 전문위원(專門委員)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 · 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시 · 군 · 구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 정례회(定例期)

매년 정례적으로 두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우리군 의회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 개회하며 1,2차 합하여 최고 50일동안 회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 ○ 정 회

「정회」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 진행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회의 여부와 시점 결정은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게 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위원)의 동의와 본회의(위원회) 의결로 정회하기도 한다. 정회를 한 후 이 건으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산회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일 24:00가 됨으로써 「자동산회」되었다고 한다. 「정회」시에는 회의시작 시간 즉, 속개시간을 고지하기도 하지만 속개시간 약속없이 정회하는 경우에는 의장(위원장)은 속개 시간을 정하여 의원(위원)에게 통지한다.

### ○ 제 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 ○ 제안설명(취지설명)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고도 한다.

### ○ 제 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조례 · 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회기결정의 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

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 ○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 ○ 증 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도 있다.

### ○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자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

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 ○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권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 ○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와 시·군, 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 ○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방의회나 단체장에게 피해를 구제하여 달라고 호소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해달라고 희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사무직원이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답변을 해주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질 문

「질문」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 문제

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듣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도(시 · 군 ·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 요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 질 의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서의 한단계를 의미한다.

### ○ 집 회

「집회」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 ○ 참고인(參考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나 감사대상 사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의회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사항을 「참고인」이라 한다. 참고인은 선서의무가 없으며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해도 이를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가 없다.

### ○ 청 원(請願)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시정, 법률 명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공공의 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함을 말함

### ○ 청원불수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와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 축조심사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축조심사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분이 가능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의 심사 형태이지 만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나 부문별로 하나씩 의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의 경우에는 원안의 각조를 축조심사할 때 축조심사중인 조항에 해당되는 수정 부분도 축조 심사한다.

### ○ 폐 기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등 두가지 경우가 있다.

### ○ 폐 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산회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폐회선포」「회기중 폐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 ○ 표 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회의 제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표결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얻어 자기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단계 과정이다.

### ○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있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휴 회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 의결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 회 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 ○ 회 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6대 전반기 의정백서

• 발 행 일 : 2013년 2월
• 발 행 처 : 고흥군의회
• 발 행 인 : 고흥군의회의장 박금**래**
• **편 집 인** : 의회사무과장 박서**규**
• **편 집** : 의회사무과